

2010년도 통계청 정책연구용역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분석 및 활용제고방안 연구 (I)

2010 인구주택총조사 신규항목에 대한 결과표 설계와 자료 분석 및 활용
제고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

제출일: 2010년 12월 15일

한국인구학회 은기수
전광희
김태현
김정석
박신영
김주현
최슬기

<목 차>

I. 서론	1
II. 신규문항 결과표 설계 방안	
1. 머리말	4
2. 신규항목 목록	6
3. 신규항목 관련 제안 결과표	13
4. 신규주제: 다문화가구	27
5. 신규주제: 초고령자	29
III. 기존 결과표 평가	
1. 머리말	32
2. 기존 결과표 목록 및 평가	34
3. 기존 결과표 평가 결과 설명	51
4. 표본항목 공개 및 제공관련 사례 조사	67
5.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의 표준 영문명 제시	72
IV. 인구주택총조사와 정책	
제 1장.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국가정책 연계 방안 연구	
1. 머리말	87
2.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국가정책 간의 연계성 검토	90
3. 종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를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사례	108
4. 센서스의 관점에서 본 국가통계의 근본원칙	120
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등의 정책 활용방식 해외사례	128
6. 정책부서 이용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제공방안	142
제 2장.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의 정책연관성	
1. 조사대상 인구	163
2. 지리적 및 국내 인구이동 특성	164
3. 국제 인구이동 특성	168
4. 가족 및 가구 특성	169
5. 인구학적 특성	181
6. 출산력 및 사망력	184
7. 교육 및 사회적 특성	186

8. 경제적 특성	191
9. 주택항목	195
제3장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관련 문항과 정책의 연계성	200
1. 종전의 결과표를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사례	200
2.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정책 활용방식 해외사례	201
3. 정책부서 이용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제공방안	202
V.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1. 서론	204
2.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분석	207
3. 타분야 교육자료 보급사례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현황	215
4. 교원 연수 사례와 효과	243
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활용 활성화 방안	251
VI. 결론	269
<참고문헌>	275
첨부 1. 신규항목 결과표(안)	
첨부 2. 신규주제 결과표(안)	
첨부 3. 기존결과표 제안(안)	
첨부 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용 교육자료	

I. 서론

1925년 국세조사로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¹⁾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2010년 올해에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전 영역에서 수립, 실시하는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성, 연령, 교육수준, 혼인상태, 일일이동, 1년 및 5년간 이동경험, 직업 및 산업, 고용상태, 종사상 지위를 포함하는 경제상태 등 기본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각 시기별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산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및 가족에 관한 자료가 산출된다. 주택의 측면에서는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주택의 여러 특성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고용정책 등 경제분야의 기본자료가 되고, 주택 및 교통 정책의 자료가 되며 한국사회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사회, 녹색성장 등에 관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정보화사회에서는 중앙정부만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도 상세한 정보와 자료가 필요한데,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광역시도, 시군부뿐만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상세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로 행정을 펼치는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풀뿌리 정치를 정착시키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리는데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나 자료는 비단 행정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기업으로 대표되는 경제계에서도 어떤 특성을 지닌 국민이 전국 방방곡곡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보와 자료가 된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산출된 정보와 자료를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성공적인 경제활동에 필수요소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도 각 개인은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예측하기 위해서도 각종 정보와 자료가 필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외에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여타통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파악된 인구주택총조사의 정보와 자료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예측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인구주택총조사가 이처럼 개인, 가족, 행정부, 기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주체 등 모든 부문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는 매 5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62년 이후 실시되어온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자료의 질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에 모든 국민을 다 찾아서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사하러가서도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만

1)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총조사”로 부르기도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공고롭게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 survey)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번역어로서, “총조사”가 1990년부터 국어학자들의 도움으로 창안되었으나 일상생활은 물론 학술연구에서도 통용되지 않고 있으며, “총조사”라는 용어보다는 “인구주택총조사”라는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는 중국에서는 “인구조사”(人口普查), 일본에서는 “국세조사”, 북한에서는 “일제조사”(一齊調査)라는 용어로 번역되고 있다.

나지 못하거나, 일정한 거처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혹은 조사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의 완전성이 100%에 이르지 못한다. 이는 비단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국가가 당면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각 나라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개인정보, 사생활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혼인상태, 교육수준, 거주유형 등에 관한 문항 등에 매우 민감해지고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이런 상황이므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완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조사를 할 때마다 여러 방안을 도입해오고 있다. 2010년에는 한국이 IT강국임을 감안하여 조사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인터넷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설문지에 답하는 인터넷 조사가 시도되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다 손쉽고 정확하게 실시하려는 노력과 조사의 질을 높이는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를 얼마나 쓸모 있게 제공하는가이다. 아무리 귀한 자료라도 접근이 힘들고 제공되는 정보가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장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자료가 산출되지만 별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실시된 조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전부터 다음에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어떻게 제공하여야만 행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왔다.

이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서 얻은 자료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분야로 진행되었다.

첫째, 2010년에 새로 도입된 신규항목의 조사결과를 제시하는 방안이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항목이 새로 추가되었다. 하나는 국적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사회참여이다. 국적은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사회, 다문화가족의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 새로 추가된 문항이다. 또 다른 문항은 사회참여이다. 국가, 시장과 함께 3대 축의 하나인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고 또 한국사회에서도 자원봉사활동 등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총조사에서는 사회참여 항목을 추가하였고, 이 결과를 어떻게 공표하여야만 국민들과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 기존결과표의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다. 지금까지 총조사가 실시되면 인구, 가구 편 등 여러 권의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가 출판된다. 각 보고서는 각 주제별로 총조사에서 산출된 결과를 각종 표의 양식으로 담고 있다. 이 표는 먼저 시계열성을 확보해서 지난 세월동안 한국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는 한국사회가 어떤 상황 혹은 수준에 놓여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기존결과표는 여러 차례 검토작업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어상의 문제, 제시방안의 문제, 비교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결과표를 다시 검토해서 별로 이용되지 않는 결과, 유지해야 할 결과 개선해야 할 결과 등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 녹색성장 등의 쟁점을 해결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정부의 각 부처에 어떻게 공급되고 있는지, 정부부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앞으로 통계청과 각 부처가 어떻게 공조작업을 해야 할 것인지, 해외의 사례는 어떠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런 측면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넷째, 인구주택총조사는 여러 곳에서 활용 가능하지만, 특히 초중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자료를 다루는 능력을 개발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통해 한국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한국사회가 처한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학습현장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활용된 적은 거의 없다. 심지어는 교과서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및 이를 활용한 교육내용이 얼마나 되는지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초중고교 교과서에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한 분야를 다룬 내용이 얼마나 되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해서 각 쟁점을 이해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론적인 분석이 아니고 이 연구결과가 곧장 학습현장에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 이 연구의 또 하나의 연구목적이다.

II. 신규문항 결과표 설계 방안

1. 머리말

신규문항 결과표 설계방안에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없었던,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된 문항들의 결과표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대상으로 한다.

새로운 문항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외국인 조사표에 많은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200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간단했던 외국인조사표가 2010년도에는 전수조사표 수준으로 문항이 확대되었다. 즉,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등 외국인 대상으로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질문되어진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10년주기 항목이다. 2005년 조사에서는 없었지만, 2000년 조사에는 있었던, 출생지, 1년전 거주지, 현 직업 근무연수, 수도 및 식수 사용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질문지나 과거 조사에 유사사례가 없는 새로운 문항으로 국적, 입국연월, 사회생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결과표 설계는 신규 문항별로 제시토록 하였다. 각 문항별로 제안하는 결과표를 나열하고 각각의 필요성과 특징을 서술하였다. 또한 첨부된 결과표(안)을 통해 결과표의 형태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방식은 유형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외국인 조사표에 추가된 사항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표의 기존 질문지를 최대한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기존 전수조사표를 활용한 결과표와 비교분석이 가능토록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을 구분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한 표에서는 각각의 국적이 세분되어 설계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10년주기 항목은 과거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표를 기본으로 하여 이를 수정 보완하여 설계하였다. 2000년도 결과표와 일치하는 형태는 상호 비교가능토록 시계열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있다. 새로운 문항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과거 결과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엔 새로운 형태의 결과표도 제안토록 하였다. 세 번째 유형은 과거 인구주택총조사나 다른 질문지의 결과표에서 참고할 만한 결과표가 없기에 연구팀의 창의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다. 연구팀은 인구주택총조사가 현재 외국국적인 경우 뿐 아니라, 한국인으로 귀화한 경우에도 출신국가를 밝혀 적도록 함에 주목하여 '외국출신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외국인 관련 결과표에 귀화인도 함께 담겨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회생활은 다중응답을 허용한 질문지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회생활 관련 결과표에서는 총합 부분을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구와 초고령자라는 두 가지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여 결과표를 제안하였다. 2009년 말 현재 117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한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하리라고 예상된다. 다문화가구는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한국인과 외국인, 혹은 외국인끼리 만의 가구를 의미한다. 이때 외국인은 출생시 외국인도 포함시켜 가능한 여러 유형의 가구를 포괄토록 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 연구를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얻어낸 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출생시부터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다른 유형 모두를 다문화가구로 보고 결과표를 설계토록 하였다. 또한 여타 연구들에서는 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다른 결과표들과 통일성을 고려하여 가구측면에서 접근토록 하였다.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65세 이상(KOSIS에서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에 대한 결과표가 별도의 주제로 작성되었다. 하지만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가면서 건강, 직업, 거처 등 여러 분야에서 고령자 내에서도 이질성이 커지고 있다. 85세가 넘는 초고령자들을 별도의 주제로 묶어냄으로써 고령자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신규항목 목록

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된 신규항목

신규 항목
전수조사표/표본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전수)- 입국연월(전수)
표본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활동-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 출생지 (10년주기 항목)- 1년 전 거주지 (10년주기 항목)- 현 직업 근무연수 (10년주기 항목)-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10년주기 항목)-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10년주기 항목)
외국인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주와의 관계- 혼인상태- 타지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주거용 연면적- 층 방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건물 및 거주층: 거주층 부분만 추가됨

2)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추가된 신규항목 질문과, 관련 과거 질문 정리

		2010년 질문	관련 과거 인구주택총조사 질문
전수조사표 / 표본조사표	국적	<p>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 조선족은 중국(조선족)으로 기입합니다. ① 대한민국 ② 외국 ()</p> <p>출생시 국적은 어디입니까? ① 대한민국 ② 외국 ()</p>	<p>유사질문으로 2005년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 마지막 쪽 하단에 가구원별로 외국인 여부를 물음. 외국인이 있으면 국가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번 가구원: 국가명 _____ ②번 가구원: 국가명 _____ ...</p>
	입국연월	<p>현재 외국인이거나 출생시 외국인이었던 분만 기입합니다. 대한민국에 언제 입국하였습니까? . 대한민국에 거주, 취업 등을 위하여 처음 입국한 때를 말하며 여행 등을 위하여 잠시 입국한 것은 제외합니다. XXXX년 XX월</p>	없음
표본조사표	사회활동	<p>집에서 세는 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가 있습니까?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 회비만 납부하는 활동은 제외하며, 지난 1년간 연1회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 ① 사회분야단체(환경,봉사,인권단체등) ②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직업단체등) ③ 문화분야단체(취미,스포츠등) ④ 정치분야단체(정당활동등) ⑤ 종교분야단체 ⑥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등) ⑦ 친목단체(동창회,향우회등) ⑧ 교육단체(학부모,교사단체등) ⑨ 기타() ⑩ 없음</p>	없음
		<p>이 가구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몇 대</p>	2005년도에는 가구부문에서

	<p>보유하고 있습니까? . 보유하거나 이용 중인 것은 모두 표시합니다.</p> <p>① 승용차(경차) ___대 ② 승용차(경차 외) ___대 ③ 승합차(11인승 이상) ___대 ④ 화물, 특수자동차 ___대 ⑤ 오토바이 ___대 ⑥ 자전거 ___대 ⑦ 없음</p> <p>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목요일에 이 가구의 교통수단별 이용 횟수는 총 몇 회입니까? . 응답일과 가장 가까운 목요일의 이용 횟수로 응답합니다. . 영업용 차량(버스, 택시 등)을 운행하는 경우는 이용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6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이용 횟수를 합산해야 하며 동일한 교통수단을 왕복으로 이용한 경우는 2회로 인정합니다.</p> <p>① 승용차(경차) ___회 ② 승용차(경차 외) ___회 ③ 승합차(11인승 이상) ___회 ④ 화물, 특수자동차 ___회 ⑤ 오토바이 ___회 ⑥ 자전거 ___회 ⑦ 버스 ___회 ⑧ 택시 ___회 ⑨ 철도(지하철 포함) ___회 ⑩ 선박 ___회 ⑪ 비행기 ___회 ⑫ 해당없음</p>	<p>자동차보유대수 만을 물음.</p> <p>이 가구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차를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p> <p>① 승용차(10인승 이하) ② 승용차(11인승 이상) ③ 화물 및 기타 자동차 ④ 없음</p>
출생지	<p>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태어날 당시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을 말합니다.</p> <p>① 현재 살고 있는 집 ②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③ 다른 시,군,구 ④ 북한 또는 외국</p>	<p>10년주기 항목으로, 2000년 전수조사표 중 7번 출생지와 동일</p>

	<p>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되는 시,도와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북한인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인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p> <p>()</p>	
1년전 거주지	<p>1년전(2009년 11월 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p> <p>①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⑤ 북한 또는 외국</p> <p>다른 시,군,구에 살았을 때는 해당되는 시,도와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북한인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인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p> <p>()</p>	<p>10년주기 항목으로, 2000년 표본조사표 중 10번 1년전 거주지와 동일</p> <p>* 5년전 거주지를 묻는 질문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비롯,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 계속 있었음.</p>
현 직업 근무연수	<p>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얼마 동안이나 하였습니다습니까?</p> <p>. 현재 하고 있는 일은 21. 직업 항목에서 “하고 있는 일의 종류”에 응답한 일을 말합니다.</p> <p>. 직장이나 사업체를 옮겼더라도 같은 일이면 포함됩니다.</p> <p>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12개월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⑧ 20년 이상</p>	<p>10년주기 항목으로, 2000년 표본조사표 중 23번 현 직업 근무연수와 동일</p>
수도 및 식수 사용	<p>이 가구의 수도는 어떤 형태입니까? 그리고 식수는 주로 어떻게 드십니까?</p> <p>. 우물, 샘물에 모터를 연결하는 수도형</p>	<p>10년주기 항목으로, 2000년 표본조사표 중 상수도시설 문항은 유사하고 식수사용형태</p>

	형태	태의 시설은 ④ 없음 에 표시합니다. ① 상수도 ② 마을상수도(간이 상수도) ③ 전용상수도(사택 등 특정시설에 공급되는 자가수도) ④ 없음 ===== ① 수돗물을 그대로 먹음 (끓여먹는 것 포함) ② 수돗물을 정수해 먹음 ③ 생수를 사서 먹음 ④ 약수를 떠서 먹음 ⑤ 지하수를 먹음 ⑥ 기타 (_____)	문항은 동일 상수도 시설 이 데에는 상수도(간이, 자가수도 제외)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① 설치되어 있음 ② 설치되어 있지 않음 식수사용형태: 동일 질문
	정보통신 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이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와 이용중인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 .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중인 것은 모두 표시합니다. ① 아날로그TV(브라운관TV) ② 디지털TV ③ 개인용컴퓨터(노트북 포함) ④ 팩스(복합기 포함) ⑤ 인터넷 회선 ⑥ 안테나를 통한 TV방송 신청 ⑦ 케이블방송(CATV) 가입 ⑧ 위성방송 가입 ⑨ 인터넷방송(IPTV) 가입 ⑩ 해당없음	10년주기 항목으로, 2000년 표본조사표 중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과 유사. 이 데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보유하고 있거나 이용중인 것은 모두 표시합니다. . 일반전화기는 보유회선을, 개인용컴퓨터는 보유대수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① 팩스(모사전화기) ②인터넷회선(ISDN,ADSL 등) ③ 케이블TV ④ 지역 유선 방송 ⑤ 위성방송 수신기 ⑥ 일반전화기 _____ 회선 ⑦ 개인용컴퓨터(PC) _____대
외국인조사표(안)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그 배우자 ⑧ 증손자녀, 그 배우자 ⑨ 조부모	2005년 전수조사표 중 가구주와의 관계와 동일

	<p>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⑬ 기타 친,인척 ⑭ 그 외 같이 사는 사람(고용인, 하숙인 등)</p>	
혼인상태	<p>세는 나이로 16세 이상만 기입합니다</p> <p>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p>	2005년 전수조사표 중 혼인상태와 동일
타지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p>이 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 가구원 중에 누구라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합니다.</p> <p>① 다른 곳에 주택 소유 ② 다른 곳에 주택 미소유</p> <p>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 가구입니까? . 아파트 등에 독채로 세든 가구 또는 주인 없이 세 들어 사는 가구만 있는 경우 그 중 주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가구가 대표가구가 됩니다.</p> <p>① 주인가구 ② 대표가구 ③ 기타 세 들어 살고 있는 가구</p>	2005년 전수조사표 중 주인가구 및 주택소유여부와 동일
주거용 연면적	<p>이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건물 연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 주거에 이용하는 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면적이 아닌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p> <p>_____제곱미터. (1평은 3.3제곱미터입니다.)</p>	2005년 전수조사표 중 연건평과 동일
총 방수	<p>이 주택에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이 각각 몇 개입니까? .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주택 전체의 방 수를 기입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도 포함합니다.</p>	2005년 전수조사표 중 총 방수와 동일

	방 _____개 거실(대청마루) _____개 식사용 방(부엌이 딸린 식사용 방 포함) _____개	
건축년도	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 증,개축 면적이 주택 총 면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증,개축시기를 표시합니다. ① 2010년 ② 2009년 ③ 2008년 ④ 2007년 ⑤ 2006년 ⑥ 2005년 ⑦ 2000-2004년 ⑧ 1995-1999년 ⑨ 1990-1994년 ⑩ 1980-1989년 ⑪ 1970-1979년 ⑫ 1960-1969년 ⑬ 1959년 이전	2005년 전수조사표 중 건축년도와 동일
주거시설 수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 있습니까? . 독립된 출입구는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합니다. 부엌 _____개 화장실 _____개 독립된 출입구 _____개	2005년 전수조사표 중 편익시설 수와 동일
건물 및 주거층	이 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몇 층이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____ 층 건물의 ①지하(반지하) ② 지상 >> _____ 층 ③ 옥상(옥탑)	2005년 외국인조사표에서는 거처의 종류를 물을 때 몇 층 건물인지도 함께 물음. 하지만 살고 있는 위치(층수)는 묻지 않음.

3. 신규항목 관련 제안 결과표

1) 국적

o 국적은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에 추가된 신규항목이다. 현재의 국적과, 출생시 국적을 묻는 두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모두에게도 질문을 하였고, 외국이라 답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밝혀 적도록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중국 조선족 일 경우, 중국 국적에 이어 조선족임을 밝히게 되어 있다.

o 국적 관련 결과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중심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귀화인(출생시 외국인)에 대해서도 작성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 미국 사례의 경우, 국적 이외에 민족/인종을 물었다. 즉 미국인 여부를 먼저 묻고, 다시 미국인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에게 히스패닉 여부, 인종의 종류를 묻는 질문이 따로 있었다. 인종 선택에 있어서 복수 응답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o 제안 결과표

[표1] 행정구역별 외국출신인구	(중요도: 상)
[표2] 연령 및 성별 외국출신인구	(중요도: 상)
[표3] 행정구역, 성 및 국적별 외국출신인구	(중요도: 상)
[표4] 국적, 성 및 연령별 외국출신인구	(중요도: 상)
[표5] 국적,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외국인	(중요도: 중)
[표6] 국적,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외국출신인구 (16세 이상)	(중요도: 중)
[표7] 국적, 성, 연령 및 경제활동상태별 외국출신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상)
[표8] 국적, 성, 연령 및 직업(대분류)별 외국출신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상)
[표9] 국적, 성, 연령 및 산업(대분류)별 외국출신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상)
[표10] 국적, 성, 연령 및 종사상의 지위별 외국출신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중)

1) 행정구역은 지자체별 구군단위까지 작성한다. 국내 외국인의 거주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거주지가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구역은 가능한 세밀하게 작성토록 한다. 외국 출신 인구는 귀화인과 외국인으로 나누어 작성토록 한다. 총인구 대비 내국인, 귀화인, 외국인의 구성비를 각각 작성함으로써 각 행정구역별로 외국인의 비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2) 표2에서 연령별 인구를 자세히 보여주도록 한다. 연령 제시 순서는 각세 단위를 시작으로, 이후 5세 단위로, 다시 15세미만/15-64세/65세 이상, 평균연령, 중위연령을 보여주도록 한다. 과거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에서는 각세 단위가 제시될 경우 5세단위 연령은 각 해당 연령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즉 0-4세, 0세, 1세, 2세, 3세, 4세, 5-9세, 5세, ... 식이었다. 두 가지 기준에 따른 인구가 혼재되어 제시된 셈이다. 연령별 변화 추세를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연령별 자료 수요자들은 5세단위나 각세 단위 둘 중 한 가지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할 때 두 기준을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을 추천한다.

성비를 따로 제시하여, 연령별 성비차이가 내국인, 귀화인, 외국인간에 어떻게 다른지를 보

여준다. 내국인에 비하여 귀화인이나 외국인은 연령대에 따라 성비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대된다. 총인구 대비 내국인, 귀화인, 외국인의 구성비를 각각 작성함으로써 각 연령별로 외국인의 비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3) 외국출신 인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즉 현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현재 국적은 한국이나 출생시에는 외국인 경우(귀화인), 현 국적과 상관없이 출생시 외국국적인 경우가 있다.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현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출신 인구(귀화인+외국인)의 규모를 살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본다.

출신국가는 외국인조사표에 구분된 항목을 따른다. 중국의 경우,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과 조선족만을 구분해서 작성토록 한다. 대만은 별도로 작성토록 한다.

4) 표4에서는 출신 국가별 인구를 연령별로 보여준다. 연령은 5세 단위로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외국출신은 외국인과 귀화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표측의 국적은 출신국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의 국적만을 한정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5) 표5에서는 외국출신 인구를 교육정도에 따라 보여준다. 출신 국가별로 학력수준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학력은 최종학력 기준으로,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대학교졸 이상, 안받았음(미취학 포함)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한정토록 하고, 5세 단위로 작성한다.

6) 표6에서는 외국출신 인구를 혼인상태에 따라 보여준다. 출신 국가별로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혼인상태가 16세이상만 대답하도록 되어 있기에 결과표는 16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다.

7) 표7에서는 외국출신 인구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보여준다. 국가 출신별로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한정토록 하고, 5세 단위로 작성한다. 외국인의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별로 특이성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화인의 경우는 경제활동상태가 다양할 것으로 기대된다.

8) 표8에서는 외국출신 인구를 직업(대분류)에 따라 보여준다. 어느 국가 출신이 특정 직업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한정토록 하고, 5세 단위로 작성한다.

9) 표9에서는 외국출신 인구를 산업(대분류)에 따라 보여준다. 직업과는 또 다르게 어느 산업에 외국출신 인구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한정토록 하고, 5세 단위로 작성한다.

10) 표10에서는 외국출신 인구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 보여준다. 어느 국가 출신이 임금근로자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한정토록 하고, 5세 단위로 작성한다.

2) 입국연월

o 입국연월은 국적과 함께 전수조사표와 표본조사표에 추가된 신규항목이다. 현재 외국인이거나 출생시 외국인이었던 사람만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즉 다른 질문들과는 달리 한국에 거주하는 있는 모두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거주, 취업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처음 입국한 시기를 말하며, 여행 등을 위하여 잠시 입국했던 것은 제외한다.

○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는 2010년 11월이라는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자료이나, 입국연월의 경우 과거 경험했던 시기를 밝히게 함으로써 마치 시계열 자료처럼 구성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국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은 1988년 88올림픽을 즈음하여 시작되었으며, 1991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들은 기술을 배우는 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을 뿐 취업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논란이 있었다. 이후 2004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되었고,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는 고용허가제에 통합되며 폐지되었다. 고용허가제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입국연도는 2004년 이전과 2004년 이후로 나누고 2004년 이후는 매해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 제안 결과표

【표1】 행정구역, 성,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인구	(중요도: 상)
【표2】 성, 연령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인구	(중요도: 상)
【표3】 성, 연령, 교육정도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중)
【표4】 성, 연령, 혼인상태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인구	(중요도: 중)
【표5】 성, 연령, 경제활동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상)
【표6】 성, 연령, 직업(대분류)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상)
【표7】 성, 연령, 산업(대분류)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인구 (15세 이상)	(중요도: 상)
【표8】 성, 연령, 종사상 지위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중)
【표9】 행정구역, 성, 연령, 국적 및 입국연도별 외국출신 인구	(중요도: 중)

1) 입국연월은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관련된 문항으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일 수 있다. 즉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부천, 안산 등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지역이 있다. 다문화가정도 농촌에 비중이 크다. 즉 입국연월은 행정구역을 동, 읍, 면부로 나누고 군구 단위까지 작성할 필요가 있다. 입국연도는 1999년 이전시기, 2000-2003년도, 2004년도부터는 매해로 나누어 작성토록 한다. 외국출신은 외국인과 귀화인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행정구역에 따라 성별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기 위해 표두에 성에 따른 구분을 두도록 한다.

2) 표2에서는 연령별 인구를 자세히 보여주도록 한다. 연령 제시 순서는 각세 단위를 시작으로, 이후 5세 단위로, 다시 15세미만/15-64세/65세 이상, 평균연령, 중위연령을 보여주도록 한다. 성비를 따로 제시하여, 연령별 성비차이가 입국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도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연령에 따라 성별 인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도 자세히 알기 위해 표두에 성에 따른 구분을 두도록 한다.

3) 표3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른 외국출신 인구의 입국연도를 보여주도록 한다. 학력은 최종학력 기준으로, 초등학교졸, 중학교졸, 고등학교졸, 대학교졸 이상,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연령은 15세 이상으로 한정토록 하고, 5세 단위로 작성한다. 도농간에 외국인의 교육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읍부, 면부 구분을 하여 작성한다.

4) 표4에서는 혼인상태에 따른 외국출신 인구의 입국연도를 보여주도록 한다. 혼인상태가 16세이상만 대답하도록 되어 있기에 연령은 16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5세 단위로 작성한다. 도농간에 외국인의 혼인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읍부, 면부 구분을 하여 작성한다.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을 이룬 외국인 출신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표5에서는 경제활동에 따른 외국출신 인구의 입국연도를 보여주도록 한다. 연령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5세 단위로 작성한다. 도농간에 외국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읍부, 면부 구분을 하여 작성한다.

6) 표6에서는 직업에 따른 외국출신 인구의 입국연도를 보여주도록 한다. 연령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5세 단위로 작성한다. 도농간에 외국인의 직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읍부, 면부 구분을 하여 작성한다.

7) 표7에서는 산업에 따른 외국출신 인구의 입국연도를 보여주도록 한다. 연령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5세 단위로 작성한다. 도농간에 외국인의 직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읍부, 면부 구분을 하여 작성한다.

8) 표8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외국출신 인구의 입국연도를 보여주도록 한다. 연령은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5세 단위로 작성한다. 도농간에 외국인의 직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읍부, 면부 구분을 하여 작성한다.

9) 표9에서는 국적에 따른 외국출신 인구의 입국연도를 보여주도록 한다. 연령은 전체를 대상으로 5세 단위로 작성한다. 도농간에 외국인의 출신 국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부, 읍부, 면부 구분을 하여 작성한다.

3) 사회활동

o 사회활동은 2010년 표본조사표에 신규항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단체 또는 동호회를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종교, 지역, 친목, 교육, 기타로 나누어 그중 관련된 곳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o 사회활동은 해당 분야에 따라 그 성격이 많이 다를 수 있다. 경제분야 단체는 응답자의 직업과 연관성이 큰 반면, 교육단체는 학령기 아동의 유무여부가 관련이 있고, 지역단체는 해당 지역에 얼마나 연고가 있고, 오래 정착하였는지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다중응답이 가능한 항목이므로 사회단체의 참여도를 연계하여 살펴보기 보다는 별도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o 미국, 영국, 일본 인구총조사에서는 비슷한 사례가 없는 항목이다.

o 제안 결과표

【표1】 행정구역, 성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상)
【표2】 연령, 성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상)
【표3】 성, 교육정도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중)
【표4】 성, 경제활동상태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상)
【표5】 성, 직업(대분류)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중)
【표6】 성, 종사상 지위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중)
【표7】 성, 국적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중)
【표8】 1인 가구 여부, 성별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상)
【표9】 거주기간, 거처의 종류 및 사회활동별 인구	(중요도: 상)

1) 사회활동은 지역에 따라 그 유형이 다를 수 있다. 지역단체 참여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친목단체의 참여도도 지역별 특색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도농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동부, 읍부, 면부 구분이 유의미하다 하겠다.

2) 표2에서는 연령에 따른 사회활동 인구를 보여주도록 한다. 사회활동은 연령별로 그 양상이 다를 수 있다. 20대, 30대 젊은층과 60대, 70대의 노년층의 사회활동은 참여 단체의 종류나 참여도에 있어서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건강하고 활동력을 지닌 고령층의 사회활동 참여 양상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서는 연령은 10살 단위로 70대까지 구분하고 이후는 80세 이상으로 작성하였다.

3) 표3에서는 교육정도에 따른 사회활동 인구를 보여주도록 한다. 사회활동은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그 차이를 드러낼 수도 있다.

4) 경제활동인구는 크게 취업자와 미취업자로만 구분하였다. 취업자에는 일시 휴직자도 포함된다. 경제활동여부에 따라 경제단체 참여 양상은 물론 그 외 여러 사회단체 참여 양상도 다르리라 기대된다.

5) 표5에서는 직업에 따른 사회활동 인구를 보여주도록 한다. 특히 경제 분야 사회활동은 직업에 따라서 그 참여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6) 표6에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사회활동 인구를 보여주도록 한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해당 지역 단체에 참여도가 많은 것으로 기대된다.

7) 표7에서는 국적에 따른 사회활동 인구를 보여주도록 한다. 종교참여도가 높은 국가 출신은 한국에 와서도 종교 활동이 활발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에서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들은 도농 구분에 따른 국적 및 사회활동별 인구도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하게 만든다.

8) 1인 가구는 젊은층에서도 노년층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1인 가구 증가가 곧 사회성의 부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1인 가구는 가족과 시간과 보내는 대신 단체 활동 참여 증가로 대체할 수도 있다. 1인 가구에 따른 사회활동별 인구는 1인 가구의 사회성 분석에 도움을 주리라 기대된다.

9) 표9에서는 거처의 종류에 따른 사회활동 인구를 보여주도록 한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라 지역, 사회, 문화 등 여러 사회단체의 참여 양상도 달라지리라 기대된다. 거처의 종류에 따른 영향은 그 집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다르리라 기대된다.

10) 표10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른 사회활동 인구를 보여주도록 한다. 자기 집을 소유한 경우와, 전세 혹은 월세로 사는 경우는 지역사회에 대한 결속력이 다르다. 이에 따라 지역, 사회, 문화 등 여러 사회단체의 참여 양상도 달라지리라 기대된다.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른 영향은 그 집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거주기간에 따라서도 다르리라 기대된다.

4)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o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은 가구당 각각의 교통수단에 대한 보유/이용대수와, 보유여부와 상관없이 지난 목요일에 이 가구의 가구원들의 교통수단별 이용횟수의 총합을 각각의 교통수단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o 위 항목과 유사한 질문으로, 2010년 표본조사표 가구원 부문에 직장(일터, 근무지)/학교

(학원)에 갈 때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묻는 항목이 있다.

○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5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순수 신규항목인 부분은 오토바이와 자전거 보유대수, 그리고 교통수단별 이용횟수이다.

○ 제안 결과표

【표1】	가구원수 및 교통수단 보유현황별 가구수	(중요도: 상)
【표2】	주택의 점유형태, 거처의 종류 및 교통수단 보유현황별 가구수	(중요도: 상)
【표3】	행정구역, 거처의 종류 및 교통수단 보유현황별 가구수	(중요도: 상)
【표4】	가구주의 직업 및 교통수단 보유현황별 가구수	(중요도: 하)
【표5】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교통수단 보유현황별 가구수	(중요도: 중)
【표6】	가구원중 활동제약자 유무 및 교통수단 보유현황별 가구수	(중요도: 하)
【표7】	주택의 점유형태별 교통수단 이용현황	(중요도: 중)
【표8】	가구주의 성, 및 연령별 교통수단 이용현황	(중요도: 하)
【표9】	가구주의 직업별 교통수단 이용현황	(중요도: 하)
【표10】	가구주의 현거주지, 통근 통학시간별 교통수단 이용현황	(중요도: 하)

1) 가구원수는 교통수단 보유량을 살펴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할 변수중의 하나이다.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교통수단 보유대수도 많으리라 기대된다.

2) 표2에서는 주택의 점유형태와 거처의 종류에 따른 교통수단 보유현황을 보여준다. 교통수단, 특히 승용차 보유는 주차장 보유상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주차장 상태가 다르게 나타나리라 기대된다. 또한 자가, 전세, 월세 등 주택의 점유형태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교통수단 보유현황은 도농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기에 동, 읍, 면부 구분이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자동차 도로, 자전거 도로, 주차공간 등 사회공공재 공급을 맡고 있는 지자체 차원에서 유용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므로, 표3에서는 거처의 종류에 따른 교통수단 보유현황을 행정구역 구군 단위까지 자세히 작성토록 한다.

4) 교통수단 보유현황은 가구 단위로 측정된 자료이기에, 특정 가구원의 특성과 연결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본 자료로 가구주의 성, 연령별 보유현황을 살펴본다. 또한 자동차의 종류와 보유대수는 가구주의 직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가구원 중 활동제약자가 있을 경우 보유 교통수단의 의미는 각별할 수 있다. 표6에서는 활동제약자 유형에 따라 관련 있는 가구원이 한명이라도 있는 경우, 각각의 교통수단 보유현황별 가구수를 살펴보도록 한다.

6) 교통수단 이용횟수는 가구원 수를 통제하지 않고 제시되는 것이기에 그 의미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5) 출생지

○ 출생지는 2000년도 표본조사표에 있었던 10년주기 항목으로 태어난 곳, 즉 태어날 당시 어머니가 살던 장소를 의미한다. 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와 마찬가지로 인구이동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표이다.

o 제안 결과표

- 【표1】 성, 연령 및 출생지 유형별 인구 (중요도: 상)
- 【표2】 행정구역, 성, 연령 및 출생지별 인구 (중요도: 상)
- 【표3】 교육정도 및 출생지별 이동인구(6세 이상) (중요도: 상)
- 【표4】 성, 연령, 혼인상태 및 출생지별 이동인구(15세이상) (중요도: 상)
- 【표5】 성, 산업 및 출생지별 인구(15세이상) (중요도: 중)
- 【표6】 성, 직업 및 출생지별 이동인구(15세이상) (중요도: 중)
- 【표7】 점유형태 및 출생지별 이동인구(5세이상) (중요도: 중)
- 【표8】 성,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및 출생지별 인구(15세이상) (중요도: 중)

1) 출생지는 출생지 유형과 출생지 행정구역 두 가지 유형으로 밝혀 적을 수 있다. 출생지 유형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시군구) 내에서도 현재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곳인지, 같은 시군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다. 표1은 출생지 유형을 밝히도록 한다.

2) 표2부터는 출생지를 행정구역으로 단위로 작성한다. 행정구역은 시군을 구분하도록 한다.

3) 기본 표로서,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상태별로 출생지 분포를 살펴보는 결과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4) 출생지에 따라 경제활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경제활동여부, 종사상 지위, 직업, 산업별로 출생지 결과표를 작성한다. 도농간에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므로 동, 읍, 면부 단위를 구분한다.

6) 1년전 거주지

o 1년전 거주지는 2000년도 표본조사표에 있었던 10년주기 항목으로 1년전(2009년 11월 1일)에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2005년과 2010년 표본조사표에 들어있는 5년전 거주지 문항과 마찬가지로 인구이동과 관련된 질문이다.

o 제안 결과표

- 【표1】 현거주지, 성, 연령 및 1년 전 거주지 유형별 인구 (중요도: 상)
- 【표2】 현거주지, 성, 연령 및 1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이상) (중요도: 상)
- 【표3】 현거주지, 성, 교육정도 및 1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중요도: 중)
- 【표4】 현거주지, 성, 연령, 혼인상태 및 1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중요도: 중)
- 【표5】 현거주지, 성, 산업 및 1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중요도: 중)
- 【표6】 현거주지, 성, 직업 및 1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중요도: 중)
- 【표7】 현거주지, 점유형태 및 1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중요도: 중)
- 【표8】 현거주지, 세대구성 및 1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 (중요도: 중)
- 【표9】 현거주지, 성,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및 1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이상) (중요도: 중)

- 1) 현재 거주지에 따른 1년 전 거주지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행정구역, 성, 연령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2) 최근 거주지 변동에 대한 성, 연령, 혼인 및 교육정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 혼인상태와 교육정도는 성별 차이가 드러날 수 있으므로 세분하여 결과표를 제시함
- 3) 최근 거주지 변동과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종사상 지위 등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종사상 지위의 성별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한 단계 더 세분화된 결과표를 제시함

7) 현 직업 근무연수

o 현 직업 근무연수는 2000년도 표본조사표에 있었던 10년주기 항목으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얼마동안 하고 있었는지를 묻는다.

o 제안 결과표

【표1】 연령, 혼인상태, 성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상)
【표2】 교육정도, 성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상)
【표3】 성, 경제활동상태, 직업(대분류)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상)
【표4】 연령, 종사상지위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상)
【표5】 세대구성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상)
【표6】 근로장소, 성별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상)
【표7】 이용 교통수단, 성별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중)
【표8】 이용 교통수단, 연령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중)
【표9】 산업, 성 및 현 직업 근무 연수별 인구	(중요도: 중)
【표10】 현 직업 근무연수, 성 및 국적여부별 인구	(중요도: 중)

- 1) 현재 직업의 근무 연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 등)
- 2) 직업 상황(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직업)에 따른 근무연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 경제활동상태와 직업(대분류),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현 직업 근무 연수는 성별 차이가 나타날 것이므로 성별로 세분하여 결과표를 제시함.
- 3) 가족구성 상황과 직업환경으로써 현직업근무연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세대구성에 따라 현직업근무연수를 세분하여 결과표를 작성한다
- 4) 직업환경(근로장소, 이용교통수단)에 따른 현직업근무연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 성별로 직업환경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은 현직업근무연수로 별로 세분하여 볼 필요가 있음
- 5) 이용교통수단에 따라 현직업근무연수의 차이를 구분해봄. 이용교통수단이 근무연수의 차이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환경으로 제시될 수 있다
 - 성별로 이용교통수단과 이에 따른 현직업근무연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6)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이들의 이용교통수단과 이에 따른 현직업근무연수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8)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는 2000년도 표본조사표에 있었던 10년주기 항목으로 식수사용 형태는 동일하나 상수도시설 문항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 제안 결과표

【제1표】 행정구역별 수도 및 식수사용형태별 가구 (중요도: 상)

【제2표】 거처의 종류, 수도 및 식수사용형태별 가구 (중요도: 상)

1) 수도 및 식수 사용은 거주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표1은 도농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 동, 읍, 면부 구분은 물론, 행정구역을 구군단위까지 작성토록 한다.

2) 거처의 종류에 따라 식수사용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 2000년도 표본조사표에 있었던 10년주기 항목으로, 질문은 같으나 그 보기응답이 달라졌다. 즉,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여 일반전화기 보유회선수나 개인용컴퓨터 보유대수를 응답이 단순화되고, 디지털TV, 인터넷 방송, 개인용컴퓨터가 추가되었다.

○ 제안 결과표

【제1표】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가) 별 가구 (중요도 상)

【제1표】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나) 별 가구 (중요도 상)

【제2표】 가구주의 성, 교육정도 및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가) 별 인구 (중요도: 상)

【제2표】 가구주의 성, 교육정도 및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나) 별 인구 (중요도: 상)

【제3표】 가구주의 성, 직업 및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가) 별 인구 (중요도 중)

【제3표】 가구주의 성, 직업 및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나) 별 인구 (중요도 중)

【제4표】 가구주의 성, 산업 및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가) 별 인구 (중요도 중)

【제4표】 가구주의 성, 산업 및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나) 별 인구 (중요도 중)

【제5표】 거처의 종류, 가구주의 연령,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가) 별 인구 (중요도: 중)

【제5표】 거처의 종류, 가구주의 연령,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나) 별 인구 (중요도: 중)

【제6표】 가구주의 성별, 가구의 크기, 특성 및 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별 가구 (중요도: 중)

1)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은 가구 질문표에 있는 질문이므로, 가구주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도록 한다.

2) 표1은 가구주의 성, 연령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성별 연령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을 세분하여 결과표 제시함.
- 3) 표2는 가구주의 경제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성별 교육정도와 직업, 산업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을 세분하여 결과표 제시함.
 - 4) 주거 환경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현황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주거 환경의 차이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의 차이를 세분하여 결과표 제시함.
 - 5) 가구의 크기 및 가구의 특성(자녀의 학령)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현황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가구의 크기 및 가구의 특성(자녀의 학령)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의 보유 및 이용현황의 차이를 세분하여 결과표를 제시함

10) 가구주와의 관계

o 가구주와의 관계는 2010년 외국인조사표에 신설된 항목으로 2005년, 2010년 전수조사표 중 가구주와의 관계와 동일한 항목이다. 기존 전수조사표의 결과들을 상당부분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o 제안 결과표

【제1표】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외국인 인구	(중요도: 상)
【제2표】 가구주와의 관계, 성 및 혼인상태별 외국인 인구	(중요도: 상)
【제3표】 세대 구성별 외국인 가구 및 가구원	(중요도: 상)
【제4표】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 구성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제5표】 세대 구성 및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제6표】 거처의 종류, 점유 형태 및 가구 형태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제7표】 세대 구성 및 거처의 종류, 점유 형태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제8표】 행정구역 및 성, 거처의 종류별 외국인 1인 가구	(중요도: 중)
【제9표】 성, 연령 및 교육 정도별 외국인 1인 가구	(중요도: 중)
【제10표】 성, 연령 및 혼인 상태별 외국인 1인 가구	(중요도: 중)
【제11표】 성, 연령 및 직업별 외국인 1인 가구 (15세이상)	(중요도: 중)
【제12표】 행정구역 및 성, 점유 형태별 외국인 1인 가구	(중요도: 중)

1) 기본적으로 내국인 조사의 가구관련 조사결과와 비교 가능하도록 결과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 항목으로 성별 연령, 세대구성, 혼인상태를 세분하여 결과표 제시함
- 2) 외국인 가구주의 교육정도와 직업,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할 수 있다
 - 성별 가구 구성의 차이를 사회경제적 지위(교육정도, 직업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제시함
- 3) 나아가 거처의 종류와 점유 형태 등을 통해 외국인들의 구체적인 경제상황과 거주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 거처의 종류 및 점유 형태는 구체적인 주거환경을 반영하며 경제 상태를 대변하므로 성별에 따라 세분된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가구주 관련 항목은 일반가구와 외국인 1인 가구가 비교 가능하도록 동일한 결과표 제시를 제안함.

11) 혼인상태

o 혼인상태는 2010년 외국인조사표에 신설된 항목으로 2005년, 2010년 전수조사표 중 가구주와의 관계와 동일한 항목이다. 기존 전수조사표의 결과들을 상당부분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o 제안 결과표

【제1표】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외국인 인구	(중요도: 상)
【제2표】 성, 연령 및 교육정도 별 혼인상태별 외국인 인구	(중요도: 상)
【제3표】 성,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혼인상태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제4표】 성, 연령, 혼인상태 및 국적여부별 외국인 인구	(중요도: 상)
【제5표】 행정구역 및 성, 혼인상태별 외국인 인구	(중요도: 상)

1) 기본적으로 내국인 조사의 혼인상태 관련 조사결과와 비교 가능하도록 결과표 제시

- 기본 항목으로 성별 연령, 혼인상태를 세분하여 결과표 제시함

2)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의 차이를 교육정도에 따라 제시함

3) 외국인의 혼인상태에 따라 거처의 종류와 점유 형태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거처의 종류 및 점유 형태는 구체적인 주거환경을 반영하며 경제 상태를 대변하므로 성별에 따라 세분된 상황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4) 외국인의 혼인상태가 국적과 행정구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다 세분하여 결과표 제시함

** 대부분의 가구주 관련 항목은 일반가구와 외국인 1인 가구가 비교 가능하도록 동일한 결과표 제시를 제안함.

12) 타지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o 타지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는 2010년 외국인조사표에 신설된 항목으로 2005년 전수조사표 중 주인가구 및 주택소유여부, 2010년 전수조사표 중 타지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와 동일한 항목이다. 기존 전수조사표의 결과들을 상당부분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o 제안 결과표

【제1표】 타지 주택소유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중)
【제2표】 타지 주택소유 및 거처의 종류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중)
【제3표】 타지주택소유, 주인가구여부 및 가구주 국적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중)
【제4표】 주인가구 여부 및 가구원수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제5표】 주인가구 여부 및 가구주의 입국연도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 1) 가구의 점유형태와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가구의 주거안정성 판단토록 한다.
- 2) 단독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거처유형도 타지 주택소유 여부에 영향 미칠 수 있기에 표2에서는 거처의 종류별로 타지 주택소유 여부를 살펴보도록 한다.
- 3) 국적에 따른 외국인 가구의 주거수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가구주 국적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에 차이는 표3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가구주 국적에 따라 주택사용에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본다.
- 4) 가구원이 많은 경우 주인가구일 수 있어 이를 판단된다.
- 5) 입국연도가 주택사용에 미치는 정도도 분석이 필요하기에 표5의 형태로 제안하였다.

13) 주거용 연면적

○ 주거용 연면적은 2010년 외국인조사표에 신설된 항목으로 2005년 전수조사표의 연건평, 2010년 전수조사표의 주거용 연면적과 동일한 항목이다. 기존 전수조사표의 결과들을 상당부분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제안 결과표

- 【제1표】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주거용 연면적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 【제2표】 거처의 종류, 주거시설 수 및 주거용 연면적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 【제3표】 주인가구 외국인 국적, 거처의 종류 및 주거용 연면적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중)
- 【제4표】 주인가구 외국인 국적, 주거시설수 및 주거용 연면적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중)

○ 외국인 가구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은 물론 국적에 따른 외국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4) 총방수

○ 총방수는 2010년 외국인조사표에 신설된 항목으로 2005년, 2010년 전수조사표의 총방수와 동일한 항목이다. 기존 전수조사표의 결과들을 상당부분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제안 결과표

- 【제1표】 거처의 종류, 가구원 규모 및 총방수별 외국인 가구 (중요도: 상)
- 【제2표】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총방수별 외국인 주택 (중요도: 상)
- 【제3표】 주택 종류, 건축년도 및 총 방수 (중요도: 상)

○ 외국인 가구가 거주하는 사용방수, 주택의 질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5) 건축년도

○ 건축년도는 2010년 외국인조사표에 신설된 항목으로 2005년, 2010년 전수조사표의 건축년도와 동일한 항목이다. 기존 전수조사표의 결과들을 상당부분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제안 결과표

- 【제1표】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건축년도별 외국인 주택 (중요도: 상)
- 【제2표】 주거시설 형태 및 건축년도별 외국인 주택 (중요도: 상)
- 【제3표】 사용방수, 주택종류 및 건축년도별 외국인 주택 (중요도: 상)

○ 외국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건축연도, 주택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6) 주거시설수

○ 주거시설수는 2010년 외국인조사표에 신설된 항목으로 2005년 전수조사표의 편익시설수, 2010년 전수조사표의 주거시설수와 동일한 항목이다. 기존 전수조사표의 결과들을 상당부분 원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 제안 결과표

- 【제1표】 연건평 및 편익시설수별 외국인 단독주택 (중요도: 상)
- 【제2표】 주택종류, 건축연도 및 주거시설 수별 외국인가구 (중요도: 상)

○ 외국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질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17) 건물 및 주거층

○ 2005년 외국인조사표에서는 거처의 종류를 물을 때 살고 있는 건물의 전체 층수에 대한 질문이 있을 뿐, 현재 살고 있는 층수는 없었다. 2010년 전수조사표의 건물 및 주거층과 동일한 항목이다.

○ 제안 결과표

- 【제1표】 국적, 주거층 및 거처의 종류별 외국인가구 (중요도: 상)
- 【제2표】 국적, 주거층 및 사용방수별 외국인가구 (중요도: 상)
- 【제3표】 국적, 주거층 및 주거시설 형태별 외국인가구 (중요도: 상)

o 주거층수를 통해 옥탑방, 지하층 거주를 알 수 있고, 사용하는 방수, 주거시설을 알 수 있다면 외국인 가구의 정확한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4. 신규주제: 다문화가구

1) 기존 연구에서의 “다문화가구” 정의

가. 학술 논의에서의 정의 :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처럼 서로 다른 인종끼리 결합된 가정. 한 가정 내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들 사이의 결합이라는 ‘문화적’요소를 보다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고 말하고 있다(이성연, 최유 2006).

장명선·이옥경(2008)의 다문화가족 연구에서 이들은 설문조사 대상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 및 해당 외국인”을 설정.

나. 법/국가기관 체계에서의 정의 :

(1)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혹은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뜻하고 있다.

(2) 보건복지부(2009) : “다문화가족자녀”는 행안부 통계상 ‘외국인주민 자녀(107,689명)’ 중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제외하여 산출.

(3) 보건사회연구원(1009)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연구>에서 행안부 통계를 활용하여 한국국적을 갖지 않은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한 가구를 다문화가족으로 정의.

다. 기존 연구의 한계

(1) 다문화담론이 다양한 소수 문화의 폭넓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초점이 결혼이주자에게 맞추어져 결혼 목적이 아닌 이민자는 애당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족, 귀화자 부부, 사실혼 관계, 비친족가구는 대상에서 빠져 있다.

2)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다문화 가구”관련 분석 내용 제안

가. 다문화가구 제안 방향

(1) 현재 학술 논의와 법/국가 기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 용어의 한계점에 주목한다. 기존 연구는 가구 내에 다문화가 공존하는 경우에 주목하여 결혼이민자 경우에 한정하여 접근하였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에서는 한국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하에, 출생시부터 한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다른 유형들을 다문화가구로 보도록 한다.

(2)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표에 국적과, 출생시 국적이 추가되었고, 외국인조사표가 기존 전수조사표 수준으로 상세화되었다. 이러한 추가정보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결과표를 설계한다.

나. 다문화가구 정의

- (1) 다문화가구란, 출생시 외국인이거나, 현재 외국인이 일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말한다.
- (2) 다문화가구는 1인 가구, 2인 이상 친족 가구, 비친족 가구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 (3) 2인 이상 친족 가구는 아래와 같이 여섯 가지 유형으로 세분한다.
- a.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b. 출생시부터 한국인은 없이, 귀화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가구,
 - c. 출생시부터 한국인은 없이, 귀화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 d. 귀화인과 출생시부터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구,
 - e. 외국인과 출생시부터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구,
 - f. 외국인과 귀화인과 출생시부터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구.
- (4) 1인 가구는 외국인과 귀화인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한다.

다. “다문화가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과표를 제안한다.

【표1】 행정구역, 가구형태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중요도: 상)
【표2】 행정구역, 세대구성별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중요도: 상)
【표3】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다문화가구)	(중요도: 상)
【표4】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다문화가구)	(중요도: 상)
【표5】 가구의 크기 및 핵수별 가구(다문화가구)	(중요도: 상)
【표6】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다문화가구)	(중요도: 중)
【표7】 가구주의 연령 및 점유형태별 가구(다문화가구)	(중요도: 중)
【표8】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별 가구(다문화가구)	(중요도: 상)
【표9】 행정구역별 다문화가구 구성	(중요도: 상)
【표10】 다문화가구 구성별 가구원수	(중요도: 상)
【표11】 다문화가구 구성별 거처의 종류	(중요도: 상)
【표12】 다문화가구 구성별 거처의 점유형태	(중요도: 상)
【표13】 다문화가구 구성별 거주층	(중요도: 중)
【표14】 다문화가구 구성 및 성별 가구주의 직업(대분류)	(중요도: 하)
【표15】 다문화가구 구성 및 성별 가구주의 교육정도	(중요도: 하)
【표16】 다문화가구 구성 및 성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중요도: 하)
【표17】 다문화가구 구성 및 성별 가구주의 산업	(중요도: 하)
【표18】 가구구성원의 출신국가별 다문화가구	(중요도: 상)

표 18에서 출신국가는, 외국인의 경우 현 국적을 귀화인의 경우는 출생시 국적을 기준으로 출신국가를 분류한다.

표14에서 표 17까지의 다문화 구성 표의 중요도가 낮은 이유는 다문화가구가 갖는 특성에 기인한다. 다문화가구의 특성은 가구주의 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없다는 점에서 가구주 분류에 따른 다문화가구 관련 제표에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대부분의 다문화가구에서 외국인 혹은 귀화인은 가구주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가구의 일부 가구형태가 핵가족 형태가 아닌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형태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구주

특성을 파악하여 외국인 혹은 귀화인이 직접적으로 속한 핵의 특성을 알아내기 힘들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다른 대체할 변수를 아직 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가구주의 특성으로 표를 구성하였으나 이와 같은 한계점으로 인하여 우선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5. 신규주제: 초고령자

1) 기존 결과표의 문제점

가.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고령자에 대한 결과표들은 별도의 보고서로 작성되었다. 이때 고령자들은 65세 이상(KOSIS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였다. 상당수 결과표들은 연령을 측면에 변수로 고려하여, 65세부터 5세 단위로 집계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거처, 산업, 직업 등에 관련된 결과표들은 연령별 세분 없이 60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결과표가 설계되었다.

나. 고령자 중에서도 아직 경제활동 인구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60대가 있는 반면 은퇴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초고령층이 있다. 고령자의 산업, 직업 등 경제활동 양상이 청장년대와 다르다고 할 때, 고령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과표를 설계하는 것은 이질성을 과소평가하게 될 위험이 있다. 고령자 중에서도 경제활동 양상에 따라 이질적인 집단이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 주거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 한국사회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인구비중도 증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초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라. 이에 따라 고령자의 연령별 이질성을 고려, 초고령층을 구분하는 결과표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2) 고령자에 대한 기존 연구

가. 초고령자(the oldest old)에 대한 논의

(1) 한국에서 초고령층과 관련된 논의는 주로 언론계에서 먼저 시작되어왔다.²⁾ 언론에서 사용되는 ‘초고령층’은 ‘초고령사회’와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뚜렷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나누어질 때,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의 비중을 갖는 사회를 뜻하는 학술적 개념이다.

(2) 그렇지만 초고령층과 관련된 기존 외국 문헌을 살펴보면 비교적 뚜렷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다. 우선 초고령자(the oldest old) 개념은 1984년 가을 미국에서 85세 이상 인구를 초고령자로 정의하고 이들 연령층에 관한 대규모 연구가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정식화되었다(Robert H. Binstock, 1985). 초고령층에 관한 좀 더 학술적인 개념은 RM Suzman 등(1995)의 책을 통하여 정립되었다. 이들은 본 책을 통하여 초고령자 개념을 85세 이상 인구로

2) 위클리경향(2010.2.6)의 “[커버스토리] 초고령층 ‘老老케어’에 맡길 것인가” 기사에 따르면 초고령층 인구를 85세 이상 인구라 지칭한데 반하여 연합뉴스(2010/10/01)의 “눈치, 팔시 피해 종묘 찾는 ‘외로운 노년’”기사에 따르면 80세 이상이라 지칭하고 있다.

정의하고, 이와 같은 정의를 하게 된 이유를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당시 제시되던 인구 통계가 85세 이상 인구를 묶어 제시하면서 관례적으로 이 구분을 따라왔기 때문이다. 둘째로,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85세 이상 연령 집단이 노쇠함(frailty)과 의존성(dependence)으로 이 미지화되는 고령집단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집단의 23%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것이 그 근거 중 하나다. 나아가, “초고령자”가 “고령자”의 특성과 달라지면서 이들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고 이에 따라 85세 이상을 통계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생겼다고 제시하고 있다.

(3) 그러나 한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초고령층 인구에 관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데 반하여 현재 통계는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학민(2010)은 현재 통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고령층에 관한 통계가 고령층으로 갈수록 시기, 연령 등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이 연령층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나. 한국 고령자의 특징

(1) 한국의 고령자들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60-64세에서 52.7%, 65세 이상에서도 31.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제도적 요인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하다는 점, 정년퇴직이 없고 은퇴가 늦은 자영업의 종사자가 많다는 점, 동아시아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일중심의 문화 탓으로 분석된다. (방하남, 2010)

[표2-1] 동아시아와 주요국 고령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율 국제비교: (2004)

	60~64	65+	65~74
일본	54.5	20.2	30.7
한국	52.7	31.3	35.9
대만	33.5	7.4	
싱가포르	57.2		28.3
미국	50.9	13.8	18.5
영국	39.7	5.5	
스웨덴	55.9	9.3	
프랑스	14.2	1.0	

자료: LABORSTRA @ <http://laborstra.ilo.org> and DGBAS, Executive Yuan, Taiwan. (방하남 2010에서 재인용)

(2) 고령층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아래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취업중인 55-64세 남성에게 있어서 자영업 종사자는 44.5%를 차지한 반면 65세 이상에서는 67.4%가 되었다.

[표2-2] 한국 고령층의 고용상 지위 분포: 2000 (%)

	남성:55-64	여성:55-64	남성: >=65	여성: >=65
임금:정규직	21.6	3.9	6.6	1.0
임금: 임시직	13.6	19.4	10.7	8.4
임금: 일용직	10.4	16.7	5.8	14.8
비임금: 고용주	8.7	2.9	4.8	0.6
비임금: 자영업	44.5	26.2	67.4	42.2
무급가족종사자	1.2	30.8	4.8	33.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01), (방하남 2010에서 재인용)

(3) 한국사회에서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은 54.1세로 50대 중반에 이루어지지만 그 후 재취업 및 자영업 종사의 형태로 평균 14년의 제2근로생애기간을 가져 최종 은퇴는 68.1세로 나타났다. 즉,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상태이기에 청장년층과 구분되는 경제활동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70세 이전은 최종은퇴 이전으로 고령층 안에서도 경제활동 양상은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2-3] 한국 근로자의 퇴직연령, 은퇴연령, 평균수명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연령 (A)	규정된 기업의 정년 (B)	최종 은퇴연령 (C)	제2의 근로생애 기간 (A-C)	평균수명 D	은퇴 후 잔여연령 (D-C)
전체	54.1	56.0	68.1	14.0년	79.4	10.7
남성	54.4	56.0	67.3	12.9년	75.9	8.6
여성	53.8	56.0	68.3	14.5년	82.5	14.2

자료: KLISP(2004); 통계청(KOSTAT, 2006); OECD(2004); (방하남 2010에서 재인용)

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한 “고령층”관련 제안

(1) 고령층 관련 결과표 제안 방향

① 고령층 안에서도 경제활동 양상이 이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연령대를 구분하여 결과표를 설계토록 한다.

② 경제활동에 따라 주거형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령층의 주거 관련 결과표도 연령대를 구분하여 결과표를 설계토록 한다.

③ 초고령층에 대한 결과표도 추가토록 한다. 초고령층은 85세 이상으로 정의한다.

(2) 고령층 관련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과표를 추가하도록 제안한다.

- 【표19】 성,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별 초고령자(85세이상) (중요도: 중)
- 【표20】 세대구성 및 성, 거처의 점유형태별 초고령자(85세이상) (중요도: 중)
- 【표21】 성, 거처의 점유형태 및 거처의 종류별 초고령자(85세이상) (중요도: 중)
- 【표22】 산업 및 성, 종사상 지위별 고령자 (중요도: 상)
- 【표23】 직업 및 성, 종사상 지위별 고령자 (중요도: 상)
- 【표24】 행정구역 및 생활비원천별 초고령자(85세이상) (중요도: 상)

III. 기존 결과표 평가

1. 머리말

기존 결과표 평가는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 평가이며, 두 번째는 통계선진국의 표본항목 공개 및 제공관련 사례 조사이며, 세 번째는 결과표에 사용된 영어 용어에 대한 표준영문명 제시이다.

기존결과표 평가 지표는 적절성과 비교성,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적절성은 공개범위, 용어사용, 설계방식, 시의성으로 평가되며, 비교성은 용어일관성, 시계열성, 국제비교성으로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의미는 아래와 같다

A. 적절성(Relevance)

a. 공개범위:

행정구역,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등의 변수에 있어서 얼마나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지 그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

예) 대학원 이상을 석,박사로 구분할지 여부.

b. 용어사용

결과표에 사용된 용어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 정의하는 바가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해석 가능한지 여부로 판단.

예) 가구 구분에서 사용된 핵수라는 용어의 의미가 명확한지 여부

c. 설계방식

결과표 디자인이 해당 변수들의 관계를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

예) 표에 따라 성별 구분은 무의미할 수 있음

d. 시의성

해당 결과표가 현재 얼마나 유의미한지 여부로 평가하는 것

예) 고령층을 6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최근의 인구구조를 반영하지 않음.

B. 비교성(Comparability)

a. 용어일관성

사용된 용어가 다른 결과표에서도 사용되었을 경우, 그 내적 일관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로 평가하는 것

b. 시계열성

과거 결과표와 비교 가능성 여부로 평가하는 것

예) 2000년 및 그 이전 결과표와 연계되어 시계열적으로 의미 있는지의 여부

c. 국제비교성

국제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의 비교 가능성 여부로 평가하는 것

예) 미국, 영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와 비교가능한지 여부

결과표 평가는 세부지표별로 해당결과표에 문제가 없을 경우엔 O,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X 로 표시하였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무시할 수 있을 경우 혹은 해당사항 없는 경우엔 △로 표시하였다. 각 지표별 평가를 종합한 평점은 결과표별로 1~5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였다. 5점은 전혀 문제점을 발견 못한 경우, 4점은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경우이다. 3점은 문제가 확실하여 수정을 권고한 경우이며, 2점 이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결과표 삭제를 권고한 경우들이다.

2. 기존 결과표 목록 및 평가

	적절성				비교성			평가	비고
	공개범위	용어사용	설계방식	시의성	용어일관성	시계열성	국제비교성		
1) 인구편									
1-1 행정구역별 인구, 가구 및 주택	○	○	○	○	○	○	○	5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결과표
1-2 연령 및 성별 인구	○	○	○	○	○	×	○	5	
1-3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	○	○	○	○	○	○	5	
1-4 성, 연령 및 종교별 인구	○	○	○	○	○	○	○	5	
1-5 성, 연령 및 가족관계별 남북이산가족 인구	○	×	△	○	△	×	×	4	현재의 결과표에는 문제가 있음, 향후 동일 내용 조사시에는 내용을 수정할 필요 있음
1-6 성, 연령 및 출생지별 남북이산가족 인구	○	×	△	○	○	×	×	4	
1-7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	○	○	○	○	○	○	5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결과표
1-8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	○	○	○	○	○	○	○	5	
1-9 가구주와의 관계, 성 및 혼인상태별 인구	○	○	△	○	○	○	○	3	1-8표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삭제 가능
1-10 성, 혼인상태,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	△	○	○	○	○		5	기본적인내용이제시되는표로유지.그러나표제목의수정이필요함.
1-11 성, 혼인상태,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	○	△	○	○	○	○		5	
1-12 성 및 연령별 외국인	○	○	○	○	○	○	△	5	외국인 신규항목과 포괄적인 연관되도록 결과 제시. 2010년 조사부터 보다 자세한 행정구역 자료 제공 가능.
1-13 국적, 성 및 연령별 외국인	○	○	○	○	○	○	△	5	
1-14 성 및 국적별 외국인	○	○	○	○	○	×		5	
1-15 국적, 성 및 직업(대분류)별 외국인	○	○	○	○	○	○		5	
1-16 국적, 성 및 교육정도별 외국인	○	○	○	○	○	○		5	

2). 가구편

2-1 행정구역,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0	0	0	0	0	X	0	5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결과표
2-2 행정구역,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	0	0	0	0	0	X	0	5	
2-3 가구주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	0	0	0	0	0	0	0	5	
2-4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	0	0	0	0	0	△	0	5	
2-5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가구	0	0	△	△	0	0		3	결과표의 정보로서의 의미가 적다고 판단됨
2-6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	0	0	△	0	0	0	△	5	교차분석의 내용이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그러나 핵가족 사이즈의 트렌드 정보는 파악 가능함
2-7 가구의 크기 및 핵수별 가구	0	△	0	0	△	0		5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제목의 수정을 제안함
2-8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	0	0	0	0	0	0	0	5	꼭 필요한 통계임에도 가구수 기준으로 거처수가 계산됨에 따라 거처수가 많아지는 문제 발생
2-9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	0	0	△	0	0	△	0	4	2005년 신규포로 필요한 표이지만 가구기준으로 거처수가 계산됨에 따라 주택편의 거처수와 불일치 초래
2-10 가구주의 연령 및 점유형태별 가구	0	0	△	0	0	0	△	4	2-8표와 비교하면 성이 빠졌다는 문제 있음, 점유유형에는 가구주의 성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점에서 추가필요
2-11 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	0	x	0	0	0	△	△	3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파악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표이나 제목이 부적절
2-12 거처의 종류, 가구원 규모 및 사용방수별 가구	0	△	0	0	0	△	0	4	가구별 사용방수와 가구가 사용하는 거처를 알 수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 등 도움, 다만 거처수와 사용방수가 연계되어 있어 거처의 방수로 오해할 여지가 있음
2-13 가구원 규모, 방, 거실 및 식당수별 가구	0	△	0	0	0	△	△	4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 파악에 도움, 다만 앞의 표의 방수와 이 표의 방수가 같은 것인지 확인필요
2-14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다만 표의 위치가 적절한 것인지 판단 필요
2-15 가구주의 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	0	0	0	0	0	0	0	5	Kosis에는 14세 이하 없지만, 조사표 그림상으로는 0-14세도 존재한다. 굳이 포함될 필요 없을 듯 하다. 전체o
2-16 타지주택소유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가구	0	0	X	0	0	△	X	3	점유형태뿐만 아니라 거처의 유형에 따른 타지주택소유여부도 같이 확인할 필요
2-17 거처의 종류 및 난방시설별 가구	0	0	△	0	0	△	△	4	한거처에여러가구가거주하는경우가있어거처유형별난방방식도중복계산될우려 발생

2-18 거주층별 가구	0	△	△	0	0	△	△	3	거주층별보다는 지상층, 지하(반지하), 옥상(옥탑방)거주가가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되며, 층외에 거처유형, 가구주의 성별, 연령별 특성도 감안될 필요가 있어 표 설계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함. 특히 지하와 옥상층 거주가구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있어야 할 것임
2-19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주거면적별 가구	0	△	△	0	0	△	△	3	매우필요한표이지만표재목과내용을보면거처와가구의사용방수,사용면적이같은 것으로인식될수있어서정정이필요,
2-20 세대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	0	0	0	0	0	0	0	5	위치부적절, 가구특성을 설명하는 표 뒤에 위치
2-21 점유형태, 가구원수 및 사용방수별 가구	0	0	△	0	0	0	0	5	2-18표처럼 거처종류와 주거면적이 포함되면 가장 필요한 표가 될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현재로서도 의미가 있는 표

3) 주택편

3-1 주택의 종류별 주택	0	0	0	0		△	0	5	2005년 새로 작성된 표로 가구수의 주택수와 본 편의 주택수가 다른 문제가 있음. 물론 본 편의 주택수가 주택이라는 건물에 초점을 맞춘 점에서 훨씬 정확한 표임
3-2 거처의종류 및 거처, 가구, 가구원	0	△	△	0	△	△	0	3	거처의 종류별 거처"를 대신하여 거처종류별 가구와 총가구원수라는 제목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표 위치도 변경도 건의
3-3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가구수별 주택	0	0	0	0	0	△	△	4	매우 필요한 표이지만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나온 표로 국제비교는 곤란
3-4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거주인수별 주택	0	0	0	0	0	0	0	5	필요
3-5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총방수별 주택	0	0	0	0	0	0	0	5	필요
3-6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건축년도별 주택	0	0	0	0	0	0	0	5	필요
3-7 연건평 및 편익시설수별 단독주택	0	△	△	0	△	0	x	2	표내용을 보면 다른 표에서 사용한 단독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의 세분화(단독,다가구단독,영업겸용단독)의 구분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특징을 볼 수 있음을 표에서 나타내야 할 것임.
3-8 연건평 및 대지면적별 단독주택	0	△	△	0	△	0	x	2	앞의 표와 마찬가지로 변화된 단독주택을 보여주는 표로 판단되나 3-7,8,9 통합 필요
3-9 연건평 및 거주가구수별 단독주택	0	△	△	0	△	0	x	2	한국적 주거실태(단독주택의 다가구화, 2가구 이상 거주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표인 점에서 필요한 표로 보임. 다만 3-7, 8, 9표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표로 설계할 수는 없을지...
3-10 주택의 종류 및 사유별 빈집	0	△	△	0	0	0	0	0	4	유용한 표로 생각됨. 다만 다음 표와 같이 연결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3-11 주택의 종류 및 기간별 빈집	0	△	△	0	0	0	0	0	4	유용한 표로 생각됨. 다만 다음 표와 같이 연결해서 볼 수는 없는 것인지

4) 통근, 통학

4-1 행정구역 및 성별 통근, 통학인구	0	0	0	0	0	0	0	0	5	
4-2 성, 연령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	0	0	0	0	0	0	0	0	5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결과표 영국, 일본, 미국의 자료와 비교 가능(다만, 미국은 요시간 자료만 가능)
4-3 소요시간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12세 이상)	0	0	0	0	0	0	△	5		
4-4 가구의 점유형태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	0	0	△	0	0	0			4	
4-5 성, 통근, 통학지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서울특별시)								X		제목에 사용된 용어의 일관성이 문제가 됨. 표 제목의 '통근, 통학지'와 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ex) 성, 주간 인구의 유입/유출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
4-6 성, 통근, 통학지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부산광역시)								0		
4-7 성, 통근, 통학지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대구광역시)								0		
4-8 성, 통근, 통학지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인천광역시)	0	0	0	0	△	0		0	4	
4-9 성, 통근, 통학지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광주광역시)								0		
4-10 성, 통근, 통학지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대전광역시)								0		
4-11 성, 통근, 통학지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울산광역시)								0		
4-12 성, 현거주지 및 통근, 통학지별 통근, 통학인구(서울, 인천, 경기)								0		
4-13 성, 현거주지 및 통근, 통학지별 통근, 통학인구(부산, 울산, 경남)	0	0	0	0	0	0		0	0	현재의 결과표를 유지함
4-14 성, 현거주지 및 통근, 통학지별 통근, 통학인구(대구, 경북)								0		
4-15 성, 현거주지 및 통근, 통학지별 통근,								0		
								0		

통학인구(광주, 전남)										
4-16 성, 현거주지 및 통근, 통학지별 통근, 통학인구(대전, 충북, 충남)						0				
4-17 성, 산업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	0	0	△	△	0	0		3	산업별 이용교통수단의 정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사료됨. 이하 직업을 통해 보다 상세한 정보제시가 가능.	
4-18 성, 직업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	0	0	0	0	0	0	0	5	사회적 위세로서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이용교통수단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필요함	
4-19 성, 종사상 지위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						X	0			
4-20 성, 각급학교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학인구	0	0	△	0	0	0		5	1) 4-20, 4-21 두개의 표에 대해서는 세부지역별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제안함. 2) 두 개의 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ex) 성, 각급학교, 소요시간 및 이동교통수단별 통학인구로 만들 수도 있음.	
4-21 성, 소요시간 및 각급 학교별 통학인구						0				
4-22 행정구역, 성 및 연령별 상주(야간), 주간인구	0	0	0	0	0	0		5	현재 상태 유지	
4-23 성, 연령 및 통근 통학유형별 인구(12세 이상)	0	0	0	0	0	X		5		

5) 인구이동

5-1 현거주지, 성, 연령 및 5년전 거주지 유형별 인구(5세 이상)	△	△	0	0	△	0		4	제목 용어 변경, 연령공개범위 확대, 표측과 표두의 행정구역 일치 제안함.
5-2 현거주지, 성, 연령 및 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 이상)	△	△	0	0	0	0		4	제목 용어 변경, 연령공개범위 확대, 표측과 표두의 행정구역 일치 제안함.
5-3 현거주지, 교육정도 및 5년전 거주지별 이동인구(6세 이상)	△	△	0	0	0	△		4	제목 용어 변경, 연령공개범위 확대, 표측과 표두의 행정구역 일치 제안함. 성, 연령 변수 추가 ex) 현거주지, 성, 연령, 교육정도 및 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6세 이상)
5-4 현거주지, 성, 연령, 혼인상태 및 5년전 거주지별 인구 (15세 이상)	△	△	0	0	0	0		4	연령 상한선 확대할 필요 있음.
5-5 현거주지, 성,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및 5년전 거주지별 인구 (15세 이상)	△	△	△	0	0	0		3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와 5년 전 거주지의 단순 정보 제공 이외에 인과관계 등의 정보제공이 안되므로 유용성이 떨어짐
5-6 현거주지, 성, 산업 및 5년전 거주지별	△	△	0	0	0	0		4	제목 수정 후 현재의 결과표 유지

이동인구(15세 이상)									
5-7 현거주지, 성, 직업 및 5년전 거주지별 인구(15세 이상)	△	△	0	0	0	0		5	
5-8 현거주지, 점유형태 및 5년전 거주지별 인구(5세 이상)	△	△	0	0	0	0		5	
5-9 현거주지, 세대구성 및 5년전 거주지별 인구(5세 이상)	△	△	0	0	0	0		5	

점유형태별 이동의 변화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결과표도 필요함 ex) 현거주지, 점유 형태 및 5년전 대비 거주지 변동 유형별 인구(5세 이상)

세대구성의 하위범주를 단순화

6) 경제활동

6-1 성, 연령 및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15세 이상)	0	0	0	0	0	0	0	5
6-2 성, 연령,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15세 이상)	0	0	0	0	0	0	△	5
6-3 성,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	0	0	△	0	0	0	0	5
6-4 성, 연령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X	0	0	0	0	3
6-5 성, 연령 및 직업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X	0	0	0	0	3
6-6 성, 직업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0	0	5
6-7 성,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0		5
6-8 성,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0	0	5
6-9 현거주지, 근무지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0	0	0	X		5
6-10 현거주지, 근무지 및 직업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0	0	0	X		5
6-11 성, 교육정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0		5
6-12 성, 연령, 혼인상태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0	0	0	0	0	5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결과표

연령변수 추가하여 결과표 재구성 ex) 성, 연령,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

6-6표를 수정함으로써 삭제 가능함.

연령변수 추가하여 결과표 재구성 ex) 성, 연령, 직업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연령변수 추가하여 결과표 재구성 ex) 성, 연령,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연령변수 추가하여 결과표 재구성 ex) 성, 연령,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15세 이상)

현재의 결과표를 유지함

연령변수 추가하여 결과표 재구성 ex) 성, 연령, 교육정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현재의 결과표를 유지함

6-13 성, 종사상 지위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X		5	연령변수 추가하여 결과표 재구성 ex)성, 연령, 종사상 지위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6-14 성, 연령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X	0	0	X		3	6-15의 결과표를 수정하여 결과표 재구성 ex) 성, 연령, 교육정도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6-14. 결과표 삭제 가능함.
6-15 성, 교육정도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X		5	
6-16 세대구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인구(15세 이상)	0	0	△	0	0	0	△	5	결과표 수정제안. 성별변수추가. ex) 성, 세대구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6-17 가구원 규모 및 취업자 수별 가구(일반가구)	0	0	X	X	0	△		3	삭제 가능
6-18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및 산업별 가구(일반가구)	0	0	0	0	0	0		5	현재의 결과표를 유지함
6-19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별 가구(일반가구)	0	0	0	0	0	0		5	
6-20 거처의 종류 및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별 가구(일반가구)	0	0	△	0	0	△		4	거처의 종류 대신 '점유형태' 변수로 대체 제안 ex) 점유형태 및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별 가구(일반가구)
6-21 산업(소분류), 성 및 행정구역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0	0	0	0		5	현재의 결과표를 유지함
6-22 직업(소분류), 성, 및 행정구역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0	0	0	0	0	5	
6-23 성, 산업(중분류) 및 직업(중분류) 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0	0	4	제목 수정 후 결과표 재구성 6-21,22표를 참고로 일관성 있게 수정: 산업/직업 분류 하위에 성별 범주 제시
6-24 성, 산업(중분류) 및 연령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0	0	4	
6-25 성, 직업(중분류) 및 연령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0	0	4	
6-26 산업(중분류) 및 성,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0	0	0	0	0	5	현재의 결과표를 유지함
6-27 직업(중분류) 및 성,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0	0	0	0	0	5	
6-28 성, 산업(중분류)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X		4	제목 수정 후 결과표 재구성 6-21,22표를 참고로 일관성있게 수정: 산업/직업 분류 하위에 성별 범주 제시
6-29 성, 직업(중분류) 및 근로 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0	0	△	0	0	X		4	

7) 주거

7-1 행정구역 및 거주기간별 가구	0	0	0	0	0	0	0	0	5	거주기간 앞에 "현거처"를 붙여서 거주기간이 행정기간 거주기간이 아닌
---------------------	---	---	---	---	---	---	---	---	---	--

									현재거처의 거주기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
7-2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거주기간별 가구	0	0	0	0	0	0	0	5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처종류, 특히 점유형태라고 생각되는 점에서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필요
7-3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주기간별 가구	0	△	△	0	0	0	△	4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7-3~7-7까지의 가구주 특성(성, 연령,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등의 특성이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 보다는 거처의 종류와 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점에서 오히려 이 변수가 가구의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
7-4 가구주의 성, 교육정도 및 거주기간별 가구	0	△	△	0	0	0	△	4	상동
7-5 가구주의 성, 경제활동상태, 산업 및 거주기간별 가구	0	△	△	0	0	0	△	4	상동
7-6 가구주의 성,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거주기간별 가구	0	△	△	0	0	0	△	4	상동
7-7 행정구역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0	0	0	0	0	0	X	4	자동차 보유대수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표는 주거실태는 아니라고 판단, 오히려 통근편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다만 자동차보유와 거처유형, 점유형태, 주차장유무를 연관 지을 필요는 있음
7-8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0	0	0	0	0	0	0	5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와 자동차 보유 대수를 살펴보는 것은 주택마련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자동차부터 산다는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임
7-9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0	다양한 가격대의 자동차가 있는 현시대에 적합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되어 이하 7-9~7.13삭제요망
7-10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산업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0	
7-11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0	
7-12 세대구성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0	
7-13 가구원수 및 자동차 보유대수별 가구								0	
7-14 행정구역 및 주차시설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15 거처의 종류 및 주차시설별 가구	0	0	0	0	0	△	0	5	아래 표와 한 표로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주차시설별 가구로 만드는 방안 강구 필요
7-16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 및 주차시설별 가구	0	0	0	0	0	△	0	5	위 표와 통합 필요
7-17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주차시설별 가구	0	0	0	0	0	0	0	5	앞으로는 자동차보유보다는 주차시설이 중요한 점에서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
7-18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전세금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19 거처의 종류, 가구주의 연령 및 전세금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0 거처의 종류, 가구원수 및 전세금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1 가구주의 연령, 혼인상태 및 전세금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2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월세금 및 보증금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3 거처종류, 가구주의 연령, 월세금 및 보증금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4 거처종류, 가구원수, 월세금 및 보증금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5 가구주의 연령, 가구주의 혼인상태, 월세금 및 보증금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6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사글세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7 거처의 종류, 가구주의 연령 및 사글세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8 거처의 종류, 가구원수 및 사글세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29 가구주의 연령, 혼인상태 및 사글세 규모별 가구	0	0	0	0	0	0	0	5	필요
7-30 거처의 종류, 전세금 규모별 가구(영업겸용)	0	0	0	0	0	0	0	5	필요
7-31 거처의 종류, 월세금 보증금 규모 별 가구(영업겸용)	0	0	0	0	0	0	0	5	필요
7-32 거처의 종류, 사글세 규모 별 가구(영업겸용)	0	0	0	0	0	0	0	5	필요

8) 활동제약

	적절성				용어일관성	시계열성	국제비교성	평가	비고
	공개범위	용어사용	설계방식	시의성					
8-1 행정구역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5	a. 2005년에 활동제약항목은 2005년에 신규추가됨/표두의 항목 재조정/표두의 세부항목이 '장애+육체적*정신적'으로 구성, 따라서 장애를 포함한 표제목이 필요 b. 2010년에는 활동제약항목이 단일화되어 나타남. c. 활동제약유형을 간소화하여 제시할 과제가 남음. 2005년과 같이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도 좋으나 2005년과 2010년간의 항목변동에 대해서는 유의하여야 함. *2010년도 표제목: 행정구역 및 활동제약유형별 인구(5세 이상)
8-2 성, 연령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x	x	0	0	0	△	△	5	a/b/c/ 동일 d. 표측의 항목순서는 연령, 성별 순으로 되어 있음. e. 활동제약이 고령층에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상한연령층의 세분화(85+까지), 70+연령을 85+연령으로 *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활동제약유형별 인구(5세 이상)
8-3 성, 교육정도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x	x	0	0	0	△	△	5	a/b/c 동일 *2010년도 표제목: 성, 교육정도 및 활동제약유형별 인구(5세 이상)
8-4 성, 혼인상태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5	a/b/c 동일 2010년도 표제목: 성, 혼인상태 및 육체적·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15세이상)
8-5 성, 세대구성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5	a/b/c 동일 2010년도 표제목: 성, 세대구성 및 활동제약유형별 인구(5세 이상)
8-6 성, 경제활동상태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5	a/b/c/ 동일 2010년도 표제목: 성, 경제활동상태, 활동제약유형별 인구(15세 이상)

8-7 성, 산업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4	a/b/c/ 동일 f. 표 8-6에서 이미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했으므로 표 8-7에서 집계대상을 취업자에 한정. 표제목에 취업자가 들어가야 함/ 코딩부호 삭제권유 *2010년도 표제목: 성, 산업 및 활동제약유형별 취업인구(15세 이상)
8-8 성, 직업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4	a/b/c/f/ 동일 *2010년도 표제목: 성, 직업 및 활동제약유형별 취업인구(15세 이상)
8-9 행정구역 및 일상,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5	*2010년의 【제8-1표】 로 흡수통합됨
8-10 성, 연령 및 일상,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	x	x	0	0	0	△	△	5	*2010년의 【제8-2표】 로 흡수통합됨
8-11 성, 교육정도 및 일상,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	x	x	0	0	0	△	△	5	*2010년의 【제8-3표】 로 흡수통합됨
8-12 성, 혼인상태 및 일상,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5	*2010년의 【제8-4표】 로 흡수통합됨
8-13 성, 세대구성 및 일상,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5	*2010년의 【제8-5표】 로 흡수통합됨
8-14 성, 경제활동 상태 및 일상,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5	*2010년의 【제8-6표】 로 흡수통합됨
8-15 성, 산업 및 일상,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4	*2010년의 【제8-7표】 로 흡수통합됨
8-16 성, 직업 및 일상, 사회 활동제약유형별 인구	0	x	0	0	0	△	△	4	*2010년의 【제8-8표】 로 흡수통합됨

8—17 성, 일상, 사회 활동제약 및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	0	x	0	x	0	X	△	2	*육체적, 정신적 제약과 일상, 사회활동제약을 결합해서 보는 이유가 분명하지 못함. 오히려 내용만 복잡하게 함. 두 변수를 결합할 이유 없음. 표 삭제 권고. *성, 일상사회활동 제약형태 및 육체적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5세 이상)는 항목변화에 따라 2010년에 만들 수 없음. 따라서 삭제.
8—18 가구원규모 및 활동 제약자 거주 가구	0	x	0	0	x	△	△	4	b/c/ 동일 *가구원수 혹은 가구규모가 적절(가구원규모는 아님) *2010년도 표제목: 가구원수 및 활동 제약자 거주 가구수(일반가구)
8—19 가구주의 성, 경제활동상태 및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0	x	0	0	x	△	△	4	* 2010년도 표제목: 가구주의 성, 경제활동상태 및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수(일반가구)
8—20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 거주 가구	0	x	0	0	x	△	△	4	* 2010년도 표제목: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활동제약자 거주 가구수(일반가구)
8—21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일상, 사회활동제약자 거주 가구	0	x	0	0	x	△	△	4	* 【제8-21표】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일상사회활동 제약자 거주 가구수(일반가구) - 2005 가 흡수통합됨

9) 고령자

9—1 행정구역 및 연령, 성별 고령자	0	0	0	0	0	0	0	4	a. 인구기본편에서 고령층의 연령을 세분한다면 굳이 고령자편에서 다룰 필요는 낮아짐 * 2010년도 표제목: 행정구역 및 연령, 성별 고령자(60세이상)
9—2 연령 및 성, 교육별 고령자	0	x	0	0	0	0	0	4	a 동일 *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고령자(60세이상)
9—3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고령자	0	x	0	0	0	0	0	4	a 동일 * 2010년도 표제목: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고령자(60세이상)
9—4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고령자	x	x	0	0	0	0	0	4	a 동일 b.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손자녀, 증손자녀 등과같이 없거나 드문 경우는 기타로 묶어서 분류간소화 *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고령자(60세이상)

9-5 세대구성 및 성, 연령별 고령자	0	0	0	0	0	0	△	4	a. 동일 * 2010년도 표제목: 성, 세대구성 및 연령별 고령자(60세이상)
9-6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0	0	0	0	0	0	△	4	a. 동일 *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0세이상)
9-7 연령 및 성, 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	0	0	x	0	0	0	△	4	a. 동일 * 2010년도 표제목: 연령 및 성, 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60세이상)
9-8 세대구성 및 성,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5세 이상)	0	0	0	0	0	0	△	4	a. 동일 c. 특정연령대(60세이상/65세이상/85세이상)별로 나누어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면 두 개의 표를 통합하게 됨. 또한 초고령층(85세이상층)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됨
9-9 세대구성 및 성,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0세 이상)	0	0	0	0	0	0	△	4	* 2010년도 표제목: 특정 연령대의 성,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9-10 세대구성 및 성, 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 (65세 이상)	0	0	x	0	0	0	△	4	a/c 동일
9-11 세대구성 및 성, 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 (60세 이상)	0	0	x	0	0	0	△	4	* 2010년도 표제목: 특정 연령대의 성, 세대구성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
9-12 거처의 점유형태 및 성,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0	0	0	0	0	0	△	4	a/c 동일 2010년도 표제목: 특정연령대의 성, 거처의 점유형태 및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65세이상)
9-13 경제활동상태 및 성, 연령별 고령자	0	0	0	0	0	0	△	5	* 2010년도 표제목: 성, 경제활동상태 및 연령별 고령자(60세이상)
9-14 성, 경제활동상태 및 세대구성별 고령자 (65세 이상)	0	0	0	0	0	0	△	5	c 동일
9-15 성, 경제활동상태 및 세대구성별 고령자 (60세 이상)	0	0	0	0	0	0	△	5	2010년도 표제목: 특정 연령대의 성, 경제활동상태 및 세대구성별 고령자 (65세이상)
9-16 산업 및 성, 종사상지위별 고령자 (65세 이상)	0	x	x	0	0	△	△	5	c 동일 d. 9-14에서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주었으므로 여기서는 고령취업자에 한정해서 종사산업 및 종사상지위를 봐도 될 듯, 표측에 성이 나와야 함. 코딩 번호 삭제해야.
9-17 산업 및 성, 종사상지위별 고령자 (60세 이상)	0	x	x	0	0	△	△	5	* 2010년도 표제목: 특정연령대의 산업 및 성, 종사상 지위별 고령자

9—18 직업 및 성, 종사상지위별 고령자 (65세 이상)	0	x	x	0	0	△	△	5	c/d/ 동일 *2010년도 표제목: 특정연령대의 직업 및 성, 종사상 지위별 고령자
9—19 직업 및 성, 종사상지위별 고령자 (60세 이상)	0	x	x	0	0	△	△	5	
9—20 행정구역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65세 이상)	0	x	0	0	0	0	△	5	c/ 동일 e. '생활비원천'을 '생활비마련방법'으로 변경. 표두제목에서도 단일원천/복합원천 대신 한 가지만 있음, 두 가지 있음으로 변경권고
9—21 행정구역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60세 이상)	0	x	0	0	0	0	△	5	* 2010년도 표제목: 특정연령대의 행정구역 및 생활비마련방법별 고령자
9—22 성, 연령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0	x	0	0	0	0	△	5	e 동일 *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9—23 성, 교육정도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65세 이상)	0	x	0	0	0	0	△	5	c/e/ 동일
9—24 성, 교육정도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60세 이상)	0	x	0	0	0	0	△	5	*2010년도 표제목: 특정연령대의 성, 교육정도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9—25 성, 세대구성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65세 이상)	0	x	0	0	0	0	△	5	c/e/ 동일
9—26 성, 세대구성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60세 이상)	0	x	0	0	0	0	△	5	*2010년도 표제목: 특정연령대의 성, 세대구성 및 생활비원천별 고령자
9—27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거주가구 (65세 이상)	0	0	0	0	0	0	△	4	a/c/ 동일
9—28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거주가구 (60세 이상)	0	0	0	0	0	0	△	4	*2010년도 표제목: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별 특정연령대 고령자 거주 가구수(일반가구)
9—29 세대구성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 거주가구 (65세 이상)	0	0	0	0	0	0	△	4	a/c/ 동일
9—30 세대구성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고령자 거주가구 (60세 이상)	0	0	0	0	0	0	△	4	* 2010년도 표제목: 세대구성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특정연령대 고령자 거주 가구수(일반가구)
9—31 거처의 점유형태 및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거주가구 (65세 이상)	0	0	0	0	0	x	△	3	a/c/ 동일 *2000년에는 해당 표가 없음
9—32 거처의 점유형태 및 거처의 종류별 고령자 거주가구 (60세 이상)	0	0	0	0	0	x	△	3	* 2010년도 표제목: 거처의 점유형태 및 거처의 종류별 특정연령대 고령자 거주 가구수(일반가구)

10) 여성, 아동

10-1	연령, 교육정도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x	0	x	0	0	0	△	5	* 2010년도 표제목: 연령, 교육정도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
10-2	연령, 경제활동상태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x	0	x	0	0	0	△	5	* 2010년도 표제목: 연령, 경제활동상태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
10-3	동거자녀수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x	0	x	x	0	x	△	2	* 2010년에는 동거자녀수 항목없음. 따라서 관련결과표 삭제됨
10-4	사망자녀수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	x	0	x	x	0	x	△	3	* 집계표로도 충분함. 표 삭제 권고. 표제목: 사망자녀수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
10-5	연령, 경제활동상태 및 동거자녀수별 기혼여성	x	0	0	0	0	x	△	2	* 2010년에는 동거자녀수 항목없음. 따라서 관련결과표 삭제됨
10-6	연령 및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	x	0	x	0	0	0	△	5	a. 여성들의 출산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실질적인 출산에 연령제한이 있음. 상한연령을 49세로로 한정할 필요있음 *2010년도 표제목: 연령 및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 49세이하)
10-7	출생자녀수 및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	0	0	x	0	0	0	△	5	a 동일 2010년도 표제목: 출생자녀수 및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 49세이하)
10-8	교육정도 및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	0	0	x	0	0	0	△	5	a. 동일 2010년도 표제목: 교육정도,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 49세이하)
10-9	경제활동상태 및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	0	0	x	0	0	0	△	5	a 동일 * 2010년도 표제목: 경제활동상태, 추가계획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15세이상 49세이하)
10-10	연령 초혼연령별 기혼여성	x	0	0	0	0	0	△	5	b. 여성상한연령을 85+로 통일 * 2010년도 표제목: 연령 및 초혼연령별 기혼여성인구
10-11	출생자녀수 및 초혼연령별 기혼여성	0	0	0	0	0	0	△	5	c. 초혼연령에 따라 출생자녀수가 다를 것이라 예상한다면 초혼연령별 출생자녀수로 바꾸도록 권유.

										*2010년도 표제목: 초혼연령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인구
10—12 교육정도 및 초혼연령별 기혼여성	0	0	0	0	0	0	△	5		* 2010년도 표제목: 교육정도 및 초혼연령별 기혼여성인구
10—13 경제활동상태 및 초혼연령별 기혼여성	0	0	0	0	0	0	△	2		* 삭제 권고 * 초혼연령과 현재 경제활동상태간의 관계성은 그다지 유의미하지 못함. 특히 중년 혹은 노년코호트가 많이 포함된 상황에서는 초혼이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현재의 경제활동상태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힘들.
10—14 어머니의 연령, 동거여부 및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0	0	0	0	0	x	△	2	* 2010년조사에는 아동의 어머니 파악안됨. 따라서 어머니관련 결과표는 삭제됨	
10—15 어머니의 교육정도 및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0	0	0	0	0	x	△	2		
10—16 어머니의 경제활동상태 및 보육 상태별 아동인구	0	0	0	0	0	x	△	2		
10—17 세대구성 및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0	0	0	0	0	0	△	5		* 2010년도 표제목: 세대구성 및 보육상태별 아동인구

5 * 10-18 아동연령 및 보육상태별 아동인구-2010추가
아동연령에 따라 보육상태가 다르기 때문

11) 1인 가구

11—1 행정구역 및 성,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	0	0	0	0	0	0	△	4		2010년도 표제목: 행정구역 및 성,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
11—2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1인 가구	0	0	0	0	0	0	△	4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1인 가구
11—3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1인 가구	0	0	0	0	0	0	△	4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1인 가구
11—4 성, 연령 및 경제활동상태별 1인 가구	0	0	0	0	0	0	△	4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경제활동상태별 1인 가구(15세이상)
11—5 성, 연령 및 산업별 1인 가구	0	x	0	0	0	0	△	4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산업별 1인 가구(15세이상)
11—6 성, 연령 및 직업별 1인 가구	0	x	0	0	0	0	△	4		*1인 가구 거주자 중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령층 상향조정/세분화 권고

										*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직업별 1인 가구(15세이상)
11-7 성, 연령 및 거주기간별 1인 가구	0	0	0	0	0	0	△	2	삭제권고. 거주기간동안 1인 가구였다고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음. 따라서 결과표는 큰 의미가 없음	
11-8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	0	0	0	0	0	0	△	4	1인 가구 거주자중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령층을 상향조정/세분화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1인 가구	
11-9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점유형태별 1인 가구	0	0	0	0	0	0	△	3	2010년도 표제목: 거처의 종류, 사용방수 및 점유형태별 1인 가구	
11-10 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형태별 1인 가구	0	0	0	0	0	0	△	3	2010년도 표제목: 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 형태별 1인 가구	
11-11 거처의 종류 및 성, 점유형태별 고령자 1인 가구	0	0	x	0	0	x	△	3	2010년도 표제목: 성,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특정연령대 고령자 1인 가구 *특정연령대(60세이상/65세이상/85세이상)별로 보여줌으로써 60세이상과 85세이상 고령자 층에 대해서 동일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11-12 성, 연령 및 활동제약유형별 1인 가구	0	x	0	0	0	x	△	4	2010년도 표제목: 성, 연령 및 활동제약유형별 1인 가구 *연령층을 세분화하고 상한연령을 85세이상으로	
11-13 거처의 종류 및 성, 점유형태별 활동제약유형별 1인 가구	0	0	x	0	0	x	△	3	2010년도 표제목: 성,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활동제약자 1인 가구	
11-14 현거주지, 성, 연령 및 5년전 거주지별 1인 가구	0	0	x	0	0	0	△	2	삭제권고. 현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를 1인 가구와 관련시켜 보기는 힘들. 두 시점 간에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3. 기존 결과표 평가 결과 설명

전체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안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제목의 용어 일관성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 예를 들어 ‘행정구역’을 제목에 포함시킬 경우 공개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지, 또는 제목에 ‘행정구역’을 포함시키지 않고 default로 제시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행정구역 정보를 공개하는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군+구, 읍+면+동 등의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연령의 상한선을 고령화 추세에 맞게 85세 이상으로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

1) 인구편

1-1~4까지의 결과표(1-1 행정구역 별 인구, 가구 및 주택, 1-2 연령 및 성별 인구, 1-3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 이상), 1-4 성, 연령 및 종교별 인구)는 현재 한국의 인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필요한 결과표이다. 현재 형식은 미국, 영국, 일본 결과와도 비교 가능하며 지금까지 조사가 이어져 시계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다음의 성, 연령 및 가족관계별 남북이산가족 인구(표1-5), 성, 연령 및 출생지별 남북이산가족 인구의 표(1-6)는 용어사용으로 인해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가족관계별’에 의하면 기타 친인척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남북이산 가족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문항의 의도는 의미가 있으나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실제와 다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남북이산가족’의 정의와 규정의 합의에 논란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한 고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출생지’에 있어서도 ‘남북이산가족’의 후손들의 출생지가 측정되는 경우 지나치게 카운트될 가능성이 있다. 일시적으로 추가된 조사 항목으로 시계열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향후 일정 시기 이후에 같은 내용을 조사한다면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문항을 수정해한다고 제안한다.

연령 및 성, 혼인상태별 인구(15세 이상), 성, 연령 및 가구주와의 관계별 인구의 표(1-7,1-8)는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필요한 결과표이다. 다음의 1-9 가구주와의 관계, 성 및 혼인상태별 인구의 표는 혼인상태 정보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가구주와의 관계 자체가 혼인상태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해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성, 혼인상태,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의 표(1-10)는 표제목과 실제 표의 제시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성, 연령 및 혼인상태 별...’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표 1-11 성, 혼인상태,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는 혼인상태별로 교육 정도에 대한 정보 제공의 활용도가 회의적이다. 실제 교육정도는 연령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 모든 표를 제시할 때, 변수를 교차시키기 이전에, 각각의 변수들 별로 전체값을 제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 이후에 하위수준 변수들의 교차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며 정보의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외국인 관련 결과표인, 1-12 성 및 연령별 외국인, 1-13 국적, 성 및 연령별 외국인, 1-14 성 및 국적별 외국인, 1-15 국적, 성 및 직업(대분류)별 외국인, 1-16 국적, 성 및 교육정도별 외국인의 표는 신규 결과표에 제안된 내용과 연결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관련하여 제시한 내용의 결과표를

기존 연구 결과표에도 활용할 수 있다. 2010년 조사부터는 외국인조사 결과의 행정구역을 보다 자세히 제시할 수 있으므로 행정구역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가구편

가구편의 결과표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편에서 가구의 주거 실태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7번째 항목(편의상 2-7로 기재)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 이하 순서가 다소 두서가 없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속성(연령, 성)을 중심으로 보는 표가 2-7, 2-9, 2-14 등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성과 연령을 함께 보는 표와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는 표로 구성된 것도 일관성 결여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가구 특성(세대구성, 세대구성과 가구주 혼인상태, 세대구성과 가구원수별 가구)을 보여주는 표가 주거실태와 섞여 있어 혼란스럽다. 가구구성과 관련된 표는 앞으로 가져가고, 주거실태를 보여주는 표는 가구주 특성(연령, 성)에 따라 거처와 점유형태를 보여주는 표를 순서대로 보여주고, 다음 가구 특성(세대구성, 가구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방수, 시설수를 보여주는 내용의 순으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거주하는 층수, 시설, 사용방수, 타지주택소유 여부 등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표 내용 중 가구의 거주층수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거주층만을 표시하기보다는 옥탑방과 지하층 거주가구만을 분리해서 가구주 특성과 연계시키는 표를 만들어서 소외된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타지주택소유 역시 단순하게 점유형태만을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거처유형과도 연관시켜 보는 방안을 제안한다.

먼저, 표 2-1 행정구역, 가구형태별 가구 및 가구원, 2-2 행정구역, 세대구성별 가구 및 가구원, 2-3 가구주의 성, 연령 및 혼인상태별 가구, 2-4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의 표는 한국의 가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필요한 결과표이다. 현재 형식은 미국, 영국, 일본 결과와도 기본적으로 비교 가능하며 지금까지 조사가 이어져 시계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세대구성 및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가구의 표(2-5)는 가구주의 교육도와 세대구성 사이의 상관성이 떨어지므로 정보로서의 의미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표 2-6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에 대한 내용은 두 개를 묶어 보여주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많이 보여주지는 않는 듯 하다. 다만, 핵가족의 size가 시대별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다. 가구의 크기 및 핵수별 가구의 표(2-7)는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 제목의 수정을 제안함. ‘가구의 크기’보다 ‘가구원수’로 하는 것이 알기 쉽고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표 2-8 가구주의 성, 연령 및 거처의 종류별 가구, 2-9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가구, 2-10 가구주의 연령 및 점유형태별 가구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결과표이므로 유지한다. 다만 성별에 따른 정보가 각 표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혼인상태에 따른 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에 대한 정보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가족에 있어서 이혼 가족의 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혼인상태에 따른 주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혼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가족 정책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이혼자와 여성 이혼자(성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거 상황은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가구주의 성, 연령, 혼인상태 및 거처

의 종류별 가구,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점유형태별 가구로 표시한다면 앞에서 언급한 부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9 가구주의 연령 및 점유형태별 가구는 가구주의 성을 추가하고 표의 위치를 2-7 아래로 하여 가구주속성별 거주특성을 보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가구주 성별, 특히 여성 가구주의 주거상황을 파악하는 점에서 성별 구분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10 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일반가구)의 표는 거처종류 및 주거시설 형태와 사용(단독, 공동)에 따른 가구로 제목을 바꾸는 것을 제안한다. 단순히 주거시설의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사용이라는 표현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구가 거주하는 거처의 유형에 따라 주거시설(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온수샤워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표이므로 주택법이 규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어서, 표 2-11 거처의 종류, 가구원 규모 및 사용방수별 가구(일반가구)는 사용방수 개념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2-12표에 거처의 종류를 포함하여 한 표로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특징이 한 거처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가 있고, 방수기준이 애매해서 결과표가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잘못 해석되면 열악한 거처에도 상당한 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 2005년 KOSIS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거주하는 가구의 사용방수가 평균 3.6개로 나오며, 1인 가구의 평균사용방수가 2.6(2인가구 3.6)개로 나오는 등 이미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2-12 가구원 규모 및 방, 거실, 식당수별 가구(일반가구) 표는 거처유형을 추가해서 앞의 표와 한 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표 역시 가구의 주택법이 정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표이다.

2-13 세대구성 및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별 가구의 표는 표의 위치를 가구주속성(성별, 연령별)별 주거특성을 나타내는 표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일관성 확보를 위해 좋을 듯하다. 2-14 가구주연령 및 가구원수별 가구의 표는 제목은 그대로 두되, 표의 위치를 현재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가구 다음으로 옮기는 것을 제안한다. 가구에 대한 설명인 점에서 가구관련 설명에 이어서 보여주는 것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위치수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2-15 타지주택소유 및 거처의 점유형태별 가구의 표의 경우는 표 위치 점유형태나 거주유형을 설명한 다음에 두거나 맨 뒤로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거처유형에 따른 타지주택 소유여부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가구가 소유한 주택이 단독주택인데, 관리가 불편하거나 방법 등의 이유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거처유형도 타지주택 소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처유형에 따른 타지주택 소유에서 특별한 관련성이 발견된다면 국민의 주거선호를 파악할 수 있어 정부입장에서는 주택정책 수립, 경제계의 입장에서는 주택공급시 참고할 수 있다.

2-16 거처의 종류 및 난방시설별 가구의 표는 2-10표 아래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일관성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2-17 거주층별 가구의 표는 거처 유형 다음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 거주층수별 가구는 주거의 질적 수준 판단에 매우 도움이 되는 표이므로 가구특성과 주택특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거주층수와 가구주 연령, 성별, 주택유형등과 연계해서 살펴보는 표가 추가되면 훨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18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주거면적 별 가구 표 위치를 사용방수 다음에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런데 주거면적이 가구가 사용하는 면적인지 또는 거처의 면적인지 정확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다. 만일 주거면적이 가구가 사용하는 면적이라면 점유형태별로 표기도 가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임차가구가 사용하는 주거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점에서 통계결과에 의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세대구성, 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가구와 세대구성/가구원수별 가구(2-19~20)는 가구특성(세대구성, 가구주 혼인상태)을 설명한 2-14와 앞뒤로 정리 필요가 있다. 표 2-21 점유형태, 가구원수 및 사용방수는 가구의 점유형태별 가구원수와 및 사용방수로 제목을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2-18표와 묶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주택편

주택편을 보면 매우 혼란스럽다. 2005년 KOSIS의 주택의 종류별 주택을 보면, 주택수가 13,222,641호로 되어 있지만 가구수에서 언급된 주택수는 15,670,271호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청의 주택수에는 매매 또는 거래의 한 단위라는 개념 때문에 다가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계산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한 주택에 두 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한국적 특성 때문이기도 한다. 이 점에다가 공가를 제외하는 점 때문에 주택편의 두 번째 항목 거처의 종류에서 주택수는 다시 12,494,827호로 줄어든다.

따라서 주택편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택편을 먼저 주택을 중심으로 기술한 후 거처로서의 주택의 특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따라서 지금처럼 3-1 주택의 종류별 주택 표 다음에 3-10 주택의 종류 및 사유별 빈집, 3-11 주택의 종류 및 기간별 빈집을 배치시켜 주택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한 후, 3-5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총방수별 주택, 3-6 주택의 종류, 연건평 및 건축년도별 주택을 배치시킴으로써 주택을 이해하게 한다. 3-2 거처의 종료 및 거처, 가구, 가구원수 3-3, 3-4를 정리할 것을 제안한다. 더 바람직한 것은 3-2표를 가구편에 옮겨서 정확한 거처수에 따라 거주하는 가구원 별 가구수가 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한 거처에 몇 가구가 거주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택 중 단독주택만을 구분하여 연건평 및 대지시설수별, 연건평 및 대지면적, 연건평 및 거구가구수별 단독주택 수 통계를 포함한 것은 단독주택 중 다가가구주택이 포함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하나 다소 궁상스럽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한 항목위주로 된 단독주택의 시설, 연면적, 대지면적, 거주가구수를 통합해서 한 표로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택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아파트나 다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시설수를 면적, 건축연도와 함께 보여주는 표도 있어야 할 것이다.

3-7~9까지의 표 연건평 및 편익시설수별 단독주택, 연건평 및 대지면적별 단독주택, 연건평 및 거주 가구수에 대한 표는 단독주택의 거주가구수, 대지면적, 연건평, 편익시설수의 한 표로 통일할 것을 제안한다. 이것은 주택중심의 기술하고 단독주택에 관련된 단순한 표가 3개나 되는 점에서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빈집이 늘어나는 점에서 단순한 항목의 빈집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빈집의 특성(건축년도, 규모)등을 알 수 있는 표를 추가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3-10 주택의 종류 및 사유별 빈집, 3-11 주택의 종류 및 기간별 빈집의 표는 빈집의 주택유형별 빈집이 된 사유와 기간으로 한 표로 정리해야 한다. 특히 빈집과 관련해서는 빈집유형별 건축년도, 규모 등의 추가표를 제안한다. 이것은 단순한 표를 통합하고 제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빈집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 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4) 통근, 통학

4-1 행정구역 및 성별 통근, 통학인구, 4-2 성, 연령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 4-3 소요시간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12세 이상)의 결과표는 통근, 통학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므로 필요한 결과표이다. 현재 형식은 미국, 영국, 일본 결과와도 기본적으로 비교 가능하며 지금까지 조사가 이어져 시계열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표 4-4 '가구의 점유형태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의 표는 '가구의 점유형태' 변수를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로 사용하려 하였으나 통근통학 수단의 실사용자와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즉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유 형태를 통해 나타낸다하더라도 그 가구의 각 가족원이 이용하는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라리 가구의 점유형태와 가구주의 이용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표를 제시한다면 가구의 점유형태(사회경제적 지위의 Proxy)가 이용교통수단에 어떤 차이를 낳는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Ex) '가구주의 성, 점유형태 및 가구주의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

다음의 표 4-5~11. 성, 통근, 통학지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의 결과표는 '통근, 통학지' 용어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제목에 제시된 '통근, 통학지'가 다른 결과표 제목의 '통근, 통학지'와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표의 내용에는 통근, 통학 유형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통근, 통학 영역의 결과표에서 지칭하는 '통근, 통학지'(표 4-12)는 행정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제시되는 내용이며, '통근, 통학 유형'(표 4-23)은 각 행정구역의 상주인구가 어떻게 통근, 통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표 4-5~11.까지의 표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은 주간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입과 유출을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으므로 이는 통근, 통학 유형과도 다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표현하는 용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ex) 성, 주간 인구의 유입/유출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 통학인구

4-12~16. 성, 현거주지 및 통근, 통학지별 통근, 통학인구(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충남)의 결과표는 통근, 통학을 통한 기본적인 인구이동을 파악하는 결과표로서 필요하다. 그리고 4-17 성, 산업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의 결과표는 아래 직업별 정보를 통해 보다 상세한 이동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삭제 가능하다. 산업별 통근, 통학의 이동 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이 크게 의미 있지 않다고 사료된다. 4-18 성, 직업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 4-19 성, 종사상 지위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근인구의 결과표를 통해 사회적 위치에 따른 이용교통수단의 차이와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현재 형식은 미국, 영국, 일본 결과와도 국제 비교가 가능하다. 4-20 성, 각급학교 및 이용교통수단별 통학인구, 4-21 성, 소요시간 및 각급 학교별 통학인구의 두 표는 지역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함. 자녀의 교육을 중심으로 거주와 이동이 이루어지는 한국의 현실에서 각 지역의 학생 통학의 문제는 중요한 정보가 된다. 또는 두 개의 표를 하나로 통합하여 ex) 성, 각급학교, 소요시간 및 이동교통수단별 통학인구로 만들 수도 있다. 4-22 행정구역, 성 및 연령별 상주(야간) 주간인구, 4-23 성, 연령 및 통근 통학유형별 인구(12세 이상)의 결과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앞에서 제시한 (제목)용어의 일관성의 문제를 참조해야 한다.

5) 인구 이동

인구이동 영역에서는 전제적으로 용어의 일관성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주지 유형별’은 ‘대비 거주지 변동 유형별’로 바꾸어야 5년 전/1년 전에 비교하여 거주지의 변동의 유형에 따른 내용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전달된다. 또한 ‘거주지별’은 ‘거주지 행정구역별’로의 교체를 제안한다. 이것은 5년 전/ 1년 전 거주지의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므로 정확하게 행정구역이라는 용어를 부가하여 명확함을 살리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또한 인구이동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5년 전/ 1년 전을 기준으로 인구가 어떤 양상으로 어떤 변수의 차이를 보이며 이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근데, 행정구역 자체가 변동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다. 즉, 실질적으로 거주지 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행정구역 변동으로 인해 이동인구로 잡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인구이동은 실질적으로 이동한 인구에 한하여, 행정구역별 이동 인구를 제표해야 한다. ‘거주지 변동 유형별’에 따라 이동여부를 파악한 후, ‘거주지 행정구역별’에 의한 결과표들에서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한 사람에 한하여 제표를 해야만 현재 결과표들에 의해서 실질적 인구이동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거주지 행정구역을 표시하는 결과표에 대해서는 표두와 표측을 일치시켜서 시/도+읍/면/동으로 하여 이동과 변화의 양상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먼저, 표 5-1 현거주지, 성, 연령 및 5년 전 거주지 유형별 인구(5세 이상)의 결과표에서는 제목의 ‘5년 전 거주지 유형별’이라는 용어를 ‘5년 전 대비 거주지 변동 유형별’로 교체를 제안한다. 그리고 연령범위를 85+로 확대할 필요 있다. 표측과 표두의 행정구역 범위 일치시킬 것을 제안한다. 5-2 현거주지, 연령 및 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5세 이상)의 결과표에서는 제목의 ‘거주지별’을 ‘거주지 행정구역별’로 교체를 제안한다. 그리고 표측과 표두의 행정구역 범위 일치시켜서 이동의 변화를 비교하기 쉽게 할 것을 제안한다.

5-3 현거주지, 교육정도 및 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6세 이상)의 결과표에서는 제목의 ‘거주지별’을 ‘거주지 행정구역별’로 교체를 제안한다. 그리고 표측과 표두의 행정구역 범위 일치시켜서 이동의 변화를 비교하기 쉽게 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교육정도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양상은 성과 연령을 통제하고 보아야 실질적인 차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성, 연령 변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5-4 현거주지, 성, 연령, 혼인상태 및 5년전 거주지별 인구 (15세 이상)의 결과표에서는 연령의 상한선을 35+로 하였음. 현재 혼인이후의 이동 뿐 만 아니라 중고령자의 경우에 은퇴 이후에도 이동의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령의 상한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5-5 현거주지, 성,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지위 및 5년전 거주지별 인구 (15세 이상)의 결과표에 따르면 실제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의 변화에 따른 이동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수 없다. 즉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와의 거주지 이동의 관계를 파악할 근거로서의 정보가 약함. 다만 현재의 결과표의 자료로 5년 전 거주지 정보와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정보를 단지 연결시키는 정보로서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든다. 5-6 현거주지, 성, 산업 및 5년 전 거주지별 이동인구(15세 이상), 5-7 현거주지, 성, 직업 및 5년 전 거주지별 인구(15세 이상)의 결과표는 제목을 수정(거주지 행정구역별) 한 후 현재 상태의 결과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5-8 현거주지, 점유형태 및 5년 전 거주지별 인구(5세 이상)점유형태별 이동의 변화를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결과표도 필요하다. 따라서 ex) 현거주지, 점유 형태 및 5년전 대비 거주

지 변동 유형별 인구(5세 이상)의 표를 제안한다. 5-9 현거주지, 세대구성 및 5년전 거주지 유형별 인구(5세 이상)의 결과표에서 제시된 세대구성이 지나치게 자세하다고 판단된다. 세대 구성의 하위범주를 단순화할 것을 제안한다. ex) 1세대/2세대/3세대/4세대

6) 경제활동

경제활동 영역의 결과표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경제활동 영역 전체적으로 연령범위의 상한선을 85+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고령화 추세로 정년 이후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³⁾에 있다는 사실로부터 현재의 연령 범위보다 확대하여 결과표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활동상태의 범위를 구직, 휴직 여부까지 포함시켜 상세하게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6-1 성, 연령 및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15세 이상), 6-2 성, 연령,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15세 이상)의 결과표는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상태를 파악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6-3 성,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의 결과표에는 연령 변수를 추가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정도는 연령 변수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통제한 후 결과를 보아야 실질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ex) 성, 연령, 교육정도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15세 이상) 표 6-4 성, 연령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6-5 성, 연령 및 직업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는 6-6표를 수정함으로써 삭제 가능하다. 6-6 성, 직업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는 연령 변수를 추가하여 ex) 성, 연령, 직업 및 산업별 취업자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6-7 성,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6-8 성,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에 연령 변수를 추가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ex) 성, 연령, 교육정도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성, 연령, 교육정도 및 직업별 취업자(15세 이상)

이어서 표 6-9 현거주지, 근무지 및 산업별 취업자(15세 이상), 6-10 현거주지, 근무지 및 직업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는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6-11 성, 교육정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에 연령 변수를 추가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정도는 연령 변수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통제한 후 결과를 보아야 실질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 성, 연령, 교육정도 및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15세 이상) 6-13 성, 종사상 지위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에는 연령 변수를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연령에 따른 종사상 지위와 근로장소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통해 노동환경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일정 연령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근로환경, 경제활동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는 자료가 될 것이라 판단된다. ex) 성, 연령, 종사상 지위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6-14 성, 연령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는 아래 6-15의 결과표에 연령을 추가함으로써 삭제 가능하다. 성, 교육정도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6-15)에 연령 변수를 추가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일반적으로 교육정도는 연령 변수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통제한 후 결과를 보아야 실질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ex) 성, 연령,

3)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령노동인구 보고서(ageing synthesis)'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각 회원국 40세 이상 국민의 실제 은퇴연령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70세로, 75세에 육박하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노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도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6-16 세대구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여성인구(15세 이상)의 결과표는 여성인구로 제한하여 제시하기보다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표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혼, 편부 / 편모, 기러기 가구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해체 등의 한국 가족 양상의 다양화는 여성뿐 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성들에게 있어서 세대구성의 차이에 따른 경제활동상태의 차이가 더욱 두드러질 수 있으나 점차 남성에게도 이러한 변화의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의 경우를 성별로 볼 필요가 있다. ex) 성, 세대구성 및 경제활동상태별 인구

6-17 가구원 규모 및 취업자 수별 가구(일반가구)의 결과표는 의미 있는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6-18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및 산업별 가구(일반가구), 6-19 가구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별 가구(일반가구)의 결과표는 현재 상태 유지를 제안한다.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를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보인다. 6-20 거처의 종류 및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별 가구(일반가구)의 결과표는 '거처의 종류'보다는 '점유형태'의 변수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가구주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경제활동상태는 거처의 종류보다는 점유형태가 보다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ex) 점유형태 및 가구주의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별 가구(일반가구)

6-21 산업(소분류), 성 및 행정구역별취업자(15세 이상), 6-22 직업(소분류), 성, 및 행정구역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6-23 성, 산업(중분류) 및 직업(중분류) 별 취업자(15세 이상), 6-24 성, 산업(중분류) 및 연령별 취업자(15세 이상), 6-25 성, 직업(중분류) 및 연령별 취업자(15세 이상), 6-28 성, 산업(중분류)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6-29 성, 직업(중분류)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의 결과표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결과표 디자인 방식의 일관성을 위하여 6-20, 21과 같은 형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ex) 6-23. 산업(중분류), 성 및 직업(중분류) 별 취업자(15세 이상), 6-24 산업(중분류), 성 및 연령별 취업자(15세 이상), 6-25 직업(중분류), 성 및 연령별 취업자(15세 이상), 6-28 성, 산업(중분류)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 6-29 성, 직업(중분류) 및 근로장소별 취업자(15세 이상)이다.

7) 주거

7장의 주거편에서는 표본조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로 우리나라 가구의 주택이용상태를 주택 이용에 미치는 제 요소(가구주의 연령, 성, 혼인상태, 거주기간,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자동차보유대수, 주차시설, 임대료)에 따라 매우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살펴보는 지표로 해당거처의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특성(거처의 종류·점유형태, 가구주의 성·연령, 가구주의 성·교육정도, 가구주의 성·경제활동상태·산업, 가구주의 성·경제활동상태·직업)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물론 거주기간은 주거안정성을 살펴보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으나 거주기간은 자가인지 임차인지에 따라 이미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주거실태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점유형태와 거처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특성(가구주의 연령, 성, 혼인상태, 거주기간,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을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닌가 한다.

게다가 자동차 보유대수와 주차시설을 질문하는 항목은 거처실태, 점유형태와는 다소의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구주 특성(성별, 연령, 경제활동상태)과 가구특성(세대구성, 가구원수)별로 자동차보유대수를 확인하는 것이 다양한 가격대의 자동차가 주택수보다 더 많이 보급된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보여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구성항목에 대한 의문과 별도로 제일 먼저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제목이 주거인 점에서 가구를 중심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 7-1

행정구역 및 거주기간별 가구수는 현거처 거주기간별 가구수(행정구역은 지금까지 많은 표에서 별도의 제목 없이 사용)로 수정 할 수 있다. 거주기간으로 거처의 거주기간임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제목 분명히 하는 것을 제안한다. 표 7-2부터 7-6는 거주기간보다는 거처유형과 점유형태를 중심으로 가구주 특성을 보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 보유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결과표인 7-9~7.14는 삭제를 제안한다. 2000만대 이상 자동차가 있는 시점에서 자동차 보유와 관련된 질문이 이렇게 많이 있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표 7-15~17까지 거처의 종류 및 주차시설수, 점유형태 및 주차시설별 가구, 가구주의 성, 연령 및 주차시설별 가구의 결과표는 거처의 종류, 점유형태별 주차장 확보 가구로 해야 주차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차장 확보여부를 가구특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7.2 (주거실태- 임차료)

임차가구의 주거실태를 거처유형(주거용과 영업겸용)과 임차유형(전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으로 구분하여 가구의 특성(가구주 연령, 가구원수, 사용방수)에 따른 임차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어 임차가구의 주거실태 파악에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제시된 표에 거처의 면적이 포함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 제안을 하지는 않는다.

8) 활동제약편

활동제약, 고령자, 여성·아동 등의 부문에 이용된 핵심문항은 표본조사에 담겨 있다.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활동상의 제약여부, 고령자의 생활비원천, 여성의 초혼연령, 출산자녀수 및 출산계획, 그리고 아동의 보육상태에 관한 문항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1인 가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문항이 표본조사에 있다기보다는, 전수 혹은 표본조사에 있는 여러 문항과의 연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여타의 항목들과는 나란히 표본조사결과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1인 가구 결과표들을 보면 언급하는 단위가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person)인 경우와 가구(household)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1인 가구 편은 활동제약, 고령자, 고령자, 여성·아동 편과는 차이가 분명함을 알 수 있다.

기존의 2005년도 결과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KOSIS에서 제공되는 결과표에 기반함을 미리 밝혀둔다. 결과표는 대체로 보고서, CD, KOSIS의 형태로 접근가능한데 접근의 용이성이나 자료의 깊이 등에서 KOSIS의 위상과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0년의 제표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는 보고서의 형태를 근간으로 하고, KOSIS의 제표방향을 설정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는 2005년 보고서와 KOSIS의 형태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2010년의 제표안과 비교가 능토록 한다.

활동제약, 고령자, 여성·아동, 1인 가구 등의 4가지 부문에 대한 2005년도 결과표를 검토하고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주제에 대해서 핵심어(키워드)를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결과표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항목을 연계해서 결과표를 만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제표작업을 하는 측에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결과표 내용과 형식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시점의 사회적, 정책적 욕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결과표의 시계열성 확보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결과표의 시의성과 적합성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결과표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결과표를 제공하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결과표가 조사문항의 내용이나 범주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내용과 범주의 적절한 가공을 통해 보다 설득력이 있고 해독력이 높은 결과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표제목의 이해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정인구집단이가 가구의 특성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표제목을 만듦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표제목이 반드시 ‘인구’ ‘1인 가구’ 등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고, 이는 ‘단위’에서 밝혀도 분명해질 것이다.

이하에서는 각 부문별로 2005년도 결과표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2010년도 결과표에 대한 제언을 기술한다. 구체적인 평가 및 제언내용은 첨부자료표를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에서는 주요 내용만을 정리해서 전달하기로 한다. 이 작업은 각 부문의 핵심문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하는데서 시작된다. 이는 조사문항내용에 따라 결과표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활동제약에 관한 항목은 2005년도 신규조사항목이다. 아래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을 묻는 문항과 활동제약을 묻는 문항의 2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 두 가지 항목이 통합되고 그 응답범주도 통합 축소되었다.

구 분	내 용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 장애 ② 차매 ③ 중풍 ④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 ⑤ 학습의 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⑥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11 활동 제약</p> <p>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hr/> <p>다음과 같은 활동에 제약이 있습니까?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 취업 활동은 세는 나이로 16세 이상만 표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 장애 ② 차매 ③ 중풍 ④ 걷기, 계단 오르기, 들고 운반하기 등 육체적 제약 ⑤ 학습의 어려움,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⑥ 없음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장애 ●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제약 ③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 장보기, 병원 가기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⑧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12 활동 제약</p> <p>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 •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 •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은 집에서 세는 나이 16세 이상 중 활동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장애 ②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제약 ③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⑤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⑥ 장보기, 병원 가기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⑧ 없음
변동	문항 단일화/항목범주 축소		

2005년도에 조사항목이 두 건이었으므로 결과표에서도 각각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000 (예. 표 <8-1>)” 일상, 사회활동제약유형별 000 (예. 표 <8-9>)”로 나뉘어져 있다. 또

한 이 두 개의 항목을 종합해 "활동제약자 (예. 표 <8-18>"로 묶어 해당 가구수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표제목에서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용어 - 육체적, 정신적 제약/일상, 사회활동제약/활동제약자-가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표제목에 '육체적, 정신적 제약'을 쓰면서 그 하위범주를 ① 장애, ② 정신적 제약, ③ 신체적 제약 등으로 설정해 표제목이 하위범주를 전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표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0년도의 경우는 활동제약문항이 단일화되었다. 따라서 세 가지 용어-육체적, 정신적 제약/일상, 사회활동제약/활동제약자-가 혼재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장애(시각, 청각, 언어장애), 일상적 활동제한(걷기 등), 수단적 일상활동제한(옷입기, 목욕하기 등과 장보기 등), 사회활동제한(16세 이상 취업활동), 인지능력제약(배우기 등)을 적은 수의 범주로 묶기는 여전히 힘들다. 따라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인구수를 제시하는 한편, 집계대상인 5세이상 인구 중 한 가지라도 제약이 있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의 집계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각 활동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이 중복응답임을 분명히 밝혀둘 필요가 있다 (2005년 KOSIS자료에는 중복응답이라는 설명이 표두에 제시되지 않고, 주석에만 포함되어 있어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2005년과 2010년간 문항변동에 따른 시계열성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10년에 사용한 범주들이 2005년 자료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가령, 장애는 두 연도에서 동일한 하위범주를 가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10년의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의 이동제약은 2005년도의 육체적 제약의 일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2010년도의 하위범주에 맞추어 2005년의 결과표를 재구성해 보는 것이다. 이 경우, 2005년의 치매나 중풍은 2010년에 따로 범주로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5년 연령별 활동제약을 보여주는 결과표에서 상한연령층을 현행 70세에서 85세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고령층의 연령을 보다 세분화하기를 권한다. 이는 활동제약이 특히 고령층에서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외에도 표측에 제시되는 항목들의 순서가 제목에 제시되는 항목순서와 일치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다른 부문에서도 그렇지만, 표제목에 대해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19표> 가구주의 성, 경제활동상태 및 활동제약자거주가구수(일반가구)는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 표의 내용을 보면, 활동제약가가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의 성과 경제활동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단위를 가구로 밝혀주고, 제목을 '활동제약자 거주가구의 가구주 성별 경제활동상태'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 결과표 중에서 너무 복잡하거나 제시하는 목적이 불분명한 결과표가 발견된다. 가령, <표 8-17(성, 일상, 사회활동제약과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별 인구)>에서 일상, 사회활동제약과 육체적, 정신적 제약을 서로 결합해서 보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그 이유 또한 짐작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표는 삭제하기를 권한다. 한편 <표 8-20(거처의 종류 및 점유형태별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 거주가구)>는 거처종류별 활동제약자거주가구와 점유형태별 활동제약자 거주가구로 분리하기를 권한다.

9) 고령자편

구 분	내 용		
2005	<p style="text-align: center;">세는 나이 61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24]</p> <p>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④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채권, 증권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p>	<p style="text-align: center;">24 고령자 생활비 원천</p> <p>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기입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p>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교직원연금 ④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채권, 증권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p>
2010	<p style="text-align: center;">집에서 세는 나이 61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28]</p> <p>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펀드, 채권 등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 <input type="text"/></p>	<p style="text-align: center;">28 고령자 생활비 원천</p> <p>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배우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p>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④ 개인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펀드, 채권 등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 <input type="text"/></p>
변동	없음		

고령자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항목은 생활비 원천이라 할 수 있으며, 동일한 항목이 2005년과 2010년에 공통으로 사용되었다. 고령자부문에서는 생활비 원천이외에도 여러 인구학적 항목들이 결합되어 표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고령자 부문의 결과표들 중에서 전수조사항목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표들은 삭제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부문에서 만들어진 결과표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가급적 결과표를 줄임으로 간결하고 분명하게 고령자의 특성을 전달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앞서 언급한 주요항목의 선택과 집중이라 볼 수 있다. 한편, 고령자는 특정 연령층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 전체연령집단을 연령별로 접근한 전수항목의 기본표와 중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수항목에서 상한연령층을 85세 혹은 그 이상 연령층을 높이는 한편, 고령층의 연령을 보다 세분화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의 주요 특성을 보여주는 항목 (예. 생활비원천)을 중심으로 결과표의 개수를 줄이는 대신,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결과표를 발굴해 낼 필요가 있다. 가령, 고령자의 성, 연령, 활동제약별 생활비원천을 보여주는 결과표나 경제활동상태별 생활비원천을 보여주는 결과표 등을 신규 추가표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비원천항목을 이용한 표제목에서 ‘생활비원천’대신 생활비마련방법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또한 단일원천이나 복합원천이라는 용어대신 1가지, 2가지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문항에서 두 가지 이상일 경우는 두 가지만 제시하도록 했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표제목을 만들 때, 고령자의 특성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가령, <표 9-5(세대구성 및 성, 연령별 고령자)>는 고령자의 성 및 연령별 세대구성이라 하고, 그 단위를 고령자라고 밝히는 것도 한 방안이다. 제표과정에서 사례수가 적게 나타나는 범주는 다른 범주에 통합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가령,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고령

자가 손자녀, 증손자녀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실제 2005년 결과표에서 손자녀, 증손자녀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고령자 결과표에서 고령자 전체에 대한 집계표를 만들면서 60세 이상과 65세 이상 두 집단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85세 이상 (초고령층)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각 연령대별로 별도의 결과표를 만들기보다, 이들 연령대가 한 변수로 삽입된(60세이상, 65세이상, 85세 이상 등의 세 범주) 표를 만들기를 권한다.

10) 여성·아동편

기혼여성의 초혼연령과 출산에 관한 항목들은 2005년과 2010년에 모두 표본조사에 포함되어 있지만, 2010년에는 동거자녀와 별거자녀에 관한 문항이 빠져 있다. 따라서 동거자녀 혹은 별거자녀와 관련된 결과표들은 삭제될 수밖에 없다 (<표 10-3>과 <표 10-5>).

구 분	내 용		
2005	세는 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15 ~ 21]		
	<p>① 미혼 → 21 번으로 ●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p> <p>1985년 7월 ① 양력 ② 음력</p>	<p>20 혼 인 상 태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합니다.</p> <p>21 혼 인 연 월 결혼(초혼)은 언제 하였습니까? • 재혼의 경우 초혼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p>	<p>① 미혼 → 21 번으로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p> <p>년 월 ① 양력 ② 음력</p>
2010	기혼(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여성만 기입합니다. [22 ~ 23]		
	<p>남 2명 여 1명</p> <p>남 1명 여 0명</p> <p>남 0명 여 1명</p> <p>남 1명 여 0명</p> <p>① 있음 → 1명 ② 없음</p>	<p>22 총 출 생 아 수 부인이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직접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학업, 취업, 결혼 등으로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부인이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23 추가 계획 자녀 수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p>	<p>남 명 여 명</p> <p>남 명 여 명</p> <p>남 명 여 명</p> <p>남 명 여 명</p> <p>① 있음 → 명 ② 없음</p>
2010	세는 나이 16세부터 모두 기입합니다. [24 ~ 25]		
	<p>① 미혼 → 28 번으로 ●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p> <p>1985년 7월 ● 양력 ② 음력</p>	<p>24 혼 인 상 태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합니다.</p> <p>25 혼 인 연 월 결혼(초혼)은 언제 하였습니까? •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p>	<p>① 미혼 → 28 번으로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p> <p>년 월 ① 양력 ② 음력</p>
2010	기혼(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여성만 기입합니다. [26 ~ 27]		
	<p>남 2명 여 1명</p> <p>남 1명 여 0명</p> <p>● 있음 → 2명 ② 없음</p>	<p>26 총 출 생 아 수 지금까지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 직접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기입합니다. • 미혼여성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합니다.</p> <p>지금까지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p> <p>27 추가 계획 자녀 수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p>	<p>남 명 여 명</p> <p>남 명 여 명</p> <p>① 있음 → 명 ② 없음</p>
변동	2005년도 항목중 현재 동거자녀수와 별거자녀수 항목이 빠짐		

기혼여성의 추가계획자녀수를 이용한 결과표에서는 여성들의 상한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열 어두지 말고, 49세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하 연령에 40-45세, 45-49세를 추가하는 것이 실질 적으로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물론 50세 이후에서도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매우 그 수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결혼과 출산이 점차 늦어지고 40대에서도 어느 정도 출산이 이

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4대를 좀 더 세분화해서 출산계획을 알아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출생자녀수의 범주에서 출생자녀수의 상한선을 6명이상 혹은 7명이상 정도로 한정하는 것도 결과표를 간결하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초혼연령에 있어서는 이 항목과 연계되는 문항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가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특히 표측에 제시되는 문항의 순서와 연결된다. 가령, 출생자녀수와 초혼연령간의 관계를 생각해본다면 대체로 초혼이 이루어진 다음에 자녀출산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결과표 제목이 <표 10-11(출생자녀수 및 초혼연령별 기혼여성)> 이 아니라 ‘초혼연령 및 출생자녀수별 기혼여성’이 보다 적절하다. 또한 그 설계내용도 초혼연령이 먼저 온 후에 출생자녀수가 뒤를 따라야 할 것이다.

초혼연령과 함께 제시된 여성의 경제활동상태는 무엇을 알려주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초혼은 이미 지난 과거 (어떤 여성에게는 오래전의 사건일 수 있다)이고, 경제활동상태는 현재의 상황이다. 시간간격이 매우 클 수 있는 두 사건을 연계해서 무엇을 파악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항목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육에 관한 문항에서는 2005년에 조사되었던 어머니의 동거여부항목과 어머니의 성명이 2010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0년의 결과표에서도 어머니에 관한 항목들이 들어간 결과표는 삭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동보육에 관한 결과표는 아동연령에 구분 없이 12세이하 아동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아동보육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아동보육상태에 관한 결과표에서 아동연령(각세)이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2010년 결과표에서는 아동연령별 보육상태 등과 같은 결과표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 분	내 용		
2005	<p>① 자녀의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시설 ⑧ 학원(예·체능 포함) ⑨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⑩ 기타()</p> <p>① 함께 살고 있음 성명 <input type="text" value="이 세 리"/> <input type="checkbox"/></p> <p>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p>	<p>세는 나이 1세부터 13세까지의 아동만 기입합니다. [8]</p> <p>3 아 동 보 육</p> <p>이 아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6시)에 누가(어느 곳에서) 돌보았습니까?</p> <p>• 지난 일주일일은 「2005년 10월 23일 ~ 10월 29일」입니다. • 학생은 방과 후의 보육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p> <p>이 아동의 어머니는 이 가구에 살고 있습니까? 함께 살고 있다면 어머니의 성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① 자녀의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시설 ⑧ 학원(예·체능 포함) ⑨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⑩ 기타()</p> <p>① 함께 살고 있음 성명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p> <p>② 함께 살고 있지 않음</p>
2010	<p>●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 시설 ⑧ 방과 후 학교 ⑨ 학원(예체능 포함) 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⑪ 기타 <input type="text"/></p>	<p>6 아 동 보 육</p> <p>(집에서 세는 나이 1세부터 초등학교 아동까지만 기입합니다.)</p> <p>이 아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6시)에 누가(어느 곳에서) 돌보았습니까?</p> <p>• 지난 일주일일은 「2010년 10월 24일 ~ 10월 30일」입니다. • 학생은 방과 후의 보육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p>	<p>①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 시설 ⑧ 방과 후 학교 ⑨ 학원(예체능 포함) 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⑪ 기타 <input type="text"/></p>
변동	2010년 조사에서 아동어머니의 동거여부 및 성명이 빠짐		

11) 1인 가구편

표제목으로 인해 혼돈이 많이 일어나지만, 특히 심한 부문이 1인 가구편이다. 여기에는 1인 가구 거주자(person)과 1인 가구(household)가 구분 없이 혼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령 <표 11-1(성, 연령 및 직업별 1인 가구)>의 내용을 보면,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성, 연령별 직업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표에 단위는 1인 가구라고 명시했지만, 사실은 사람(person)이 단위가 되고 있다. 1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지, 1인 가구가 가진 성격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의 특성인지 가구의 특성인지를 보다 분명히 밝히고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항목은 전수조사항목이다. 따라서 고령자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전수조사항목과 연계될 경우, 전수결과표에서 이미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1인 가구가 전수결과표에서 다루어진다면 해당 결과표는 1인 가구편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예. <표11-1> (표 11-2> <표 11-3> <표 11-8> 등).

1인 가구편에서는 특히 복잡한 표가 많이 나오고 있다. 가령, <표 11-9>에서 거처종류와 점유형태를 다루면서 굳이 사용방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표 11-11(거처의 종류 및 성, 점유형태별 고령자 1인 가구)>는 두 개로 나누어 1인 가구 거주 고령자의 성별 거처종류와 1인 가구 거주 고령자의 성별 점유형태로 나누어 결과표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표 11-13> 또한 마찬가지이다.

거주기간이나 5년전 거주지 등 시간을 포함하는 결과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1-7(거주기간별 1인 가구)>에서 1인 가구 거주자가 현재 거처에 해당 기간 동안 반드시 혼자 살아왔다고 생각할 근거는 없다. 가구원의 이동은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본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표 11-14>에서처럼 1인 가구 거주자의 현거주지와 5년전 거주지를 비교해서 얻는 결과 또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두 시점 안에 가구규모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간을 포함하는 이 결과표들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4. 표본항목 공개 및 제공관련 사례 조사 -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1) 표본조사가 갖는 문제점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에서는 기본적인 문항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률 제고와 조사 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보다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문항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2005년도의 경우 전체 44개 문항 중 전수조사는 21개 문항이었고, 표본조사는 23개 문항이었다. 2010년도의 경우 전체 50개 문항 중 전수조사는 19개 문항이었고 표본조사는 31개 문항이었다. 표본의 크기는 전체의 10%로, 표본조사라고 해도 여타 사회조사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외국의 경우 일본, 영국, 호주, 스페인의 경우 전수조사만이 있는 것처럼 별도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표본조사를 하는 국가와 표본의 크기를 보면, 미국의 경우 16.7%, 캐나다 20%, 싱가포르 20% 등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있어서 표본조사가 제기하는 문제점은 두 가지로 지목될 수 있다. 첫째는 표본항목의 공개범위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행정구역별로 그 정보가 공개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표본조사가 얼마나 상세하게 행정구역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된다. 전수조사표를 이용한 상당수 결과표들은 시군구 단위까지 정보를 담고 있다. 표본조사라고 하여도 샘플의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행정구역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보이지만, 각 시군구단위의 모집단을 표본이 제대로 대표하고 있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정보의 제공방식이다. 표본조사 수치를 그대로 공표하는 방식과 전수조사로 환산하여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이 있다. 또한 전수조사로 환산시에는, 대푯값만을 제공하는 방식과 신뢰구간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다. 표본을 통한 모집단 추정치는 샘플의 크기와 분산의 정도에 따라 신뢰구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는 세부 행정구역별 결과표에서는 신뢰구간이 넓게 나타날 위험이 있고, 대푯값만으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실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정적으로 현실을 오도할 위험이 있다.

2) 미국의 사례

미국의 인구주택총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표본조사는 전 인구의 1/6 정도가 참여하였다. 전수조사에 해당하는 목록은 가구주와의 관계(Household relationship Race), 성별(Sex), 연령(age), 히스패닉 및 라티노 여부(Hispanic or Latino origin), 인종(Race), 자가 거주여부(Tenure, whether the home is owned or rented), 빈 집 여부(Vacancy Characteristics) 등이다. 그 외 표본항목 관련문항은 아래와 같다.

I. Population

Social Characteristics

- Marital status
- Place of birth, citizenship, and year of entry

- School enroll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 Ancestry
- Residence 5 years ago (migration)
- Language spoken at home and ability to speak English
- Veteran status
- Disability
- Grandparents as caregivers

Economic Characteristics

- Labor force status
- Place of work and journey to work
- Occupation, industry, and class of worker
- Work status in 1999
- Income in 1999

II. Housing

Physical Characteristics

- Units in structure
- Year structure built
- Number of rooms and number of bedrooms
- Year moved into residence
- Plumbing and kitchen facilities
- Telephone service
- Vehicles available
- Heating fuel
- Farm residence

Financial Characteristics

- Value of home or monthly rent paid
- Utilities, mortgage, taxes, insurance, and fuel costs

표본항목을 통하여 구성된 결과표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다.

QT-H7. Year Structure Built and Year Householder Moved into Unit: 2000
QT-H8. Rooms, Bedrooms, and House Heating Fuel: 2000
QT-H11. Vehicles Available and Household Income in 1999: 2000
QT-H10. Units in Structure, Householder 65 years and Over, and Householder Below Poverty Level: 2000
QT-H11. Vehicles Available and Household Income in 1999: 2000
QT-H12. Contract Rent and Gross Rent: 2000
QT-H14. Value, Mortgage Status, and Selected Conditions: 2000
QT-H15. Mortgage Status and Selected Monthly Owner Costs: 2000
QT-H16. Selected Monthly Owner Costs as a Percentage of Household Income in

1999
QT-P14. Nativity, Citizenship, Year of Entry, and Region of Birth: 2000
QT-P16. Language Spoken at Home: 2000
QT-P17. Ability to Speak English: 2000
QT-P18. Marital Status by Sex, Unmarried-Partner Households, and Grandparents as Caregivers
QT-P19. School Enrollment: 2000
QT-P20. Educational Attainment by Sex: 2000
QT-P21. Disability Status by Sex: 2000
QT-P22. Place of Birth and Residence in 1995: 2000
QT-P23. Journey to Work: 2000
QT-P24. Employment Status by Sex: 2000
QT-P25. Class of Worker by Sex, Place of Work, and Veteran Status: 2000
QT-P26. Employment Status and Work Status in 1999 of Family Members: 2000
QT-P27. Occupation by Sex: 2000
QT-P29. Industry by Sex: 2000
QT-P31. Work Status in 1999 and Earnings in 1999 of Full-Time, Year-Round Workers, by sex: 2000
QT-P32. Income Distribution in 1999 of Households and Families: 2000
QT-P33. Income in 1999 by Selected Household, Family, and Individual Characteristics
QT-P34. Poverty Status in 1999 of Individuals
QT-P35. Poverty Status in 1999 of Families and Nonfamily Householders
QT-P22-PR. Place of Birth and Residence in 1995: 2000
PCT43. Sex by Place of Birth by Citizenship Status
PCT44. Sex by Age by Citizenship Status
PCT45. Sex by Year of Entry for Foreign-Born Population
PCT46. Sex by Year of Entry by Citizenship Status for the Foreign-born Population
PCT47. Sex by Place of Birth by Year of Entry for the Foreign-Born Population
PCT48. Place of Birth by Year of Entry by Citizenship Status for the Foreign-born Population
PCT49. Residence in 1995 for the Population 5 Years and Over
PCT51. Place of work for Workers 16 Years and Over
PCT55. Means of Transportation to Work for Workers 16 years and Over
PCT56. Travel Time to Work for Workers 16 Years and Over
PCT57. Travel Time to Work by Means of Transportation to Work for Workers 16 Years and Over Who Did Not Work at Home
PCT58. Aggregate Travel Time to Work by Means of Transportation to Work for Workers 16+Years Who Did Not Work At Home
PCT59. Time Leaving Home to go to Work for Workers 16 years and Over
PCT60. Private Vehicle Occupancy for Workers 16 Years and Over
PCT79. Sex by Age by Employment Status for the Population 16 Years and Over
PCT80. Presence of Own Children Under 18 Years by Age of Own Children by Employment Status for Females 16 years and over
PCT83. Family Type by Employment Status
PCT88. Household Income in 1999
PCT94. Earnings in 1999 for Households

PCT95. Wage or Salary Income in 1999 for Households
PCT97. Interest, Dividends, Net Rental Income in 1999 for Households
PCT132. Sex by Work Experience in 1999 by Income in 1999 for the Population 15 Years and Over
PCT133. Median Income in 1999 by Sex by Work Experience in 1999 for the Population 15 Years over
PCT142. Poverty Status in 1999 by Sex by Age

미국의 경우 표본조사에 의한 결과표라고 하여도 행정구역의 공개범위는 전수조사에 의한 결과표와 다르지 않다. 제공되는 행정구역의 단위는 아래처럼 세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U.S.
- Regions
- Divisions
- States
- Counties
-
- County subdivisions
- Places
- Census tracts
- Metropolitan areas
-
- Urban areas (urbanized areas and urban clusters)
- American Indian and Alaska Native areas
- Tribal subdivisions
- Hawaiian homelands

미국의 경우 표본조사에 의한 결과표 제공방식은 가중치에 의한 모집단 전체로 환산된 대푯값으로 제공하고 있다. 즉 결과표만으로는 전수조사표에 의한 것인지 표본조사표에 의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도록 일치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미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원자료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각각 1% 샘플 및 5% 샘플 두 가지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의 샘플은 전 국민의 약 15.6%에 해당하는 표본조사까지 응답한 샘플의 하위 범주로 이루어져 있다. 즉 공적사용을 목적으로 한 원자료 (Public Use Microdata Sample)를 공개하고 있다. 본 자료는 샘플의 크기, 지역정보,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하면서도 연구자 본인이 원하는 표 구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지역정보를 분석할 수는 없지만 기존 상관관계 표로 보이지 않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네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첫째는 데이터 스와핑(Data Swapping)으로, 몇몇 샘플자료에 한하여 개인수준에서의 데이터 소스 및 기록을 교체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는 탑코딩(Top-Coding)으로 데이터 공개수준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일정 비율 이하의 자료인 경우, 세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하나의 카테고리 묶어 제시함으로써 소수 인구에 해당하는 정보의 공개를 막는 방법이다. 세 번째는 지역인구를 특정 구분 이하로 공개하지 않는 방법이다. 네 번째는 연령을 혼란시키는 방법

(Age Perturbation)으로 가구 크기가 10명 이상으로 큰 경우에 연령정보를 수정하는 것을 뜻한다. 다섯 번째는 비연속 범주의 자료의 경우, 각 카테고리별 일어난 사건의 수에 따라 그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5.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의 표준 영문명 제시

우리말	2005년 인총 보고서에 쓰인 영문 용어	분류	추천 영문 용어
1년미만	Less than 1 year		
1세대가구	One generation household	세대구성	
1인가구	One person household	세대구성	
1인가구	1 person	가구원규모	
1인당주거면적	living area per person		
1인당평균사용방수	Average rooms used per person		
25년 이상	25 years and over		
2세대 가구	Two generation households	세대구성	
2인가구	2 persons	가구원규모	
3세대 가구	Three generation households	세대구성	
4세대 이상 가구	Four or more generation households	세대구성	
5년 전 거주지	Place of residence 5 years ago		
7인가구이상	7 persons and over	가구원규모	
가구	Households		
가구당주거면적	Average living area per household		
가구당평균사용방수	Average rooms in use per household		
가구당평균인원수	Average household members per household		
가구원	Household members		
가구원수	Number of Household Members		
가구원규모	size of household members	가구원규모	
가구의 크기	Size of household		
가구주	Head of household	가구주와의관계	
가구주+기타친인척	Household head with other relative(s)	세대구성	
가구주+형제자매	Household head with brother(s) or sister(s)	세대구성	
가구주와의 관계	Relationship with head of household	가구주와의관계	
가구주의 부모	Parents	가구주와의관계	Parents of the head of household

가구주의배우자	Spouse	가구주와의관계	Spouse of the head of household
가사도우미 및 이웃사람	baby sitter or a neighbor	보육상태	
가사서비스업	Private households with employed persons	Industry	
가족관계	Family relations	가족관계	
각급학교	Level of schooling		
같은시군구내다른 읍면동	To other "Eup-Myeon-Dong" in the same "Si-Gun-Gu"	통근/통학유형	Other townships in the same city district
같은시도내 다른 시군구	To other "Si-Gun-Gu" in the same "Si-Do"	통근/통학유형	Other districts in the same city province
개별난방	Individual heating		
개인 연금	Private pension	생활비원천	
거리	Street	근로장소	
거실수	Number of living rooms		
거주기간	Duration of residence		
거주인수별	Number of occupants		
거주층	Floor which the household is on	거주층	Floor level of household
거처의 점유형태	Type of occupancy		Type of dwelling
거처의 종류	Type of Living Quarters	거처의 종류	
건설업	Construction	Industry	
건축년도	Year of construction		
걸어서	Walking	이용교통수단	
경제활동상태	Economic Activity Status	경제활동상태	Status of Economic Activity
고등학교	high school	교육정도	
고령자	Aged		Aged individual
고속 시외버스	Express suburban bus	이용교통수단	
고용원을둔사업주	Self-employed with employee(s)	경제활동상태-일하였음	Business owner with employee(s)
고용원이없는자영자	Self-employed with no employee	경제활동상태-일하였음	Self-employed individual with no employee(s)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Industry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공동사용	Common use		
공터	Vacant lot	주차시설	
광업	Mining and quarrying	Industry	
교육 안 받았음	No schooling	교육정도	
교육서비스업	Education	Industry	Education service industry
교육정도	Educational attainment	교육정도	
구성비	Percentage		Composition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governmentorlocalgovernmentsubsidies	생활비원천	
국민,공무원,교직원 연금	National, public official, faculty pension	생활비원천	
국적	Nationality		
국제 및 외국기관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Industry	Foreign organizations and bodies
근로장소	Working place	근로장소	Work site
근무지	Working location		Place of work
금융 및 보험업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surance	Industry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	직업	
기독교(개신교)	Protestantism	종교	
기름보일러	Kerosene boiler		
기숙사및특수사회시설	Dormitory, social facility	거처의 종류	Dormitory and special social facilities
기술공 및 준전문가	Technician and(or) associate professional	직업	Technician and(or) associate professional
기차	Train	이용교통수단	
기타	Others		
기타 가족 및 친인척	familyor relatives of the child	보육상태	Family and other relatives

기타 보육시설	Other child daycare center	보육상태	
기타 친인척	Other relative	가족관계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Other community, repair and personal service activities	Industry	
기타동거인	Other person not related to head of household	가구주와의관계	
기혼여성	Married Women		
난방시설	Heating facility		
남북이산가족있음	Dispersed famil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남의집	Other's home	근로장소	
내국인	Korean		
노상 주차장	Parking lot in the street(designated as and lined for parking space)	주차시설	Designated parking area
농업 및 임업	Agriculture and forestry	Industry	
농업, 어업 및 어업숙련종사자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or) fishery worker	직업	
다가구단독주택	Multi-family house		
다른 시도	To other "Si-Do"	통근/통학유형	Different city
다세대주택	Apartment unit in a house		
단독사용	Individual use		
단독주택	Detached dwelling		Single housing
단순노무 종사자	Elementary occupation	직업	
단일 보육상태	Uni-method of child care		Single type of child care
단일 주차 시설	One parking place	주차시설	Single parking area
단일수단	Non-Transfer	이용교통수단	Single means of moving
단일수단의 생활비원천	Uni-method of source of living expenses	생활비원천	Source of living expenses for single means of living
대분류	Tabulation Categories		Tabulation Categories
대순진리회/증산계열	Daesunjinrihoe / Jeungsangyo	종교	Daesunjinrihoe /
대종교	Daejonggyo	종교	
대지면적별 단독주택수	Number of detached dwellings by Total area of		Number of single homes per area

	housing sites		of housing sites
대학(4년제미만)	Junior college	교육정도	
대학교(4년제이상)	University	교육정도	
대학원 박사과정	Doctor's course	교육정도	Doctoral degree program
대학원 석사과정	Master's course	교육정도	Master's degree program
대학원이상	Master's course and over		Master's degree program and more
도로변,골목길	Streetside or alley(not designated or lined for parking space)	주차시설	
도매 및 소매업	Wholesale and retail trade	Industry	
도시가스보일러	city gas boiler		
동거	Living with mother		
동거여부	Whether or Not Living with Mother		Living with mother or not
동거자녀수	Number of children in household		
따로 사는 자녀	Children who Moved out	생활비원천	Children who have moved out
매매, 임대, 이사	Sold, rented or house-moving	빈집사유	
모+자녀	Mother with own children	세대구성	
목욕시설	Bathing facility		
무급가족종사자	Unpaid family workers	경제활동상태-일하였음	
무상	Rent-free	집유형태	
미분양, 미입주	Year-round vacant	빈집사유	Unsold, Not moving in
미상	Unknown	종교	
미혼	Never married	혼인상태	Unmarried
바깥활동	Outdoor activity	일상,사회 활동제약유형	
배우기,기억하기,집중하기	Learning, remembering or concentrating	일상,사회 활동제약유형	
배우자	Spouse	가족관계	
배우자의 부모	Parents of spouse	가구주와의관계	

배우자있음	Married	혼인상태	
보증금(만원)	Deposit(10,000 wo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Health and social work	Industry	Health and social welfare service
보육상태	Method of Child Care	보육상태	Child care situation
보증금 없는 월세	Monthly rent without deposit	점유형태	
보증금 있는 월세	Monthly rent with deposit	점유형태	
보증금없음	Without a deposit		
보증금있음	With a deposit		
복합 보육상태	Poly-method of child care	보육상태	Multiple child care situations
복합 주차 시설	Two or more parking places	주차시설	Multiple parking places
복합수단	Poly-Transfer	이용교통수단	Multiple means
복합수단의 생활비원천	Multi-method of source of living expenses		Multiple means for source of living expenses
본인 또는 배우자 일	This person or spouse's job	생활비원천	This person or spouse's occupation
부+자녀	Father with own children	세대구성	
부동산	Real estate	생활비원천	
부동산 및 임대업	Real estate, renting and leasing	Industry	
부모	Parent	가족관계	
부모	Child's parents	보육상태	
부모의형제자매·그배우자	Uncle or aunt or his(her) spouse	가구주와의관계	
부부	Married couple	세대구성	
부부+기타친인척	Married couple with other relative(s)	세대구성	
부부+양친	Married couple with own parents	세대구성	
부부+자녀	Married couple with own children	세대구성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Married couple with own children and brother(s) or sister(s)	세대구성	
부부+자녀+양친	Married couple with own children and parents	세대구성	

부부+자녀+한부모	Married couple with own children and one parent of either spouse	세대구성	Married couple with own children and one parent
부부+한부모	Married couple with one parent	세대구성	Married couple with one parent
부부+형제자매	Married couple with brother(s) or sister(s)	세대구성	Married couple with brother(s) or sister(s)
부엌	Kitchen	부엌	
불교	Buddhism	종교	
비거주용건물내주택	House within commercial building		
비동거	Living without mother		
비어있는 기간	Vacant duration	빈집사유	Duration without
비온수시설	only cold water		
비친족가구	Non relative households	세대구성	
비혈연6인이상가구	Households of 6 persons or more who have no blood ties		
빈집사유	Reason for vacancy	빈집사유	
사글세	Monthly rent for lump payment of the rental period in advance	점유형태	Lump payment for monthly rent in advance
사글세(만원)	Monthly rent paid as a lump sum in advance of the rental period(10,000 won)		Lump payment for monthly rent in advance(10,000 won)
사망자녀수	The number of deceased children		
사무종사자	Clerk	직업	
사별	Widowed	혼인상태	
사업서비스업	Business activities	Industry	
사업장	Business place	근로장소	
사용방수	Number of rooms used		
산업	Industry	Industry	
산업(중분류)	Industry(Divisions)		
상주(야간)인구	Resident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Population	

생활비원천	Source of Living Expenses		
서비스종사자	Service worker	직업	
성비	Sex ratio		
세대구성별 인구	Generation in household	세대구성	Population by generational composition
센서스 실시년도	Census Year		
소요시간	Travel time		
손자녀/그 배우자	Grandchildren or his(her) spouse	가구주와의관계	
쇼핑, 병원가기, 집밖 돌아다니기	Shopping, visiting hospital or loitering outside a house	일상,사회 활동계약유형	
수료	Completed		Completion
수세식	Flush	화장실	
숙박 및 음식점업	Hotels and restaurants	Industry	
승용차	Sedan	자동차 종류별 보유대수	
승용차, 소형승합차	Private car	이용교통수단	Sedan, small-sized passenger car
승용차·소형승합차+전 철·지하철	Private car and Subway	이용교통수단	Sedan, small-sized passenger car and subway
승합차	Omnibus	자동차 종류별 보유대수	Full-sized van
시각,청각,언어장애	Difficulty in seeing, hearing or speaking	육체적,정신적 계약유형	Difficulty with seeing, hearing and speaking
시내·좌석·마을버스	Intra city-seat-village bus	이용교통수단	Intra city-seated-municipal bus
시내·좌석·마을버스+ 전철·지하철	Intra city-seat-village bus and Subway	이용교통수단	Intra city-seated-municipal bus and Subway
식당수	Number of dining rooms		
아파트	Apartment		
야외작업현장	Field survey	근로장소	
어린이집 및 놀이방	Nursery school or child daycare center	보육상태	
어업	Fishing	Industry	

없음	No facility	부업	Lacking
연건평	Total area of floor space		
연령	Age		
연령별 취업인구	Employee by Age		Working population by age
연령중위수	Median age		
연립주택	Row house		
연탄보일러	Coal boiler		
연탄아궁이	Coal fuel hole		
영업겸용단독주택	A combination of dwelling and business		Both home and business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	Parking lot within a building or for commercial use	주차시설	Building with a parking lot for commercial use
예금, 적금	Savings, installment savings	생활비원천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Recreational, cultural and sporting activities	Industry	
오피스텔	Officetel	거처의 종류	
옥상(옥탑)	Housetop	거주층	
온수시설	Hot and cold water		
옷입기, 목욕하기, 밥먹기, 집안 돌아다니기	Dressing, bathing, eating or loitering inside a house	일상,사회 활동제약유형	
외국인	Foreigner		
외국인가구	Foreigner households		
운송수단	Transportation	근로장소	Vehicle
운수업	Transport	Industry	
원불교	Wonbuddhism	종교	
유교	Confucianism	종교	
유입인구	Inflow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Population	
유출인구	Outflow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Population	
유치원	Kindergarten	보육상태	
육체적,정신적 제약유형	Type of Physical, Intellectual and Psychological Restriction	육체적,정신적 제약유형	
육체적,정신적 제약유형	Type of activity restriction		Type of active restriction
육체적,정신적 제약자 거주가구	Household of physically or mentally disordered people		Household of physically or mentally restricted people
육체적제약	Physical restriction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Legislator, senior official and manager	직업	
이동인구	Migrants		Migrant population
이용교통수단	Means of transportation	이용교통수단	
이혼	Divorced	혼인상태	
일거리 찾아 보았음	Looked for work	경제활동상태-일하지 않았음	
일거리 찾아보지 않았음	Didn't(Not) looked for work	경제활동상태-일하지 않았음	Not looking for work
일반가구	Ordinary Households		General housing
일반가구원	Ordinary household members		General housing members
일반단독주택	Ordinary detached dwelling		General single housing
일상,사회 활동제약유형	Type of daily living restriction	일상,사회 활동제약유형	
일상,사회 활동제약자 거주	Household of daily living restriction		Household for the daily socially disabled
일시적(가끔)이용	Occasional use	빈집사유	
일시휴직	Temporarily laid-off	경제활동상태-일하였음	
일하였음	Worked	경제활동상태-일하였음	

		음	
일하지 않았음	Not worked	경제활동상태-일하지 않았음	
일하지 않음	No work	직업	
일할수없었음	Unavailable for work	경제활동상태-일하지 않았음	Was unable to work
일할수있었음	Available for work	경제활동상태-일하지 않았음	Was able to work
임금근로자	Employee	경제활동상태-일하였음	
입식	Modern	음	
자가	Owned	부업	Own
자가 주차장	Own parking lot	점유형태	
자기집	Home	주차시설	
자녀	Children	근로장소	
자녀의 배우자	Spouse of children		
자동차보유	Household with automobiles	가구주와의관계	
자동차 보유대수	The number of automobiles owned		
자동차 종류별 보유대수	The number of automobiles owned by types		The number of automobiles owned by type
자동차미보유가구	Household without automobiles		
자전거	Bicycle	이용교통수단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Plant, machine operator and assembler	직업	
재래식	Conventional		
재래식아궁이	Conventional fuel hole		
재학	attending		
재학인구	Attending population		
전세금(만원)	Deposit for tenement(10,000 won)		Tenement deposit(10,000 won)
전국	Whole country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Industry	
전기보일러	Electricity boiler		
전문가	Professional	직업	
전세	Tenement	점유형태	
전철, 지하철	Subway	이용교통수단	
점유형태	Type of occupancy	점유형태	Type of occupation
정신적제약	Intellectual and psychological restriction		
제약 없음	No restriction in activity		
제약있음	Restriction in activity		
제조업	Manufacturing	Industry	
조부모	Child's grandparents or grandparents-in-law	보육상태	Child's grandparents
조부모	Grandparents	가구주와의관계	
조부모+손자녀	Married couple with own grandchildren	세대구성	Married couple with own grandchildren
졸업	graduated		
종교	Religion	종교	
종교 없음	No religion	종교	
종사상지위	Status of worker		
주간인구	Daytime Population	Inflow and Outflow Population	
주간인구지수	Daytime Population Index	Inflow and Outflow Population	
주차시설	Parking Places	주차시설	
주택	Housing units		
주택의 종류 및 연건평	Type of housing units and total area of floor space		
주택의 종류별 거주가구	Living households by Type of housing units	거처의 종류	
주택이외 거처의	Living quarters other than housing unit	거처의 종류	

거주가구			
중복응답	Multiple Response		
중앙난방	Central heating		
중퇴	dropped out		
중풍	Paralysis	육체적,정신적 제약유형	
중학교	middle school	교육정도	
증손자녀·그 배우자	Great-grandchildren or his(her) spouse	가구주와의관계	
지상	Ground	거주층	
지역난방	District heating		
지하(반지하)	Underground	거주층	
직업(대분류)	Occupation(Major Group)	직업	
직업(소분류)	Occupation(minor groups)		
직업(중분류)	Occupation(Sub-Major Groups)		
집단가구	Group Households		
집단지설가구	Institutional households		
집안활동	House chore activity	일상,사회 활동제약유형	Household chores
천도교	Chondogyo	종교	
천주교(가톨릭)	Catholicism	종교	
초등학교	Elementary school	교육정도	
초혼연령	The Age of First Marriage		
총가구	Total Households		
총인구	Total Population		
추가계획 자녀수	the number of children planned to have		Intended number of children
출생자녀수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Number of children ever born
출생지	Place of birth	Household Head	
출입구시설	entrance door		
취업자	Working person		
취업자수	Number of working persons		
취업활동	Working activity	일상,사회	

		활동제약유형 육체적, 정신적 제약유형	
치매	Dementia		
침실수	Number of bedrooms		
타지주택미소유	Not own other Houses		Not in possession of other homes
타지주택소유	Own other Houses		In possession of other homes
타지주택소유 여부	Ownership of other Houses		
택시	Taxi	이용교통수단	
통근	Commuters		
통근 통학버스	Commuter school bus	이용교통수단	
통근, 통학 안함	Not commuting	통근/통학유형	
통근, 통학지	Place of work or school		
통신업	Post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통학	Students		
트럭 등 기타	Truck and others	자동차 종류별 보유대수	
판매종사자	Sales worker	직업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Board-framed, vinyl house and dugout	거처의 종류	
평균거주인수	Average occupants		Average number of occupants
평균사용방수	Average rooms used		Average number of rooms used
평균연령	Mean age		
프로판(LPG)보일러	LPG gas boiler		
학원	Private institution	보육상태	
함께 사는 자녀	Children living together	생활비원천	
해외	Foreign countries		
핵수	Number of family nuclei		
행정구역	Administrative districts		
현거주지	Place of usual residence/Current residence		Current residence

현재 수리중	Under repair	빈집사유	
현재살고있는읍면동	in the same "Eup-Myeon-Dong"	통근/통학유형	in the same township
형제자매	Brother or Sister	가족관계	
형제자매·그배우자	Brother or sister or his(her) spouse	가구주와의관계	
형제자매의자녀·그배우자	Nephew or niece or his(her) spouse	가구주와의관계	
호텔·여관 등숙박업소의 객실	Hotels, inns and other lodging houses	거처의 종류	
혼인상태	Marital Status	혼인상태	
혼자 또는 아동끼리	Staying alone or with other children	보육상태	Alone or with other children
화장실	Bathroom	화장실	
활동 제약유형	Type of restriction in activity		Type of activity restriction
활동 제약자거주가구	Household with disordered people		Household for restricted people

IV. 인구주택총조사와 정책

제 1장.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국가정책 연계 방안 연구

1. 머리말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통계청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특히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한다면, 주요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방안을 찾아내라는 요구에 따라서 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프레임을 작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국가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검토해야 할 검토과제로 4개의 소주제가 설정되었다. 그것은 (1)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정책 쟁점들의 연계성에 관한 조사 연구 (2) 종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를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사례 연구 (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정책 활용방식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4) 정책부서 이용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는 추가적인 검토과제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입장에 본 국가통계의 역할을 설정하여, 모두 5개의 소주제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국가정책(state or government policy)은 “정부 등의 공공단체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中河伸俊, 1988; 副田義也, 1989). 또, 정책에는 문제의 제어(制御), 회피(回避), 또는 해결(解決)이라는 관점에서 제도를 바꾸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시책에서 자원을 할당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인구회복, 고용창출, 또는 환경보호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한 정책과제의 책정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책연구기관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항목이 모두 4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수조사 19개 항목, 표본조사 28개 항목(시도항목 3개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참고) (통계청, 2010, 특히 인구주택총조사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전국항목 (44개) 중 시계열 유지항목이 42개, 신규항목이 2개이다. 시계열 유지항목 42개는 5년 주기 항목이 38개이고, 10년 주기 항목이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식수사용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등 4개이며, 신규항목으로 다문화 및 결혼이민자 실태파악을 위하여, 국적과 입국연월이 추가되었다. 전국항목 45개 중에서 41개 항목이 유엔 권고항목이며, 아동보육실태, 고령자생활비원천, 거주기간, 주인가구 및 타지주택소유여부 등 4개가 고유항목이다.

[표 4-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내역

구 분		전수항목 (19)		표본항목 (28)		
		5년 주기	신규	5년 주기	10년 주기	신규
U N 권고 항목	인구 (23)	① 성명	① 국적	① 5년 전 거주지	① 출생지	-
		② 성별	② 입국연월	② 경제활동상태	② 1년 전 거주지	
		③ 나이		③ 종사상 지위		
		④ 가구주와의 관계		④ 산업 ⑤ 직업		

(40)		⑤ 교육정도 ⑥ 혼인상태		⑥ 근로장소 ⑦ 총 출생아 수 ⑧ 혼인 연월 ⑨ 통근학 여부 ⑩ 통근학 장소 ⑪ 이용교통수단 ⑫ 통근학 소요시간 ⑬ 활동계약		
	가구 (11)	① 가구구분 ② 사용방수 ③ 주거시설형태 ④ 점유형태 ⑤ 건물 및 거주 층	-	① 난방시설 ② 주차장소 ③ 임차료	①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②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현황	①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주택 (6)	① 거처의 종류 ② 주거용 연면적 ③ 건축연도 ④ 층 방수 ⑤ 주거시설 수	-	① 대지면적		
고유 항목 (7)	인구 (5)			① 아동보육 ② 추계계획 자녀 수 ③ 고령자생활비 원천	① 현 직업 근무연수	① 사회활동
	가구 (2)	① 주인가구 및 타지 주택 소유여부	-	① 거주기간		

본 연구는 위의 5가지 검토과제를 순차적으로 보고하기 전에, 유엔이 정한 「인구·주택 센서스의 원칙과 권고사항(제2차 개정)」(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에 기술되어 있는 인구센서스와 주택센서스의 정의와 기본적 특성을 정리한다(United Nations, 2007). 먼저, 센서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구센서스: 특정의 시점에 있어서 국내 또는 국내의 명확히 구분된 일부의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 관하여 인구, 가족 및 가구, 경제, 사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간행 등의 방법에 의해 보급시키는 전체의 과정

주택센서스: 특정의 시점에 있어서 국내 또는 국내의 명확하게 구분된 일부의 지역에서 모든 주거와 거주자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집계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간행 등의 방법에 의해 보급시키는 전체의 과정

당초에, 유엔은 인구주택센서스의 원칙을 설정하면서, 센서스의 기본적 특징으로서 4가지의 기능을 강조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본 연구의 주제인 센서스 결과와 국가정책의 연계성 강화 방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엔의 센서스 매뉴얼이 강조하는 4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센서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이다. 구체적으로, 센서스는 “정부예산”과 “공공서

비스의 배분”이라는 경제적 민주주의, 선거의 의식의 정수 할당이라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공공정책의 일차적 기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통계정책과 관련되는 것으로 다른 통계의 기준(벤치마크)과 표본추출의 프레임 등 통계체계의 틀을 제공한다.

(3) 지역개발정책이나 특수인구(special population)의 사회정책과 관련되는 것으로, 소지역통계와 상세한 제표작성 결과는 물론 조손가족(祖孫家族)이나 3세대 이상의 동거친족가구와 같은 규모가 작은 집단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4)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초저출산이나 고령사회의 미래와 관련된 중장기 정책이나 프로그램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센서스는 장래인구추계, 장래가구추계, 그리고 각종 파생적 추계작업에 필요한 기초데이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유엔의 센서스 권고사항에는 인구센서스와 주택센서스는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양자는 하나의 통합된 조사로 실시하는 것도 좋고, 각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대다수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인구와 주택의 양 부문에 대하여 동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외국인 인구에 대한 집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서 출신국가나 입국연도에 대한 신규항목을 추가하였고, 특히 현 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미를 부각하는 조사항목, 가령 환경 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활용도나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신규항목을 추가하였다. 또 생활환경의 변화 특히 가족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센서스 비용을 경감하고 응답부담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조사를 대상가구의 30%를 목표로 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21세기의 전체상을 만드는 통계조사로 새롭게 변신시키려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United Nations, 2007).

본 연구의 보고에서, 일차적으로 앞에서 설정한 5개의 검토과제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 먼저, 두 번째의 검토과제인 “중전의 센서스 결과표에 대한 정책부서의 활용사례 연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과가 2010년 센서스를 준비하기 위하여 2007년 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자료이용기관의 조사표 조사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 조사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연구소, 전문가집단이 주요 응답자로 되어 있지만,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인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를 않으며, 따라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설득력이 있는 해석을 하는데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몇 개의 개방형 질문(open-ended question)에 대하여 작성된 응답내용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국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제안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여 보고하기로 한다.

다음은 나머지 4개의 과제인데, 그것은 (1) 센서스 조사항목과 주요 국가정책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2) 센서스의 입장에서 국가통계의 근본원칙 (3) 센서스의 조사항목에 대한 정책 활용방식에 대한 해외사례연구 (4) 정책부서 이용자들을 위한 센서스 자료 제공방법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이들은 주로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관, 가령 통계국(Statistical Division), 인구국(Population Division) 또는 유럽경제이사회(ECE,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와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이 작성한 매뉴얼과 안내책자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물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 인구사회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정책보고서나 통계총람을 검토하여, 그것을 토대로 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것이다. 또, 마지막에 제시되어야 할 센서스 결과를 국가정책과의 연계

강화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자료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기 발견적 프로그램(heuristic program)을 제안하도록 노력하면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맥락에서 본 국가통계의 근본원칙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2.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국가정책 간의 연계성 검토

인구총조사라고 하면, 그것이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의 정책수립, 계획, 행정관리,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은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구주택총조사의 “본질적 특성”(essential feature)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김민경, 2000, 권태환·김두섭, 2002, United Nations, 2007).

한편 주택총조사는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주택통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주거용 주택을 상업적으로 개발하거나,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시설의 부지선정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한 나라 인구의 규모, 분포, 특징에 대한 정보는 그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인구학적 상황을 기술하고, 나아가 나라 전체에 거주하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여 복지 상태의 개선에 필요한 건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책정하는데 필수적이다. 결국, 인구주택총조사는 그 나라의 전체는 물론 행정단위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 가능한 기본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전반적인 기획과정이나 국가발전의 관리에 기여한다. 최말단의 소지역 행정단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은 교육, 고용 및 인적자원 개발, 출산관련 보건이나 가족계획, 주택과 환경, 보자보건, 농촌개발, 수송 및 고속도로 계획사업, 도시화, 복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평가하는데 소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또,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과 정부프로그램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데 필요한 사회지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자료원이 된다.

본 연구는 <표 1-1>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인구총조사와 주택총조사로 구분하여, 인구총조사의 조사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1) 조사대상 인구 (2) 지리적 및 국내인구이동 특성 (3) 국제인구이동특성 (4) 가족 및 가구 특성 (5) 인구학적 특성 (6) 출산력 및 사망력 (7) 교육 및 사회적 특성 (8) 경제적 특성 등 8개의 주제영역으로 구분하여 [표 4-2]에 제시한다. [표 4-2]의 주제영역은 유엔 통계국의 「인구·주택 센서스의 원칙과 권고사항(제2차 개정)」(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United Nations, 2007)과 유럽경제위원회(ECE)와 유럽연합 통계청(Eurostat)이 공동 저술한 「유럽 통계청장 회의의 2010년 인구·주택 센서스 권고사항」(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2010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이다(United Nations, 2006).

[표 4-2]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주제영역별 재분류

	주제영역	조사항목
1	조사대상 인구	상주지 (1)
2	지리적 및 국내인구이동 특성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7)
3	국제인구이동 특성	국적(출생, 조사시점), 입국연월 (2)
4	가구 및 가족 특성	가구구분, 가구주와의 관계, 거주기간, 사용방수, 건물 및 거

		주 층, 주거시설, 난방시설, 수도 및 식수 사용형태, 정보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주차장, 점유형태, 임차료, 타지 주택소유 여부 및 주인가구 여부 (14)
5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나이, 혼인상태 (3)
6	출산력 및 사망력	총출생아수(사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혼인연월 (3)
7	교육 및 사회적 특성	교육정도, 사회활동, 아동보육, 활동제약, 고령자 생활비 원천 (5)
8	경제적 특성	경제활동상태, 종사상 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근로 장소 (6)

본 연구 프로젝트에서 기술된 우리나라의 인구총조사 결과와 연관된 통계표의 용도는 주제 영역의 조사항목별로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다. [표 4-2]의 주제영역별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록에, 개별항목별로 조사목적, 문항내용, 전수/표본항목, 관련 통계(행정자료, 통계조사),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통계의 특이사항, 정책 연관성을 정리하여, 조사항목들이 국가정책과 연계가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인구주택총조사의 맥락에서 기술하도록 하였다. 유엔은 「인구·주택 센서스의 원칙과 권고사항」(제2차 개정)(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주제영역별로 해당 조사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기술을 하고 있다.

또, 인구총조사 조사항목의 용도와 관련하여 검토대상이 되었던 보고서의 타이틀은 다음과 같다.

(1) 「발전계획 보조수단으로서의 장래인구추계를 작성하기 위한 일반 원칙」(General Principles for National Programmes of Population Projections as Aids to Development Planning)

(2) 「현재인구 추계방법」(Manual 1, Methods of Estimating Total Population for Current Dates),

(3) 「간접인구추계 방법론」(Manual X: Indirect Techniques for Demographic Estimation),

(4) 「인구변수를 개발계획에 통합하기 위한 장래추계사업 제1권: 종합계획의 방법론, 모듈 1,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개념적 쟁점과 방법론, 그리고 모듈 2, 취학인구, 노동력인구, 취업인구의 장래추계를 위한 방법론」(Projection Methods for Integrating Population Variables into Development Planning, vol 1: Methods for Comprehensive Planning, Module One: Conceptual issues and methods for preparing demographic projections, and Module Two: Methods for preparing school enrollment, labor force, and employment projections)

(5)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체계와 방법론의 개발」(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Framework and Methodologies)

(6) 「인구동태통계 시스템의 원칙과 권고사항, 제2 개정판」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a Vital Statistics System, Revision 2)

1) 조사인구

인구주택총조사의 존재의의는 물론 조사객체인 인구, 가구, 주택을 확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사항목이 상주지(place of usual residence)에 관한 주소 정보이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는 상주인구(de jure population)와 현재인구(de facto population)가 있고, 상주인구는 법정인구(legal population)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상주지 주소 정보는 총인구와 인구의 지역별 분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를 가공하는데 사용한다 (United Nations, 2006).

[표 4-3] 조사대상 인구 부문: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상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지” 정보는 중장기 계획/정책 목적으로 전국의 영구적 인구를 집계하고, 지자체나 도시/농촌 또는 소지역의 지리적 수준에 따라 계획이나 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상주인구의 분포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 정책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주지에 거주하는 상주인구”와 “상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주인구”를 구분할 필요도 있음. ● 주민등록은 전국, 지자체, 소지역의 법정인구를 작성하는데 사용함. 국제인구이동 때문에, 전국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센서스 상주인구가 차이가 나고, 지역별로도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수준에서도 센서스 상주인구와 차이가 있음. ● 주민등록인구는 선거구를 확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수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산정하거나,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많은 나라에서 전국, 자치체(광역, 기초), 또는 읍면동과 같은 말단 행정구역의 상주인구를 확정하는 것이 센서스를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실시하는 법적 요건이 된다(United Nations, 2006, 2007, 2008). 곧, 센서스 인구는 법정인구로서, 그 결과가 바로 국회나 다른 입법기구에서 의석을 배당하는데 사용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며, 병원, 학교 등 각종 사회경제 관련 시설의 입지방식을 계획하는데 사용한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센서스인구가 아니라 행정자료가 그 출처인 주민등록인구를 “법정인구”(legal population)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민등록인구가 선거구획정, 지방교부금 산정에 이용되는 핵심자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를 센서스의 상주인구 집계원칙에 의거하여 제대로 보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향후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통계는 법정인구를 확정하는 절대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인구가 전국, 지자체, 읍면동 등의 소지역에 대하여 법정인구로서 역할을 하여 왔다. 주민등록인구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되는 행정목적의 통계로서 “상주인구”의 개념에 충실한 것이 아니며, 국제인구이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 수준에서도 센서스 상주인구와 차이가 나고 있다. 또 지역별로도 주민등록의 전출입신고가 적

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수준에서 센서스 상주인구와 차이가 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등록센서스를 실시하는 나라들과 같이, 인구총조사의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주지에 거주하는 상주인구” (usual population residing at the usual place of residence)와 “상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주인구” (usual population not residing at the usual place of residence)를 구분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표 4-4] 지리적 및 국내인구이동 특성: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출생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지별 인구규모와 인구의 생애 이동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출생 시점에서 어머니의 상주지, 곧 통상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생지를 조사한다. 국내인구이동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전출입 인구를 위한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1년 전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인구이동 관련 정책의 개발과 인구주택총조사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전출입 인구를 위한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의 국내인구이동 항목과 주민등록 인구이동통계를 비교검토하고, 특히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기간, 반복이동과 관련한 정책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3	5년 전 거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인구이동 관련 정책의 개발과 인구주택총조사 직전 5년간 발생한 전출입 인구 정보를 기준으로 그들을 위한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4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 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통학에 관한 조사항목은 일일 인구이동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상주지 인구개념의 보완으로 주간/야간 인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도시 공동화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생활권역 연구에도 중요한 변수로 사용한다. ●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연속성을 국내인구이동과는 별도로 지역별 교통 흐름의 방향과 교통량을 시간 및 교통수단 별로 파악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한다. ● 통근/통학에 대한 정보는 조사시기와 데이터 이용시기의 시간차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표본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역지 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생활권역(정주권)에 관한 정책은 물론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의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의 정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상주지 정보는 다양한 집계방식으로 전국수준에서 최하위의 읍면동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료를 제공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상주지 정보를 이용한 제표결과는 전국, 지역, 시도 광역지자체에서 시군구 기초지자체, 읍면동 또는 조사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사항목을 결합하여 관련통계를 작성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이러한 중요한 특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소지역에 대하여 흥미로운 변수의 추정치를 개발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령 필요한 특징에 대한 마이크로 수준의 자료에서 통계표를 직접 작성하거나, 표본조사나 행정통계와 같은 다른 자료원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결합하여 추

정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해서 “가공통계”(processed statistics)를 작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전광희, 2005, 전광희 외, 2007)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수많은 소지역 하나하나의 자료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큰 지역이나 국가 전체를 연구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다. 통계이용자는 소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대상인 지역들에 대하여 통계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소지역 간의 통계정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하여 볼 수도 있다. 현대의 대용량 컴퓨터 기술은 제표작업에서 소지역의 경우 셀 크기가 너무 작아서 비밀준수나 자료설계상의 문제로 소지역 자료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제외하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소지역 분석에 사용하는 것을 대단히 쉽게 만들고 있다. 가령, 인구정책이 지역수준에서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은 최하급 행정단위의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 간 편차를 관찰하고, 인과관계의 정확한 평가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지리적 및 국내인구이동 특성

인구이동은 인구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인구분포의 추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구총조사의 두 번째 주제영역인 지리적 및 국내인구이동에는 조사항목으로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 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이 포함되어 있다([표 4-4] 참고). 출생지, 1년 전 거주지, 5년 전 거주지는 현재 거주지 정보와 함께, 생애이동(lifetime migration)과 조사시점 기준 1년 또는 5년간에 걸쳐서 생겨나는 인구이동을 전국수준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 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은 상주인구를 야간인구(nightly population)로 보고, 통근·통학인구를 주간인구(daily population)의 관점에서 파악한 것이다. 특정지역의 경우, 주간인구는 야간인구인 상주인구보다도 오히려 많은 행정서비스나 공공서비스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도시행정의 새로운 대상이 되기도 한다. 국내이동에 대한 자료는 출산력이나 사망력의 자료와 함께,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인구이동 정책을 결정하고, 그것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추계인구를 작성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인구이동 조사항목의 출생지는 출생지별 인구규모와 인구의 생애 이동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출생 시점에서 어머니의 상주지, 곧 통상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생지를 조사한다. 국내인구이동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전출입 인구를 위한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이다. 다음은 1년 전 또는 5년 전의 거주지를 이용하여 전출입 통계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자료는 국내인구이동 정책의 개발과 인구주택총조사 직전 발생한 전출입 인구를 위한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인구주택총조사의 국내인구이동 항목과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인구이동통계를 비교검토하고, 특히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기간, 반복이동과 관련한 정책분석이 인구이동통계와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데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통근·통학에 관한 문항은 만 12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된다. 이 자료는 교통관련 정책수립과 상권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읍면동별 지역 간의 통근·통학 규모 및 유형, 통근·통학 소요시간에 대한 자료는 도로망, 전철노선 건설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표 4-5] 국제인구이동 특성: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국적(출생, 조사시점), 외국인 입국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족 및 이민자 2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글로벌 시대에 혼인이주자와 취업노동자의 유입으로, 다문화 가족 및 이민자 2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전달체계, 취업노동자들의 밀집거주지역과 인구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차별철폐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도움이 된다.

용교통수단은 지역별 교통수단 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통근·통학인구 자료는 주간 유입/유출인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주지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별 인구규모에 반영되지 않는 도심지역의 주간 행정수요 및 상권분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국제인구이동 특성

세계화나 지역화의 전반적 추세에 발맞추어, 최근에 인구이동 중에서 국경을 넘는 인구이동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관심의 영역이 되었다. 인구총조사의 국제인구이동 특성 부문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출생 시점과 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의 국적(nationality)을 묻고 있으며, 또 우리나라에 입국한 시점이 언제인가를 조사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4-5] 참고). 우리나라 인구총조사에서 1960년에 전수조사로 국적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지만, 외국인 노동자와 혼인 이주자들의 국제인구이동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의 외국인 문제를 인구주택총조사의 신규 조사항목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인구총조사에 출생시점의 국적과 조사시점의 국적,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 연도를 묻는 조사항목이 설정됨으로 해서, 다문화 가족 및 이민자 2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전달체계, 취업노동자들의 밀집거주지역과 인구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차별철폐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사회통합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출생시점의 국적과 조사시점의 국적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인구는 4개의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United Nations, 2006).

(1) 외국출생 외국인: 외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이 없는 사람들로,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 출생 입국자를 포함한다.

(2) 한국출생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출생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적이 없는 사람들로, 여기에는 대다수가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2세 집단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3) 외국출생 한국인: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사람들로, 이들은 대다수가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부모가 우리나라 국적인 사람들이나 부모는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4) 한국출생 한국인: 우미나라에서 출생했고, 현재 우리나라 국적이 있는 사람들로서, 이들은 부모가 우리나라 국적으로서 국내에서 출생한 사람이나 외국에서 출생했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의 2세들로 구성될 것이다.

2010년 인구총조사는 (1) 외국출생 외국인 (2) 한국 출생 외국인 (3) 외국 출생 한국인 (4) 한국출생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신규항목으로 출생시점과 조사시점의 국적을 묻고, 출생시점에 외국인이었거나 조사시점에 외국인인 응답자에 대해서는 입국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인구이동은 초기단계이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의 2세들이 성숙하면서, 국제인구이동에 관한 문항은 부모의 국적 또는 부모의 출신국(country of birth)을 추가적인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인구주택총조사의 국제인구이동통계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통합정책(social cohesion policy)의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4) 가족 및 가구 특성

인구현상을 개개인 곧 자연인을 분석단위로 파악하는 것을 원자적 접근방식(atomic approach)이라고 한다면, 이들이 혼인, 출산, 입양 등에 의하여 형성하는 가족을 분석단위로 파악하는 것을 분자적 접근방식(particle approach)이라고 한다. 2010년 인구총조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구총조사의 가족 및 가구 특성을 주제영역으로 설정하고, 그 주제영역에 가구구분, 가구주와의 관계를 핵심 조사항목으로 두고 있다([표 4-6] 참고). 물론, 가구구분은 가구를 일반가구(ordinary households)와 집단가구(collective households)로 나누기 위한 문항이며, 일반가구 특히 친족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주와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 이것은 가구원수, 가족 핵(family nuclei) 수, 세대별 구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사항목이다.

[표 4-6] 가족 및 가구 특성: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가구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구분에서 집단(시설)가구의 유형을 제안하지 않지만, 가구원수를 유형별로 집계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의 진전이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교육시설, 건강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군대시설, 종교시설 등의 유형별 가구원수를 집계하고, 집단시설 유형별로 가구원수를 추계하는 것은 서비스 전달대상 인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주택통계, 특히 주택보급률은 분모인 주택 보급 대상 가구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다. 현행 주택보급률은 분모로 총가구수에서 집단가구를 빼고 일반가구만을 분모로 하는데, 여기에는 친족가구, 비친족 가구원을 포함하는 친족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로 구성된다. 물론, 1인 가구,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를 분모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2	가구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가족구조와 가족유형은 가족정책의 투입요인을 고려하는데 유효한 정책변수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 가족 및 가족의 복잡성이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족 및 가구관계 선택지에 의하여 충분하게 그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 및 가구구성을 행렬로 “기준 가구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 정보는 가구주율을 지리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교육, 경제활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래가구추계를 실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정책은 물론 주택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음
3	거주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기간의 안정성은 친족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친족가구에 대하여 주택유형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거주용 이외의 주택)로 또 자가, 전세, 월세별로 제표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또는 읍면동의 소지역에 대해서 주택공급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4	사용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방수에 관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전국, 지역별로, 가족 및 가구 특성별로 제표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가구 특히 1인 가구와 친족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환경을 파악할 수 있고, 주거의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가구의 비율을 측정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5	건물층수 및 거주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층수와 거주층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전수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제표화된 적이 없으며, 만약 이것이 제표화된다면, 지하(반지하) 또는 옥상(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거주공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6	난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시군구 지역에 대하여 주택을 거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난방시설을 파악함으로써, 주택정책은 물론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구 등 편의시설의 개수별로 정리하여, 중앙기 에너지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환경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를 줄여서 환경파괴를 완화하는 난방시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7	수도 및 식수 사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시군구 지역에 대하여 주택을 거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들이 어느 정도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주택정책은 물론 환경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8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부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에서 표본규모가 대단히 큰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지역별(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또 가구나 거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보통신기기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정보화 수준의 지역간 불평등의 개선정도를 하나의 지역균형발전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9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부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에서 표본규모가 대단히 큰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지역별(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또 가구나 거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교통수단의 보유와 이용 현황을 검토하면, 자동차의 대중화와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다른 교통수단의 환경친화적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0	주차장소	●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부로 실시되는 표본조사로서 표본규모가 대단히 큰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지역별(광역시자체,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또 가구나 거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차장소 현황을 검토하면, 자동차의 대중화와 자전거나 다른 교통수단의 환경친화적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1	점유형태 및 임차료	● 이 항목을 일차적으로 주택이 주거전용, 영업겸용인가를 구분할 수 있고, 소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등) 등의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택임차료 정보를 획득하고,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기초자료 획득에 중요하다.
12	타지 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 타지 주택 소유여부는 모든 가구에 대해 조사 <다른 곳에 주택 소유>는 가구원 중에 누구라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해당 <주인가구>또는 <대표가구>에 해당하면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 계속 조사한다. .주인가구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든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하되,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그중 주택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함. ● 이 문항은 실질적 주택보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보유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가구 및 가족 특성은 주택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이 주제영역에는 거주기간, 사용방수, 건물층수 및 거주층수, 난방시설, 수도 및 식수 사용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 현황,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 현황, 주차장소, 점유 형태 및 임차료, 타지 주택 소유 및 주인 가구 여부 등 모두 11개의 문항이 들어 있다. 이들 조사항목은 주택과 관련된 가구 및 가족의 생활여건은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의 중앙부처는 물론,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들도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적합성이 대단히 큰 문항이다.

조사항목에서 ‘가구구분’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제표작업은 집단(시설)가구의 유형을 제안하지 않는다. 그러나 집단(시설)가구의 경우, 가구원수를 유형별로 집계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진전이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교육시설, 건강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군대시설, 종교시설 등의 유형별 가구원수를 집계하고, 집단시설 유형별로 가구원수를 추계하는 것은 향후 21세기 서비스 전달대상 인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또 ‘가구구분’ 자료는 주택통계, 특히 주택보급률은 분모인 주택 보급 대상 가구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다. 현행 주택보급률은 분모로 총가구수에서 집단가구를 빼고 일반가구만을 분모로 하는데, 여기에는 친족가구, 비(非)친족 가구원을 포함하는 친족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의 비(非)친족가구로 구성된다. 물론, 1인 가구, 5인 이하의 비(非)친족가구를 분모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가구주와의 관계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으로서, 가족과 가구의 전체적 윤곽을 그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정보이다. 이 변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가족구조와 가족유형은 가족정책의 투입요인을 고려하는데 유효한 정책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 가족 및 가족의

복잡성이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족 및 가구관계 선택지에 의하여 충분히 그려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 그 이유는 이제 “가구주” 개념 자체가 전통사회에서 보는 의미를 상실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서도 “기준 가구원”(reference household member)을 중심으로 가족 및 가구의 구성을 행렬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전반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 정보는 가구주율을 지리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교육, 경제활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래가구추계를 실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정책은 물론 주택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정책과의 연계성이 큰 조사항목이다.

가구 및 가족 특성의 조사항목으로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과 주차 장소에 대해서도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이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부로 실시되는 표본조사는 표본규모가 대단히 큰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지역별(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또 가구나 거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교통수단의 보유와 이용 현황을 검토하면, 자동차의 대중화와 자전거나 오토바이 또는 다른 교통수단의 환경 친화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정보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자전거 활용 극대화 대책의 토대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점유형태 및 임차료, 그리고 타지 주택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에 대한 문항이다. 먼저, 점유형태 및 임차료는 일차적으로 주택이 주거전용, 영업겸용인가를 구분하고, 소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등)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택임차료 정보를 획득하고,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기초자료 획득에 중요하다. 다음은 타지 주택소유 여부인데, 모든 가구에 대해 조사 <다른 곳에 주택 소유>는 가구원 중에 누구라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응답자가 <주인가구> 또는 <대표가구>에 해당하면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 계속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주인가구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든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하되,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그 중에서 주택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하게 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우리나라에서 국토해양부가 작성하는 주택통계에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 상태를 점검하는 통계지표 중에서 주택보유율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5) 인구학적 특성

인구총조사가 흔히들 인구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조사항목으로서 성별(남녀), 나이(연령), 혼인상태 등 3개의 문항이 순수한 인구통계변수로 포함되어 있다 ([표 4-7] 참고). 물론, 다음의 출산력, 사망력 또는 앞에서 본 인구이동(국내이동, 국제이동)도 인구통계 변수로 본다면 인구총조사에 포함된 인구통계변수는 더 많아지겠지만, 인구정태(population statics) 곧 하나의 정해진 시점에서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변수는 그리 많지 않다고 해성별(남녀)은 연령과 더불어, 인구통계의 핵심변수에 해당한다. 성별 인구구성비,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핵심지표이고, 연령, 혼인상태 등 인구통계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의 범주함께 횡단분류를 실시하여 해당인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는 주요변수가 된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젠더연구(gender studies)의 필수사항이고, 이 때문에, 교육연수, 경제활동, 혼인상태, 인구이동, 활동제약, 생활여건과 같은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 특성의 경우, 남녀별로 자료를 분리 제시하는 것이 남녀

격차(gender gaps)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는 행동강령에서 모든 국가통계가 적합한 경우에는 성별, 연령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여성과 남성에 관련된 많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와 국책연구원인 여성정책연구원은 사회경제의 관련부문에서 성인지 통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것이 유럽의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통계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야할 것이다.

[표 4-7] 인구학적 특성: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성별(남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성별 구성비, 성비(여자 100명당)는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지표이고, 연령 등 인구통계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의 범주별로 횡단분류를 실시하여 해당인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주요변수가 된다.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젠더연구(gender studies)의 필수사항이고, 이 때문에, 교육연수, 경제활동, 혼인상태, 인구이동, 활동제한, 생활여건과 같은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 특성의 경우, 남녀별로 자료를 분리 제시하는 것이 남녀격차(gender gaps)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는 행동강령에서 성별, 연령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여성과 남성에 관련된 많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2	나이(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연령)는 성별과 더불어, 인구주택총조사 제표작성에서 고려되는 핵심변수로서, 만 연령 자체와 함께 다양한 파생변수로서, 영유아인구, 아동인구, 보육인구, 학령인구(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징집대상연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자인구, 가임연령인구 등 인구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서비스 대상 인구를 파악하고 나아가 각종 인구 및 사회통계의 지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 정책관련 주요지표: 중위연령, 평균연령,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고령자부양비, 고령자 잠재부양비(PSR),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자인구(전기고령인구, 후기고령인구)의 비율 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자: 65세이상 (전기고령자 60-64세, 후기고령자 65세 이상)
3	혼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상태는 가구의 형성과 해체를 일시 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이것은 출산행태는 물론, 건강 및 이환율, 인구이동 등의 인구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이다. ● 혼인 갭(marriage gap): 유배우상태에 있는 사람이 미혼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다 혼인 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특성차이를 의미하며, 이것을 남녀격차(gender gap)로 혼돈해서는 안 되며, 혼인 갭이 이들 정치적/경제적 갭과 인과관계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관관계로 표현된 것으로서 정책관련 함의가 별로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인구총조사에서 나이(연령)는 성별과 함께, 인구주택총조사 제표작업의 대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고려되는 핵심변수로서, 만 연령 자체와 함께 다양한 파생변수로서, 영유아인구, 아동인구, 보육인구, 학령인구(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징집대상연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자인구, 가임연령인구 등 인구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서비스 대상 인구를 파악하고 나아가 각종 인구 및 사회통계의 지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연령과 관련되는 정책관련 주요지표에는 중위연령 (median age), 평균연령 (mean age), 총부양비(total dependency ratio), 유소년부양비(young dependency ratio), 고령자부양비 (elderly dependency ratio), 고령자 잠재부양비(PSR, potential support ratio),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자인구(전기고령인구, 후기고령인구)의 비율 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자: 65세 이상 (전기고령자 60-64세, 후기고령자 65세 이상) 등이 있다.

인구총조사의 인구통계 조사항목 중에서 혼인상태 가구의 형성과 해체를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한 것으로, 이것은 출산행태는 물론, 건강 및 이환율, 인구이동 등의 인구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이다. 한편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국가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에서 혼인 갭(marriage gap)은 중요한 개념요소가 될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가령, “유배우상태에 있는 사람이 미혼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다”에서 보는 것처럼, 혼인상태가 행동, 가치관, 심지어 지식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혼인 갭은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특성이 어떻게 미혼인 사람과 결혼한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이것을 남녀격차(gender gap)로 혼돈해서는 안 된다. 혼인 갭이 이들 정치적/경제적 갭과 인과관계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관관계의 표현에 불과하여 정책관련 함의가 별로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6) 출산력 및 사망력

인구총조사의 주제영역으로 설정한 <출산력 및 사망력> 부문에서는 총출생아수(사망아동수), 추가계획자녀수, 초혼연령 등 3개의 조사항목이 2010년 인구총조사의 표본조사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표 4-8] 참고). 혼허들, 출생, 사망은 인구동태통계로서 인구주택총조사는 정태통계이기 때문에, 이들 문항을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정해진 시점이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에 포함된 출산력과 사망력에 대한 자료는 인구동태통계자료를 상호점검하고 때로는 인구동태통계에서는 획득하기 힘든 정보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2005년 인구총조사에서 계획출산자녀수가 문항으로 포함되어, 장래인구추계에서 최종추계연도(50년 추계지평을 가정하면, 2055년)의 목표출산율(target fertility)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보완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제표작업이 늦어지고, 장래인구추계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으로 불필요한 것을 넣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주관적” 의견을 묻는 조사항목이라는 이유로 삭제의견이 있었으나, 최후에 여전히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문항을 유지하여, 장래인구추계 작업에 유효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표 4-8] 출산력 및 사망력: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총출생아수 (사망아동수)/ 추가계획자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동태통계와는 별도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출산력과 영유아 사망률에 대한 인구동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시대의 인구정책의 토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구동태통계로 파악하기 힘든 총출생아수, 생존아수는 코호트 출산율(cohort fertility)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장래 추가계획자녀수(planned number of births)는 향후 출산동향과 관련하여 장래추계를 위한 입력변수, 특히 목표출산율(target fertility)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에 포함되었으나 조사부실과 장래추계의 성급한 로드맵으로 활용기회가 없었음) 범주별로 횡단분류를 실시하여 해당인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주요변수가 된다.
2	초혼연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연월에서 도출한 혼인연령과 조사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총출생아수를 제표화하여, 혼인연령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혼인연령을 정책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2010년 인구총조사의 출산력 및 사망력 부문에서 총출생아수(사망아동수) 및 추가계획자녀수는 우리나라의 1.0에 근접하는 초저출산(super-low fertility) 현상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구동태의 기본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의 인구정책에서 토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행의 인구동태통계로 파악하기 힘든 총출생아수, 생존아수는 코호트 출산율(cohort fertility)의 추이와 전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장래 추가계획자녀수(planned number of births)는 향후 출산동향과 관련하여 장래추계의 각종 시산을 위한 출산력 변동의 입력변수, 특히 최종추계연도의 목표출산율(target fertility)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에 포함되었으나 조사부실과 장래추계의 성급한 로드맵으로 활용기회가 없었음) 범주별로 횡단분류를 실시하여 해당인구의 인구통계적 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주요변수로 기능하게 된다. 또 혼인연월을 조사항목으로 하여 도출한 혼인연령과 조사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총출생아수나 사망아동수에 대한 제표작업을 하고, 혼인코호트별로 혼인연령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혼인연령이 어떻게 정책변수가 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여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표 4-9] 교육 및 사회적 특성: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교육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규 교육수준을 측정하여, 인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수급대책,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양성 계획의 투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 ● 장래인구추계와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의 장래전망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별 인구구성을 예측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장기 인적자본 수급계획과 사회경제발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2	사회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으로서, 응답자의 응답부담이 극소화된다면, 탈근대적 가치관의 실현인 사회전체의 자원적 참여활동(participatory activities)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다고

		<p>판단하고 있다.</p> <p>*자원주의(volunteering): 고전적인 정의로는 자발성(자주성), 이타성(사회성, 공공성, 공익성)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것에 선구성(선견성, 창조성, 개척성)이 더해져 모두 4가지의 특성이 자원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p> <p>혼인연월에서 도출한 혼인연령과 조사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총출생아수를 제표화하여, 혼인연령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혼인연령을 정책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p>
3	아동보육	<p>●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으로서, 아동보육은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 보육서비스 제공자(시설)와 연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실태를 지역별로, 아동의 성별, 연령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자료이며, 고령자의 손자녀 보육부담 등 아동, 여성, 고령자 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하고 가족형성 활동과 출산력,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노동, 일과 가정 양립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p>
4	활동제약	<p>●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으로서, 여성, 아동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는 조사항목으로서,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활동 장애자와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의 수, 분포 및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성, 연령, 교육정도 등)을 파악하여 장애 문제와 장애인 관련 복지수요파악 등 장애인·장애인 복지정책에 사용하고,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에 관한 모집단 자료를 대규모의 통계조사를 통하여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p>
5	고령자 생활비 원천	<p>● 이 문항은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층의 평균수명이 신장되고, 저출산으로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경제적인 자립도나 연금 등 고령자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p>

7) 교육 및 사회적 특성

다음은 인구총조사가 인구통계 외에 대규모의 통계조사로서 수집하는 교육 및 사회적 특성 부문의 조사항목이다. 여기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정도와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을 반영하여 실시되는 조사항목으로 사회활동, 아동보육, 활동제약(장애), 고령자 생활비의 원천 등 5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표 4-9] 참고).

교육정도는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으로서, 국민의 정규 교육수준을 측정하여, 인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수급대책,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양성 계획의 투입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장래인구추계와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의 장래전망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별 인구구성을 예측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장기 인적자본 수급계획과 사회경제발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구총조사에서는 응답자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응답내용의 품질을 보증하기가 힘들며, 학력을 과장하여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교육정보시스템(NEIS)은 1982년 이후 졸업생부터 이용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0년 인구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구에 대해서 교육대장(education register)을 만들어, 향후 실시될 등록인구주택총조사의 행정자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사회활동은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으로서, 응답자의 응답부담이 극소화된다면, 탈근대적 가치관(post-modern value)의 실현인 사회전체의 자발적 참여활동(participatory activities)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에 신규항목으로 포함된 “사회활동”은 통계청의 사회조사(주제부문: 사회참여)에서 “지난 1년간 어떠한 단체에 참여를 하였는가?”의 형태로 조사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사회조사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에서와 같이 단체의 범주를 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특정 문항에 대하여 분류 또는 점검목적의 필터문항을 설정하기가 힘들어, 정확한 조사가 어렵고, 자의적인 응답이 될 개연성이 있으며, 응답의 범주도 사회조사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총조사에서는 아동보육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으로서, 만 12세 미만의 아동을 직접 보육서비스 제공자(사람 또는 시설)와 연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조사항목은 우리나라의 보육실태를 지역별로, 아동의 성별, 연령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자료를 생산할 것이며, 고령자의 손자녀 보육부담 등 아동, 여성, 고령자 복지와 관련한 통계를 생산하고,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또, 장애는 용어의 부정적 인식을 근절하기 위하여, “활동제약”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조사항목으로서, 21세기 사회복자사업에서 여성, 아동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며,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활동 장애자와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의 수, 분포 및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성, 연령, 교육정도 등)을 파악하여 장애 문제와 장애자 관련 복지수요파악 등 장애인 복지정책에 사용하고,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에 관한 모집단 자료를 대규모의 통계조사를 통하여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의 생활비 원천은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층의 평균수명이 신장되고, 저출산으로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경제적인 자립도나 연금 등 고령자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8) 경제적 특성

2010년 인구총조사의 경제적 특성 부문에 포함된 조사항목에는 [표 4-10]에 제시된 것처럼,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현 직업의 근무연수, 근로장소 등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총조사를 이용하여 15세 이상의 인구에 대하여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인구학적 사회적 특성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감할 수 있는 큰 그림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노동력에 관한 유사통계는 물론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에 대한 공적 장부(official register) 등의 행정자료에서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에 해당하는 정도의 대규모 조사를 하기 힘들고, 이 때문에 상당한 표본추출오차(sampling error)를 포함하고 있으며, 표본규모가 작은 통계조사를 통한 소지역 추정이나 직업 또는 산업별 상세추정은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또 우리나라 고용보험에 사용되는 행정자료는 직업이나 산업의 코딩 시스템이 그리 정교하지 않으며,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및 피보험자 관리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인구

에 대한 포괄범위(coverage)가 그리 크지 않다는데도 문제가 있다. 또, 주택총조사가 인구총조사와 동시에 실시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유형, 교육수준 등의 다른 조사항목도 가구원의 경제활동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정보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관련 문항에서 가구원의 경제적 특성에 대한 상세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0] 경제적 특성: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경제활동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취업, 실업, 비활동 인구)는 여타 인구학적 사회적 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동일 시점에 획득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감할 수 있다. ● 이러한 통계는 통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통계조사는 표본추출 오차가 크고, 소지역 정보를 얻기 힘들고, 산업별로, 직업별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하기 힘들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인구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가 큰 응답을 얻을 수 있다면, 주택 특성과도 횡단제표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
2	종사상의 지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사업주,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무급가족노동자)에 대한 정보의 획득시점이 인구통계(성, 연령별) 사회적(사회활동, 교육) 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토대자료가 된다. ● 이와 유사한 통계는 통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통계조사는 표본추출 오차가 크고, 소지역 정보를 얻기 힘들고, 산업별로, 직업별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하기 힘들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인구 항목은 주택 특성과도 횡단제표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종합적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
3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총조사와 통계조사의 산업별, 직업별 정보는 노동력 변화의 추이를 추적하고, 신흥 산업과 직업의 프로필을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의 산업·지역별 발전 계획 및 인력수급 계획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격차 또는 차별을 파악하고, 종사들을 유해화학물질이나 건강/안전위험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근로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장소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직업, 산업, 근무연수 등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노동의 질에 대한 정책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노동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정책 자료를 획득하여, 여성의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인구총조사는 다른 자료원의 통계들이 비교될 수 있는 벤치마크 정보를 제공한다. 인구총조사는 대부분의 가구기반 통계조사의 표본프레임을 제공한다. 이 때문에, 인구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총조사비용의 절감이나 응답자의 부담 경감이라는 원칙을 엄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벤치마크 정보로서나 표본 프레임에 가능한 많은 문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료원이

다를 때, 그것은 포괄범위, 개념과 정의, 분류방식(classification scheme), 통계단위(statistical unit), 참조기간(reference period), 정확도(precision),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등의 차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 특성의 경우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를 제시할 때, 그러한 차이점들을 통계표(statistical tables), 메타데이터(meta-data), 그리고 분석 텍스트(analytic text)에서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으로서, “경제활동상태”(activity status) 바로 취업, 실업, 비(非)활동(non-activity)에 관한 정보는 여타 인구통계 및 사회통계 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시점과 동일하게 획득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감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통계는 통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공적 장부 등의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통계조사는 표본규모가 크지 않아 표본추출오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소지역 또는 소집단 통계정보를 얻기 힘들고, 산업별로, 직업별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하기 힘들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인구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가 큰 응답을 얻을 수 있다면, 주택 특성과도 횡단제표를 할 수 있어서, 한나라의 단순한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21세기의 지속가능성을 사정권으로 하는 종합적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으로서 15세 이상 국민 개개인의 종사상 지위(사업주,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무급가족노동자)에 대한 정보는 위에서 언급한 경제활동상태와 동시에 묶음으로 제시되고, 그 정보의 획득시점이 인구통계(성, 연령별) 사회적(사회활동, 교육) 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회계층 연구, 종전에는 계급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나아가 그것을 바탕으로 통합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토대자료로 활용되었다. 종사상 지위는 경제활동상태와 더불어, 유사통계가 통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통계조사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시행되어, 업데이트한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표본규모가 작아서 추출오차가 크고, 소지역 정보를 얻기 힘들고, 산업별로, 직업별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인구 항목인 종사상의 지위는 경제활동상태와 더불어, 주택 특성과도 횡단제표를 할 수 있어서, 사회계층 연구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종합적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으로서, 산업, 직업별 정보는 노동력 변화의 추이를 추적하고, 신흥 산업과 직업의 프로필을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의 산업·지역별 발전 계획 및 인력수급 계획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한다. 또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혼인 상태)에 따른 격차 또는 차별을 파악하고, 종사자들이 유해화학물질이나 건강/안전위험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으로 “근로장소”는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근로장소의 “유형”(type)을 근로장소의 “위치”(location)와 구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로장소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과 “자기 집이 아닌 고정된 장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 또는 “고정된 근로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비공식 부문 취업을 포함하여 고용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근로장소의 지리적 특성은 통근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이다. 전체적으로, 근로장소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직업, 산업, 근무연수 등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노동의 질적 특성(qualitative nature of work)

에 대한 정책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특히 남녀별 통계(gender statistics)의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노동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기초자료를 획득하여, 여성고용의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9) 주택항목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총조사는 주택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주택통계를 개발하고 위하여 사용하며, 민간부문에서는 주거용 주택을 상업적으로 개발하거나,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택항목은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대지면적, 총방수, 건축연도, 편익시설 수 등 5개를 조사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표 4-11] 참고).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이 5개의 주택항목은 주택을 거처 단위로 보고, 이것을 가구나 가족생활과 관련시킨 것이라기보다, 거처단위로서의 주택 또는 “집”의 특성을 조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마땅할 것이다.

[표 4-11] 주택항목 특성: 조사항목의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조사항목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1	거처의 종류	● 거처의 종류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거처유형별 현황과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건설의 방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다.
2	주거용 연면적·대지면적	● 주거용 연면적과 대지면적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거처유형별 현황과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건설의 방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다.
3	총방수	● 우리나라 주택의 구조를 방, 거실, 식당 등 종류별로 파악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연건평별로 정리하여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건축연도	● 우리나라 주택을 유형별로, 연건평별로 구분하여 건축연도를 파악하여 주택의 노후정도 또는 내구성을 기준으로 재건축, 수리 등 주택건설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여, 정부가 주택건설 시장의 서비스 공급능력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5	편익시설수	● 우리나라 주택을 유형별로, 연건평별로 구분하여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구 등 편익시설의 개수별로 정리하여, 거주개념의 주택수를 산정하고, 이를 소유개념의 주택수와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인 주택수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주택건설시장의 서비스 공급여건을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주택총조사의 5개 조사항목, 곧 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대지면적, 총방수, 건축연도, 편익시설수는 구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거처유형별 현황과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건설의 방향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다. 그러나 사회변화에 따라 거처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개념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여 재정립 필요가 있으며, 노숙자(homeless)에 대한 조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에 대한 개념 모호하여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주택이외의 거처 중 일부 거처(예: 오피스텔)의 주택성 여부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영업용 건물 내 주택이 표현상 애매하여 교회 등 비영리 건물 내 주택 등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종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를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사례

이 절에서는 종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를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통계 활용사례의 검토는 인구총조사과가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007년에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자료이용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표 집계결과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도록 한다. 조사방식은 우편조사와 인터넷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07년 6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조사대상은 모두 1024개 자료이용기관이었는데, 그 중에는 145개 중앙행정기관, 348개 지방자치단체, 183개 연구기관, 80개 공공기관, 336명의 전문가 집단을 포함했다.

인구총조사과와 한국조사연구학회 2007년 공동연구의 조사표에 포함된 문항은 (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결과의 이용경험 (2) 총조사의 조사항목에 관한 사항 (3) 조사전반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2005년 총조사 결과의 이용경험은 (a)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적 있는지, 이용하였다면 어떤 목적(연구·학술 활동, 자료인용, 표본조사의 모집단 등)으로 활용하였는지, 어떤 형태(결과보고서, CD-ROM, 인터넷(KOSIS) 등)로 이용하였는지 (b) 어떤 항목을 이용하였는지, 어느 분야에 활용하였는지, 주로 이용한 결과표는 무엇인지 (c) 결과보고서, CD-ROM, 인터넷(KOSIS), 마이크로데이터(2%) 등 자료이용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 (d)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항목의 선정, 조사방법, 자료 제공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만족도 평가 등 포함되었다.

한편, 조사항목에 관한 사항으로, (a)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추가되어야 할 희망 조사항목, 활용 목적 및 희망 결과표 (b)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또는 조사표 용어 중 개념이 모호하거나 부적절한 용어, 이유 및 개선안 (c)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보고서에 추가하거나 개선을 희망하는 결과표, 집계단위 및 이용목적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 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사방법(인터넷조사, 우편조사, 전화조사, 조사원 면접)과 관련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응답하고 싶은 조사방법,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장 적합한 조사방법, 새로운 조사방법을 도입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그리고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추진 기본계획 중 당시의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표 4-12] 자료이용기관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조사표 응답률

	계	중앙행정	지자체	연구소	공공기관	전문가
대 상	1,092 (100.0)	145 (100.0)	348 (100.0)	183 (100.0)	80 (100.0)	336 (100.0)
응 답	267 (24.5)	34 (23.4)	153 (44.0)	30 (16.4)	21 (26.3)	29 (8.6)
무응답	825 (75.5)	111 (76.6)	195 (56.0)	153 (83.6)	59 (73.8)	307 (91.4)

이 조사결과는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조사표의 응답률은 전체 1,092개 조사대상기관의 24.5%인 267개 기관이 최종적으로 응답하였다. 조사대상기관을 특성별로 보면, 지자체(44.0%)가 가장 높았고 전문가 집단(8.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고). 한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조사표를 발송한 507개 기관 중에서 158개 기관이 응답을 하여 응답률이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 방법으로는 전체 응답(267) 중 인터넷 응답이 139건(52.1%)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우편 76건(28.5%), 공문 52건(19.5%) 순서로 나타났다.

[표 4-13] 응답한 자료이용기관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이용경험 유무

이용경험	계	중앙행정	지자체	연구소	공공기관	전문가
계	267(100.0)	34(100.0)	153(100.0)	30(100.0)	21(100.0)	29(100.0)
있음	190 (71.2)	20 (58.8)	110 (71.9)	21 (70.0)	14 (66.7)	25 (86.2)
없음	77 (28.8)	14 (41.2)	43 (28.1)	9 (30.0)	7 (33.3)	4 (13.8)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조사표에 응답한 267개 자료이용기관의 인구주택총조사 이용경험 유무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용경험이 있는 기관이 71.2%로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응답률이 가장 낮았던 전문가의 이용률이 86.2%로 제일 높고, 지자체(71.9%), 연구소(70.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이용률이 58.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4-13] 참고). 중앙행정기관가 다른 기관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이용률이 낮다는 사실은 본 연구가 어떻게 하면, 인구총조사를 포함한 통계청이 작성하는 국가통계의 결과를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그 연관성을 강화할 수 있는가를 통계청 인구총조사과가 하나의 연구과제로 설정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중앙정부의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인구주택총조사 이용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인구주택총조사와 주요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사표에 응답한 267개 자료이용기관의 복수응답을 포함한 전체응답 364개를 목적별로 검토하여 보면,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각종 보고서 발간목적(34.1%)에 가장 많이 사용했으며, 정책수립(22.3%), 연구활동(17.0%), 사업 및 경영계획 수립(8.5%) 순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4] 참고). 여기서도 자료이용기관의 활용목적은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자료를 정책수립을 위한 직접투입변수(direct input variable)로 이용한 것은 보고서 발간 목

[표 4-14] 응답한 자료이용기관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이용목적

이용목적	계	중앙행정	지자체	연구소	공공기관	전문가
계	364(100.0)	37	189	57	32	49
정책수립 및 진단	81 (22.3)	12	42	14	8	5

학술연구활동	62 (17.0)	6	11	18	8	19
보고서발간 인용	124 (34.1)	10	78	17	10	9
표본조사의 모집단	20 (5.5)	1	9	5	1	4
교육/강의 자료	29 (8.0)	4	9	3	2	11
사업계획 수립	31 (8.5)	2	26	0	3	0
기타	17 (4.7)	2	14	0	0	1

적보다 그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연구활동보다는 약간 높게 나오고 있다. 자료이용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수립 및 진단에 12건(32.4%),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보고서발간에 각각 78건(41.3%), 10건(31.3%), 연구소와 전문가집단은 연구학술활동에 각각 18건(31.6%), 19건(38.8%)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기관보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정책수립 및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5] 인구주택총조사의 이용빈도가 높은 항목과 낮은 항목

이용빈도 높은 항목		이용빈도 낮은 항목	
나이	39(7.3)	주차시설	4(0.8)
교육정도	39(7.3)	근로장소	3(0.6)
경제활동상태	31(5.8)	혼인년월	3(0.6)
성별	30(5.6)	타지주택소유 여부	3(0.6)
점유형태	24(4.5)	추가계획자녀수	2(0.4)
거처의 종류	24(4.5)	난방시설	2(0.4)
인구규모	22(4.1)	총방수	2(0.4)
산업	21(4.0)	남북이산가족	1(0.2)
가구구분	21(4.0)	거주기간	1(0.2)
총출생아수	18(3.4)	편익시설수	1(0.2)

조사표에 응답한 자료이용기관의 항목별 이용빈도를 보면, 나이(7.3%), 교육정도(7.3%) 등 인구의 규모나 특성을 알 수 있는 전수항목에 대한 이용이 많았다. 한편, 남북이산가족(0.2%), 편익시설수(0.2%), 거주기간(0.2%) 등의 항목은 이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15> 참고). 전체적으로 제2절에서 사용한 기준으로 본다면, 이용빈도가 높은 조사항목으로 인구학적 특성(나이, 성별), 교육 및 사회특성(교육정도), 경제적 특성(경제활동상태, 산업), 가족 및 가

구특성(가구구분, 난방시설, 점유형태), 주택항목(거처의 종류), 조사대상인구(인구규모), 출산력 및 사망력(총출생아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용빈도가 낮은 조사항목으로는 경제활동상태(근로장소), 가구 및 가족 특성(거주기간, 난방시설, 주차시설, 주인가구 및 타지 주택 소유 여부), 주택특성(총방수, 편익시설수), 사회적 특성(남북이산가족), 출산력 및 사망력(혼인연월, 추가계획자녀수)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4-16] 응답한 자료이용기관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만족도

구분	계 (%)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불만족
		소계	매우만족	만족		소계	불만족	매우불만족	
계	100.0	60.1	10.7	49.4	32.6	7.3	6.9	0.4	8.23
중앙행정기관	100.0	80.6	19.4	61.3	16.1	3.2	3.2	0.0	25.19
지방자치단체	100.0	54.6	7.7	46.9	40.8	4.6	3.8	0.8	11.89
연구소	100.0	65.4	15.4	50.0	26.9	7.7	7.7	0.0	8.49
공공기관	100.0	66.7	19.0	47.6	14.3	19.0	19.0	0.0	3.51
전문가	100.0	52.0	4.0	48.0	32.0	16.0	16.0	0.0	3.25

조사표에 응답한 자료이용기관들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 선정에 대한 만족도는 중앙행정기관이 80.6%로 가장 높고, 오히려 전문가 집단이 52.0%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고). 한편 불만족의 비율은 공공기관 19.0%, 전문가 16.0%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 범주를 판단유보로 간주하고, 불만족 대비 만족의 비(比, ratio)를 구한 결과를 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전문가 집단과 공공기관은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결과는 조사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높은 편이고, 공공기관이나 전문가집단의 경우가 오히려 낮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 정책 활용 특히 직접투입변수 등의 목적별 이용현황에서는 오히려 상대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파악되어야 할 의문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 4-17]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구분	이용분야	응답기관
인구	- 인구 및 인구증가 정책수립	보건복지부 인구여성정책팀, 부산 서구 기획감사실, 경북 영주시 정보통신과, 경북 의성군 기

		확실
아동	- 아동복지 정책수립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 경북도청 보건복지여성국, 충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제주 서귀포시, 부산 연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청소년	- 청소년 정책수립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책총괄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	-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고용 정책수립	노동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정책 연구센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경북도청 보건복지여성국
노인	- 고령자 복지 및 고용 정책수립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전북발전연구원 사회복지연구팀, 충북교육청 기획관리국, 경북 의성군 기획실, 전북 김제시 정보통신과, 대전 유성구청 기획감사실, 충남 서천군청 총무과, 경기 안양 동안구청 총무과
장애인	- 장애인 복지 및 고용 정책수립	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널팀, 전북발전연구원 사회복지연구팀
복지일반	- 사회복지, 편부모 가정, 빈곤 정책수립	서울시 영등포구, 경기 오산시청 주민전산과, 충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저출산	- 저출산·고령화 대책수립	경기도청 정책기획심의관실, 충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경남도청 보건복지여성국
교육	- 교육 정책수립	하동군청, 서귀포시청, 서울 강동구청,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 여주시청
	- 평생학습 도시분야 계획수립	부산광역시 사상구 조직법무 담당
도시	- 도시계획 및 재개발 정책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기 오산시청 주민전산과, 대전광역시 도시건설방재국 도시계획과,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부산 연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
	- 신규사업후보지 선정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
	- 행정구역 통폐합추진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 토지 정책수립	한국토지공사 지역균형개발처
주택	- 주택 정책수립	건교부 도시정책팀, 대한주택공사 연구개발실, 의왕시청 기획감사담당관실 통계담당,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이천시청 예산공보담당관실 법무통계팀, 부산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

		실
	- 부동산 정책수립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 주택수요과약 및 공급계획 수립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처
	- 임대주택 및 노인주거 정책수립	대한주택공사 연구개발실
	-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수립	경상북도 봉화군청 총무과
지역	- 지역경제 정책수립	강원 동해시청 홍보감사담당관실, 부산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경상남도청 경제정책과, 충남 연기군청 자치행정과, 강원도 태백시 기획감사실, 순천시 총무과, 옥천군 건설과, 전남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교통	- 교통 정책수립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청 교통국, 부산광역시 서구청 기획감사실
농업	- 농업 정책수립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	한국농촌공사 농촌종합계획처
	- 농촌지역 정책수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
기타	- 물 정책수립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
	- 소비자 정책수립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
	- 환경 정책수립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
	- 종교 정책수립	한국학중앙연구원
	- 희망순천2020 수립	순천시 총무과
정책 일반	- 정책수립	서울 강서구청 자치행정과 인천광역시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경영기획실 혁신기획관실 울산광역시 남구청 기획감사실
	- 자치단체 기본 계획수립	경북 상주시청, 충남 서산시청 공보전산담당관실, 여주군청, 울산광역시 경제통상국

조사표에 응답한 자료이용기관들의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경우, 그 주제영역은 대단히 광범위하다([표 4-17] 참고). 인구, 저출산, 아동, 청소년, 노인 영역의 정책수립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종교, 교육, 주택, 지역, 교통, 농업, 환경, 소비자, 물공급, 행정구역 통폐합, 주거환경 개선 등의 많은 분야에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들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써 상주지, 인구이동(5년전 거주지, 1년전 거주지) 등의 조사항목이 구체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많지 않으며, 인구총조사의 조사항목 중에서 이용빈도가 많은 것과 이용빈도가 적은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상주지 주소정보, 인구이동 정보 등이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구체적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앞에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이라는 행정통계시스템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는 이러한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표 4-18] 인구주택총조사의 업무계획 기초자료 활용

구분	이용분야	응답기관
계획	- 각종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	경기도 양주시 총무과 서무통계,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영동군청 기획감사실, 대전 유성구청 기획감사실
	- 타 자치단체와의 경제 및 행정 비교자료 활용	전남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인구	- 인구 현황 파악	한국토지공사, 전남 화순군청 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남구청 기획감사실,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부산광역시 중구청
	- 유동인구 현황 파악	충남 연기군청 자치행정과
	- 병역자원 수급 전망	병무청 선병자원본부
	- 출생아수 실태 파악	경상북도 고령군 기획감사실
	- 종교인구 분포 확인	포항시 기획예산과
	-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 인구와의 비교, 시군별 연령구조 변화와 노인인구 변화, - 시군별 1인 가구 남녀 구성비, 시군별 연령별 전출입 인구 분석	전북도청 정책기획관실
가구	- 가구 및 주거 현황 파악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처, 경기도 안산시청 정보통신과(통계담당), 부산 강서구 기획감사실, 경북 영덕군청 기획감사실, 경상북도 청도군 총무과, 부산광역시 남구청 기획감사실, 과천시청, 경기도 안산시청 정보통신과(통계담당)
	- 조손가구 현황 파악	대전 유성구청 기획감사실
주택	- 주택 현황 파악	경기도 안산시청 정보통신과(통계담당), 부산광역시 남구청 기획감사실, 부산 연제구청 기획감사실 조직법무, 부산 연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서귀포시청
복지	- 보육시설 파악 및 아동복지업무	충남 연기군청 자치행정과, 경기도 안산시청 정보통신과(통계담당), 경기 안양시 동안구청 총무과
	- 노인복지관련 현황 파악	경북 울진군청 기획감사실
자료 제공	- 지방의회 및 내부보고에 활용	전북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 관내 기업유치	서울 강동구청

	- 창업시 문의	서울 강서구청 자치행정과
지표	- 복지지표 작성(주택보급률, 주택소유율, 가구당 및 1인당 주거면적, 가구당 및 1인당 평균방수, 주차장 확보율)	강원도청 기획관실 통계팀
	- 청소년 관련 지표 개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인천의 사회지표 작성	인천 법무통계담당관실
기타	- 산업별 대출 동향분석 시 참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 폐쇄된 광산 주변지역 거주자 현황	대한광업진흥공사
	-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실
	- 지역 행정서비스 방향 설정	충청북도 증평군 행정과
	- 행정지도 제작 등	경기 연천군청 기획감사실
	- 석유소비 현황 파악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조사표에 응답한 자료이용기관 중에서 업무계획에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활용하는 경우는 좀 더 이용사례가 구체적이고, 인구통계가 아닌 다른 영역의 조사항목에 대하여 관심이 기재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표 4-18] 참고). 가령, 병무청의 병력수급, 지방자치단체의 유동인구, 출생아수, 조손가족, 종교인구, 보육시설 등이나 복지지표 작성(주택보급률, 주택소유율, 가구당 및 1인당 주거면적, 가구당 및 1인당 평균방수, 주차장 확보율에 대한 관심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또, 한국은행의 경우 산업별 대출 동향분석, 대한 광업진흥공사의 폐쇄된 광산 주변지역 거주자 현황, 금융연구원의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산업자원부의 석유소비 현황 파악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구주택총조사가 자료이용기관의 사업 분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는 경우에도 관련 프로젝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다.

[표 4-19] 인구주택총조사의 학술연구 기초자료 활용

구분	이용분야	응답기관
인구	- 인구유입 특성 조사 참고자료	경기개발연구원 도시지역개발부
	- 지역별 인구증가 분석, 통근통학 OD 테이블	주택공사 연구개발실
	- 노동시장 특성 파악, 인구이동 특성 파악, 행동영역, 생활권 파악	제주대 사범대학지리교육전공
	- 도시공간구조 파악, 도심 및 교외지역 인구이동 파악	계명대 도시공학과
	- 전북현황비교분석(추이), 인구변화 추이 분석, 취업현황분석	전북발전연구원 사회복지연구팀
	- 전남 생활권 설정, 생활권 영향력 분석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 인구변화분석, 가족변화분석, 교육정도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변화분석, 노동력 변화분석, 혼인력 연구, 초혼연령 추계	
	- 건강수명, 출산력 및 인구동태 연구	서울대 보건대학원
	- 출산력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구의학연구소
산업	- 인구특성과 산업과의 관계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
	- 산업구조(고용) 변화분석	산업연구원 동향실
	-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	국토연구원
	- 가계 재무상황 및 고용사정 파악을 통한 정책효과 분석	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가구 주택	- 수요전망, 가구패턴추이, 점유형태의 안정성 추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분석	대한주택공사 연구개발실
	- 주택보급률(지역별), 주거격차, 주거소비 불균형 분석	
	- 주거실태 파악 및 멸실률 추정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 주택정책,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도출	대한주택공사 연구개발실
	- 부동산 및 건설 경기 진단(자가점유비율, 주택보급률)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
- 가족변화 연구	아주대	
기타	- 인적자본 수준예측	연세대 경제학과
	- 인적자본의 공간적 분포	연세대 도시공학과
	- 낙후지역의 인구분포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국
	- 지역분석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도시지역연구소
	- 서머타임 효과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분석실
	- 수원시 OD구축연구	아주대 교통연구센터
	- 종교정책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 기타 학술활동	한양대 사회학과,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정보통신과

조사표에 응답한 자료이용기관 중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학술연구 기초자료로 활용한 경우는, 정책수립이나 업무계획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이용한 경우보다, 주제영역 자체가 더욱 더 분명하고 총조사의 조사항목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수명(rish-free life expectancy)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총조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산업연구원은 고용구조의 변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지역별 인구증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통학·통근에 관한 조사항목을 이용하였다던가, 대학연구소의 경우, 노동시장, 인구이동, 활동영역, 생활권을 분석하기 인구주택총조사의 관련 조사항목을 검토하는 형태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이용하는 방식이 좀 더 체계화되고, 그 범위도 광범위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지역별 산업연관표(regional input-output tables)를 작성하기 위하여 국토연구원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술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정보가 사용되는 경우는 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수요 전망, 가구패턴추이, 점유형태의 안정성 추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분석하거나, 주택보급률(지역별), 주거격차, 주거소비의 불균형을 분석하거나, 주거실태 파악 및 멸

실률(housing demolition rate)을 추정하거나, 지자체의 주거복지수준을 평가하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를 도출하며, 부동산 및 건설경기 진단(자가점유비율, 주택보급률)을 목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각종 조사항목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표에 응답한 자료이용기관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통계조사나 통계조사와 관련된 표본설계, 특히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 분석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추출 프레임으로 활용하거나 모집단 추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통계부서가 국가정책, 가령 독거노인, 지역건강, 기상정보, 통행실태 등의 다양한 주제영역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4-20]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계조사 프레임 학술연구 기초자료 활용

구분	이용분야	응답기관
조사	- 독거노인 실태조사	경북 군위군청 기획감사실
	-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서울 강동구청
	- 기상정보의 효용에 대한 인식조사	기상청 기상경영전략팀
	- 통행실태조사	한국교통연구원
	- 군정수립을 위한 자체설문조사 시 참조	여주군청
	- 마포사회통계조사 표본설계시 모집단	서울 마포구청 전산정보과
표본설계	- 표본설계변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통계센터, 청주대학교 바이오정보통계학
	- 표본추출을 위한 모집단분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고용패널팀,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조사표에 응답한 자료이용기관들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간행물 보고서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법을 제안하고 있다[표 4-21] 참고). 용어에 대한 설명 부족, 세부자료 및 통계표 부족, 보고서 발간의 장기화, 각종 분류체계의 번잡스러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 통계연보발간 비용 발생, 자료 찾기 쉬움, 요약기초통계량을 이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더욱이 시계열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 항목별 분석보고서 작성하여 이용자 이용 자료 제공에 미흡, 교통수단 이용인구, 조사대상, 연령조정 필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등록자료가 인구총조사 자료를 대신하는데 따른 문제점, 자료 활용이 제대로 안 됨, 아동(0~18세 미만) 인구추정치로 계산. 지역, 산업별 고용통계가 연도별 및 업종별로 없는 것들이 있어서 불편함 등이 자료이용기관에 의하여 지적된 사항이다. 물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 중에서 당장 개선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10% 표본조사의 경우, 세부자료를 읍면동 혹은 시군구까지 수록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것은 표본오차가 너무나 커서, 국가통계로서의 정당성을 상실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를 시행하는 국가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으로서도, 고객의 입장에서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별 시계열 유지와 관련하여, 이에 대하여 좀 더 체계적인 조사항목별 통계표를 시계열별로 작성하여 별도의 간행물 보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된 연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인구통계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에는 인구추계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인구총조사과와 인구동향과가 협력하여, 주민등록인구를 보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와 품질이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든지 아니면 출산력, 사망력, 인구이동에 대한 동태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균형방정식(population balancing equation)에 기반을 둔 추계인구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전광희 외, 2005).

[표 4-21] 인구주택총조사 간행물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응답기관
용어 설명 부족	-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경기 안양 동안구청 총무과, 경남 도청 경제정책과, 광명시청 기획예산과, 환경부 교통환경기획과, 노동부 고령자고용팀
	- 사용자 친화적인 용어사용	경기 부천시
세부자료 및 통계표 부족	- 읍면동 혹은 시군구 자료 수록	대전 유성구청 기획감사실, 포항시 기획예산과, 충남 당진군청 기획감사실, 전남 진도군청 행정지원과, 부산 수영구, 서울 강서구청 자치행정과, 충남 천안시청, 대전발전연구원 도시교통연구부
보고서 발간의 시의성	- 결과보고서의 조기 발간	대한주택공사 택지개발처, 경기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심의관실
	- 공표시기 단축 또는 시도 특성 항목 삭제	경남도청 기획관실
분류체계 복잡	- 분류체계 단순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동대문구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경남 진주시 정보관리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금산군청 기획감사실
	- 현재보다 표본추출물을 더 낮추고 조사내용이 모두 결과에 포함되도록 개선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분석실
보관 및 관리의 어려움	- 보고서 배포 축소, KOSIS 서비스 강화	충남도청 법무통계담당관실
	- 핵심내용 요약하여 부피 축소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도시지역연구소
통계연보발간 비	- 책자 보관 장소 확보	경북 상주시청

용 발생, 자료 찾기 쉬움		
요약기초통계량을 이용하는 정도에 그림. 이마저 시계열 유지에 어려움 있음	- 자료검색을 통해 통계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 시계열의 일관성이 필요→ 변경시에는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여성정책 연구센터
결과 항목별 분리 보고서 작성	- 항목별 결과 보고서 작성 배부	부산 연계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교통수단 이용인구, 조사대상, 연령조정 필요	- 현행 12세이상을 8세이상(초등학생)으로 낮추어야 함	부산시청 교통국
자료 활용 제대로 안 됨	- 현재 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임	경북 고령군 기획감사실
아동(0~18세 미만) 인구추정치로 계산	- 연령 범주 세분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지역/산업별 고용통계가 연도/업종별로 없음	- 산업별, 지역별 자료를 업종별로 동일한 수준에서 수평적으로 이용가능하면 유용할 것임	국토연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자료이용기관은 CD-ROM 자료에 대해서도, 자료검색이 힘들고 검색기능이 추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엑셀 및 차트변환에 어려움이 많으며,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하지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고 있다. 또 각종 분류가 중분류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세세 분류(동별)까지 나온다면,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CD-ROM 자료는 기초자료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이들을 가공 처리하여 생성한 자료가 부족하며, 추가 가공 없이 CD-ROM 자료의 즉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경우에도 간행물보고서나 CD-ROM 자료에 대한 불평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이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의 부족은 인구주택총조사는 물론 통계청이나 다른 통계기관이 작성하는 통계자료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이어져, 이들이 결국은 통계자료의 정책 연계성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결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응답한 자료이용기관들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조사결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읍면동별로 소지역 또는 소집단 자료(small-area or small-group statistics)가 제공

되어 지역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2) 인구주택총조사에서 10% 표본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시군구 단위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군구 단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표본추출 방법과 표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엄청난 비용을 들인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활용 방안을 진지하게 재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밀보장과 상충되지만 자료를 세분된 지역 단위로 제공하고, 원자료 및 10% 표본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공표 시기 단축. 공공기관은 공문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정보제공 측면에서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자료양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5) 총조사의 조사항목이 100% 결과표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시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히 전체 자료가 아니라 일정부분 표본화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하였으면 좋을 것이다.

(6)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추계인구를 정확히 작성하여 매년 시군구 추계인구를 발표하였으면 좋겠다.

(7)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가계의 재무상황(자산, 부채 등) 변동의 정확한 파악이 매우 긴요해졌으므로 도시가계조사, 가계자산조사 등 여타 통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있다.

(8) 인구주택총조사의 취업률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취업률이 일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4. 센서스의 관점에서 본 국가통계의 근본원칙

센서스, 인구주택총조사도 하나의 국가통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연계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국가통계의 근본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는 2000년 라운드 인구주택총조사를 검토하면서, 유럽의 센서스가 전통적 센서스, 등록센서스, 혼합형태 등의 자료수집 방식에 관계없이, 38개 조사대상국의 국가통계시스템의 백본(backbone)을 이룬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등록센서스 실시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현행 전통적 센서스 조사항목에 대한 대체 자료원(data source)을 행정자료와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하여 검토한 결과, 인구통계와 주택통계의 몇 가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을 행정자료, 특히 주민등록과 건축물대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경제통계 정보를 전국 수준은 물론 지역수준에서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도 국가통계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통계임이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의 맥락에서 국가통계의 근본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United Nations, 2008).

유럽경제위원회가 1992년에, 유엔통계위원회가 1994년에 채택한 국가통계의 근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가통계는 민주사회 정보체제의 근간적 요소로서 인구,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 경제, 일반대중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의 공공정보 접근권한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국가통계기관 바로 통계청이 불편부당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여,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입증된 국가통계를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통계청은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원칙과 직업적 윤리를 포함하여 철저히 전문가적 고려사항에 의거하여 통계자료의 수집, 처리, 보관, 발표에 필요한 방법론과 절차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정확한 자료해석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청은 통계의 자료원(data source), 방법론, 절차에 대하여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여 정보를 제시하여야 마땅하다.

4) 통계청과 여타 통계기관은 통계의 잘못된 해석이나 오·남용(誤濫用)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를 모든 유형의 자료원, 곧 통계조사, 행정자료 어느 것이라도 이용할 수 있다. 통계청은 통계의 품질, 시의성, 비용, 응답자에 대한 부담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자료원을 선택하여야 한다.

6) 통계청이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개체자료는 그것이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그 자료에 대한 비밀이 준수되어야 하고 통계목적외로만 사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

7) 통계시스템이 작동하는 법률, 규정, 조치 등은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8) 국내 통계작성기관의 업무조정은 통계체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

9) 개별 국가의 통계청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개념, 분류, 방법론을 사용함으로써 해서, 모든 공적 수준에서 통계체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

10) 이자간 또는 다자간 통계협력은 모든 국가의 국가통계시스템의 개선에 기여한다.

이상의 근본원칙은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공식통계에 대한 2개의 운영기준, 곧 데이터베이스의 특수기준과 데이터베이스의 일반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이 기준은 IMF의 데이터 품질평가기준에 더욱 더 상세히 구체화되어서 성실성(integrity) 영역에

수록되어 있다. 이 데이터 품질평가기준은 성실성에 대하여 [표 4-22]와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구성요소는 중립성(유엔의 근본원칙 1 일부), 전문적 자율성(유엔의 근본원칙 2), 결과의 잘못된 해석과 오남용을 비평할 수 있는 권리(유엔의 근본원칙 4), 출처와 방법론의 투명성, 통계청이 작동하는 규칙(유엔의 근본원칙 3), 배포관행의 투명성과 중립성(유엔의 근본원칙 1 일부), 직원을 위한 윤리적 기준의 지침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성실성은 일반적인 개념으로 구체적인 통계결과만이 아니라 통계시스템 전체에 적용되는 경우, 유엔의 10개 근본원칙 특히 비밀준수에 관한 6번째의 원칙을 포함하게 된다.

[표 4-22] IMF 데이터배포 일반기준의 성실성 원칙의 구성요소

1. 성실성 보장원칙 (자료 수집, 처리, 배포과정에서의 객관성의 원칙)	1.1. 전문성(통계정책과 실천이 전문성의 원리에 의하여 지도된다)	1.1.1. 통계를 중립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1.1.2. 배포방식의 결정은 물론 자료원과 통계기법의 선택은 통계적 고려사항이 절대적 기준이다.
		1.1.3. 적절한 통계기관은 통계의 잘못된 해석과 오남용에 대하여 비평할 자격이 있다.
	1.2. 투명성(통계정책과 실천은 투명성의 원리에 의하여 지도된다)	1.2.1.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배포하는 조건과 상황은 일반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1.2.2. 통계 공표 이전의 정부의 내부 접근은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2.3. 통계기관/부서의 성과물은 그 자체로서 분명히 확인되어야 한다.
		1.2.4. 방법론, 자료 출처, 통계기법의 주요 변동사항은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1.3. 윤리적 기준	1.3.1. 직원의 행동지침은 질서정연해야 하며, 직원들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의 활동 중 일반대중에게 가시성이 가장 큰 활동이다. 이것이 바로 인구주택총조사가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더욱 더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가 현실적으로나 이용자나 응답자의 인식 속에서 이들 기본원칙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와 다른 통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신뢰성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유엔의 국가통계에 대한 근본원칙을 명백히 염두에 두는 통계법이 있는 나라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규정을 법으로 정하여, 이들 기본원칙이 인구주택총조사에도 적용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1) 비밀준수

인구총조사의 경우 정보제공자인 해당인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준수이다. 비밀준수의 원칙(confidentiality principle)은 통계청이 개체자료를 사용할 때,

조사대상이 자연인(自然人)이든 법인(法人)이든 관계없이⁴⁾, 그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엄격히 준수하고 통계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통계청은 인구총조사에서 그것이 전수항목이든 표본항목이든 관계없이, 응답자로부터 개체자료를 수집할 때, 대부분의 통계법이나 인구주택총조사법에 명시화된 비밀준수를 약속하여, 응답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에게서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제공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통계목적”(statistical purpose)란 정부나 공공기관 특히 법원이 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결정과정에서 인구주택총조사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따라서 통계목적은 응답자가 상대를 신뢰하고 자신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를 그들의 이익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통계청은 응답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사적 특성에 대한 응답자의 우려사항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통계청이 비밀준수의 원칙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개체자료에 대한 일방통행의 원칙(one-way principle)을 확립하는 것이다. 통계청은 응답자에게 해당 자료를 획득할 수 있으며, 아래에 지적하는 두 개의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공표해서는 안 되며,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을 봉쇄해야 마땅하다.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행정자료를 편집하여 작성하거나, 일부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자료수집, 자료처리, 자료배포 등의 과정에서 통계적 비밀준수 조항을 설정하여야 한다.

통계법에 통계청이나 여타 통계기관에 대하여 개체정보에 대한 접근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 위하여 예외조항을 설정할 수 있다⁶⁾. 가령, 동일 통계시스템 안에서 통계기관 간에 개체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든지 또는 자격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마이크로데이터 파일에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예외조항은 방법론 부문에서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첫 번째의 예외조항은 국가통계 작성목적에만 엄격히 국한될 것이며, 두 번째의 예외조항은 연구자 자신의 책임 아래서 제표작업이나 통계분석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마이크로 데이터의 비통계적 이용에 대한 금지사항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예외조항은 첨예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데이터를 전송받는 통계부서가 통계작성이 아닌 목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정부기관의 일개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한 통계법에 그 통계부서도 통계청이 제작한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비밀준수와 관련하여 신뢰받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통계목적이 아닌 개인자료의 요구는 비밀준수를 이유로 거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통계가 아닌 다른 영역의 법률을 적용하면, 통계작성이 아닌 목적으로 데이터에 접속하는 것이 합법적일 수도 있다(예: 행정자료 또는 이중목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자료의 요청은 통계청이 아닌 다른 정부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직업적 자율성

-
- 4) “가구”가 보호되지 않으면, 통계단위인 “자연인”의 보호도 별다른 효과가 없다. 자연인에 대한 노출의 위험이 우회적인 것이 아니라면, 건물이나 주택도 보호된다고 할 수 없다.
 - 5) “통계목적”(statistical purpose)이란 용어를 제표작업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통계목적이란 개인정보를 다른 자료원의 국가통계와 일대일로 매칭(matching)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6) 두 예외조항은 국내기관에 제한될 수 있고, 첫 번째의 경우는 국제기구의 통계부서를 포함할 수도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국제적 네트워크의 학자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통계법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한 규정이 없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운영하고, 정부예산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전문가 집단으로서 직업적 자율성(professional autonomy)은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다. 직업적 자율성은 국가통계의 “방법론”에 관한 것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배포하는가를 말해준다. 정부예산이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지원한다고 해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회의 어떤 특성을 측정하는데 적합할 것인가 또는 측정의 빈도 또는 이들 특성의 제표작업, 곧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내용을 규정하는 데까지 확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직업적 자율성의 문제는 통계청은 과거의 경험이나 직업적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의 조사항목이 응답의무가 없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연계되지 않는 일반적인 표본조사가 비용절감 차원이나 신뢰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나 외부 이익집단이 특정항목을 포함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실제로, 중앙부처나 이익집단은 조사항목을 표본조사보다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하게 되면, 그것이 국가통계로서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는 셈이 된다. 따라서 방법론상의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특정의 조사항목이 인구주택총조사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통계결과의 배포는 국가통계시스템이 결정하는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중립성

결과의 선택이나 공표일자의 선택은, 직업적 자율성 내의 다른 쟁점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중립적인 불편부당(不偏不黨)한 판단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 모든 통계조사의 제표결과는 품질과 일관성을 점검하고 나서, 곧장 공표되어야 마땅하다. 특정 제표결과가 정부부처나 다른 중요한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거나 시점 상 부적절하다는 우려는, 그것이 명백히 표출되었든 아니면 추측에 의한 것이든, 그것이 전문가적 판단의 고려사항이 되어서 안 된다. 이것은 국가통계의 중립성 원칙(neutrality principle)을 위반하는 것이다. 배포는 국가통계에서 성실성의 원칙이 손상될 개연성이 가장 큰 영역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국가통계의 모든 영역에서 중립성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는 평판을 획득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에도 기존의 관행이나 기준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분야에 통계청이 그리 좋은 평판을 얻을 기회가 없었다면,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중이나 인구주택총조사가 끝난 후에 국가통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중립성과 성실성의 새로운 원칙을 확립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IMF의 성실성 원칙은 “보도제한”(embargo)을 조건으로 하여, 특정 정부부서에 통계작성 결과를 사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관례에 대해서도 일반대중들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사전통지의 목적은 정부부서의 주 이용자들이 통계작성결과가 정책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하여 매스미디어가 제기하는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통계청이 그 결과를 배포하는 방식에 대하여 비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전통지는 1일 이상을 넘지 않도록 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며, 통지기간이 장기화되면 보도제한의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통계청이 그 자료를 배포하려는 노력에 간섭하려는 시도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다.

직업적 자율성과 중립성의 원칙에서 결과를 배포할 때 사용하는 용어의 선택은 대단히 중요

하지만 흔히 무시되기 쉽다. 용어선택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통계시스템 내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중립성을 구현해야 한다. 통계청과 여타 통계기관이 결과를 공표할 때, 특정 정책을 옹호하는 언어나 슬로건을 사용하는데 제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분배목적”(allocation purpose)으로 사용하는 경우, 중립성 원칙의 위반 여부에 관한 문제가 생겨난다. 여기서 분배목적이란, 기준인구에 따라 국회 또는 다른 단체의 “선거구”를 할당하거나, 기준인구와 같은 통계적 파라미터를 기준으로 지방정부에 국가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분배목적은 재정지원이 하한인구(population threshold)와 같은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자격기준과 연계되는 제도 또는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새로운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때, 자격기준인 기준인구의 하한선이 업데이트되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특정 단체에 불리할 것이라든가 형평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은 통계청에 진정서의 형태로 전달될 수 있어서, 인구주택총조사 방법론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분배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직업적 관행이나 기준에 편향과 일탈을 야기하고, 이 때문에 국가통계의 중립성 원칙이 위배될 수 있다.

분배목적에 대한 우려사항을 성실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하는데 있어서, 통계작성의 근본 원칙에 입각하여 국가통계 담당자와 분배과정에 종사하는 실무자의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배기준이나 자격기준에 대한 정책결정의 핵심인 통계적 파라미터(와 이들을 집계하는 주관적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은 행정실무 책임자의 책임이지 통계작성 실무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행정실무 책임자의 선택은 통계청이 출판하는 국가통계의 결과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지도 존재하는데 그것은 공식적인 전반적 결과의 부분집합이거나 개별적으로 측정된 다른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통계청은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의 핵심 키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만, 이것이 국가통계 책임자가 설정하는 일차적 기준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공식적 통계작성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 이용자가 설정한 개념에 대해서는 통계청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는 것이다. 결국, 개념과 용어에 대한 책임은 통계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난 이용자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4) 통계청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비밀준수, 직업적 자율성, 중립성은 통계청의 성실성이나 이용자와 응답자의 관점에서 전체 통계시스템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원칙은 통계법이나 인구주택총조사법에 언급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원칙은 통계청과 책임통계관인 통계청장의 지위에 대한 제도적/조직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매스미디어, 일반대중, 모든 유형의 통계이용자, 조사대상자의 안목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통계청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두는 것과 통계청이 일상적으로 국가통계의 근본원칙을 분명하게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통계청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의 특정현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측정을 해야 하는 핵심 업무나 통계목적으로만 개체자료를 이용한다고 하는 책임사항과 충돌할 개연성이 있는 비통계적 업무(non-statistical assignment)로 해방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통계청의 비통계적 업무는 통계작성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결국은 정부정책을 옹호하는 관변기관으로 전락하도록 할 위험을 야기할 개연성이 크다.

둘째,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와 여타 통계조사의 결과를 공표하는데 있어서 통계체제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정부기관의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보도관계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계청은 자체의 자료배포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스미디어와 직접 의사소통을 할 권리를 가져야 하며, 정부기관을 매개로 하여, 통계청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직업적 독립성의 자연적 귀결로서, 통계청장은 통계품질, 통계결과의 완전성, 개체자료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의 엄격한 적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통계청을 선정하고 임명하는 과정과 통계청장을 정부나 이익집단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법률적 수단은 국가통계의 실질적 또는 체감 성실성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구주택총조사의 맥락에서 본다면, 성실성에 대한 특별한 조직적 문제는 전통적 인구주택총조사의 자료 수집과정에서 통계체제의 구성요소가 아닌 정부기관의 개입, 특히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정부기관이 개입되기 때문에 생겨난다. 이러한 단체는 국가통계가 아닌 다른 영역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자치단체들도 비밀준수, 인구주택총조사 맥락의 모든 활동에 수반되는 국가통계의 근본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조항을 추가하는 외에 그 조항의 준수를 점검하는 방법론이 확립하고, 품질관리과정의 일부로서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정부는 자기 지역의 전체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광역자치체로 승격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관리시스템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기 지역의 전반적인 전망을 개선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자치단체 수준에서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 특별한 제도적 안전조치(institutional safeguards)가 통계청의 품질관리기준 외에 센서스법에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국가통계의 일부활동이 민간기관에 외주형식(outsourcing)으로 발주되는 경우, 해당 계약문서는 동일한 활동이 통계청 내부에서 실시되는 것처럼, 계약기관의 책임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계약기관이 처리하는 자료는 계약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계약기관이 사용할 수 있으며, 통계적 목적이든 비통계적 목적이든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센서스법은 비밀준수 업무와 같은 근본원칙에 대해서는 인구주택총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외주기관의 직원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계약의 위반은 향후 통계청과의 추가적인 외주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기 때문에, 민간 계약업자는 관련 계약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은 민간기관이나 다른 정부기관에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고 해서 통계청의 업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통계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5) 투명성

국가통계의 제3의 근본원칙인 투명성(transparency)은 직업적 독립성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원칙이다. 이것은 국가통계 담당자가 직업적 독립성이란 우산 아래서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이용자, 응답자, 납세자에게 완전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통계의 작성과 배포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방법은 투명해야 하며, 투명성은 비판적 이용자에게 방법론의 선택에 대하여 응답을 현명하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IMF의 자료품질평가 기준은 방법론의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결과가 배포되기 전에 이용자들에게 사전통지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통계작성 결과의 배포과정에서, 자료원이나 방법론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통계작성 결과가 사전에 정의된 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되며 또 그렇게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공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공식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그 결정을 정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자료도 첨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품질평가와 더불어 그 결과를 일반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투명성의 원칙이 통계청에 부담을 준다면, 통계담당자에게 특정 방향으로 통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간섭이나 압력에 굴복하도록 비난을 하는데 있어서 제1단계에 해당하는 무책임한 “블랙박스” 형의 행태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 대응하는 것은 필요하다. 투명성은 오늘날의 국가통계에서 필요한 요소이며, 인구주택총조사와 같은 전수조사의 경우에, 통계가 이제 단순히 빈도집계, 합계 또는 평균만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editing), 보정(imputation), 외삽연장(extrapolation), 상이한 자료원의 통합(integration of different data sources) 등을 통하여 추정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복잡하고, 반복적인 일련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이다. 투명성은 또한 모든 통계담당자가 제3자에 의한 통계의 잘못된 해석이나 오남용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제4의 근본원칙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권한을 언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통계담당자의 직업적 독립성에 관련되는 것이며, 통계시스템의 외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이 통계담당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존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시스템이 작동하는 모든 법률, 규정, 조치 등은 일반대중에게 공표되어야 한다.”는 제7의 근본원칙은 투명성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원칙이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특히 그것이 조사표를 이용하는 현장조사 형태의 전통적 인구주택총조사인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통계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 지침, 매뉴얼 등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자료는 요구가 있는 경우,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자료는 통계청의 관련 웹사이트에 게시하여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응답자와의 관계

국가통계의 다섯 번째 원칙에 의하면, 응답자 부담은 일차적 자료수집이나 이차적 자료수집 간의 선택, 일차적 자료수집의 설계방식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이 원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비밀준수 서약과 함께, 통계청과 응답자간의 관계에 대한 성실성 측면의 핵심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전통적 인구주택총조사의 형태로 응답의무가 모든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차적 자료수집에 특별히 관심을 끄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응답자와의 관계에서 성실성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조사항목의 선택은 적합성과 표본조사와 같은 자료수집의 응답자 부담이 경감된 자료수집 방식의 부적합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예비조사로서 다양한 지역환경에서 조사표를 점검하는 진지한 노력과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문제가 되는 조사항목을 제거하고 다른 자료수집 방식으로 이용자들을 유도함으로써 해서 필요한 결론을 도출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고려하라.

3) 인구주택총조사 일자에 앞서서 홍보캠페인을 제대로 기획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4) 자료가 수집되는 최근의 시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 법률적 기반, 자료의 용도, 개체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공공기관, 비밀준수 조치, 응답자의 책임, 조사 불응의 결과, 그리고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추가적 정보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가를 적시하는 안내책자를 모든 가구에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

5) 자료수집 시점에서 가구와 가구원을 접촉하는 방식을, 균형 있게,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특수인구집단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것은 현장 조사원에게 제대로 된 지침 사항을 전달하고, 제대로 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저항을 증대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현장 조사원을 선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독촉장/재접촉의 단계적 방침을 조심스럽게 기획하고, 조사 불응에 대한 형벌초항을 언제 이용하며, 법률위반에 대한 절차개시와 관련하여 명확한 방침을 설명한다.

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등의 정책 활용방식 해외사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정책 활용방식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경우, 네덜란드 통계청이 작성하는 인구주택총조사나 관련 통계에 대하여 정책관련 통계를 작성하는 연구소를 설립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 일본의 경우

일본의 경우, 그들이 “국세조사”라고 부르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개별 조사항목의 활용범위는 대단히 넓다. 일본 총무부 통계국이 제시하고 있는 활용의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것은 일본 통계국 웹사이트(www.stat.go.jp)를 참고할 것).

가. 각종 법령에 의한 이용

(i) 국회의원 선거구의 개정

먼저, 일본은 국회의원 선거, 특히 일본 양원제 국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衆議員) 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일본 중의원의 원선거구획정심의회는 중의원 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구를 개정하기 위한 조사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내각 총리대신에게 개정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거구 개정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각 선거구의 인구는 “관보(官報)로 공시된 최근의 국세조사 또는 그것에 준하는 전국적인 인구조사에 의한 인구”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이

현재, 주민기본대장에 의한 인구가 아니라,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인구를 선거구를 확정하는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ii) 지방자치법

일본의 「지방자치법」에 사용되는 “인구”는 “관보(官報)에 게시된 최근의 국세조사 또는 그것에 준하는 전국적인 인구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인구”로 정하고 있다. 이것도 일본이 주민기본대장에 의한 인구가 아니라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인구가 지방자치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인구”를 요건으로서 정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요한 것으로는 ① “시”가 되기 위한 요건 ② 광역자치체(道都府縣), 기초자치체(市町村) 지방의회의 의원 수 ③ 지정도시(指定都市), 중핵시(中核市), 특례시(特例市)가 되기 위한 요건 등이 있다. 이 경우, 센서스인구는 공식인구(official population)일 뿐만 아니라, 법정인구(legal population)로서 의미를 지닌다.

(iii) 지방교부세법

일본의 인구주택총조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의 분배에 대한 합리적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하다. 지방교부세 교부금(보통교부세)의 금액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각종 경비의 산출에 있어서, 국세조사의 조사결과인 “인구”, “도시인구”, “농촌인구”, “65세 이상인구”, “도시계획구역의 인구” “임업, 수산업, 광업의 종사자수”, “가구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iv)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에 의한 “과소지역”(過疎地域, depopulated area)으로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일본 국세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한 기초자치체의 인구감소율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센서스인구는 시계열자료로서 인구감소의 정소, 인구밀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는가와 관련하여, 과소지역을 결정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v) 정당교부금조성법

정당에 교부하는 정당교부금(政黨交付金)의 총액을 구하기 위하여, 정당교부금을 배정하는 “기준일의 인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일자에 가장 가까운 일자에 관보에



공시된 국세조사의 결과에 의한 확정수를 말한다.

이외에도 지방세법, 공직선거법, 도시계획법 시행령, 농촌지역 공업 등 도입촉진법 시행령, 재해대책기본법시행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저개발지역 공업개발촉진법시행령, 특정 농산촌지역의 농림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도로 양여법 시행령 등 수많은 많은 법령에서 국세조사, 곧 센서스인구를 이용하도록 정해져 있다.

나. 각종 사회정책의 근거자료 활용

(i)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

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의 방향설정

일본은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경험하고, 평균수명의 신장과 더불어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고령화의 속도도 구미 선진국이 경험하지 못한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정태통계로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커지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저출산·고령사회대책의 대강(大綱)이나 구체적인 실시계획인 자녀양육을 응원하는 계획 등을 책정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를 사용한다. 또, 인구감소사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결과 중에서 연령별 인구를 집중적으로 이용한다.

② 연금·의료비

일본의 연금이나 의료비 부담 및 급부에 대하여 각종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에,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뿐만 아니라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동태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여 작성된 장래추계인구(population projection)가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③ 생활방식, 라이프스타일 등의 변화가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저출산, 소자화도 문제이지만 이것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혼율과 독신경향을 의미하는 비혼율(非婚率)이 문제가 된다.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가 생활방식이나 라이프스타일(life

style)의 변화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고 나아가 그것이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정책연구가 이루어진다.

④ 고령자복지 문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중에서, 가구구성에 관한 제표결과 중에서 “혼자 사는 고령자의 수”, 곧 고령자 1인 가구(one-person household)의 수가 거주지역, 교육수준, 경제활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항목에 대한 제표결과를 토대로 하여 고령자 복지를 검토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⑤ 자녀양육환경의 충실

보육시설 등 자녀양육 관련 시설의 충실도를 측정하는 지표에 취학연령 이전의 인구, 곧 0-5세 인구 전체와 6세 인구의 50%를 분모로 이용한다. 일본의 국세조사는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보다 조사항목 수가 적고, 전수조사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다양한 소규모의 통계조사에서 획득한 보육수요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연령별 인구집계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작성된 장래추계인구가 사용되고 있다.

(ii) 재해방지 대책

① 재해방지계획의 책정

일본의 광역자치체(도도부현), 기초자치(시정촌)의 인구, 인구밀도, 인구밀도(도시지역에서는 주간인구) 등이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측정되는 인구규모는 통상적으로 “상주인구”(usual-resident population)인데, 이것은 “야간인구”(夜間人口, nightly population)에 해당되며, 도시지역에서는 이와 함께 통근·통학지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을 이용하여, “주간인구”(晝間人口, daily population)를 측정한다.

② 재해방지계획

2004년 니가타현(新潟県) 조에추(中越沖) 지진의 복구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사실, 재해방지 프로그램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각종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는 재해방지는 물론 재해수복 프로그램을 확정하는데도 대단히 유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③ 피해예측

CMS (Census Mapping System)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난피해지의 피난인구를 추계하거나, 화산 분출이 있는 경우 피해방지목적의 지도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며, 홍수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다양한 조사항목의 자료와 다른 통계조사나 실측결과에 의한 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④ 피해예측시스템의 개발

일본의 경우, 건물피해, 인적피해, 화재에 관한 피해를 추정대상으로 하여, 간이형 지지피해 상정 시스템 (소방청)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인구총수, 가구총수, 주택형태별 주택에 거주하는 일반가구의 자료를 이용한다.

(iii) 행정상의 계획의 책정

① 국토개발

일본정부는 장기적인 국토계획의 방향을 보여주는 「국토형성계획」(国土形成計画)을 책정하고, 국토계획의 과제를 검토하는 국토심의회의 기초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이용한다. 국토이용법에 기초하여, 국토교통부는 전국,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의 중장기 국토개발계획을 책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와 소지역집계(small-area statistics)의 결과를 이용한다.

이밖에도 노동정책, 산업정책, 주택정책, 환경정비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다방면에서 이용하고 있다.



다. 국민경제계산 추계의 기초자료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결과에 따라, 가구수나 산업별 고용인구는 국내총생산(GDP) 등을 계산하는 국민경제계산(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ing)의 추계에 이용한다.

구체적으로, 국민경제계산 중의 경제활동별 취업자수와 고용자수는 국세조사의 결과에 따라, 산업별,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수, 고용자수를 기초로 하여 추계된다. 또 산업연관표의 부대표로 작성되어, 고용창출에 대한 파급효과 시뮬레이션 등에 이용되고 있는 고용행렬(employment matrix, 경제활동별, 직업별 고용자수)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산업, 직업별 고용자수를 기초로 하여 계산된다.

라. 일본 정부의 각종 백서의 분석목적에 이용

일본 정부의 내각 부처에서 행정과제와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백서 등에서, 현황과약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른 인구에 관한 자료는 높은 빈도로 이용되고 있다. 가령, 일본은 2008년도 「연차경제재정보고」(年次經濟財政報告)(경제재정백서), 2009년 「노동경제의 분석」(노동경제백서) 등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이용되었으며, 2009년 「저출산사회백서」에서는 일본의 저출산 현황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마. 지방공공단체의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i) 행정상의 계획 책정

① 지방공공단체의 장기계획 등

지방공공단체의 장기종합계획이나 장기비전, 지역형성계획 등의 책정에, 성별, 연령별, 산업, 경제활동상태, 산업, 종사상의 지위별 인구 등이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ii) 저출산/고령사회대책, 의료 및 복지계획

① 지방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광역자치체별로 저출산대책계획(자녀양육지원계획), 청소년건강전육성 및 고령자대책 추진계획, 고령자 주택 정비계획의 책정에 공공단체의 장기계획 등에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중에서, 광역자치체별 성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인구(고령자의 인구, 고령자가 광역자치체별 총인구에서 비율, 미혼여성의 비율), 평균가구원수, 가구의 가족유형별 가구수(핵가족가구의 비율 및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 등이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② 의료·복지사업대책

광역자치체의 보건의료복지계획, 건강형성지침, 고령자보건복지계획, 돌봄보험사업지원계획 등의 책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남녀별, 취업상태별 인구와 가구의 종류, 가구의 가족유형, 친자의 동거(비동거별) 가구수가 기초자료로서 이용되고 있다.

(iii) 지역 및 산업의 진흥 및 고용대책

① 과소지역 등에 대한 대책사업

과소지역, 중산간(中山間)지역, 산촌, 외딴 섬 등의 특정지역이 정비, 진흥을 목표로 하는 계획책정의 기초자료와 과소지역, 중산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기초자치체(시정촌)의 인구, 연령별인구(젊은 인구, 고령자 인구), 산업별 인구 및 가구수 등의 자료가 이용된다.

② 산업진흥

지방자치체의 산업전반 및 농업, 수산업, 임업, 목재산업, 축산업, 중소소매업, 관광업, 도소매시장 정비 등의 특정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기 하고, 기업유치계획의 기초자료로서 경제활동인구, 산업, 직업별 인구 등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에 대한 정보가 이용된다.

③ 고용대책

광역자치체의 직업능력개발계획, 구직활동원조계획, 취업지원대책 등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취업상태, 산업별/직업별/종사상의 지위별 인구 등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집계결과에서 이용된다.

(iv) 재해방지 관련

① 지역의 재해방지 계획

지역의 재해방지계획, 재해응급물자정비계획, 토사재해방지, 급격사지 붕괴방지대책, 눈사태 대책, 하천대책 등의 재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대상지역의 인구와 가구수가 이용되었다.

② 피해 예측

대규모 지진의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자치체가 마련하는 피해예측의 기초자료로서 인구와 가구수가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에서 이용된다.

(iv) 생활전반의 대책

① 지방공공단체의 주택건설계획

지방공공단체의 주생활 기본계획, 주택기본계획, 공영주택정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에서 주택의 종류, 주택의 소유관계, 주택의 마루면적, 주택의 건축방식별 가구수의 정보를 이용한다.

② 도시, 교통

도시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도시계획 구역 내의 인구와 가구수(그 증감의 변화추이)가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에서 이용되고 있다. 또, 지역의 도시교통계획, 생활교통비전이나 도로정비계획, 공항의 이용 및 신간선의 개통에 따른 병행 재래선의 수요예측, 항만계획 마련 등의 기초자료로서 통근장소, 통학장소, 통학장소별, 통근장소별, 상주지별 교통이용수단별 인구에 대한 자료가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에서 활용된다.

③ 기타

광역자치체(도도부현)에서 남녀공동참여계획을 마련하거나 기초자치 합병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를 이용한다. 또, 인구 100명 또는 1000명당 ○○○을(수)(예: 인구 1000명당 병원의 수)을 계산하여, 지역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바.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i) 장래인구, 가구수의 추계

일본 후생노동성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는 센서서 결과를 이용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고, 가구수의 장래 추계를 실시한다. 장래추계인구를 작성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를 토대로 하여 성별, 연령별 인구를 기준인구로 설정한다.



(ii) 생명표의 작성

또, 생명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성별, 연령별 인구를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에서 이용하며, 그 결과는 평균수명 등의 학술연구는 물론 정책지표를 작성하는데 이용한다.

2)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일본 국세조사에 이어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구주택총조사가 국가정책의 수립, 평가 등의 작업에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검토한다. 먼저, 일본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범위를 선거목적이나 지방교부금 배정문제에서 출발하여 검토하기 시작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도 상세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의 공식 웹사이트(www.abs.gov.au)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가. 기존의 인구주택총조사 활용범위

(i) 선거목적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목적은 연방헌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서 10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이유와 동일하다⁷⁾. 오스트레일리아

7) 미국 연방헌법은 연방의회 하원의 주별 의석수나 선거구 조정작업에 반드시 10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

연방헌법(Commonwealth of Australia Constitution)은 연방을 구성하는 주(state)와 준주(territory)의 하원의석수는 이들 주와 준주의 인구규모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오스트레일리아는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 및 통계법(Census and Statistics Act 1905)과 연방선거법(Commonwealth Election Act)의 규정에 의거하여, 센서스인구는 주/준주의 하원의석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식추계인구(official population estimates)를 작성하는데 사용한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실제로 집계된 인구를 하원의석 배정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인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구조밀지역인 수도권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와 인구과소지역인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에 대해서는 순누락(net undercount)의 정도와 추계인구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의 추정결과를 인구추계보고서에서 게재하여, 선거관련 인구통계의 공적 가시성(public visibility), 과정의 투명성(transparency of process), 확실성(certainty)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ii) 재정목적

오스트레일리아는 연방국가로서 연방정부, 주/준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이른바, 수직적 재정불균형(vertical physical imbalance)이 대단히 크다. 연방정부는 광범한 징세권(taxation power)을 발동할 수 있으며, 근대국가의 두 가지 세입원인 개인과 기업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와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consumption tax)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을 구성하는 주/준주정부는 징세권은 제한적이지만, 기반시설(도로, 수자원, 전력 등), 병원, 교육, 치안 등의 지역문제에 대하여 광범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바로 연방정부가 주/준주정부에게 거대한 자금을 이전해야 하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지방교부금”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지방교부금의 배정은 주로, 독립행정기관인 연방교부금배정위원회(Commonwealth Grants Commission)에 의하여 결정된다. 연방교부금배정위원회는 교부금의 주/준주별 배정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된 추계인구(population estimates)와 인구주택총조사 정보의 상세한 분석결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상세한 인구주택총조사 정보의 이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국민이 어디에 거주하든 관계없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주주의 정부의 구성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는 주/준주별로, 고령자 인구의 비율,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에서 입국한 인구의 비율, 원주민 인구의 비율 등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은 주/준주별 추계인구를 기준으로 할당하는 교부금에 대하여 보정요인을 결정하는데 이용한다.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정부는 340억 US 달러를 주/준주에 교부금으로 배당하였다. 사실 5년 단위로 실시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주택총조사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추계인구를 재정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 하원의원 선거목적에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순누락(net undercount)과 인구주

하여 제표결과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헌법도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여, 연방의회 하원의 주별 의석수를 결정하는데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연방헌법이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셈이다.

택총조사 기준일자 이후의 해외체류자, 출생, 사망, 국제인구이동에 관련된 인구동태 요인을 조정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는 1976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일차적으로 순누락을 보정하여, 교부금 배정에 활용하여 왔다.

(iii) 정책 및 서비스 전달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중에서 직업, 산업, 자격증 소유여부, 직장으로의 이동방법, 5년 전의 상주지 등에 대한 정보는 정책이나 서비스 전달에 사용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모든 국내거주자를 상대로 전수조사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표본항목 조사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의 항목들의 표본항목으로 조사되는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이들 항목은 자료를 수집하여 처리하는데 이용이 가장 많이 드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위의 조사항목에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1) 노동시장 개혁: 노동시장의 산업별, 직업별 구조의 변화양상을 감시하고, 현행 정책의 영향과 새로운 정책의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2) 교육부문의 자원배정

(3) 여성,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사람, 원주민(aborigine)의 기회균등과 형평성을 감시 감독

(4) 도시계획, 특히 수송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5) 방재 및 위기관리 계획: 특정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지 또는 일하는가에 관련 수치정보와 관련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정보를 알 필요가 있다.

(6) 국제인구이동과 국내인구이동의 감시 감독: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의 약 절반은 5년 내에 상주지 주소를 옮긴다. 누가 이사를 하는가와 그들의 출발지와 목표지가 어딘가를 이해하는가는 연방정부, 주/준주정부, 지방정부 수준에서 인구변동의 특징을 이해하고, 인구주택총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의 추계인구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

이상에서 언급한 모든 영역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정책계획, 자금배분, 감시 감독,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광범하게 이용되고 있다. 결국, 이용영역 특히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국가정책의 강한 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은 5년마다 현지실사로 전수항목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비용의 증가를 우려하는 소리가 있지만, 그것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구주택총조사 정보의 이용확대

(i) 지역사회 통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캐나다와 같이, 구미 선진국에서 10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는데 대하여,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이용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지역통계"(community profile statistics)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지역통계"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조사지역과 지역사회에 대하여 패키지의 형태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을 대부분 포함하는 2차원 또는 3차원의 통계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이러한 통계표가 1966년에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일찍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은 지역통계를 인구주택총조사의 "핵심통계" (core statistics)라고 간주된다. 이 지역통계는 일반국민은 물론 정책입안자들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입수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6년 3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오스트레일리아 2001년 인구주택총조사 지역통계의 75만 개 프로필이 다운로드되었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은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운영되는 도서관 연장 서비스(Library Extension Service)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지도자는 물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지역통계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전력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공고히 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ii)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공간분석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공간분석은 오랫동안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국가정책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상되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은 CD ROM으로 공표되는 CDATA와 같은 특정 상품을 개발하여, 여기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통계적 경계선에 대한 자료, 지도 및 GIS 자료를 통합하도록 하여, 통계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정책입안자가 보더라도 다양한 탐색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CDATA는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못한 주/준주정부나 지방자치체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각종 비즈니스 단체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도 도움을 주었다.

다.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의 확대-학술 공동체와의 협력증진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국가정책에 대한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학술 공동체가 분석적 연구를 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쉽게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은 각종 연구자금을 지원하여 연구계획을 추진하거나 연구능력을 구축하려고 하는 많은 대학들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관련 프로젝트는 3년을 주기로 계속되는 다양한 연구주제들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특별제표작업이나 자문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수많은 정책담당 정부부처가 정책수립과정의 일부로서 추진하였던 캔버라대학(University of Canberra) 사회경제모형구축 국립연구원(National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Modeling)의 소득 및 지출의 행태에 관

한 소지역 모형구축 작업이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주택총조사분석 프로그램(ACAP: Australian Census Analytical Program)은 특정주제에 대한 집중적 분석연구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주제는 학술단체의 관심영역을 검토하고,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이 직접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의 예가 현재 많은 정책분야에 응용되고 있는 노숙자 집단(homeless)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련되는 것이었다. 사실,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주택총조사는 이 개념을 직접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다양한 행정자료와 통합하여 보완하는 절차를 밟아서 노숙자 집단을 측정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 프로그램은 2006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추가적으로 보강되어 왔다.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은 매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가 어떻게 연구, 분석, 정책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라. 차기 인구주택총조사의 새로운 과제-자료배포방식의 개선과 확대

오스트레일리아 통계청은 2006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배포전략을 개선하여 왔다. 일차적으로, 통계청 웹사이트를 통하여 자료를 배포하는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목적은 정책입안자를 포함한 모든 통계이용자들이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하여 미리 알 필요가 없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행정구역 또는 지도나 실제 주소를 사용하여 정책이나 일상적 관심의 영역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는 지도나 그래프로 작성된 표로 제시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스프레드시트나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네덜란드 통계청의 경우

위의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는 실질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가 선거목적이나 재정목적, 나아가 학술목적에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네덜란드 통계청이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엄정중립과 공적책임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어떻게 정책관련통계를 작성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사례는 정책관련 통계의 개발에서, 정부부처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지만, 정책관련통계도 국가통계작성의 기본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다(Gosse van der Veen, 2007).

가. 엄정중립과 공적 책임의 원칙

네덜란드 통계청은 정부조직으로 엄격히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엄정중립(strict independence)을 지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엄정중립과는 다른 또 하나의 축은 하나의 조직이 갖는 국가의 재정투입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이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경우도, 연차별 또는 중기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때문에, 사업계획 자체가 공적 책임의 핵심 요소이며, 사업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중앙통계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Statistics)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일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물론 특성 통계주제와 관련하여, 모든 이해당사자들과 접촉을 강화한다. 수많은 자문기관이 있

으며, 이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조정방안은 물론 각종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사업계획의 운영수준에도, 기존 통계작성을 토론하고, 특정 영역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장래 수정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통계이용자 집단이 있다. 공적 책임의 또 다른 영역은 전년도 네덜란드 통계청의 업무성과와 재정상태를 설명하는 연차보고서를 간행한다. 공적 책임의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는 네덜란드 통계청이 작성한 모든 주제영역의 통계들을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입수 가능하도록 하여 모든 통계이용자들이 무료로 관련 자료를 활용하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중앙통계위원회가 매년 네덜란드 통계청의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기 때문에, 국가통계기관으로 네덜란드 통계청이 작성 가능한 국가통계의 범위가 사전에 전문가 집단에 의하여 대단히 현실적인 방법으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통계작성에 대한 많은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수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재정투입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통계작성의 범위가 정부부처의 추가적인 재정투입으로 확대가 가능하며, 추가적인 재정투입은 기존에 승인된 사업계획의 확대를 가져온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추가적인 통계작성의 결과도, 기존의 승인된 통계작성계획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국가통계의 일부로 보며, 인터넷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모든 통계이용자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더욱이, 추가적인 통계작성을 요구하더라도, 네덜란드 통계청은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자율성" (professional autonomy)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재정투입을 하는 정부부처는 통계주제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한다고 해서, 특정 주제의 통계작성 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사업계획이 범위를 벗어나서,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하는 후원기관이 없는 주제영역의 통계는 작성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네덜란드 통계청이 작성하는 모든 통계는 국가통계이며, 정부의 특정 부처가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한다고 해서, 집중적 통계제도(centralized statistical system)를 채택하는 네덜란드 통계청이 국가통계가 아닌 별도의 "비공식적인 통계" (non-official statistics)를 만든다거나 재정투입을 추가적으로 결정한 정부의 특정 부처만을 위한 통계작성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나. 정책통계연구소

(i) 정책관련 통계 수요의 사전과약

어느 나라의 경우에나 마찬가지로이지만, 네덜란드에서도 통계이용자 면접조사의 결과는 하나의 상품으로서, 통계작성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희망사항이었다. 통상적으로, 네덜란드 통계청의 업무계획에 따라 전달되는 통계상품들이 상당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통계상품의 구조가 오랫동안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네덜란드 정책분야의 일선 행정책임자들은 순간순간의 목적에 절대적으로 부합되는 "맞춤형" 정보(tailored information)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2000년경부터,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생산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집중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네덜란드 통계청의 자료들이 분산적으로 관리될 우려가 있고, 비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이유 때문에 폐기처분되었다. 그 대신, 네덜란드

통계청은 별도의 사전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부서를 만들어서, 각 정부부처의 기존 정보수요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업무를 개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물론, 출발 당시부터 네덜란드 통계청은 각 정부부처가 이러한 “맞춤형” 통계에 무료로 배타적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봉쇄하였으며, 해당 정부부처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상품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했고, 그 결과는 다른 공식통계들과 마찬가지로 네덜란드 통계청의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했다.

네덜란드 통계청의 파일럿 프로젝트는 성공했으며, 2004년에 정책통계연구소(Center for Policy-Related Statistics)를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의 목적은 정부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정부부처, 계획수립기관, 지방자치체, 그리고 정당들은 규칙적으로 자료생산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이 연구소를 통하여 정책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이 연구소는 20명의 정규직원에게 해당하는 업무량을 갖고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책통계연구소는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보된다. 우선, 연구소의 정책통계 프로젝트는 네덜란드 통계청의 핵심 역할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정책통계 의뢰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에 의하여 보완되기는 하지만,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프로젝트의 결과는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며, 정책통계 의뢰기관에만 배타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정책통계 의뢰기관이 기대했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도 그대로 출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정책통계 의뢰기관은 최종상품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발언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에서도 자료보호(data protection)를 위한 정상적 절차가 그대로 준수된다는 것이다. 넷째로, 정책 관련 통계에서도 비용, 상품, 시의성(timeliness)이란 관점에서 엄정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위의 사례는 정책통계 의뢰기관의 역할과 통계연구를 행하는 당사자로서의 네덜란드 통계청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정책통계 의뢰기관이라고 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간섭이나 훼방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네덜란드 통계청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정책통계 의뢰기관과 통계작성 기관은 각자의 적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으로 실시되는 맞춤형 연구사업과 유사하게, 네덜란드 통계청 자료의 마이크로 데이터의 경우에 외부연구자와 네덜란드 통계청이 담당하는 역할에서 명백한 분업이 존재한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연구제안서의 현실성과 정당성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적절하게 준비되고 문서화된 통계자료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고, 통계적 노출의 위험에 대하여 최종 성과물을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 반대로, 외부연구자는 독자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 책임을 지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결론이나 합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또한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출판할 때, 네덜란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내용은 연구자의 책임이며 자료제공기관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마땅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정책부서 이용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제공방안

인구주택총조사를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공정정책에서의 형평성의 확립이나 합의형성의 역할(예: 정부서비스의 배분, 의석수의 배분, 정부자금의 지역배분, 선거구 구획)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군에 관한 통계, 자연의 경계에 의한 구역별 통계를 얻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은 통계법에 근거하여, 자료제공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도 통계청이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이 규정을 준수하여 정책부서 이용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통계기관으로 성실성, 엄정중립성의 근본원칙을 준수하는 일차적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1) 정책부서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이용을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의 제표결과 등의 공표자료는 물론 CD-ROM의 형태로 주어지는 미공표 자료를 왜 정책부서, 특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왜 많이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근본적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제공방안을 아무리 논의한다고 해야, 정책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각종 법령에 “인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며, 특히 인구주택총조사라는 현지실사라는 대규모의 방대한 통계조사 외에, 공적장부에 기초한 주민등록자료의 인구 및 세대 자료가 일반 행정업무에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통계청이 작성하는 인구주택총조사가 2010년 국정감사의 쟁점사항으로 등장하였다.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공식인구, 이상하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고려대 박유성 교수의 논문에 의하여 촉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논문이 주장하는 요점을 정리하면 “우리나라 공식인구를 작성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2005년 공식인구를 비교한 결과 남녀 성비가 뒤바뀌어 있을 뿐 아니라, 성별 연령별 구조가 매우 상이하고, 지역별 통계는 왜곡되어 있고, 출생자수와 사망자수의 조사와 집계에 대한 부정확성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공식인구(official population)는 해당국가의 통계청이 통계작성기관으로서 작성하는 “인구”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공식인구는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 원칙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본조사와 사후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어야 한다. 구미선진국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본조사의 누락이 많아서 센서스인구에 대한 보정작업이 자주 행하여지지만, 미국은 헌법규정에 입각하여, 선거구 획정에서는 본조사에서 파악된 인구를 보정하지 않으며, 각종 추계작업에서는 센서스인구를 보정하여, 장래인구추계의 정확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한편, 영국은 “One Number Census Project”를 통하여 센서스 본조사에서 파악된 인구를 사후조사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보정하여 공식인구를 확정하고, 그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법정인구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하여 공식인구를 작성해야 하는 책임은 통계법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차적으로 국가의 법률이나 관련 시행령에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여 파악된 인구가 선거구 획정이나 지방교부세의 배분에 사용되는 공식인구라는 규정이 없다. 곧 센서스인구는 통계청이 작성한 “공식인구”(official population)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행정이나 정부의 각종 정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우리나라 공직선거

법, 지방자치법, 지방세교부법 등의 법령에 찾아볼 수가 없어서, "법정인구"(legal population)

[표 4-23] 광역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와 센서스 인구: 2005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2005.12.31)		센서스인구 (2005.11.1)		주민등록인구의 과다등록		
	실수 (만명)	구성비 (%)	실수 (만명)	구성비 (%)	(2)-(1)	(5)/(3))*100	(6)-3.7 0
	(1)	(2)	(3)	(4)	(5)	(6)	(7)
전국	4878.2	100.00	4704.1	100.00	174.1	3.70	0.00
서울	1016.7	20.84	976.3	20.75	40.5	4.15	0.45
부산	363.8	7.46	351.3	7.47	12.6	3.58	-0.12
대구	251.1	5.15	245.6	5.22	5.5	2.25	-1.45
인천	260.0	5.33	251.8	5.35	8.3	3.29	-0.41
광주	140.2	2.87	141.4	3.01	-1.2	-0.84	-4.54
대전	145.5	2.98	143.9	3.06	1.6	1.12	-2.58
울산	108.8	2.23	104.5	2.22	4.3	4.09	0.39
경기	1069.7	21.93	1034.1	21.98	35.6	3.44	-0.26
강원	151.3	3.10	146.1	3.11	5.2	3.58	-0.12
충북	148.9	3.05	145.4	3.09	3.5	2.40	-1.30
충남	196.3	4.02	187.9	4.00	8.3	4.43	0.73
전북	188.5	3.86	177.9	3.78	10.6	5.98	2.28
전남	196.7	4.03	181.5	3.86	15.2	8.38	4.68
경북	268.8	5.51	259.5	5.52	9.4	3.61	-0.09
경남	316.0	6.48	304.1	6.46	11.9	3.93	0.23
제주	55.8	1.14	53.1	1.13	2.7	5.07	1.37

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 보고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서울, 6개 광역시, 9개 도)가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5년 11월 1일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결과와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주민등록인구의 결과와 비교해본다. 통계청이 공식적인 인구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센서스, 곧 인구주택총조사는 (1)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상주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로 체재중인 자와 그 가족을 포함하며,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중 군인·군속·외교관과 그 가족 및 국제연합·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중인 자와 그 가족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또 상주지 주소를 기준으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상주(usual residence)를 "일정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과 거주하려는 기간을 합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모든 내국인, 곧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정의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는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있고, 이러한 등록업무에 대하여 예외자는 외국인과 영내에 거주

하는 군인인데, 후자의 경우는 해당 군인이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표 4-23]에서 내국인 인구만을 비교할 때, 주민등록인구와 센서스인구 간에 시도별 구성비는 그리 큰 차이가 없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는 장기적인 해외거주인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센서스인구는 오히려 그 반대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국민경제계산(system of national accounting)의 GDP와 유사한 개념이 센서스인구이고, GNP와 유사한 개념이 주민등록인구이다.

주민등록인구를 센서스인구와 비교하여, 주민등록인구의 상대적 과다등록을 측정하여보면, 전국수준에 주민등록인구는 센서스인구보다 3.7%가 과다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전남이 전국 평균보다 4.7%나 더 많은 상대적 과다등록 상태이며, 광주와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4.5%나 상대적 과소등록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시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서울과 울산이 전국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다등록 상태이며, 대전, 대구 등이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소등록 상태이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남 외에도 충북, 제주가 상대적으로 과다등록 상태이며, 충북은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소등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실, 주민등록인구에서 전국 평균 과다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의 등록의 과다 또는 과소를 평가한다면,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가 도시지역으로 구성된 시단위의 광역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소등록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가. 인구주택총조사와 선거활용

미국은 현재인구추계나 장래인구추계를 작성할 때에는 센서스인구의 과다집계 또는 과소집계를 수정하여 공식인구를 산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연방 하원의원수를 주별로 배정하는 경우는 센서스인구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그 이유는 미국 연방헌법이 연방하원의 의석을 주별로 할당하기 위하여, 센서스인구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을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헌법 제2조 제3항에는 “하원의원 및 직접세는, 연방에 가입한 각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각주 간에 배분된다. 각주의 인구는 정해진 햇수에 대하여 노역을 제공해야 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미국 원주민을 제외하는 자유인의 총수에 자유인 이외의 모든 사람 수의 3/5로 한다. 실제 인구의 파악(actual enumeration)은 연방의회 최초의 집회 이후 3년 이내(1780년)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10년마다 의회가 법률이 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이후 생략)..”고 되어 있다.

일본도 국세조사, 바로 우리나라의 인구총조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통계조사의 기능을 양원제 국회의 하원(lower house)에 해당하는 중의원을 구성하는 의원선거구를 확정하기 위한 심의회 설치법(衆議院議員選挙区画定審議会設置法)에 국세조사의 활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설치) 내각부에 중의원 의원 선거구 구획을 위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 (소관사무) 심의회는, 중의원소선거구선출 의원의 선거구(選舉區)의 변경에 관하고, 조사 심의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변경안을 작성해서 내각 총리대신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변경안의 작성 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안의 작성은, 각 선거구(選舉區)의 인구 균형을 도모하고, 각 선거구의 인구(관보에서 공시된 최근의 국세조사(인구주택총조사) 또는 이에 준하는 전국 인구조사의 결과에 의한 인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장 적은 인구로 나누었을 때 그 몫이 2 이상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행정 구역, 지세, 교통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제1항의 변경안의 작성에서, 각 광역자치체의 구역 내의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선거구의 수는, 우선적으로 공직선거법(1950년 법률 제100호)제4조 제1목에 규정하는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정수에 상당하는 수에서 광역자치체의 수를 공제한 수를 인구에 비례해서 각 광역자치체에 배당한 수를 합한 수 한다.

제4조(권고의 기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인구주택총조사(통계법 (2007년 법률 제 53호) 제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한한다.) 의결과에 의한 인구가 최초에 관보에서 공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한다.

2.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심의회는, 각 선거구의 인구가 현저한 불균형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 (국회보고) 내각 총리대신은, 심의회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았을 때는, 이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끝자리가 '0'으로 끝난 해의 인구주택총조사, 바로 국세조사 결과로서 관보에 공시된 인구통계나 전국적인 인구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일본 국회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소선거구의 인구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의 2배를 넘어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 또, 인구가 아무리 적은 도도부현(道都府縣) 광역자치체의 경우에도 최소한 1개의 중의원 의원 선출 소선거구를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중의원 소선거구 선출 의원의 정수에 상당하는 수에서 광역자치체의 수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총무부 통계국은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인구는 여전히 부정확하고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선거구를 구획하기 위한 인구통계로 사용하지 않으며, 국가의 공식통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총조사, 곧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인구 바로 센서스인구(census population)는 우리나라 헌법은 물론 각종 법령 특히 통계법에도 그 법적 지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비록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이 작성하는 우리나라의 “간판급” 지정통계조사로서, 응답자에게 응답의무가 강제로 부과되는 통계조사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수행하는 역할은 교과서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고, 법적으로 강제된 역할을 그리 많지

[표 4-24] 우리나라 지방교부세 현황: 2001-2010년 (단위: 1000억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방 교부 세	총규모	123	123	149	145	195	204	226	258	251	263
	보통교부세	111	109	122	130	179	187	207	236	229	241
	특별교부세	11	11	12	13	7	7	8	9	9	10
	증액교부금	1	3	14	2	0	0	0	0	0	0
	분권교부세	0	0	0	0	8	10	11	13	12	13
법정률(%)		15	15	15	15	19	19	19	19	19	19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법은 제1조에 법령의 목적을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과 「지방자치법」 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다. 여기서, 제4조는 인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선거관리의 기준은 “선거사무 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주민등록법」 에 따른 주민등록표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로 한다고 하고 있다. 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선거구 조정에서 구미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인구규모를 일차적 요건으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구규모를 다른 선거구 설정요건과 뒤범벅이 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헌법과 지방자치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지역에 대하여 정해진 시점에 전수조사에 의하여 인구규모를 파악하는 전수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되는 공식통계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인구라는 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행정통계 자료를 전혀 보정하지 않고, 선거구를 확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공직선거법 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가진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나. 인구주택총조사와 재정목적

다음은 정책부서의 이용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이용의 전제조건으로서 인구총조사의 인구개념이 중앙정부의 자금을 어떻게 지방정부에 활용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이다. 인구와 관련된 지표들 중에서 지방교부금(일반교부금) 산정에 사용되는 것을 검토하기 전에, 지방교부금이 무엇인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먼저,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균형을 위하여 국세 중 일정액을 법정화하여 자치단체별 재정력을 반영하여 산정·배정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재원구성 :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어 운영되는 「법정분」 으로 구성으로 되도록 되어있다. 또, 지방교부세제도는 종합부동산세에 의한 부동산교부세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 법정분 외에 지급하는 증액교부금(1983~2004)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표 6-24>에 제시된 지방교부세 재원 규모의 추이를 보면, 매년 내국세의 증가율만큼 꾸준히 증가하는 하지만, 경기변동, 교부세 법정률의 변동에 어떠한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부세는 종합적으로, 재원규모가 연평균 1조 7000억 원(연 평균 15.1%)이 증

가하였다. 2003년도에는 태풍 ‘매미’등 수해복구지원을 증액교부금 예산으로 (1조3천억 원을 별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일부 지방양여금 재원의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전환되고 국고 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조정(15% → 19.13%)되면서 지방교부세가 증가하였다. 한편, 2009년에는 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감소하였다.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은 2000년부터 15% 수준에서 2005년에는 19% 수준에 이르렀으며, 약간씩 상승하여 왔다. 보통교부세는 연평균 15.4% 증가하였으나, 특별교부세는 ‘05년 재원 축소(9.09%→4%)로 인하여 연평균 6.2% 증가에 불과하였으며, 2005년부터 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인 보통교부세 교부비율 상향(91%→96%)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도로보전 목적으로 8,500억 원(기존 지방양여금 폐지 전 도로사업)은 2011까지 운용하며, 이후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예정이며, 분권교부세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서 2015년부터 보통교부세와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문화수요 급증으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기준에 사회복지·문화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제공 규정

가. 제공자료의 분류

통계청의 자료제공 규정은 제공되는 자료를 "공표자료(released data)"와 미공표자료(non-released data)로 구분한다.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경우도 두 가지의 경우로 구분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먼저, "공표자료"(released data)인데 이것은 언론매체, 국가포털서비스시스템 또는 간행물(전자매체를 포함)에 의하여 공개되는 자료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기존문항과 신규문항에 대한 제표결과에 기준은 공표자료에 분명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한편, 미공표자료는 앞에서 말한 인구주택총조사 정보의 공표자료 이외의 자료로서, 다음 자료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개인, 가구, 건물 등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객체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을 제거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포함한다.

② 대규모 전수조사 실시를 목적으로 사전에 작성되는 개인 또는 가구를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를 포함한다.

③ 마이크로데이터를 집계하여 만든 통계자료 중에서 대외에 공표되지 아니한 미공표 집계자료를 포함한다.

④ 행정구역별 기본도자료, 조사구요도 자료 등을 전산화한 전산지도 자료를 포함한다.

물론, 위의 자료들 중에서, 그것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인 경우에도 대외에 공표하지 않은 통계표의 경우에도 공표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 공표함으로써 통계청 직원을 포함한 정부통계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래에 언급하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공공성 또는 공적책임(public responsibility)에 못지않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가진 응답자의 사생활보호 문제 또는 정보의 자기결정권(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문제는 결국 헌법상의 문제로 발전하여, 국가통계로서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인구주택총조사를 두고, 1980년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인구주택총조사 위헌판결과 같은 사건을 야기하여 국가통계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가져다 줄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료제공의 범위

통계청은 내부규정으로, 공표자료는 자료를 이용하기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이용목적,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상, 이것 자체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정책목적으로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렇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에서 본 것처럼, 중앙정부의 관련부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정책목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불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명백한 기준이 통계청의 웹사이트에 명백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책이나 업무담당자에 의한 불평불만을 없애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미공표자료의 제공범위는 통계조사의 각 항목별 자료제공범위는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본 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앞에서 검토한 정책부서 담당자들의 요구를 가능한 수용하는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외의 변수에 대해서도 허용범위는 통계이용자의 요구수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①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 및 미공표집계자료의 경우는 개인, 가구, 건물 등 조사객체의 자료가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제공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② 명부자료는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작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가구나 사업체의 정보가 식별된 상태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③ 전산지도자료는 기초단위구, 집계구 및 조사구의 경계, 행정구역 경계 등 통계청에서 자체 생산한 지도정보에 한해 제공한다.

또, 통계청은 국가통계기관으로서 공정성과 성실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① 자료제공 이전에 통계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②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③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자료작성 부서와의 사전 협의 없이 발간물 또는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자료의 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특히 ③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나 기관에 대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의결을 거쳐 자료제공을 상당기간동안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동일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인구주

택충조사 자료의 이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청은 자료제공시점과 관련하여, 공표자료는 공표되는 즉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미공표자료는 해당 통계조사결과가 확정 공표되고 난 15일 이후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또, 우리나라 「통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자료요청을 받은 경우는 확정공표 이전이라도 구체적인 정책관련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통계청과 정부 관련 정책담당 부서의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각 항목별 자료제공 범위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자료범위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료제공방법

통계청은 공표자료는 문서, 전자우편, 전산매체 수록, 간행물, 온라인서비스시스템 이용 등의 방법 중에서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미공표자료는 우리나라의 「통계법」과 「통계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① 마이크로데이터는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CD,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통해 ② 미공표집계자료는 전자우편, 문서, 전산매체,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MDSS),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를 통해, ③ 명부자료 및 전산지도 자료는 인쇄 또는 출력물 형태로 제공. 단, 사업체명부자료의 경우는 협의 하에 이용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통계청이 주관기관으로 되어 있는 모든 통계조사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공공성과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의 대립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교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청장은 중앙정부의 정책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자료제공을 위하여 특별한 전산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관련 전문인력을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러한 경우에 통계 이용자는 통계청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관리 및 운영 지침"으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라. 자료제공절차

통계청이 작성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경우, 공표자료는 통계청의 관련 부서장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VAN 사업체가 청구한 자료는 대행기관이 제공하고,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구된 자료는 통계정보국 내의 소관부서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마이크로데이터 등 미공표자료의 경우에는 마이크로데이터 등 미공표자료는 「통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 대하여 통계정보국장이 통할하여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정보국장은 통계자료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계자료의 이용에 따른 ①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누설 금지 ②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③ 제공 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 금지 등의 이행을 요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계법」의 관련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함께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통계청의 각 부서장은 이용자를 위하여 통계자료 문의에 대한 회신, 통계간행물의 열람 및 복사 제공, 국가통계포털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와 통계자료의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마. 자료제공비용

통계청의 자료제공 규정에 의하면, 공표자료의 경우에는 통계간물을 판매하는 경우, VAN 사업체에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별도의 DB를 구축하는데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 또는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부담 시킬 수 있다. 한편, 미공표자료의 경우는 자료제공비용은 자료이용료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자료제공비용은 통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자료제공비용 산정기준」에 의한다. 또, 자료제공비용 중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자료를 청구하는 자가 입법·사법·행정부 및 지료교환기관, MOU 체결기관 등 통계청장이 자료제공 비용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경우 약정서 등에 적시된 자료로 한정한다.) 지방자치단체, 통계청장이 통계자료제공 대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계자료제공심의회에서 무료로 제공하도록 결정된 경우 자료제공비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 대행기관의 운영

통계청장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특히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청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제공업무를 「통계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한 기관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통계청은 실제로 소속공무원에게 대행기관의 통계자료 제공실태,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대행기관은 앞에서 본 네덜란드 통계청이 내부에 정책관련 통계연구소를 두든 아니면 외부에 완전히 통계자료 처리를 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든 관계없이, 통계청이 정책관련 통계를 많이 생산하고자 노력하기로 하더라도, 통계청이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정보제공자의 비밀보호, 통계직원의 직업적 전문성 보호, 통계작성의 성실성 보호 등을 위하여 대행기관을 철저히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대행기관이 작성한 정책관련 통계도 국가통계의 일부로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일반이용자들로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통계자료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 소속 하에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통계조사의 항목별 자료제공 범위의 설정에 관한 사항, 통계목적 등 자료이용 목적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미공표자료의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자료제공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이용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안전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통계자료제공심의회는 의장 1명, 14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통계정보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통계협력과장, 인구총조사과장, 경제총조사과장, 표본과장, 행정자료팀장, 경제통계기획과장, 산업통계과장, 사회통계기획과장, 인구동향과장, 고용통계과장, 복

지통계과장, 농어업통계과장, 공간정보서비스팀장,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마이크로데이터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통계청장은 심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통계자료제공심의회는 우리나라의 「통계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제공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성립과 심의사항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한다. 심의회의 결정사항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는 재의될 수 없다. 단, 재적위원 2/3이상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책부서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제공의 방안

중앙정부의 정책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를 위한 자료제공 방안은 일차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행물 보고서와 국가통계포털 또는 통계청 웹사이트에 게시될 수 있는 제표 결과 작성원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 통계청이 내부적으로 규정한 자료제공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네덜란드 통계청이 내부에 설치된 정책관련 연구소의 업무진행방향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먼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정책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특성”인 보편성(universality), 바로 “우리나라의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 안에서 보편적이고 통합적으로 실시되는 조사”로서의 성격과 관련되는 것이다. 곧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제공의 방안에서 일차적 고려사항은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 survey)로 하여, 누락 또는 중복 없이 모집단에 대한 포괄범위를 극대화하려는 것과 관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곧, 유엔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원칙과 권고사항에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장점은 소지역(small-area)과 소집단(small-group)에 대한 유용한 통계를 개발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을 개발하려고 할 때, 정책 대상 집단(policy target group)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정책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담당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제공의 방안으로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제표결과는 단순화하고, 그것을 다른 주요통계와 결합하여 관련 지표를 계산하거나 가공수준(processing level)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중에서 인구통계가 장래인구추계의 모수나 국민경제계산의 모수로 사용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가통계포털에 들어있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대부분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만으로 정책부서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자료 자체의 가공수준이 그리 높지 못하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정책부서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제공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별 제표결과를 지도(map)를 통하여 보여주는 절차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다양방식으로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가통계를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과 결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직접 지도로 제작하여 간행물보고서나 국가통계포털에 제공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관심 있는 통계이용자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활용도는 그리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정책연관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서 통계청이 실시하고 있는 원자료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물론 정책이용자들에게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할 수 있겠지만, 다른 대안적 방법으로 공표자료나 비(非)공표자료를 웹사이트나 쇼핑몰에서 CD-ROM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이용하여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Table Generator와 같은 Software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user-friendly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가. 자료제공의 지리적 기준의 다양화

우리나라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소지역 구분을 일차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를 이용하여 (1)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도)와 (2)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로 하고 있다([표 4-25] 참고).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1개 특별자치도, 8개 도로 모두 16개다. 특별시,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로 구를 두게 되었으며, 도는 군과 구를 기초자치단체로 두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시 75개, 군 86개, 구 69개로 되어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가 2개(제주시,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구가 28개가 있다(행정안전부, 2010).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경우 28개는 경기도에 20개가 있어서, 수도권 의 인구과밀화 현상을 알 수 있다. 가령, 경기도 북부의 수원시에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등 4개 구, 성남시에 수정구·중원구·분당구 등 3개구, 안양시에 만안구·동안구 등 2개구가 있고, 부천시에 원미구·소사구·오정구 등 3개구, 안산시에 상록구·단원구 등 2개구, 용인시에 처인구·기흥구·수지구 등 3개구, 경기도 남부의 고양시에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등 3개구를 합쳐서 모두 20개 구가 있다(행정안전부, 2010).

한편, 특별자치도의 경우, 우리나라 다른 지역과는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관할구역 안에 행정시(行政市)를 둘 수 있게 되어있다. 가령, 제주도는 우리나라의 2006년 특별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종전의 제주시와 북제주군을 합하여 제주시를 두고,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을 합하여 서귀포시를 두고 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직속인 행정시며, 자치시가 아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다. 이 경우,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제표작업에서 제주도의 소지역별 제표작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는 기초자치단체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와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구에 대해서 읍·면·동을 두고, 기초자치단체인 군은 읍·면으로 나뉜다. 또, 읍·면은 리로, 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이들 최하위의 행정구역단위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보호와 관련하여 어떻게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에 대하여 통계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통계청이 자료제공 목록을 작성할 때, 문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수립과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를 작성한다고 했을 때, 지리적 단위는 여기서 끝나서는 것이 아니다. 앞서서도 강조하였지만,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선거구 자료나 지방교부금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사용하도록 선거법이나 지방교부금 관련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법정인구를 포함하여, 국가정책의 수립이나

[그림 4-25]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2010년 1월 1일 현재

(2010. 1. 1 현재)

구분 시·도	시·군·구				행정시·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출장소			
	계	시	군	구	시	구	계	읍	면	동	계	사도	시군구	읍면
계	230	75	86	69	2	28	3,474	214	1,202	2,058	76	4	16	56
서울	25			25			424			424				
부산	16		1	15			215	2	3	210	1		1	
대구	8		1	7			143	3	6	134	2			2
인천	10		2	8			141	1	19	121	8	1	4	3
광주	5			5			92			92				
대전	5			5			76			76				
울산	5		1	4			56	4	8	44				
경기	31	27	4			20	539	32	110	397	7		5	2
강원	18	7	11				193	24	95	74	7	1		6
충북	12	3	9			2	154	14	89	51				
충남	16	7	9			2	211	24	147	40	2			2
전북	14	6	8			2	241	14	145	82	2	1	1	
전남	22	5	17				295	31	198	66	26	1	1	24
경북	23	10	13			2	331	36	202	95	14		1	13
경남	20	10	10				320	20	177	123	7		3	4
제주	0				2		43	7	5	31				

(2010. 1. 1 현재)

구분 시·도	동·리(통리장 있음)			반			면적(k㎡)	세대수	인구(명)
	계	동	리	계	도시	농촌			
계	91,865	55,042	36,463	475,754	352,040	123,714	100,208.05	19,261,292	49,773,145
서울	12,753	12,753		98,747	98,747		605.28	4,116,660	10,208,302
부산	4,461	4,322	139	26,047	24,993	1,054	786.07	1,323,771	3,543,030
대구	3,439	3,241	248	22,814	21,045	1,769	884.11	906,470	2,489,781
인천	3,937	3,677	260	21,051	19,534	1,517	1,027.01	1,026,936	2,710,579
광주	2,139	2,127		10,541	10,541		501.27	524,093	1,433,640
대전	2,350	2,350		12,971	12,971		539.86	538,100	1,484,180
울산	1,419	1,077	342	9,678	7,822	1,856	1,058.20	394,364	1,114,866
경기	14,793	10,766	4,027	84,507	67,575	16,932	10,186.75	4,359,467	11,460,610
강원	4,086	1,889	2,197	21,140	14,166	6,974	16,873.94	617,693	1,512,870
충북	4,584	1,690	2,894	18,352	8,439	9,913	7,433.17	599,204	1,527,478
충남	5,582	1,048	4,534	25,321	6,753	18,568	8,628.98	827,846	2,037,582
전북	7,875	2,777	5,098	23,474	12,743	10,731	8,061.49	720,993	1,854,508
전남	8,224	1,569	6,655	23,166	8,030	15,136	12,232.08	783,156	1,913,004
경북	7,736	2,586	5,150	39,396	15,956	23,440	19,029.15	1,073,367	2,669,876
경남	7,786	3,039	4,747	33,346	19,686	13,660	10,531.97	1,231,461	3,250,176
제주	651	479	172	5,204	3,039	2,165	1,848.72	217,711	562,663

집행 나아가 평가에 필요한 많은 조사항목들이 법정통계로서 마땅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향후 관련법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향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가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선거구 자료나 지방교부금 배분을 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표결과를 작성하고, 가능한 경우에 주민등록인구통계와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주는 분석결과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공표자료에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이다. 물론, 이들 통계표를 간행물 보고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겠지만,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이나 CD-ROM 자료에는 포함시키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표가 조사항목별로 제시될 수 있는 지리적 단위는 전국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해서, 지방선거의 경우에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의 선거구이다. 이들의 경우, 선거구 전체 또는 선거구 안에서 투표구(voting district)에 따른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표는 선거구의 성·연령별 인구구성, 혼인상태, 교육수준, 경제활동, 직업, 산업, 주택소유, 생활여건 등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별로 모두 작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바로,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영역이 될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표의 정책 관련 효용도(效用度)는 증대될 것이다.

또 정책부서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표의 제공과 관련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지리적 단위는 교육관련 자료는 학군(school district)의 개념을 존중하는 통계표를 작성할 수도 있을 것이고, 경제활동, 직업, 산업과 관련해서는 전국의 노동시장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는 개념, 가령 도시고용권역(urban employment zone)과 같은 지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주택통계의 경우도, 전국을 몇 개의 주택시장으로 묶는 지역클러스터(area cluster)의 개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힘들 경우에는 지역별로 인구규모를 중시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단위면적당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제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여타 통계조사 조사항목의 비교 검토자료 제공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항목을 모두 합쳐서 50개 미만인데, 그 조사항목은 사실상 통계청이 실시하는 표본조사들 중의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은 일본보다는 많지만, 유럽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선진국의 60-80개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중 경제활동에 관한 조사항목과 경제활동인구조사(survey 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의 조사항목은 유사한 부분이 많다. 사실, 우리나라 통계법이나 국가통계의 작성원칙에서 개별 통계조사의 동일항목 또는 유사항목은 통계작성의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항목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로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할 수 없는 소지역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중에서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인구 또는 노동력의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시계열 자료에 대한 "내적 일관성 또는 정합성"(internal consistency or coherence)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정책연계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표 4-26]은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두 가지 자료에서 얻게 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통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조사의 범위, 포괄성, 무응답에 대한 처리, 그 외의 자료수집에 관련된 외적 여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판단한다(민경희, 2002: 393-418). 가령,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활동에 대하여 전문성이 강화된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항목이 훨씬 많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사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조사원들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응답들이 나오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캐어묻기(probing)를 하면서, 정확하고 현실성이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에 관한 내용은 사실상 전체 조사항목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

는다. 조사항목수가 극히 적으며, 임시로 모집한 전문적이 높지 않은 조사원들에 의해 관련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므로 두 통계조사의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표 4-26]에서, 1980-2000년의 20년간에 걸쳐서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 표본항목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2000년과 2005년의 표본항목 집계결과(2000년의 경우는 (a))와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모두 '즉각적 취업가능성'을 고려한 비율이기 때문에 두 자료 간에 서로 차이가 난다. 또 1990년과 1995년에는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항목 집계결과와 2% 표본자료로 통계분석을 위하여 배포된 CD-ROM 자료 간에 차이가 나고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그 차이가 더 크게 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항목 집계결과를 비교하면,

[표 4-26]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참가율(%) 비교:
1966-2005

연도	남 자			여 자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구주택총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보고서	2%표본		보고서	2%표본	
1966	78.6	-	70.0	31.5	-	24.2
1970	72.5	-	70.8	37.6	-	29.8
1975	77.8	-	69.6	45.7	-	28.6
1980	72.4	72.0	70.8	38.4	37.4	33.2
1985	-	71.5	73.0	-	32.1	41.9
1990	68.3	73.8	74.5	32.6	34.2	47.5
1995	71.6	77.5	76.6	36.6	38.9	49.1
2000	-	70.9(a)/ 74.4(b)	74.0	-	39.2(a)/ 46.0(b)	48.9
2005	-	74.8	73.6	-	46.1	49.2

주: 1) (a) 조사기준 기간(2000년 10월 22일-28일)에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 중 '직장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포함; (b) 조사기준 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한 적이 있거나, '일을 하여 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사람들과 구직활동을 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며 '직장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는 무시함.

2)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 조사항목 기준일은 1966년부터 1975년까지는 10월 1일이고, 1980년부터 2005년까지는 11월 1일임.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966년부터 1980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4/4분기 자료이고, 1985-2000년에는 해당 연도의 11월 자료임.

자료: 민경희(2002),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1980-1995년 기간에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들은 그 차이가 2% 이내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그보다 꽤나 높고 1990년에는 그 차이가 13.3%에 이르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와의 차이는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65-1975년 기간에는 남녀 모두 인구주택총조사가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훨씬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제활동인구 통계가 어느 정도 다르게 나오는 것은 조사에 관련되는 여러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 관련 조사항목의 정책 연계성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결과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방식에 어느 정도 부합되도록 보완하고,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결과를 토대로 소지역 통계(small-area statistics)를 작성하는

것은 총조사의 국가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물론, 두 통계조사의 차이들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물론 인구주택총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특히,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항목 집계에서 여성들의 경우에 그 차이들이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모두 다 고려할 수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결과를 국가정책 자료로 활용할 때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방법이 남성의 경제활동을 측정하는 방법과는 달라야 함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상태와 비경제활동상태를 쉽게 넘나드는 현상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항목으로 이 문제를 쉽게 측정하기가 간단하지는 않다. 이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의 응답자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응답자와 연계하여, 적어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유동적인 노동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좀 더 새롭고 정교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가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보다 더 높은 비율을 기록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가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가 인구전체를 모집단으로 하는 더 광범위한 “전수조사”(complete enumeration survey)에 기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본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결과는 항상 인구주택총조사 집계결과와 대조하여 검토하고,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결과를 국가수준, 지역수준(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여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간단하고, 가공수준이 높은 시계열 통계표의 제공

우리나라는 인구주택총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제표결과를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에 게시하거나 간행물보고서로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을 이용한 제표결과가 풍부하게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통계이용자는 물론 정책분야의 통계이용자들의 경우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제표결과를 친밀감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제표결과를 웹사이트나 간행물보고서에 게재할 때, 각종 통계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통계표에 가능한 한, 원자료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간단하고, 가공수준이 높으며, 가능하면 장기시계열을 통하여 다양한 시점에서 비교가 가능한 인구통계지표들을 게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표 4-27]은 2010년 3월 1일을 기준일자로 실시된 싱가포르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속보 보고서(advance report)는 집계결과를 가공한 아주 간단한 주요 인구지표를 1970-2010년의 40년간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표에는 상주인구(싱가포르 내국인, 영주권자)와 비상주인구로 구분한 상주인구, 성비(여자 1000명당 남자의 수), 연령집단별(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인구구성, 고령자 부양비(65세 이상 고령자 1인당 15-64세 생산연령인구의 수), 부양인구비(유소년, 노년, 총부양비)를 보여주고, 특히 싱가포르는 "다민족 도시국가"(multi-ethnic city-state)이기 때문에, 종족별 구성을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기타로 구분하여 보여준다. 이와 같이 정책전문가를 포함한 모든 통계이용자들에게 처음에는 참고표(reference table)와 같은 양식의 제표결과를 소개하고, 거기에는 가공수준이 상대적 높은 통계를 게재하도록 하면, 그 결과가 관심 있는 정책전문가에게 쉽게 읽혀질 수 있고, 그것이 궁

[표 4-27] 2010년 싱가포르 인구주택총조사 사전보고서의 핵심 인구지표

	1970	1980	1990	2000	2010
Total Population ('000)	2,074.5	2,413.9	3,047.1	4,027.9	5,076.7
Resident Population	2,013.6	2,282.1	2,735.9	3,273.4	3,771.7
Singapore Citizens	1,874.8	2,194.3	2,623.7	2,985.9	3,230.7
Permanent Residents	138.8	87.8	112.1	287.5	541.0
Non-Resident Population	60.9	131.8	311.3	754.5	1,305.0
Sex Ratio (Males per 1,000 females)	1,049	1,032	1,027	998	974
Median Age (Years)	19.5	24.4	29.8	34.0	37.4
Age Composition (%)	100.0	100.0	100.0	100.0	100.0
Below 15 Years	39.1	27.6	23.0	21.9	17.4
15-64 Years	57.5	67.5	71.0	70.9	73.7
65 Years and Over	3.4	4.9	6.0	7.2	9.0
Old-Age Support Ratio (Number aged 15-64 years per elderly aged 65 years and over)	17.0	13.8	11.8	9.9	8.2
Age Dependency Ratio (per 100 persons aged 15-64 years)	73.9	48.2	40.8	41.1	35.7
Child (Below 15 years)	68.1	41.0	32.3	30.9	23.5
Old Age (65 years and over)	5.9	7.3	8.5	10.1	12.2
Ethnic Composition (%)	100.0	100.0	100.0	100.0	100.0
Chinese	77.0	78.3	77.8	76.8	74.1
Malays	14.8	14.4	14.0	13.9	13.4
Indians	7.0	6.3	7.1	7.9	9.2
Others	1.2	1.0	1.1	1.4	3.3

Note: Data refer to the Singapore resident population unless otherwise stated. The Singapore resident population comprises Singapore citizens and permanent residents.

극적으로 국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사용되어 정책연계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현재, 국가통계포털에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성·연령별 인구를 제외하고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주택총조사 통계가 부정기자료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책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총조사에 대한 장기시계열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목적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제공과 관련해서, 일본의 총무부 통계국은 1920년부터 5년마다 실시된 국세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해서, 장기시계열 통계표를 작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는

또, [표 4-28]는 싱가포르 2010년 센서스 상주인구를 중심으로 6개의 통계표가 상주인구에 대하여 작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표 A1은 연령(5세 간격), 종족집단, 성별, 거주상태(내국인, 영주권자)에 따라 구분되고, A2는 연령(매세 간격), 종족집단, 성별에 따라 구분되고, A3는 행정구역(planning area), 연령집단, 성별에 따라 구분되고, A4는 연령집단(5세 간격),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되고, A5는 연령(5세 간격), 출생지, 성별에 따라 구분되며, A6는 출생지, 종족집단, 성별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이들 통계표에서는 어떠한 인구통계의 지표가 계산되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표 4-27]에서 볼 수 있는 성비, 부양인구비와 같은 인구통계의 지표는 정책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표 4-28] 2010년 싱가포르 인구주택총조사 사전보고서의 통계표 리스트

Table		Page
A1	Resident Population by Age Group, Ethnic Group, Sex and Residential Status	13
A2	Resident Population by Single Year of Age, Ethnic Group and Sex	16
A3	Resident Population by Planning Area, Age Group and Sex	20
A4	Resident Population by Planning Area and Type of Dwelling	26
A5	Resident Population by Age Group, Place of Birth and Sex	28
A6	Resident Population by Place of Birth, Ethnic Group and Sex	31

[그림 4-1] 일본 총무성 통계국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시계열 통계 안내 일람표

時系列データ
男女, 年齢, 配偶関係
人口の労働力状態, 就業者の産業・職業
世帯
従業地・通学地

▲ページの先頭へ

우리나라의 국가통계포탈에 해당하는 일본의 E-Stat 창구의 인구주택총조사 통계 시계열 자료 일람표에 소개되어 있는 통계표의 목록 중 인구와 면적에 관한 기본 통계표를 살펴본다.

1. 전국의 인구, 인구증감, 면적 및 인구밀도
2. 전국의 시부와 군부별 인구 및 인구의 비율
3. 전국의 시부, 군부별 면적, 면적의 비율 및 인구밀도
4. 전국, 시부, 군부의 인구집중지구, 인구집중지구 이외의 지역별 인구, 면적 및 인구밀도

5. 광역자치체(도도부현)별 인구, 인구의 비율 및 인구의 지표
6. 광역자치체(도도부현)별 5년간 인구증감
7. 광역자치체(도도부현)별 면적, 인구밀도, 인구밀도의 지표
8. 광역자치체(도도부현)별 시부, 군부별 인구 및 시부인구의 비율
9. 광역자치체(도도부현)별 인구집중지구, 인구집중지구 이외의 지역별 인구, 면적, 인구밀도
10. 전국의 인구계층별 지역(시정촌), 인구 및 인구의 비율
11. 광역자치체(도도부현)별 인구계층별 지역(시정촌), 인구 및 인구의 비율
12. 전국의 인구집중지구, 인구계층별 지역(시정촌), 지역, 인구 및 인구의 비율
13. 광역자치체(도도부현) 인구의 자연증감 및 사회증감(인구이동)
14. 전국, 광역자치체(도도부현)의 인구중심(人口重心, population centroid)

우리나라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제표결과를 국가통계포탈이나 간행물보고서에 게재된 것 중에는 인구밀도, 인구집중지구, 인구계층, 인구중심(人口重心)에 대한 것을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5만 명 이상 도시인구의 비율이 85%를 넘어서고 있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과소화(depopulation) 현상은 심각해지고 있는 편인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표를 통해서 키우고, 그것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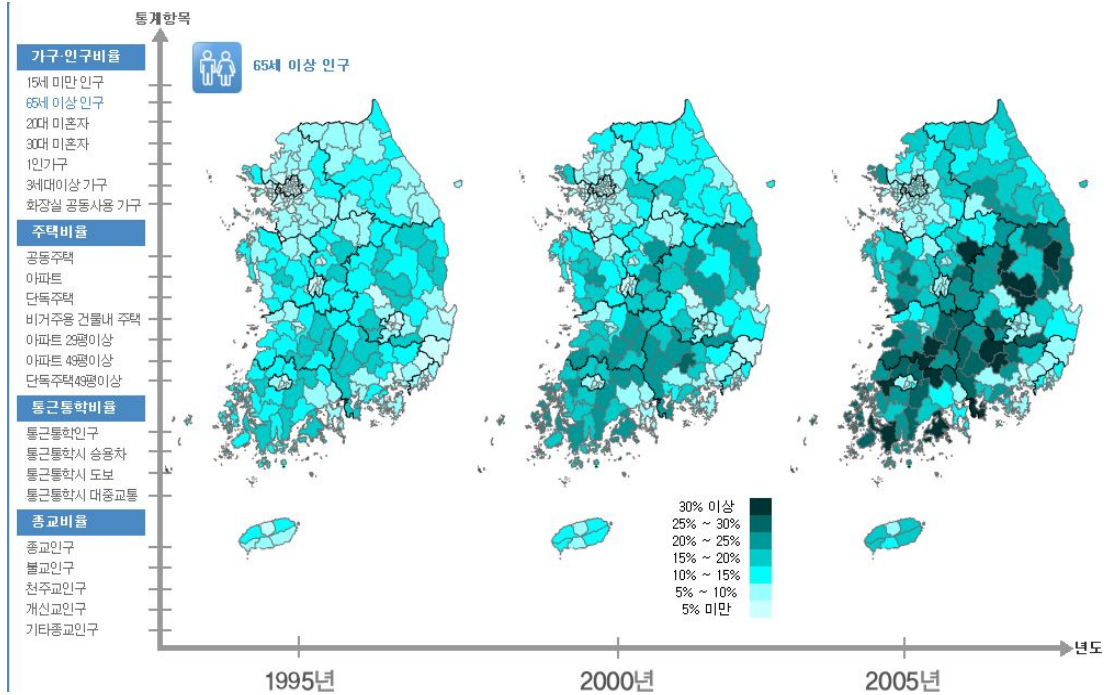
먼저, 인구밀도(population density)는 도시화, 토지이용, 과밀화 또는 과소화의 연구에 필요한 측정치이다. 단위면적 1 평방킬로미터당 계산될 수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 거주 가능한 지역(inhabitable place)의 면적 1 평방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통계포탈에 단위면적 1 평방킬로미터당 인구밀도가 계산된 통계표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와 그 하위의 행정구역, 특히 읍면동에 계산된다면, 우리나라의 지역별 과밀화나 과소화의 정도를 판단하여, 농산어촌 지역 중에서 과소화문제로 고통을 안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특별지원법을 만들거나, 그 지역에 대하여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할 때 유용한 통계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인구집중지구(densely inhabited district)의 개념이다. 미국에서도 광역도시지역(metropolitan area)에 대한 통계적 분류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통계적 분류개념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일본의 인구집중지구는 일본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도시지역 중 인구밀도가 4,000명/km² 이상인 기본 단위구(1990년 이전에 조사구)가 서로 인접하여 인구가 5,000명 이상인 지구로 설정된다. 그러나 공항, 항만, 산업 지역, 공원 등 도시적인 경향이 강한 기본 단위구는 인구밀도가 낮아도 인구집중지역에 포함된다. 도시적인 지역과 농촌 지역으로의 분류와 협의의 도시로 신도시의 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본에서 인구집중지구의 사용에 대한 비판은 있다. 이 개념을 사용하여, 일본의 도시화율을 정의하면, 2005년 현재 66.0%에 불과하지만, 영국의 정의를 일본에 적용하면 100%, 캐나다의 정의를 적용하면 92%로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라. 통계지도의 활용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와 국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담당자들에게 통계 지도를 통한 인구주택총조사 정보의 제공을 강조하고 싶다. 원래 통계지도는 통계청에서는 인

[그림 4-2] 우리나라 시군구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 통계지도:
1995-2005년



구주택총조사, 사업체조사 등 통계조사를 실시할 때, 누락방지를 위하여 통계조사용 지도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지도를 이용하여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 4-2]은 통계지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변하여 온 모양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조사항목으로는 인구·가구의 비율(15세 미만 인구,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20대 미혼자, 30대 미혼자, 1인 가구, 3세대 이상 가구, 화장실 공동사용 가구), 주택비율(공동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아파트 29평 이상, 아파트 49평 이상, 단독주택 49평 이상), 통근·통학비율(통근·통학인구, 통근·통학시 승용차, 통근·통학 도보, 통근·통학 대중교통), 종교인구비율(종교인구, 불교인구, 개신교인구, 천주교인구, 기타종교인구) 등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계지도는 읍면동 이상의 통계기준 구역보다 적은, 인구 500명 정도의 규모로서 크기는 읍면동의 1/30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소지역(집계구)을 단위로 해서 통계 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모드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종 정책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통계지도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일부 통계 항목의 경우 조회결과 값이 5이하(0~5)이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값이 큰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또한 값이 같을 경우 DB자료 추출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모든 조사항목에 대하여, 가능한 모든 지리적 단위에 대하여 정책목적은 물론 일반 학술활동을 위해서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마.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원시자료 제공방법 개선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통계원시자료제공시스템(MDSS, Micro Data Service System)은 이용자가 인터넷을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원하는 자료를 직접 가공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서비스(<http://www.mdss.kostat.go.kr>)를 하고 있다.

MDSS 서비스는 기존 주문형 위탁처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가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다 빠르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 만족도를 한층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MDSS에서는 자료를 원자료(raw data),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 매크로 데이터(macro data)로 구분한다. 원자료(raw data)는 통계조사 자료에서 최초 입력한 전산화일 자료로서 입력오류, 조사오류 등이 걸러지기 이전 단계의 자료를 말하며 마이크로 데이터(micro data)는 원자료에서 입력오류 등을 제거하여 공표 통계표 작성 등 데이터 가공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자료로 통계원시자료라고도 한다. 이 자료는 공표 통계표에서 얻을 수 없는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매크로 데이터(macro data)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임의의 기준에 따라 집계한 자료로서, 집계의 정도에 따라 세분된 자료에서 통합된 자료까지 다양하다.

MDSS 사용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통계자료를 추출하는 방법과 통계청에 통계자료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이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직접통계자료 추출

- 회원가입, 로그인하여 KOSIS를 이용하여 자료무료제공여부를 확인한다.
- 다음으로 MDSS를 이용하여 자료제공범위를 확인하고 자료조회 및 항목을 신청한다.
- 자료를 가공한 다음 승인을 요청하면 통계청에서 그 유무를 결정해 준다.
- 사용료를 납부하고 자료를 다운받는다.

(2.) 통계청에 통계자료 위탁처리

- 회원가입, 로그인하여 KOSIS를 이용하여 자료무료제공여부를 확인한다.
- 다음으로 MDSS를 이용하여 자료제공범위를 확인하고 위탁신청서를 작성한다.
- 통계청에서 자료를 가공해 주며 비용을 납부하면 자료를 받는다.

2006년 1월1일에 공지된 자료제공 가격을 보면 출력용량 1MB까지 20,000원이 부과되고 1MB를 초과하는 용량은 1MB당 1,500원씩 추가 부과된다. 또한 On-site Access로 자료 제공 시 이용환경 설정, 시스템 이용 등에 대한 수수료로 자료이용료의 10%를 추가 징수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를 좀 더 체계적으로 확충하는 방법으로서, 앞에서 설명했던 네덜란드 식의 통계청 내부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마이크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도 별도의 사전업무를 배정받지 않은 부서를 만들어서, 각 정부부처의 기존 정보수요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통계를 작

성하는 업무를 개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통계청 안에 인구주택총조사는 물론 다른 관련 통계조사를 정책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관련 통계분석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고, 정부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부처, 계획수립기관, 지방자치체, 그리고 정당들은 규칙적으로 자료생산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이 연구소를 통하여 정책 관련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인방안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통계청 내부의 부속기관으로 설립된 정책통계연구소는 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관련연구소는 네덜란드의 경험에서 본 것처럼, 정책통계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통계청의 핵심 역할과 정합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책통계 의뢰기관이 관리하는 자료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정책통계 프로젝트의 결과는 공적 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며, 정책통계 의뢰기관에만 배타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국가통계의 작성기관인 통계청의 국가통계 작성의 근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법률적·제도적 책임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통계 의뢰기관이 기대했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 통계도 그대로 출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중요한 것은 정책통계 의뢰기관은 최종상품으로 산출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최종적 발언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에서도 통계청은 국가통계기관으로서 전문가적 자립성과 성실성을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자료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가 우리나라 국회가 정한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 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에 의거하여, 제대로 준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 통계에서도 「통계법」, 「통계법시행령」, 그리고 비용, 상품, 시의성이란 관점에서 통계청의 다른 업무규정, 특히 앞에서 언급한 통계청 내부의 자료제공심의회의 세부규정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개별항목을 정책목적에 이용하는데도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제 2장.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의 정책연관성

1. 조사대상 인구

▷ 상주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상주지원칙에 입각하여, 특정의 가구원에 대하여 주소를 확인하며, 상주지 정보를 지리적 수준에 따른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 또는 읍면동의 소지역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변수로 활용한다. 												
문항내용	<p>①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input type="text"/> 명</p> <p>② 이 가구에서 조사에 포함되는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사,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 집을 떠나 있는 사람 • 예비군 훈련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 •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와 하숙인 • 한국인과 함께 사는 외국인 <p>③ 이 가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되어야 할 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 전부 경찰, 의무 경찰 등으로 입대할 가족 <input type="text"/> 명 • 학업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가족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가족 <input type="text"/> 명 <input type="text"/> 명 •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부녀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가족 <input type="text"/> 명 <p>③ 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은 지번 주소로 기입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시·도</th> <th>시·군·구</th> <th>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th> <th>공동주택명</th> <th>동</th> <th>호</th> </tr> </thead> <tbody> <tr>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d><input type="text"/></td> </tr> </tbody> </table>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공동주택명	동	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시·도	시·군·구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공동주택명	동	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항목 												
관련 자료	<p>행정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 개명 : 가족등록부(기본증명서), 개명신고서 												
	<p>통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p>인구주택총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은 12개월을 상주지 기준으로 사용, 우리나라는 종전 센서스에서는 3개월을 기준으로 사용.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는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음. 												
	<p>기타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은, 2개월을 법적 주소 기준으로 사용, 센서스 상주지 기준 3개월과 차이가 있음, “위장전입” 등으로 주민등록 주소와 센서스의 상주지 정보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음. 												
정책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지” 정보는 중장기 계획/정책 목적으로 전국의 영구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를 집계하고, 지자체나 도시/농촌 또는 소지역의 지리적 수준에 따라 계획이나 서비스 전달을 목적으로 상주인구의 분포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줌. ● 정책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주지에 거주하는 상주인구”와 “상주지에 거주하지 않는 상주인구”를 구분할 필요도 있음. ● 주민등록은 전국, 지자체, 소지역의 법정인구를 작성하는데 사용함. 국제인구이동 때문에, 전국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센서스 상주인구가 차이가 나고, 지역별로도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리적 수준에서도 센서스 상주인구와 차이가 있음. ● 주민등록인구는 선거구를 확정하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수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산정하거나,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는데 사용되고 있음 												

2. 지리적 및 국내 인구이동 특성

▷ 출생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출생지별 인구규모와 인구의 생애 이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출생 시점에서 어머니의 상주지, 곧 통상적 거주지를 기준으로 출생지를 조사한다.
문항내용		<p>9 출생지</p> <p>태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 태어난 당시 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곳을 말합니다.</p> <p>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하는 시·도와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 북한인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인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p>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10년 주기)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기본증명서), 출생신고서,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등록자료
	통계조사	● 남북이산가족교류현황(통일부), ● 새터민입국현황(통일부), ● 인구동태조사(출생)(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응답자의 출생 당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조사하여 출생 당시의 특성이 반영 안됨
	관련 자료	●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지 대신에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출생지와 등록기준지는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음
정책 연관성		● 국내인구이동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전출입 인구를 위한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1년 전 거주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1년 동안 인구이동의 규모와 전출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참조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인구이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문항내용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10년 주기)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
	통계조사	● 인구이동통계(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이동 후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지역이름을 모르는 경우 다수 있음 1980, 1990, 2000년 표본항목 1975, 1985, 1995 조사인함 1985 전수항목
	관련 자료	●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 의한 인구이동통계는 전출입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이동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반복이동”에 대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음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인구이동 관련 정책의 개발과 인구주택총조사 직전 1년 동안 발생한 전출입 인구를 위한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구주택총조사의 국내인구이동 항목과 주민등록 인구이동통계를 비교검토하고, 특히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기간, 반복이동과 관련한 정책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5년 전 거주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5년 동안 인구이동의 규모와 전출입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참조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참조기간이 1년인 경우보다 인구이동에 대한 정보가 정확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강하지만, 시계열 확보와 국제비교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항목에 포함하고 있음
문항내용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30%;"> <p>①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 다른 시·군·구 ⑤ 북한 또는 외국</p> <p>충청남 특별시·광역시· 국가명</p> <p>공주 ④ 군·구</p> </div> <div style="width: 35%; text-align: center;"> <p>11 5년 전 거주지</p> <p>5년 전 (2005년 11월 1일)에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p> <p>다른 시·군·구일 때는 해당하는 시·도와 시·군·구의 현재 행정구역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p>• 북한인 경우에는 북한이라고 기입하고, 외국인 경우에는 국가명만 기입합니다.</p> </div> <div style="width: 30%;"> <p>① 태어나지 않았음 ② 현재 살고 있는 집 ③ 같은 시·군·구 내 다른 집 ④ 다른 시·군·구 ⑤ 북한 또는 외국</p> <p>특별시·광역시· 도·국가명</p> <p>시·군·구</p> </div> </div>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
	통계조사	● 인구이동통계(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당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이동 후 현재의 행정구역 기준으로 하여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된 경우 현재의 지역명칭을 모르는 경우 다수 있음 1985 전수조사, 그 외는 1970년 이후 5년마다 표본조사를 실시하였음
	관련 자료	● 주민등록 전출입신고에 의한 인구이동통계는 전출입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이동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반복이동”에 대한 통계를 확보할 수 있음
정책 연관성		● 국내인구이동 관련 정책의 개발과 인구주택총조사 직전 5년간 발생한 전출입 인구 정보를 기준으로 그들을 위한 주택, 직장, 자녀교육 등의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초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통근·통학 여부; 장소;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항목은 일일 인구이동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상주지 인구개념의 보완으로 주간/야간 인구의 개념을 설정하고, 도시 공동화 문제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생활권역 연구에도 중요한 변수로 사용한다. ●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영속성을 국내인구이동과는 별도로 지역별 교통 흐름의 방향과 교통량을 시간 및 교통수단 별로 파악하여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함 ② 통학함 ③ 안 함 → 17 번으로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 다른 읍·면·동</p> <p>시 군 읍 면 동 종로 청운요자</p>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p>13 통근·통학 여부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p> <p>14 통근·통학 장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읍·면·동으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행정구역 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근함 ② 통학함 ③ 안 함 → 17 번으로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다른 읍·면·동</p> <p>시 군 읍 면 동</p> </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걸어서 ② 승용차, 소형 승합차 ● 시내·좌석·마을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고속·시외버스 ⑥ 전철, 지하철 ⑦ 기차 ⑧ 택시 ⑨ 자전거 ⑩ 기타(오토바이, 화물차 등) <p>시간 4 0 분</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p>15 이용 교통수단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 같이타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 「① 걸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걸어서 ② 승용차, 소형 승합차 ③ 시내·좌석·마을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고속·시외버스 ⑥ 전철, 지하철 ⑦ 기차 ⑧ 택시 ⑨ 자전거 ⑩ 기타(오토바이, 화물차 등) <p>시간 분</p> </td> </tr> <tr> <td colspan="2"></td> <td> <p>16 통근·통학 소요 시간 통근·통학 장소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p> <p>시간 분</p>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함 ② 통학함 ③ 안 함 → 17 번으로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 다른 읍·면·동</p> <p>시 군 읍 면 동 종로 청운요자</p>	<p>13 통근·통학 여부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p> <p>14 통근·통학 장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읍·면·동으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행정구역 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근함 ② 통학함 ③ 안 함 → 17 번으로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다른 읍·면·동</p> <p>시 군 읍 면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걸어서 ② 승용차, 소형 승합차 ● 시내·좌석·마을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고속·시외버스 ⑥ 전철, 지하철 ⑦ 기차 ⑧ 택시 ⑨ 자전거 ⑩ 기타(오토바이, 화물차 등) <p>시간 4 0 분</p>	<p>15 이용 교통수단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 같이타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 「① 걸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걸어서 ② 승용차, 소형 승합차 ③ 시내·좌석·마을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고속·시외버스 ⑥ 전철, 지하철 ⑦ 기차 ⑧ 택시 ⑨ 자전거 ⑩ 기타(오토바이, 화물차 등) <p>시간 분</p>			<p>16 통근·통학 소요 시간 통근·통학 장소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p> <p>시간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근함 ② 통학함 ③ 안 함 → 17 번으로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 다른 읍·면·동</p> <p>시 군 읍 면 동 종로 청운요자</p>	<p>13 통근·통학 여부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로 통근·통학을 하고 있습니까? •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p> <p>14 통근·통학 장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읍·면·동으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행정구역 명을 기입하여 주십시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근함 ② 통학함 ③ 안 함 → 17 번으로 <p>① 현재 살고 있는 읍·면·동 ② 다른 읍·면·동</p> <p>시 군 읍 면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걸어서 ② 승용차, 소형 승합차 ● 시내·좌석·마을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고속·시외버스 ⑥ 전철, 지하철 ⑦ 기차 ⑧ 택시 ⑨ 자전거 ⑩ 기타(오토바이, 화물차 등) <p>시간 4 0 분</p>	<p>15 이용 교통수단 평소 직장(일터, 근무지) 또는 학교(학원)에 갈 때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합니까? • 같이타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 「① 걸어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통근·통학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걸어서 ② 승용차, 소형 승합차 ③ 시내·좌석·마을버스 ④ 통근·통학버스 ⑤ 고속·시외버스 ⑥ 전철, 지하철 ⑦ 기차 ⑧ 택시 ⑨ 자전거 ⑩ 기타(오토바이, 화물차 등) <p>시간 분</p>									
		<p>16 통근·통학 소요 시간 통근·통학 장소에 도착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p> <p>시간 분</p>									
전수/표본항목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 도로교통량조사									
	통계조사	● 도로교통량통계(국토해양부, 각시도), ● 수도권가구통행실태조사(수도권교통본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표본규모가 크기 때문에 장점이 있지만, 조사시기와 데이터 이용시기의 시간차가 크며, 교통정책에 실질적 이용정도에 의문, 조사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									
	관련 자료	● 개인에 대한 교통량이 아니라 차량의 교통량에 한정되고, 가구통행조사는 수도권에 한정됨									
정책 연관성		● 통근/통학에 대한 정보는 조사시기와 데이터 이용시기의 시간차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표본규모가 크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는 물론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생활권역(정주권)에 관한 정책은 물론 수도권, 부산울산권 등의 대도시 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의 정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이다.									


3. 국제 인구이동 특성

▷ 국적(출생, 조사시점), 외국인 입국연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다문화 가족 및 이민자 2세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문항내용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d> <td> <p>6 국적 7 입국 연월</p> <p>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 조선족은 중국(조선족)으로 기입합니다.</p>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 외국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d> <td> <p>출생 시 국적은 어디입니까?</p> <p>(현재 외국인이거나 출생 시 외국인이었던 분만 기입합니다.)</p>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td> </tr> <tr> <td> <p>1985년 7월</p> </td> <td> <p>대한민국에 언제 입국하였습니까? * 대한민국에 거주·취업 등을 위하여 처음 입국한 때를 말하며, 여행 등을 위하여 잠시 입국한 것은 제외합니다.</p> </td> <td> <p><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p>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6 국적 7 입국 연월</p> <p>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 조선족은 중국(조선족)으로 기입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 외국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출생 시 국적은 어디입니까?</p> <p>(현재 외국인이거나 출생 시 외국인이었던 분만 기입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1985년 7월</p>	<p>대한민국에 언제 입국하였습니까? * 대한민국에 거주·취업 등을 위하여 처음 입국한 때를 말하며, 여행 등을 위하여 잠시 입국한 것은 제외합니다.</p>	<p><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6 국적 7 입국 연월</p> <p>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 조선족은 중국(조선족)으로 기입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 외국 베트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출생 시 국적은 어디입니까?</p> <p>(현재 외국인이거나 출생 시 외국인이었던 분만 기입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② 외국 <input type="tex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1985년 7월</p>	<p>대한민국에 언제 입국하였습니까? * 대한민국에 거주·취업 등을 위하여 처음 입국한 때를 말하며, 여행 등을 위하여 잠시 입국한 것은 제외합니다.</p>	<p><input type="text"/>년 <input type="text"/>월</p>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참고: 국적-전수항목(1960년))									
관련 자료	행정자료	● 가족등록부(기본증명서; 국적회복일 및 국적회복 전 국적), 출생신고서(이중 국적국가), 귀화신고서(귀화 전에 가졌던 국적), 국적상실신고서, 출입국신고서, 체류자신고서, 외국인고용신고서,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이전사항,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이전사항, 해외이주신고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인구이동통계(통계청), ● 출입국자현황(법무부), ● 체류외국인통계(법무부),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노동부), ● 전국거주외국인기초실태조사(행정안전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현재 국적을 조사하는 것으로는 다문화 가족을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출생시 국적을 조사. 물론, 국적취득의 사유가 결혼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국적취득방식에 질문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음 ● 일제 강점기에 일본 또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강제로 취득했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국적 및 입국 연도를 기입하지 않음 ● 내국인이 이중국적이 된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 국적 및 입국 연도를 기입하지 않음 ● 탈북주민(새터민)은 국적 및 입국연도를 기입하지 않음 									
	관련 자료	● 행정자료는 지역별 불법체류 외국인 파악 곤란하고 별도의 광범위한 통계조사가 필요함									
정책 연관성		● 글로벌시대에 혼인이주자와 취업노동자의 유입으로, 다문화 가족 및 이민자 2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전달체계, 취업노동자들의 밀집거주지역과 인구학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차별철폐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기초통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도움이 된다.									

4. 가족 및 가구 특성

▷ 가구구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가구의 유형을 집단가구(collective household)와 일반가구(ordinary household)로 구분하여 일반 가구에 대해서만 가구항목을 조사한다.
문항내용		 <p>주거환경 개선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 등에 활용합니다.</p> <p>9 [가구 구분] 이 가구는 아래에서 어디에 해당합니까?</p> <p>①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② 가족과 가족 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 ③ 1인 가구 ④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⑤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p>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통계조사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이 함께 사는 가구>는 가족이외의 사람은 5인 이하인 경우이며, 6인 이상이면 별도의 가구로 분리.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란 6인 이상 19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를 말하며, 20인 이상의 경우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에 해당한다.
	관련 자료	● 행정자료, 특히 주민등록의 세대는 가구구분이 분명하지 않음. 인구주택총조사가 가사단위(house-keeping unit)로서 가구를 정의하지만, 주민등록은 주거단위와 가사단위 개념의 가구가 혼재하는 경향이 있음
정책 연관성		● 가구구분에서 집단(시설)가구의 유형을 제안하지 않지만, 가구원수를 유형별로 집계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의 진전이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교육시설, 건강보호시설, 노인요양시설, 군대시설, 종교시설 등의 유형별 가구원수를 집계하고, 집단시설 유형별로 가구원수를 추계하는 것은 서비스 전달대상 인구에 대한 다양한 사회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주택통계, 특히 주택보급률은 분모인 주택 보급 대상 가구를 산정하는데 사용되는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이다. 현행 주택보급률은 분모로 총가구수에서 집단가구를 빼고 일반가구만을 분모로 하는데, 여기에는 친족가구, 비친족 가구원을 포함하는 친족가구, 1인 가구,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로 구성된다. 물론, 1인 가구, 5인 이하의 비친족가구를 분모에 포함할 것인가 제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 가구주와의 관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p>● 친족가구에 대하여 가족구조(가족 핵수:핵가족, 확대가족 등 또는 세대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상 등),와 가족유형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은 물론 가족의 생애주기(생성과 소멸 등)를 파악하고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성, 연령, 혼인상태)에 따라, 장래가구수를 추계하기도 한다.</p>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4 가구주와의 관계</th> <th style="width: 33%;"></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그 배우자 ⑧ 중손자녀, 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⑬ 기타 친·인척 ⑭ 그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하숙인 등)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해당하는 한 곳에만 표시합니다. • ⑩~⑬는 가구주와 배우자 양쪽 다 해당합니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그 배우자 ⑧ 중손자녀, 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⑬ 기타 친·인척 ⑭ 그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하숙인 등) </td> </tr> </tbody> </table>		4 가구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그 배우자 ⑧ 중손자녀, 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⑬ 기타 친·인척 ⑭ 그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하숙인 등) 	<p>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해당하는 한 곳에만 표시합니다. • ⑩~⑬는 가구주와 배우자 양쪽 다 해당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그 배우자 ⑧ 중손자녀, 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⑬ 기타 친·인척 ⑭ 그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하숙인 등)
	4 가구주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그 배우자 ⑧ 중손자녀, 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⑬ 기타 친·인척 ⑭ 그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하숙인 등) 	<p>이분은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주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가구주를 기준으로 어떠한 관계인지 해당하는 한 곳에만 표시합니다. • ⑩~⑬는 가구주와 배우자 양쪽 다 해당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구주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가구주의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그 배우자 ⑧ 중손자녀, 그 배우자 ⑨ 조부모 ⑩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⑪ 형제자매의 자녀, 그 배우자 ⑫ 부모의 형제자매, 그 배우자 ⑬ 기타 친·인척 ⑭ 그외 같이 사는 사람(공동인·하숙인 등) 					
전수/표본항목	<p>● 전수항목</p>						
관련 자료	행정자료	<p>●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p>					
	통계조사	<p>●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p>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p>● 가구 = 취사, 취침 및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사실상의 가구주의 개념이 규정상 강조되고 있지만, 법 개념상의 가구주와 세대주의 차이를 찾아내기는 곤란함</p> <p>● 가구주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이 2인 이상 함께 사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연장자 또는 대표자)을 가구주로 함</p> <p>● 자녀·자녀의 배우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 그 배우자를 찾기 곤란, 또 - 형제자매가 여러 명 있을 경우 형제자매의 자녀와 그 부모를 연결하기 곤란</p>					
	관련 자료	<p>● 행정자료는 가구보다는 세대라는 개념을 사용, 세대 =동일거처에 생활하는 주민등록상의 단위</p> <p>※ 가족 : 친족세대, 서로 혈연관계가 있거나, 양자 또는 혼인관계가 있는 사람의 집단</p>					
정책 연관성	<p>●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가족구조와 가족유형은 가족정책의 투입요인을 고려하는데 유효한 정책변수가 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 가족 및 가족의 복잡성이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족 및 가구관계 선택지에 의하여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인구주택총조사에서 가족 및 가구구성을 행렬로 “기준 가구원”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주 정보는 가구주율을 지리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교육, 경제활동)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래가구추계를 실시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족정책은 물론 주택정책에도 활용할 수 있음</p>						

▷ 거주기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일반가구, 특히 1인 가구, 친족가구에 대하여 주거의 안정여부를 자가 및 전·월세별로 기간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조사의 목적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0 거주 기간</p> <p>이 가구는 이 집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p> <p>•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① 1년 미만</td> <td style="width: 50%;">⑥ 10년 ~ 15년 미만</td> </tr> <tr> <td>② 1년 ~ 2년 미만</td> <td>⑦ 15년 ~ 20년 미만</td> </tr> <tr> <td>③ 2년 ~ 3년 미만</td> <td>⑧ 20년 ~ 25년 미만</td> </tr> <tr> <td>④ 3년 ~ 5년 미만</td> <td>⑨ 25년 이상</td> </tr> <tr> <td>⑤ 5년 ~ 10년 미만</td> <td></td> </tr> </table> </div>	① 1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⑧ 20년 ~ 25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⑨ 25년 이상	⑤ 5년 ~ 10년 미만	
① 1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② 1년 ~ 2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③ 2년 ~ 3년 미만	⑧ 20년 ~ 25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⑨ 25년 이상											
⑤ 5년 ~ 10년 미만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통계조사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원들이 전입해 온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가장 오래 살아온 가구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표시, 같은 장소에 계속 살았더라도 재개발로 일정기간 다른 곳에 가있었다면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보지 않음 ● 가구구분이 특별조사구(군인 등), 집단가구(6인 이상 비친족가구, 기숙사, 사회시설 등) 및 외국인가구는 집계대상에서 제외한다.										
	관련 자료	● 주민등록의 경우, 실제거주지와 등록지와 상이한 경우 있음										
정책 연관성		● 거주기간의 안정성은 친족가구 중에서 1인 가구, 친족가구에 대하여 주택유형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거주용 이외의 주택)로 또 자가·전세, 월세별로 제표결과를 검토하여 보면 전국,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또는 읍면동의 소지역에 대해서 주택공급 서비스에 관련된 정책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사용방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일반가구, 특히 1인 가구나 친족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 및 가구원 구성별로 침실수와 사용방수를 파악하여 주거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파악하는 것.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1 사용방수</p> <p>이 가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은 각각 몇 개입니까?</p> <p>●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2m, 넓이는 4㎡ 이상인 것을 말하며, 거실 겸 식사용 방은 거실에만 기입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을 자는 방 □ 개 — 기타 용도로 사용하는 방(옷방, 서재 등) □ 개 ● 거실(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대청마루 포함) □ 개 ● 식사용 방(부엌이 딸린 식사용 방 포함) □ 개 </div>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건축물대장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방>이란 원칙적으로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있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8m 이상, 넓이 3.3㎡ 이상인 것을 말함.(침실, 서재, 옷방, 놀이방 등과 같이 방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물건을 쌓아 놓거나 (창고적 기능)사용하지 않는 방 등은 제외, 거실, 식당도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원룸은 침실 1개, 거실은 없는 것으로 기입, 통로, 베란다, 로비, 목욕실, 화장실, 지하창고 등은 방으로 보지 않음) ● 방에 대한 정의가 국제기준과 달라 애매(거실, 식당을 우리나라 개념의 방으로 보는데 따른 이해 부족, 부엌은 방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혼란, 이용방수의 정의가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에 국한되어 있음, 아파트 비중 및 1가구 1주택 점유비율이 증가
	관련 자료	● 실질적 의미의 사용방을 행정자료로 파악할 수 없음, 일반적 의미의 방수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현황도’의 code화 필요 주민등록의 경우, 실제거주지와 등록지와 상이한 경우 있음
정책 연관성		● 사용방수에 관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전국, 지역별로, 가족 및 가구 특성별로 제표작업을 하게 되면, 일반가구 특히 1인 가구와 친족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라 주거환경을 파악할 수 있고, 주거의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가구의 비율을 측정하여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 건물층수 및 거주층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수항목으로 우리나라 주택의 건물 층수에 대한 현황과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반지하 옥탑방 등 거주공간의 질을 파악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문항내용		<p>11 [건물 및 거주 층] 이 가구가 살고 있는 건물은 몇 층이며,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p> <p>층 건물의 [① 지하(반지하), ② 지상, ③ 옥상(옥탑)] 층</p>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건축물대장(층호수, 건축물 명칭(번호), 층수)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 건축물통계(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실적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가구가 있는 건물 전체의 층수를 기입하되, 위치별로 층수가 다른 경우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함(지하 및 옥탑은 층수에서 제외, “지하(반지하)”는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1/2 이상인 경우를 말함, “지상00층”은 건물 전체의 층수가 아닌 실제 살고 있는 층수를 기입함.
	관련 자료	● 2층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의 경우 거주층 파악 곤란
정책 연관성		<p>● 건물층수와 거주층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전수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제표화된 적이 없으며, 만약 이것이 제표화된다면, 지하(반지하) 또는 옥상(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거주공간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p> <p>※: 2005년 주택총조사 결과(단위 : 천 호,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총수 13,222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4,264 (32.2) - 아파트 6,962 (52.7) - 연립주택 559 (4.2) - 다세대주택 1,229 (9.3) - 비거주용 건물내 209 (1.6)

▷ 난방시설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항목은 가구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종류와 난방시설 형태를 가구형태 및 지역별로 파악함으로써 주택정책은 물론 중장기 에너지 수급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4 난방 시설</p> <p>이 가구의 난방 시설은 어떤 형태입니까?</p> <p>•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것 한 곳에만 표시합니다.</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① 중앙난방</td> <td style="width: 50%;">⑥ 전기 보일러</td> </tr> <tr> <td>② 지역난방</td> <td>⑦ 연탄 보일러</td> </tr> <tr> <td>③ 도시가스 보일러</td> <td>⑧ 연탄 아궁이</td> </tr> <tr> <td>④ 기름 보일러</td> <td>⑨ 재래식 아궁이</td> </tr> <tr> <td>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td> <td>⑩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15px;" type="text"/></td> </tr> </table> </div>	① 중앙난방	⑥ 전기 보일러	② 지역난방	⑦ 연탄 보일러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⑧ 연탄 아궁이	④ 기름 보일러	⑨ 재래식 아궁이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⑩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15px;" type="text"/>
① 중앙난방	⑥ 전기 보일러										
② 지역난방	⑦ 연탄 보일러										
③ 도시가스 보일러	⑧ 연탄 아궁이										
④ 기름 보일러	⑨ 재래식 아궁이										
⑤ 프로판가스(LPG) 보일러	⑩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height: 15px;" type="text"/>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항목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료 ● 건축물대장, 아파트주거환경통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 에너지수급통계(에너지경제연구원), ● 에너지총조사(지식경제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자료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시군구 지역에 대하여 주택을 거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난방시설을 파악함으로써, 주택정책은 물론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구 등 편의시설의 개수별로 정리하여, 중장기 에너지 수급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환경정책에 발맞추어 불필요한 에너지의 소모를 줄여서 환경 파괴를 완화하는 난방시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항목은 지역별로 가구 또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수도 및 식수의 사용형태를 파악하여 주택 및 환경정책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35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p> <p>이 가구의 수도 시설은 어떤 형태입니까? 그리고 식수는 어떻게 사용합니까?</p> <p>• 우물, 샘물에 모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④없음」에 표시합니다.</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수도 ② 마을 상수도(간이 상수도) ③ 전용 상수도(사택 등 특정시설에 공급되는 자가수도) ④ 없음 </div> <div style="width: 50%; 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돗물을 그대로 먹음 (끓여 먹는 것 포함) ② 수돗물을 정수해 먹음 ③ 생수를 사서 먹음 ④ 약수를 떠서 먹음 ⑤ 지하수를 먹음 ⑥ 기타 </div> </div> </div>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통계, 지하수개발 및 이용실태조사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현황(국토해양부) ● 상수도통계(국토해양부) ● 지하수개발 및 이용실태조사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를 끓여 먹거나, 생수를 사서 먹는 경우 등을 파악할 수 없음 ※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실태조사는 행정보고를 통해 용도 및 세부용도별로 전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용 : 가정용, 일반용, 학교용, 민방위용, 국군용, 간이상수도용, 상수도용, 농업·생활겸용, 기타 - 공업용 : 국가공단, 지방공단, 농공단지, 자유입지업체, 기타 - 농어업용 :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수산업용, 축산업용, 양어장용, 기타 - 기타 : 온천수, 먹는 샘물, 기타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시군구 지역에 대하여 주택을 거처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역별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들이 어느 정도 수도 및 식수 사용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주택정책은 물론 환경보호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항목은 지역별로 거처(가구)별로 또는 가족유형별로 정보통신기기의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정보통신기기의 수요예측과 가구특성별 정보화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36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현황</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가구에서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와 이용 중인 서비스는 어떤 것입니까?</p> <p style="text-align: center;">• 보유하거나 이용 중인 것은 모두 표시합니다.</p> <p>① 아날로그 TV(브라운관 TV) <input type="checkbox"/> 대 ⑥ 안테나를 통한 TV 시청</p> <p>② 디지털 TV <input type="checkbox"/> 대 ⑦ 케이블TV(CATV) 시청</p> <p>③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포함) <input type="checkbox"/> 대 ⑧ 위성을 통한 TV 시청</p> <p>④ 팩스(복합기 포함) <input type="checkbox"/> 대 ⑨ 인터넷TV(IPTV) 시청</p> <p>⑤ 인터넷 회선 <input type="checkbox"/> 대 ⑩ 해당 없음</p> </div>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실태조사(통계청 2001,2002), ● 정보격차지수및실태조사(행정안전부), ● 개인인터넷이용자정보보호실태조사(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무선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이용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M ● 주한외국인인터넷이용실태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 농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 어업기본통계조사(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변하는 IT 분야를 5년 마다 조사하여 정책에 활용하기에는 시의성이 없지만, digital divide가 지역별(시도, 시군구)로, 가구유형, 주택유형별로 현재화되는 형태를 탐색하는 데는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행정자료 없음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유사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부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에서 표본규모가 대단히 큰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지역별(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또 가구나 거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보통신기기 접근의 불평등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여, 정보화 수준의 지역간 불평등의 개선정도를 하나의 지역균형발전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항목은 가구당 교통수단 보유 및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주거의 질 측면에서 자동차 대중화와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정부의 환경정책에 발맞추어, 환경 친화적인 자전거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관련 정책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7 교통수단보유 및 이용 현황</p> <p>이 가구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용 자전거 등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① 승용차(경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td> <td style="width: 50%;">⑤ 오토바이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td> </tr> <tr> <td>② 승용차(경차 외)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td> <td>⑥ 자전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td> </tr> <tr> <td>③ 승합차(11인승 이상)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td> <td>⑦ 없음</td> </tr> <tr> <td>④ 화물·특수자동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td> <td></td> </tr> </table> <p>보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난 목요일에 이 가구의 교통수단별 이용 횟수는 총 몇 회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일과 가장 가까운 목요일의 이용 횟수로 기입합니다. • 버스, 택시 등을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는 이용 횟수에서 제외합니다. • 6세 이상의 모든 가구원의 이용 횟수를 합산해야 하며, 동일한 교통수단을 왕복으로 이용한 경우는 2회로 합니다.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① 승용차(경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d style="width: 50%;">⑦ 버스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r> <tr> <td>② 승용차(경차 외)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d>⑧ 택시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r> <tr> <td>③ 승합차(11인승 이상)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d>⑨ 전철, 지하철, 기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r> <tr> <td>④ 화물·특수자동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d>⑩ 선박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r> <tr> <td>⑤ 오토바이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d>⑪ 비행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r> <tr> <td>⑥ 자전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td> <td>⑫ 해당 없음</td> </tr> </table> </div>	① 승용차(경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⑤ 오토바이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② 승용차(경차 외)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⑥ 자전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③ 승합차(11인승 이상)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⑦ 없음	④ 화물·특수자동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① 승용차(경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⑦ 버스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② 승용차(경차 외)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⑧ 택시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③ 승합차(11인승 이상)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⑨ 전철, 지하철, 기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④ 화물·특수자동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⑩ 선박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⑤ 오토바이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⑪ 비행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⑥ 자전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⑫ 해당 없음
① 승용차(경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⑤ 오토바이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② 승용차(경차 외)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⑥ 자전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③ 승합차(11인승 이상)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⑦ 없음																				
④ 화물·특수자동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대																					
① 승용차(경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⑦ 버스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② 승용차(경차 외)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⑧ 택시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③ 승합차(11인승 이상)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⑨ 전철, 지하철, 기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④ 화물·특수자동차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⑩ 선박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⑤ 오토바이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⑪ 비행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⑥ 자전거 <input style="width: 40px;" type="text"/> 회	⑫ 해당 없음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자동차등록원부(차종, 용도, 년식, 사용본거지(차고지), 소유자 및 주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현황(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가계자산조사(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우리나라 전체의 교통수단 이용현황에 대한 파악이 쉽지는 않음																			
	관련 자료	● 회사의 교통수단을 실질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파악 곤란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부로 실시되는 표본조사에서 표본규모가 대단히 큰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지역별(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로 구분하고 또 가구나 거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교통수단의 보유와 이용 현황을 검토하면, 자동차의 대중화와 자전거나 다른 교통수단의 환경친화적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 또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환경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차장소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이 조사항목은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른 주차장소의 마련에 관한 것으로, 최근의 주차장소 부족으로 인한 근린환경의 악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38 주차장소</p> <p>이 가구는 자동차를 주로 어디에 주차합니까?</p> <p>•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주차하는 곳이 다르면 주로 주차하는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p> <p>① 자가 주차장(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단지 내) ② 영업용 또는 건물 부설 주차장 ③ 노상 주차장(주차선이 그려진 곳, 거주자 우선 주차 포함) ④ 도로변, 골목길(주차선이 없는 곳) ⑤ 공터 ⑥ 기타 <input style="width: 150px; height: 15px;" type="text"/></p> </div>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건축물대장(옥내 및 옥외, 주차대수, 면적 등), 자동차등록원부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록 장소와 실제 주차장소가 상이한 경우 있음 ● 건축물대장으로는 노상, 거주자 우선주차 등에 대해 파악 곤란
정책 연관성		● 자동차나 다른 교통수단의 이용에 대한 통계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의 일부로 실시되는 표본조사로서 표본규모가 대단히 큰 자료에서 우리나라를 지역별(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로 구분하고 또 가구나 거처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자동차의 주차장소 현황을 검토하면, 자동차의 대중화와 자전거나 다른 교통수단의 환경친화적인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점유형태 및 임차료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항목은 점유형태(주거전용, 영업겸용)의 구분과 자가 및 전·월세 등 주거실태, 주택보급률, 주택 임차료 수준 등 주택 보유와 사용에 대한 분석을 위한 것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 style="text-align: center;">39 점유형태 40 임차료</p> <p style="text-align: center;">이 가구가 살고 있는 집은 주거전용입니까, 영업겸용입니까? 그리고 자기 집입니까? 셋집이라면 집세는 얼마입니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① 주거전용</p> <p>② 영업겸용</p> </div> <div style="width: 50%;"> <p>① 자기 집</p> <p>② 전세(월세 없음)</p> <p>③ 보증금 있는 월세</p> <p>④ 보증금 없는 월세</p> <p>⑤ 사글세 [] 개월</p> <p>⑥ 무상(관사, 사택 등)</p> </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p>전세·보증금 [] 억 [] [] [] 만 원</p> <p>월세(사글세) 월 [] [] [] [] 만 원</p> </div> </div>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항목
관련 자료	<p>행정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소비자물가조사(통계청)
특이사항	<p>인구주택총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조사가 어려움 <p>관련 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2007년 14.6만 호)에 대해서만 파악 가능 ● 소비자물가, 주택조사(국민은행)는 표본조사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항목을 일차적으로 주택이 주거전용, 영업겸용인가를 구분할 수 있고, 소유형태(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등) 등의 주거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주택임차료 정보를 획득하고, 주택보급률을 산정하기 위한 주택정책의 기초자료 획득에 중요하다.

▷ 타지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항목은 주인가구 여부는 주택에 관한 항목을 해당 주택에서 1가구만 조사하기 위해 만든 항목으로, 주택 소유 여부는 점유형태(자가, 전·월세, 무상 등)에 관계없이 다른 곳에 주택소유 여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주택소유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항목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p>41 타지주택 소유 및 주인가구 여부</p> <p>이 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중에 누구라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해당합니다. <p>① 다른 곳에 주택 소유 ② 다른 곳에 주택 미소유</p> <p>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 가구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등에 독채로 세든 가구 또는 주인 없이 세 들어 사는 가구만 있는 경우 그 중 주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가구가 대표 가구가 됩니다. <p>① 주인 가구</p> <p>② 세든 가구 ———— { ① 세든 가구 중 대표 가구 ② 그 외 세든 가구 → 48 번으로</p> </div>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대장(소유자 현황), 등기부(건물)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주택소유현황(국토해양부), ● 주택보급률(국토해양부), ● 지역별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고안) ● 직업군인주택보급률현황(국방부), ● 주거실태및수요조사(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인가구와 주택소유 혼돈 우려 ● 전세입자가 다시 세를 준 경우 등으로 부실 응답 우려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 소유주와 법률적 소유주 구분 곤란 ● 주인가구 파악 곤란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 주택 소유여부는 모든 가구에 대해 조사 <다른 곳에 주택 소유>는 가구원 중에 누구라도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묻는다. 해당 <주인가구> 또는 <대표가구>에 해당하면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넘어가 계속 조사한다. 주인가구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든 가구를 대표가구로 선정하되, 여러 가구가 세를 들어 살고 있다면 그중 주택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가구를 대표가구로 함. ● 이 문항은 실질적 주택보유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보유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

5. 인구학적 특성

▷ 성별(남녀)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성별(남녀간) 비교에 적합성이 있는 인구·경제·사회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함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남자 ② 여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 성 별</td> <td style="text-align: center;">① 남자 ② 여자</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td> </tr> </table>	● 남자 ② 여자	2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남자 ② 여자	2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다수의 미상 발생 ● SEX와 GENDER 표기의 이전						
	관련 자료	● SEX : 생물학적이며 행위중심의 성 ※ GENDER : 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으로 가치나 신념을 내포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성별 구성비, 성비(여자 100명당)는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핵심 지표이고, 연령 등 인구통계 특성이나 사회경제적 특성의 범주별로 횡단분류를 실시하여 해당인구의 구조를 파악하는 주요변수가 된다. ●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은 젠더연구(gender studies)의 필수사항이고, 이 때문에, 교육연수, 경제활동, 혼인상태, 인구가동, 활동제약, 생활여건과 같은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 특성의 경우, 남녀별로 자료를 분리 제시하는 것이 남녀격차(gender gaps)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는 행동강령에서 성별, 연령별로 자료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것이야 말로, 여성과 남성에게 관련된 많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 나이(연령)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는 인구통계의 핵심변수로서, 인구구조를 파악하는 중요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으로, 보육인구 학령(초등, 중학, 고교, 대학)인구, 병역인구, 생산연령인구, 가임여성 인구, 고령자인구 등 인구를 특성집단별로 구분하는 수단이 됨.
문항내용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부 등 개인관련 모든 행정자료 ※ 실제생년월일 : 출생·혼인·이혼·입양·실종·부재신고서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통계(각시도) ● 주민등록인구현황(행정안전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병무통계(병무청),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 누락률이 높은 연령층의 조사방법 개선 필요 - 20-30대:경제활동, 0-4세 동반가족, 70세이상 : 고령으로 타지에 부정기 거주 ● 100세이상은 주민등록연령과 차이가 크며, 실제보다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음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나이와 다르게 등재(특히 고령자의 경우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음) - 1999년 인구주택인구주택총조사 제3차(도시지역) 및 제4차(농촌지역) 시험조사에서 생년월일 중 만(滿) 연령으로 조사하여 주민등록의 만연령을 비교한 결과 도시지역 90.9%, 농촌지역 87.3% 일치 - 1997년 상주지와 주민등록지 비교연구 결과 1959년 이전 출생 62.2%, 1980년생 이후 93.5%, 1990년 이후 97.7% 일치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이(연령)는 성별과 더불어, 인구주택총조사 제표작업에서 고려되는 핵심변수로서, 만 연령 자체와 함께 다양한 파생변수로서, 영유아인구, 아동인구, 보육인구, 학령인구(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징집대상연령인구, 유소년인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자인구, 가임연령인구 등 인구를 특성별로 분류하여, 서비스 대상 인구를 파악하고 나아가 각종 인구 및 사회통계의 지표를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 정책관련 주요지표: 중위연령, 평균연령,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 고령자부양비, 고령자 잠재부양비(PSR), 유소년안구, 생산연령인구, 고령자인구(전기고령인구, 후기고령인구)의 비율 유소년: 0-14세, 생산연령: 15-64세, 고령자: 65세이상 (전기고령자 60-64세, 후기고령자 65세 이상)

▷ 혼인상태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인구규모의 변동과 가구형성과 해체를 파악하고 예측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널리 활용됨			
문항내용		<table border="1"> <tr>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① 미혼 ●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td>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 text-align: center;">8 혼 인 상 태 (집에서 세는 나이 16세 이상만 기입합니다.)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합니다.</td> <td style="background-color: #e6f2ff;">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td> </tr> </table>	① 미혼 ●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8 혼 인 상 태 (집에서 세는 나이 16세 이상만 기입합니다.)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합니다.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① 미혼 ●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8 혼 인 상 태 (집에서 세는 나이 16세 이상만 기입합니다.)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법적인 상태와 관계없이 실제 혼인 여부를 표시합니다.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출생신·사망·혼인·이혼신고서			
	통계조사	● 인구동태조사(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조사 과정에서 혼인상태항목을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로 여겨 응답을 거부하거나 부실한 응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 ● ECE/Eurostat 의 경우 법적 혼인상태는 핵심사항이나 사실혼 상태는 권고사항임 ● 별거에 대한 불분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이 예상되는 별거: 이혼 - 재결합이 예상되는 별거: 유배우 ● 미혼모의 경우 사회통념상 미혼으로 조사하는 것이 타당 ● 동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의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 배우자 있음(지침서 기준). - 10대, 20대 초반의 동거의 경우 사회통념상 유배우 관계로 보지 않음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혼 관계 ※ 신고서의 경우 실제혼인관계 병행조사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상태는 가구의 형성과 해체를 일시 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이것은 출산행태는 물론, 건강 및 이환율, 인구이동 등의 인구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이다. ● 혼인 갭(marriage gap): 유배우상태에 있는 사람이 미혼 상태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다 혼인 갭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특성차이를 의미하며, 이것을 남녀격차(gender gap)로 혼돈해서는 안 되며, 혼인 갭이 이들 정치적/경제적 갭과 인과관계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관관계로 표현된 것으로서 정책관련 함의가 별로 없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6. 출산력 및 사망력

▷ 총출생아수 (사망아수)·추가계획자녀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들의 출생수준과 유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인구규모 및 구조 분석은 물론 여성의 출산·육아부담실태와 변화 추이 등을 파악, 출산력 간접 추정가능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남 <input type="text" value="2"/> 명 여 <input type="text" value="1"/> 명 </td> <td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 26 총 출생아 수 지금까지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small>• 직접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기입합니다. • 미혼여성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합니다.</small> </td> <td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남 <input type="text" value=""/> 명 여 <input type="text" value=""/> 명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남 <input type="text" value="1"/> 명 여 <input type="text" value="0"/> 명 </td> <td style="text-align: center;"> 지금까지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 ● 있음 → <input type="text" value="2"/> 명 ② 없음 </td> <td style="text-align: center;"> 남 <input type="text" value=""/> 명 여 <input type="text" value=""/> 명 </td> </tr> <tr>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 27 추가 계획 자녀 수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small>•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small> </td> <td style="text-align: center;"> ① 있음 → <input type="text" value=""/> 명 ② 없음 </td> </tr> </table>		남 <input type="text" value="2"/> 명 여 <input type="text" value="1"/> 명	26 총 출생아 수 지금까지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small>• 직접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기입합니다. • 미혼여성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합니다.</small>	남 <input type="text" value=""/> 명 여 <input type="text" value=""/> 명	남 <input type="text" value="1"/> 명 여 <input type="text" value="0"/> 명	지금까지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 ● 있음 → <input type="text" value="2"/> 명 ② 없음	남 <input type="text" value=""/> 명 여 <input type="text" value=""/> 명			27 추가 계획 자녀 수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small>•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small>	① 있음 → <input type="text" value=""/> 명 ② 없음
남 <input type="text" value="2"/> 명 여 <input type="text" value="1"/> 명	26 총 출생아 수 지금까지 낳은 자녀는 모두 몇 명입니까? <small>• 직접 출산한 자녀에 대해서만 기입합니다. • 미혼여성이 출산한 자녀도 포함합니다.</small>	남 <input type="text" value=""/> 명 여 <input type="text" value=""/> 명											
남 <input type="text" value="1"/> 명 여 <input type="text" value="0"/> 명	지금까지 낳은 자녀 중에서 사망한 자녀는 몇 명입니까? ● 있음 → <input type="text" value="2"/> 명 ② 없음	남 <input type="text" value=""/> 명 여 <input type="text" value=""/> 명											
		27 추가 계획 자녀 수 앞으로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small>• 현재 임신 중인 태아도 포함합니다.</small>	① 있음 → <input type="text" value=""/> 명 ② 없음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생신고서(총출생아수 및 사망아수) ※ 사산신고서 : 인지된 태아가 사망한 경우)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영아사망통계조사(보건복지부), ● 인구동태조사(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 문제로 응답거부 또는 회피 경향 (동거자녀, 타지 거주 자녀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음)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신고아 파악 곤란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동태통계와는 별도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출산력과 영유아 사망률에 대한 인구동태의 기본정보를 제공하여, 저출산 시대 인구정책의 토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구동태통계로 파악하기 힘든 총출생아수, 생존아수는 코호트 출산율(cohort fertility)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장래 추가계획자녀수(planned number of births)는 향후 출산동향과 관련하여 장래추계를 위한 입력변수, 특히 목표출산율(target fertility)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임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에 포함되었으나 조사부실과 장래추계의 성급한 로드맵으로 활용기회가 없었음) 											

▷ 혼인연월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혼인상태 및 혼인시기는 인구규모의 변동은 물론 가구형성과 해체를 파악하고 예측하며,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널리 활용됨,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연월을 말하며, 두 번 이상 혼인한 경우는 최초 혼인한 시기를 기입
문항내용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부, 가족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출생·사망·혼인·이혼신고서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동태조사(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생활 문제로 응답거부 및 회피 경향, 특히 사실혼 시점과 법률혼 시점의 갭이 있는 경우, 이것이 조사표의 문항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혼 관계 ※ 신고서의 경우 실제혼인관계 병행조사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연월에서 도출한 혼인연령과 조사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총출생아수를 제표화하여, 혼인연령이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혼인연령을 정책 변수로 활용할 수 있다.

7. 교육 및 사회적 특성

▷ 교육정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교육수준을 성별, 연령별로 파악하여, 우리나라 인구의 질적 수준 및 인적자본(human capital) 특성을 분석하여 교육수급대책,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양성 계획 등에도 활용.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p>5 교육 정도</p> <p>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 교육으로 봅니다. •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에 표시합니다.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 	<p>5 교육 정도</p> <p>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 교육으로 봅니다. •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에 표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 	<p>5 교육 정도</p> <p>정규 교육은 어디까지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력을 정규 교육으로 봅니다. •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는 정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은 「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에 표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안 받았음(미취학 포함)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대학교(4년제 이상) ⑦ 대학원 석사 과정 ⑧ 대학원 박사 과정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시스템,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통계연보(각 시도) ● 특수교육통계보고(교육과학기술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과장 응답 경향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정보시스템(NEIS) : 1982년 이후 졸업생부터 이용가능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정규 교육수준을 측정하여, 인구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고, 교육수급대책, 교육시설 확충 및 교원양성 계획의 투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 ● 장래인구추계와 성별, 연령별 교육정도의 장래전망을 결합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수준별 인구구성을 예측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중장기 인적자본 수급계획과 사회경제발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사회활동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p>●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신규문항으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이 타인과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가를 파악하고, 가족이나 직장이 아닌 다른 공동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금전적 이익을 획득하는 목적이 아닌 자발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조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p>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분야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 종교분야 단체 ●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없음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17 사회활동</p> <p>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가 있습니까?</p> <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p>• 회비만 납부하는 활동은 제외하며, 지난 1년간 1회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p>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분야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②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③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④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⑤ 종교분야 단체 ⑥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⑦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⑧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⑨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⑩ 없음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분야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 종교분야 단체 ●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없음 	<p>17 사회활동</p> <p>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가 있습니까?</p> <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p>• 회비만 납부하는 활동은 제외하며, 지난 1년간 1회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분야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②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③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④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⑤ 종교분야 단체 ⑥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⑦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⑧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⑨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⑩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분야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 종교분야 단체 ●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 없음 	<p>17 사회활동</p> <p>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호회가 있습니까?</p> <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p>• 회비만 납부하는 활동은 제외하며, 지난 1년간 1회 이상 활동한 경우에만 표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분야단체(환경, 봉사, 인권단체 등) ② 경제분야단체(노동조합, 직업단체 등) ③ 문화분야 단체(취미, 스포츠 등) ④ 정치분야 단체(정당활동 등) ⑤ 종교분야 단체 ⑥ 지역단체(아파트 주민단체 등) ⑦ 친목단체(동창회, 향우회 등) ⑧ 교육단체(학부모, 교사단체 등) ⑨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⑩ 없음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신규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없음,															
	통계조사	● 사회조사(주제부문: 사회참여) 지난 1년간 단체참여(친목 및 사교단체, 종교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이익단체, 정치단체, 기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정확한 조사가 어려우며, 자의적인 응답이 될 개연성이 있음 (응답의 범주도 사회조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관련 자료	<p>● 사회조사 단체참여 문항변동</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조사 연도</th> <th>1999</th> <th>2003</th> <th>2006</th> <th>2009</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조사 항목</td> <td> <p>사회 단체 참여도</p> <p>20 귀하는 지난 1년(98.10.1~99.9.30)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후시고 ()인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부분의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p> <p>1. 있다 ※ 가장 적극적인 활동부문 ()</p> <p>1. 친목 및 사교단체(동창(문)회, 관훈클럽 등) 2. 종교단체(선교회, 기빙원, 교리연구회 등) 3.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사자동호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4. 사회봉사단체와 시민운동단체(M/WCA, 환경운동연합 등) 5. 학술단체(경제학회, 기계학회 등) 6. 이익단체(노조, 약사회, 변호사회 등) 7. 정치단체(자유총연맹, 국민승리21, 정당 등) 8. 기타 ()</p> <p>2. 없다 ※ 1. 연말립, 후원회, 단순한 수장목적의 취미반(단체) 등은 제외 2. 활동하지 않는 것은 사회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p> </td> <td> <p>단체 참여</p> <p>19 귀하는 지난 1년(2002.9.1. ~ 2003.8.31.)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단체에 참여하셨습니다습니까?</p> <p>1. 있다</p> <p>1순위 <input type="checkbox"/> 1.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 2순위 <input type="checkbox"/> 2. 종교단체(기빙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등) 3순위 <input type="checkbox"/> 3.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4.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5. 학술단체 6.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7. 정치단체 8. 기타 ()</p> <p>2. 없다</p> </td> <td> <p>단체 참여</p> <p>19 <input type="checkbox"/> 좌동</p> <p>1. 있다</p> <p>1순위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3순위 <input type="checkbox"/> 좌동</p> <p>※1순위 또는 2순위까지만 기입도 가능</p> <p>2. 없다</p> </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좌동</td> </tr> <tr> <td>변경 내용</td> <td>○ 항목 신설</td> <td>○ '사회단체 참여도'→'단체참여' 제목 변경 ○ 중요도(순위)반영 ○ 전체적으로 선택지 '예시' 수정·삭제·보완 ○ 1999년 4번 → 2003년 4번</td> <td></td> <td></td> </tr> </tbody> </table>	조사 연도	1999	2003	2006	2009	조사 항목	<p>사회 단체 참여도</p> <p>20 귀하는 지난 1년(98.10.1~99.9.30)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후시고 ()인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부분의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p> <p>1. 있다 ※ 가장 적극적인 활동부문 ()</p> <p>1. 친목 및 사교단체(동창(문)회, 관훈클럽 등) 2. 종교단체(선교회, 기빙원, 교리연구회 등) 3.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사자동호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4. 사회봉사단체와 시민운동단체(M/WCA, 환경운동연합 등) 5. 학술단체(경제학회, 기계학회 등) 6. 이익단체(노조, 약사회, 변호사회 등) 7. 정치단체(자유총연맹, 국민승리21, 정당 등) 8. 기타 ()</p> <p>2. 없다 ※ 1. 연말립, 후원회, 단순한 수장목적의 취미반(단체) 등은 제외 2. 활동하지 않는 것은 사회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p>	<p>단체 참여</p> <p>19 귀하는 지난 1년(2002.9.1. ~ 2003.8.31.)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단체에 참여하셨습니다습니까?</p> <p>1. 있다</p> <p>1순위 <input type="checkbox"/> 1.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 2순위 <input type="checkbox"/> 2. 종교단체(기빙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등) 3순위 <input type="checkbox"/> 3.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4.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5. 학술단체 6.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7. 정치단체 8. 기타 ()</p> <p>2. 없다</p>	<p>단체 참여</p> <p>19 <input type="checkbox"/> 좌동</p> <p>1. 있다</p> <p>1순위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3순위 <input type="checkbox"/> 좌동</p> <p>※1순위 또는 2순위까지만 기입도 가능</p> <p>2. 없다</p>		좌동	변경 내용	○ 항목 신설	○ '사회단체 참여도'→'단체참여' 제목 변경 ○ 중요도(순위)반영 ○ 전체적으로 선택지 '예시' 수정·삭제·보완 ○ 1999년 4번 → 2003년 4번	
조사 연도	1999	2003	2006	2009													
조사 항목	<p>사회 단체 참여도</p> <p>20 귀하는 지난 1년(98.10.1~99.9.30)동안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여 후시고 ()인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부분의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p> <p>1. 있다 ※ 가장 적극적인 활동부문 ()</p> <p>1. 친목 및 사교단체(동창(문)회, 관훈클럽 등) 2. 종교단체(선교회, 기빙원, 교리연구회 등) 3.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사자동호회, 조기축구회, 산악회 등) 4. 사회봉사단체와 시민운동단체(M/WCA, 환경운동연합 등) 5. 학술단체(경제학회, 기계학회 등) 6. 이익단체(노조, 약사회, 변호사회 등) 7. 정치단체(자유총연맹, 국민승리21, 정당 등) 8. 기타 ()</p> <p>2. 없다 ※ 1. 연말립, 후원회, 단순한 수장목적의 취미반(단체) 등은 제외 2. 활동하지 않는 것은 사회단체에 참여한 것으로 보지 않음</p>	<p>단체 참여</p> <p>19 귀하는 지난 1년(2002.9.1. ~ 2003.8.31.)동안 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느 단체에 참여하셨습니다습니까?</p> <p>1. 있다</p> <p>1순위 <input type="checkbox"/> 1. 친목 및 사교단체(계, 동창회 등) 2순위 <input type="checkbox"/> 2. 종교단체(기빙원, 선교회, 교리연구회 등) 3순위 <input type="checkbox"/> 3.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 4. 시민사회단체(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5. 학술단체 6. 이익단체(노조, 의사회, 약사회 등) 7. 정치단체 8. 기타 ()</p> <p>2. 없다</p>	<p>단체 참여</p> <p>19 <input type="checkbox"/> 좌동</p> <p>1. 있다</p> <p>1순위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3순위 <input type="checkbox"/> 좌동</p> <p>※1순위 또는 2순위까지만 기입도 가능</p> <p>2. 없다</p>		좌동												
	변경 내용	○ 항목 신설	○ '사회단체 참여도'→'단체참여' 제목 변경 ○ 중요도(순위)반영 ○ 전체적으로 선택지 '예시' 수정·삭제·보완 ○ 1999년 4번 → 2003년 4번														
정책 연관성		<p>●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으로서, 응답자의 응답부담이 극소화된다면, 탈근대적 가치관의 실현인 사회전체의 자원적 참여활동(participatory activities)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p> <p>*자원주의(volunteering): 고전적인 정의로는 자발성(자주성), 이타성(사회성, 공공성, 공익성)에 기초하여 활동하는 것이지만, 최근에는 이것에 선구성(선전성, 창조성, 개척성)이 더해져 모두 4가지의 특성이 자원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p>															

▷ 활동제약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이 문항은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활동 제약자와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의 수, 분포 및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성, 연령, 교육정도 등)을 파악하여 장애 문제와 활동제약자 관련 복지수요파악 등 활동제약자·장애인 복지정책에 사용하고, 활동제약자·장애인에 관한 모집단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장애 ●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제약 ③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 장보기, 병원 가기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⑧ 없음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12 활동 제약</p> <p>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p> <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p>•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은 집에서 색는 나이 16세 이상 중 활동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p>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장애 ②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제약 ③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⑤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⑥ 장보기, 병원 가기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⑧ 없음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장애 ●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제약 ③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 장보기, 병원 가기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⑧ 없음 	<p>12 활동 제약</p> <p>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p> <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p>•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은 집에서 색는 나이 16세 이상 중 활동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장애 ②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제약 ③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⑤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⑥ 장보기, 병원 가기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⑧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장애 ●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제약 ③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 장보기, 병원 가기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⑧ 없음 	<p>12 활동 제약</p> <p>6개월 이상 지속되어 왔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육체적·정신적 제약이 있습니까?</p> <p>• 해당하는 곳에 모두 표시합니다.</p> <p>•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은 집에서 색는 나이 16세 이상 중 활동 제약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각·청각·언어장애 ②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이동 제약 ③ 정신적 질환 등 정신적 제약 ④ 배우기, 기억하기, 집중하기 ⑤ 옷 입기, 목욕하기, 밥 먹기 ⑥ 장보기, 병원 가기 ⑦ (16세 이상) 취업 활동 ⑧ 없음 			
전수/표본항목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장애인현황(보건복지부), ● 보육시설맞이용자통계(여성가족부), ● 장애인의무고용현황(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및종사자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수급자현황(보건복지부), ● 특수교육통계보고(교육과학기술부), ●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의 수립에는 우선순위에 있지만, 자료 자체는 국제비교성이 낮음 ● 조사의 어려움과 조사에서의 전문적 지식 필요하고, 시계열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관련 자료	● 미신고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누락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대규모 통계조사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정책 연관성		●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으로서, 여성, 아동에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는 조사항목으로서, 일상생활을 위한 기본활동 장애자와 육체적, 정신적 제약자의 수, 분포 및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성, 연령, 교육정도 등)을 파악하여 장애 문제와 장애인 관련 복지수요파악 등 장애인·장애인 복지정책에 사용하고, 등록 장애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장애인에 관한 모집단 자료를 대규모의 통계조사를 통하여 생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			

▷ 아동보육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이 문항은 보육시설의 수요와 공급 및 이용실태, 노인의 손자녀 보육부담 등 아동, 여성, 고령자 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 및 가족형성 활동과 출산력,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노동, 일과 가정 양립 등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문항내용		<table border="1">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 시설 ⑧ 방과 후 학교 ⑨ 학원(예체능 포함) 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⑪ 기타 <input type="text"/> </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6 아동보육</p> <p>(집에서 세는 나이 1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만 기입합니다.)</p> <p>이 아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6시)에 누가(어느 곳에서) 돌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일주일은 「2010년 10월 24일 ~ 10월 30일」입니다. • 학생은 방과 후의 보육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 시설 ⑧ 방과 후 학교 ⑨ 학원(예체능 포함) 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⑪ 기타 <input type="text"/>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 시설 ⑧ 방과 후 학교 ⑨ 학원(예체능 포함) 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⑪ 기타 <input type="text"/> 	<p>6 아동보육</p> <p>(집에서 세는 나이 1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만 기입합니다.)</p> <p>이 아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6시)에 누가(어느 곳에서) 돌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일주일은 「2010년 10월 24일 ~ 10월 30일」입니다. • 학생은 방과 후의 보육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 시설 ⑧ 방과 후 학교 ⑨ 학원(예체능 포함) 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⑪ 기타 <input type="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 시설 ⑧ 방과 후 학교 ⑨ 학원(예체능 포함) 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⑪ 기타 <input type="text"/> 	<p>6 아동보육</p> <p>(집에서 세는 나이 1세부터 초등학교 입학까지만 기입합니다.)</p> <p>이 아동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낮(오전 9시~오후 6시)에 누가(어느 곳에서) 돌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일주일은 「2010년 10월 24일 ~ 10월 30일」입니다. • 학생은 방과 후의 보육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부모 ② 조부모(친가, 외가) ③ 기타 가족 또는 친·인척 ④ 가사도우미, 이웃 사람 ⑤ 유치원 ⑥ 어린이집, 놀이방 ⑦ 기타 보육 시설 ⑧ 방과 후 학교 ⑨ 학원(예체능 포함) ⑩ 혼자 또는 아동끼리 지냄 ⑪ 기타 <input type="text"/> 			
전수/표본항목		● 표본조사			
관련 자료	행정자료	-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장애인현황(보건복지부), ● 보육시설및이용자통계(여성가족부), ● 장애인의무고용현황(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및종사자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장애수당수급자현황(보건복지부), ● 특수교육통계보고(교육과학기술부), ●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장애인근로자실태조사(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국제비교성 ● 조사의 어려움과 조사에서의 전문적 지식 필요 ● 시계열 문제 			
	관련 자료	● 미신고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누락 가능			
정책 연관성		● 인구주택총조사 문항으로서, 아동보육은 아동을 직접 보육서비스 제공자(시설)와 연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실태를 지역별로, 아동의 성별, 연령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자료이며, 고령자의 손자녀 보육부담 등 아동, 여성, 고령자 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 및 가족형성 활동과 출산력,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노동, 일과 가정 양립 등인의 손자녀 보육부담 등 아동, 여성, 고령자 복지와 관련한 자료를 작성 및 가족형성 활동과 출산력, 여성의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여성노동, 일과 가정 양립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고령자 생활비의 원천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이 문항은 고령자의 경제적인 자립도 분석과 연금 등 고령자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 개인 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펀드, 채권 등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28 고령자 생활비 원천</p> <p>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배우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④ 개인 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펀드, 채권 등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 개인 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펀드, 채권 등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p>28 고령자 생활비 원천</p> <p>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배우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④ 개인 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펀드, 채권 등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 개인 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펀드, 채권 등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p>28 고령자 생활비 원천</p> <p>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배우자 양쪽을 모두 포함하여 표시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인 경우 주된 것 두 곳에만 표시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본인·배우자의 일, 직업 ② 예금, 적금 ③ 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④ 개인 연금(은행, 보험 등) ⑤ 부동산 ⑥ 주식, 펀드, 채권 등 ⑦ 함께 사는 자녀 ⑧ 따로 사는 자녀 ⑨ 친·인척 ⑩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 ⑪ 이웃, 종교·사회단체 보조 ⑫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전수/표본항목		● 표본문항			
관련 자료	행정자료	-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현황(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보건복지부), ● 경로연금수급자현황(보건복지부), ● 지역별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국민연금관리공단) ● 고령화연구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 고령자고용현황(노동부), ● 사회통계조사(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정확한 조사가 어려움			
	관련 자료	● 자녀,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생활비 원천 파악 곤란			
정책 연관성		● 이 문항은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고령층의 평균수명이 신장되고, 저출산으로 고령자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경제적인 자립도나 연금 등 고령자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8. 경제적 특성

▷ 경제활동상태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활동과는 달리, 경제활동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통하여 국민계정체제(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내의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이 문항은 국민의 경제활동 참가 수준은 물론 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등 일하는 형태 등 경제활동구조에 대한 개괄적이지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문항내용		<table border="1">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없음 ① 주로 일하였음 ●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③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④ 일하지 않았음 </td> <td> <p style="text-align: center;">18 경제활동상태</p> <p>지난 일주일(2010년 10월 24일 ~ 10월 30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까?</p> <p>• 다음의 경우도 일한 것에 포함합니다.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도와준 경우</p>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없음 ① 주로 일하였음 ②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③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④ 일하지 않았음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 번으로 ② 찾아보았음 </td> <td>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달(10월)에 수입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 번으로 ② 찾아보았음 </td> </tr>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었음 </td> <td>만약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었음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없음 ① 주로 일하였음 ●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③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④ 일하지 않았음 	<p style="text-align: center;">18 경제활동상태</p> <p>지난 일주일(2010년 10월 24일 ~ 10월 30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까?</p> <p>• 다음의 경우도 일한 것에 포함합니다.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도와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없음 ① 주로 일하였음 ②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③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④ 일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 번으로 ② 찾아보았음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달(10월)에 수입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 번으로 ② 찾아보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었음 	만약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없음 ① 주로 일하였음 ●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③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④ 일하지 않았음 	<p style="text-align: center;">18 경제활동상태</p> <p>지난 일주일(2010년 10월 24일 ~ 10월 30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까?</p> <p>• 다음의 경우도 일한 것에 포함합니다.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도와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없음 ① 주로 일하였음 ② 가사, 학교(학원) 등 다른 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일하였음 ③ 일을 하여왔으나, 휴가 등으로 잠시 쉬고 있음 ④ 일하지 않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 번으로 ② 찾아보았음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난 달(10월)에 수입이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찾아보지 않았음 → 24 번으로 ② 찾아보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었음 	만약 지난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할 수 있었음 ② 가사, 학업, 질병 등으로 일할 수 없었음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1985년은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경제활동의 개념, 측정방법, 항목 수나 내용이 조사시점마다 변경되어 시계열 분석에 어려움이 있음 인구주택총조사: 참조기간(조사시점 이전 1주일)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시간: 조사시점 이전 1주일 ● 행정자료: 비공식 부분의 파악이 힘들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정보(취업, 실업, 비활동 인구)는 여타 인구학적 사회적 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동일 시점에 획득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조감할 수 있다. ● 이러한 통계는 통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통계조사는 표본추출 오차가 크고, 소지역 정보를 얻기 힘들고, 산업별로, 직업별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하기 힘들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인구 항목에 대하여 신뢰도가 큰 응답을 얻을 수 있다면, 주택 특성과도 횡단제표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한나라의 종합적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 									

▷ 종사상의 지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경제활동은 국민계정체제(SNA) 내의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고용상의 지위는 직업별, 산업별 정보와 함께 고용주,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종사자 등 일하는 형태 등 경제활동구조에 대한 개괄적이지만,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top;"> <p>19 종사상 지위</p> <p>수입이 있는 일에 어떠한 지위로 종사하였습니까?</p> <p><small>* '자유직업인'은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에 해당합니다.</small></p>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금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무급 가족 종사자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p>19 종사상 지위</p> <p>수입이 있는 일에 어떠한 지위로 종사하였습니까?</p> <p><small>* '자유직업인'은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에 해당합니다.</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금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무급 가족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p>19 종사상 지위</p> <p>수입이 있는 일에 어떠한 지위로 종사하였습니까?</p> <p><small>* '자유직업인'은 「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에 해당합니다.</smal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임금 근로자 ②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③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④ 무급 가족 종사자 			
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 항목(단, 1960, 1985년 제외), 전수항목(단, 1960년 전후, 1985년 조사제외항목) ● 시계열 분석이 어려움 - 1997년 말 IMF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로 고용 형태가 크게 변화됨 (비정규직(계약직, 임시직, 일용직등)증가) 			
	관련 자료	● 비공식 부문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개개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종사상 지위(사업주, 자영업자, 임금노동자, 무급가족노동자)에 대한 정보의 획득시점이 인구통계(성, 연령별) 사회적(사회활동, 교육) 항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는 시점과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적인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토대자료가 된다. ● 이와 유사한 통계는 통계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있겠지만, 통계조사는 표본추출 오차가 크고, 소지역 정보를 얻기 힘들고, 산업별로, 직업별로 상세한 통계를 작성하기 힘들다.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제활동인구 항목은 주택 특성과도 횡단제표를 할 수 있어서,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종합적 경제사회정책을 수립하는 토대자료가 될 수 있다. 			

▷ 산업·직업·현 직업 근무연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산업 및 직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체의 종류별로 취업자가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조사하여 국가와 지방의 산업·지역별 발전 계획 및 인력수급 계획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문항내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526 454 734 481">직장·사업체 이름</td> <td data-bbox="742 454 1157 481">20 산업</td> <td data-bbox="1165 454 1358 481">직장·사업체 이름</td> </tr> <tr> <td data-bbox="526 481 734 548">(주)통계식품 ○○공장</td> <td data-bbox="742 481 1157 548">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취급 상품명이나 제공 서비스 등 산업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td> <td data-bbox="1165 481 1358 548"></td> </tr> <tr> <td data-bbox="526 548 734 575">주된 사업 내용</td> <td data-bbox="742 548 1157 575"> 그 직장(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td> <td data-bbox="1165 548 1358 575">주된 사업 내용</td> </tr> <tr> <td data-bbox="526 575 734 642"> 목 · 어류와 낙농제품 가공 및 제조 </td> <td data-bbox="742 575 1157 642"></td> <td data-bbox="1165 575 1358 642"></td> </tr> <tr> <td data-bbox="526 665 734 714"> 근무 부서 생산부 직책(직업) 포장기 조작원 </td> <td data-bbox="742 665 1157 714">21 직</td> <td data-bbox="1165 665 1358 714"> 근무 부서 직책(직업) </td> </tr> <tr> <td data-bbox="526 714 734 804">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가공된 목 어류를 포장하는 기계조작 </td> <td data-bbox="742 714 1157 804"> 일하는 곳의 부서와 직책(또는 직업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 부서와 직책(또는 직업명)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 부서' 내에 일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td> <td data-bbox="1165 714 1358 804"> 하고 있는 일의 종류 </td> </tr> <tr> <td data-bbox="526 804 734 938">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⑧ 20년 이상 </td> <td data-bbox="742 804 1157 938">22 현 직업 근무 연수</td> <td data-bbox="1165 804 1358 938">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⑧ 20년 이상 </td> </tr> </table>	직장·사업체 이름	20 산업	직장·사업체 이름	(주)통계식품 ○○공장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취급 상품명이나 제공 서비스 등 산업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그 직장(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목 · 어류와 낙농제품 가공 및 제조			근무 부서 생산부 직책(직업) 포장기 조작원	21 직	근무 부서 직책(직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가공된 목 어류를 포장하는 기계조작	일하는 곳의 부서와 직책(또는 직업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 부서와 직책(또는 직업명)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 부서' 내에 일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하고 있는 일의 종류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⑧ 20년 이상	22 현 직업 근무 연수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⑧ 20년 이상	
직장·사업체 이름	20 산업	직장·사업체 이름																					
(주)통계식품 ○○공장	일을 한 직장(사업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사업체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취급 상품명이나 제공 서비스 등 산업 활동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그 직장(사업체)은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작성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주된 사업 내용																					
목 · 어류와 낙농제품 가공 및 제조																							
근무 부서 생산부 직책(직업) 포장기 조작원	21 직	근무 부서 직책(직업)																					
하고 있는 일의 종류 가공된 목 어류를 포장하는 기계조작	일하는 곳의 부서와 직책(또는 직업명)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 부서와 직책(또는 직업명)이 없는 경우에는 '근무 부서' 내에 일하고 있는 장소를 기입합니다.	하고 있는 일의 종류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⑧ 20년 이상	22 현 직업 근무 연수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2개월 미만 ③ 1년 ~ 3년 미만 ④ 3년 ~ 5년 미만 ⑤ 5년 ~ 10년 미만 ⑥ 10년 ~ 15년 미만 ⑦ 15년 ~ 20년 미만 ⑧ 20년 이상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 항목(단, 1960, 1985년 제외), 사생활과 관련 응답거부 또는 회피 경향 응답자가 가구원 개개인 사업체의 산업을 모르는 경우 있음 ● 새로운 직종의 탄생과 소멸로 정확한 직업/산업분류 곤란→시계열분석이 어려움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식 부문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주택총조사와 통계조사의 산업별, 직업별 정보는 노동력 변화의 추이를 추적하고, 신흥 산업과 직업의 프로필을 제공하며, 국가와 지방의 산업·지역별 발전 계획 및 인력수급 계획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한다. ● 인구통계 변수(성별, 연령, 혼인상태)에 따른 격차 또는 차별을 파악하고, 종사들을 유해화학물질이나 건강/안전위험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직업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이에 대한 대응정책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근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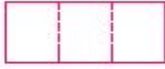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노동 장소 및 비공식분야의 고용을 파악하여 자영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노동 및 사회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 여성 활동의 측정수단으로 여성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기도 함. 				
문항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건물및방) ② 자기 집 ③ 남의 집 ④ 거리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야외 작업 현장 ⑥ 운송 수단 ⑦ 기타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text-align: center;"> <p>23 근로 장소</p> <p>주로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p> <p>• ② 자기 집,은 사업장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거리는 방문 판매 및 서비스, 점포 없는 노점상을 포함합니다.</p> </td> <td style="width: 33%; vertical-align: to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장 (건물및방) ② 자기 집 ③ 남의 집 ④ 거리 </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건물및방) ② 자기 집 ③ 남의 집 ④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야외 작업 현장 ⑥ 운송 수단 ⑦ 기타 	<p>23 근로 장소</p> <p>주로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p> <p>• ② 자기 집,은 사업장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거리는 방문 판매 및 서비스, 점포 없는 노점상을 포함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장 (건물및방) ② 자기 집 ③ 남의 집 ④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건물및방) ② 자기 집 ③ 남의 집 ④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야외 작업 현장 ⑥ 운송 수단 ⑦ 기타 	<p>23 근로 장소</p> <p>주로 일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p> <p>• ② 자기 집,은 사업장이 가정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거리는 방문 판매 및 서비스, 점포 없는 노점상을 포함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장 (건물및방) ② 자기 집 ③ 남의 집 ④ 거리 			
진수/표본항목		● 표본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4대 보험 및 납세자료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통계(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보험통계(한국고용정보원), ● 고용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교정시설수용자현황(법무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국민연금통계(국민연금관리공단) ● 국세통계(국세청), ● 병무통계(병무청), ● 산재보험적용및징수현황(노동부) ● 소년소녀가정현황보고(보건복지부) ● 지역의료이용통계(국민건강보험통계) ● 한국선원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 사업체근로실태조사(노동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노동부) ● 한국노동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기입. - 일하는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경우 가장 주된 직업을 기준 · 일하는 장소가 달라지는 경우 주된 활동 기준 				
	관련 자료	● 명확한 노동의 질을 측정하기가 힘들다.				
정책 연관성		● 근로 장소를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종사상 지위, 직업, 산업, 근무연수 등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면, 노동의 질에 대한 정책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노동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정책 자료를 획득하여, 여성의 고용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9. 주택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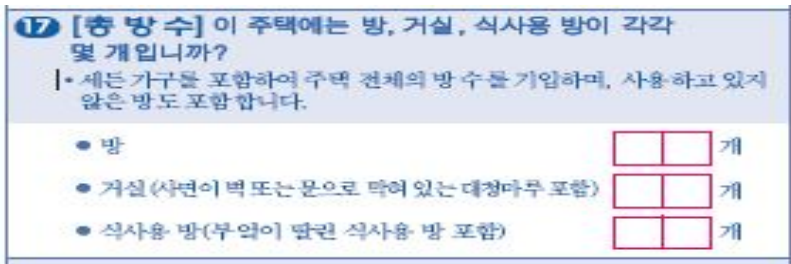
▷ 거처의 종류

구분	내용	
조사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조사항목은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에 대한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향후 주택 건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관심이다. 	
문항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5 [거처의 종류] 이 집은 어떤 종류입니까?</p> <p>•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경우 주거 부분이 간거나 더 넓으면 ① 단독주택 중 ③ 영업겸용 단독주택, 영업용 부분이 더 넓으면 ⑤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해당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독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 단독주택 ② 다가구 단독주택 ③ 영업겸용 단독주택 ② 아파트 → 작성을 마칩니다.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⑥ 오피스텔 ⑦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⑧ 기숙사 및 특수 사회시설 ⑨ 판잣집, 미넨하우스 ⑩ 기타 <input style="width: 50px;" type="text"/> <p style="text-align: right;">→ 작성을 마칩니다.</p> </div>	
전수/표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대장(용도)
	통계조사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변화에 따라 거처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개념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여 재정립 필요 ● 주거부정자(homeless)에 대한 조사 어려움 ● 주택에 대한 개념 모호하여 조사에 혼란 초래(2000), 주택이외의 거처 중 일부 거처(예 오피스텔)의 주택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영업용 건물내 주택이 표현상 애매하여 교회 등 비영리 건물 내 주택 등에 적용 곤란
	관련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자료, 특히 건축물대장은 인구주택총조사와 거처의 종류 불일치
정책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처의 종류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거처유형별 현황과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건설의 방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다. 	

▷ 주거용 연면적·대지면적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이 조사항목은 건물 및 대지 면적별로 주택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 주택의 종류 및 지역별로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문항내용		<p>43 주거용 연면적</p> <p>이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건물 연면적)은 몇 m²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에 이용하는 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m² ※1평은 3.3m²입니다. </p> <p>44 대지 면적(단독주택만 기입)</p> <p>이 주택의 대지 면적은 몇 m²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지 면적은 담장 안의 모든 면적을 포함하되, 영업에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  m² ※1평은 3.3m²입니다. </p>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건축물대장(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주거실태조사(국토해양부), ● 건축물통계(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실적통계(국토해양부), ● 가계조사(통계청)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용 연면적은 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을 기입. - 차고, 창고, 외양간이나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제외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은 분양면적에서 공유면적(계단, 엘리베이터 등)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입 ● 대지면적은 단독주택인 경우만 기입. - 주거용 부분만 포함하며, 영업에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 - 담장(울타리)내의 텃밭을 제외한 전 면적 포함 · 따라서 담장(울타리)내의 정원도 포함사회변화에 따라 거처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개념이 상이한 경우가 존재하여 재정립 필요
	관련 자료	● 행정자료, 주거용 연면적의 경우주거에 이용되는 부분만 파악 곤란
정책 연관성		● 거처의 종류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는 가구주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거처유형별 현황과 변동 추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건설의 방향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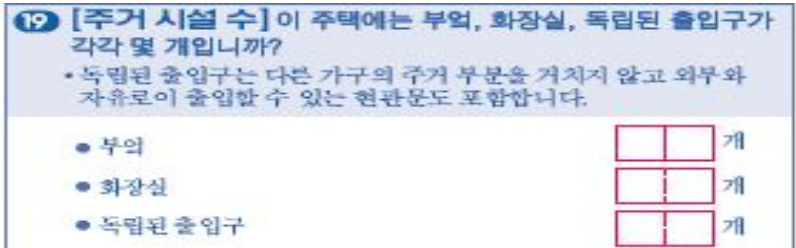
▷ 총방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이 조사항목은 방, 거실, 식당으로 나누어 조사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의 구조를 종류별로 파악하여 주택정책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내용		 <p>17 [총방수] 이 주택에는 방, 거실, 식사용 방이 각각 몇 개입니까? • 세든 가구를 포함하여 주택 전체의 방 수를 기입하며, 사용하고 있지 않은 방도 포함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 ● 거실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는 대청마루 포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 ● 식사용 방(부엌이 딸린 식사용 방 포함)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개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에 대한 정의가 국제기준과 달라 애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실, 식당을 우리나라 개념의 방으로 보는데 따른 이해 부족 - 부엌은 방에서 제외되는데 따른 혼란 ● 아파트 비중 및 1가구 1주택 점유비율이 증가
	관련 자료	● 일반적 의미의 방수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현황도'의 code화 필요
정책 연관성		● 우리나라 주택의 구조를 방, 거실, 식당 등 종류별로 파악하여, 지역별, 주택유형별, 연건평별로 정리하여 주택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건축연도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이 조사항목은 주택의 질이나 노후정도를 파악하고 재건축, 수리 등 주택건설 시장의 수요를 예측하는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문항내용		<p>18 [건축연도] 이 주택은 언제 지어졌습니까?</p> <p>• 중·개축 년적이 주택 총 년적의 절반 이상인 경우에는 중·개축 시기를 표시합니다.</p> <table border="0"> <tr> <td>① 2010년</td> <td>⑩ 1995 ~ 1999년</td> </tr> <tr> <td>② 2009년</td> <td>⑪ 1990 ~ 1994년</td> </tr> <tr> <td>③ 2008년</td> <td>⑫ 1980 ~ 1989년</td> </tr> <tr> <td>④ 2007년</td> <td>⑬ 1970 ~ 1979년</td> </tr> <tr> <td>⑤ 2006년</td> <td>⑭ 1960 ~ 1969년</td> </tr> <tr> <td>⑥ 2005년</td> <td>⑮ 1959년 이전</td> </tr> <tr> <td>⑦ 2000 ~ 2004년</td> <td></td> </tr> </table>	① 2010년	⑩ 1995 ~ 1999년	② 2009년	⑪ 1990 ~ 1994년	③ 2008년	⑫ 1980 ~ 1989년	④ 2007년	⑬ 1970 ~ 1979년	⑤ 2006년	⑭ 1960 ~ 1969년	⑥ 2005년	⑮ 1959년 이전	⑦ 2000 ~ 2004년	
① 2010년	⑩ 1995 ~ 1999년															
② 2009년	⑪ 1990 ~ 1994년															
③ 2008년	⑫ 1980 ~ 1989년															
④ 2007년	⑬ 1970 ~ 1979년															
⑤ 2006년	⑭ 1960 ~ 1969년															
⑥ 2005년	⑮ 1959년 이전															
⑦ 2000 ~ 2004년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 건축물대장(국토해양부)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 건축물통계(국토해양부), ● 주택건설실적(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시기가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는 응답이 있을 개연성이 있음														
	관련 자료															
정책 연관성		● 우리나라 주택을 유형별로, 연건평별로 구분하여 건축연도를 파악하여 주택의 노후정도 또는 내구성을 기준으로 재건축, 수리 등 주택건설 서비스의 수요를 예측하여, 정부가 주택건설 시장의 서비스 공급능력을 합리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 편의시설수

구 분		내 용						
조사목적		● 이 조사항목은 거주 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한 항목으로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소유개념의 주택수를 파악하는 단점을 보완하여 주택수급 예측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문항내용		 <p>19 [주거 시설 수] 이 주택에는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입구가 각각 몇 개입니까? • 독립된 출입구는 다른 가구의 주거 부분을 거치지 않고 외부와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도 포함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엌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table> 개 ● 화장실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table> 개 ● 독립된 출입구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tr><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d style="width: 20px; height: 20px;"></td></tr></table> 개 						
전수/표본항목		● 전수항목						
관련 자료	행정자료							
	통계조사	● 아파트주거환경통계(국토해양부)						
특이사항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자료							
정책 연관성		● 우리나라 주택을 유형별로, 연건평별로 구분하여 부엌, 화장실, 독립된 출구 등 편의시설의 개수별로 정리하여, 거주개념의 주택수를 산정하고, 이를 소유개념의 주택수와 대비하면서, 중장기적인 주택수급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자료를 제공하여, 주택건설시장의 서비스 공급여건을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이다.						

제3장 인구주택총조사 주택 관련 문항과 정책의 연계성

1. 종전의 결과표를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사례

국민의 전반적인 주거수준의 변화나 우리나라 주택재고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에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 이상의 자료가 없다. 이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방송이나 신문 등의 보도를 보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인용된다. 가령 1970년부터 2005년까지 35년간 우리나라의 주거생활에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1970년의 주택종류별 주택과 2005년의 주택종류별 주택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1970년에는 전체주택재고의 0.77%인 3만 3천호에 불과했던 아파트가 2005년 전체주택재고의 52.7%인 696만 3천호로 급등한 것을 보면 누구나 지난 35년간의 주거생활에서의 변화를 쉽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전국의 가구와 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는 그 자체가 당시의 사실을 보여주는 점에서 역사적 기록이 된다.

또한 현재는 지자체에 대한 평가가 행정안전부로 넘어갔지만 건교부가 지자체의 주거복지수준을 평가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년간은 주택총조사결과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예를 들어 지자체의 주거수준을 평가했던 15개 지표(주택보급률,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주택내 수세식화장실 보급비율, 주택내 입식부엌 보급비율, 주택내 목욕시설 보급비율, 주택의 평균면적, 1인당 평균 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1인당 주민복지시설면적, 1인당 자연친화공간면적, 전년대비 주택매매가격증가율, 전년대비 임대료증가율, 자가거주율, 가구당 공공임대주택 비율, 상하수도 비율)중 10개의 지표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산출될 수 있었다. 특히, 2005년 가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표의 수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주택정책의 새로운 지표로 강조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인구주택총조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2007년에 인구조사과가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 보고서에도 제시되어 있다.

2003년부터 수립하기 시작한 국토부의 주택종합계획 10개년 계획이나 매년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수립하고 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등의 광역자치단체의 주택종합계획 수립시에도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이 인구주택총조사결과표이다. 게다가 앞으로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가 활용될 것인 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가 없다면 주택정책이 집행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LH공사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택이 가구수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거나 주택의 질적 수준이 낮은 곳에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주택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07년 감사원이 국민임대주택이 지역별로 적절한 위치에 공급되었는지를 판단할 때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소나 학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를 토대로 한국의 주거상황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도 하고, 지역별 주거편차를 지적함으로써 지역균형성장 논리를 제시하는 등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책제안 또는 논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민간기업 역시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의 구입부터 주택건설, 주택매매 또는 임대가격을 결정할 때 지역별 주택사정을 파악하는 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다소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하지만 표본조사를 통해 제공되는 임대료 관련 결과표는 우리나라의 임차가구의 주거사정을 이해하는 것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서는 국민은행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으로 남의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이 44.4%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어떠한 수준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임차가구를 위한 적절한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정책 활용방식 해외사례

우리나라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표본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일본의 주택총조사 자료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주택조사 항목(거처의 종류, 주거용 연면적·대지면적, 총방수, 건축연도, 편의시설수, 보증금, 임대료)이 단순하고, 제표 구성시에도 거처유형, 점유형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제표를 구성하고 있어 매우 단순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주택의 각종 특성(건축연도, 주택의 구조특성, 자동화재감지설비,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기기 유무) 세대구성, 가족구성, 소득수준, 고령자를 별도의 주제로 삼아 제표를 구성함으로써 훨씬 많은 시사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주택총조사 자료는 주택이라는 구조체의 특성과 건축연도를 연계하여 보여줌으로써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시기 예측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사회에서 노인이 어떠한 주택에서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고령자의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만들게 한다. 또한 일본의 심각한 주택문제의 한 가지인 空家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자가와 차가를 구분하여 주택의 질적 상태, 설비상태, 또한 거주자의 소득수준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주택정책을 맞춤형으로 수립할 수 있게 한다.

영국의 조사표는 일본처럼 많은 제표를 연결하여 검토하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살펴보는 주택유형, 점유유형과 가구주 특성(성, 연령)만이 아니라 주택유형, 점유유형과 가구의 질병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주택유형과 최저층 거주와 장기 질병과 연령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인구주택총조사가 단순히 국민의 주거실태만을 FACT로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 지하와 옥상(옥탑)거주가구를 파악하는 점에서 어떤 가구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주거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거처의 유형, 가구주 연령, 가구주의 경제상태와 연관시켜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자력으로 주거를 개선할 수 없는 가구라면 이들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을 세워주는 것이 심각해진 양극화를 시정하는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국 인구주택총조사자료중 주거와 관련된 연령별 구분을 보면, 우리나라가 15세 미만, 그 이상 5세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는 반면, 영국의 경우는 24세 이하, 25세-34세, 35세-44세, 45세-54세, 55세이상-연금수급자, 74세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0세 구간이 5세 구간에 비해 더 적절함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거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점에서 우리도 20세

미만, 20세-29세, 30세-39세 등 10세 구간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다.

미국의 주택총조사 결과표는 인증별 주택점유와 거주유형, 주택구조, 주택의 물리적 특징, 난방과 설비, 주택소유 및 임차가구의 특징, 주택가격, 표본주택의 자가거주 비용, 임대료 총액, 모기지와 임대비용을 주, 대도시, 인구 10만 이상 도시별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차이는 자가주택 소유로 인한 비용, 임대료 등 주택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비용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미국이 주택가격이나 모기지 부담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것은 미국의 주택정책이 자가를 권장하는 것이며, 국가가 모기지에 대한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 관련 장기자금을 차입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국민주택기금의 용자를 받는 주택도 늘어나는 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에 자가가구의 주거비 부담과 관련된 항목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015년 조사에는 해당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진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정책부서 이용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제공방안

2007년에 인구조사과가 한국조사연구학회와 공동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면서 2005년 결과표를 많이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까지의 결과표로는 쉽게 계산하기 힘들었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수를 일부 파악할 수 있는 결과표(거처의 종류 및 주거시설 형태별 가구, 거처의 종류, 가구의 규모 및 사용방수별 가구, 거처의 종류 및 사용방수, 주거면적별 가구, 점유형태, 가구원수 및 사용방수별 가구)가 만들어졌다. 덕분에 가구의 전용 입식부엌 사용여부, 전용 수세식 화장실 사용여부, 전용 온수시설 사용여부를 알 수 있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중 시설기준 미달가구수는 계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구원수별 사용방수, 가구의 거주면적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는 가구원수나 가구원의 성별, 연령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침실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에서 통계청에서 이를 생산해줄 것을 건의한다.

참고로 최저주거기준이란 건설교통부 고지로 2000년 10월 발표된 바 있으나, 당시는 법적 근거는 없었다. 2003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은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으며, 2004년 6월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4-173호(2004.6.15)로 발표된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 시설기준, 구조·성능·환경기준으로 구성된다. 구조·성능·환경기준은 측정 자체가 어려운 점에서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약간 형식적인 것으로 정부가 정책지표로 삼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은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이다. 인구주택총조사결과로 면적기준, 시설기준 미달가구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생산한다면 국토부와 지자체의 주택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면적기준>

(단위: m²)

구분	소요침실유형	주요 내부공간 면적			총주거 면적기준
		침실	부엌	기타면적 ^{주)}	
1인가구	1인침실	5.76	2.40	4.12	12.28
2인가구	주침실	10.80	3.00	6.49	20.29
3인가구	주침실	10.80	3.00	6.49	20.29
	주침실 + 1인침실	16.56	3.00	9.20	28.76
4인가구	주침실 + 1인침실	16.56	3.00	9.20	28.76
	주침실 + 2인침실	18.90	3.00	10.31	32.21
	주침실 + (1인침실×2)	22.32	3.00	11.92	37.24
5인가구	주침실 + 2인침실	18.90	3.48	10.53	32.91
	주침실 + (1인침실×2)	22.32	3.48	12.14	37.94
	주침실 + 2인침실 + 1인침실	24.66	3.48	13.24	41.38
6인가구	주침실 + 2인침실 + 1인침실	24.66	3.48	13.24	41.38
	주침실 + (2인침실×2)	27.00	3.48	14.28	44.76
	주침실 + 2인침실 + (1인침실×2)	30.42	3.48	15.10	49.00
7인이상	주침실 + (2인침실×2)	27.00	3.48	14.28	44.76
	주침실 + 2인침실 + (1인침실×2)	30.42	3.48	15.10	49.00
	주침실 + (2인침실×2) + 1인침실	32.76	3.48	15.63	51.87

주) 화장실, 수납공간, 현관 등을 포함하며, 침실+부엌면적에 따라 산정

- 시설기준은 침실·부엌·화장실등 주거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으로 침실은 기본적으로 부부 침실을 확보하고, 만 5세 초과자녀의 침실은 부부침실과 분리되어야 하며, 만 8세 이상 이성 자녀의 침실과 노부모의 침실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는 동시에,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확보, 목욕시설을 갖추어야 함.

구 분		최저기준
침실 기준	부부침실	· 확보
	부부/자녀간 침실분리	· 만5세이하 자녀1인 동실 사용(만 5세 초과 자녀는 부부와 침실 분리)
	이성형제간 침실분리	· 만 8세이상 성별 분리
	동성형제간 침실분리	· 동성자녀는 1실2인 허용
	노부모등과의 침실분리	· 부부와 노부모는 침실분리
주거 시설 기준	식당/부엌	· 전용 입식부엌 확보
	화장실	· 전용 수세식 화장실 확보
	목욕탕	· 전용세면장 혹은 화장실등의 샤워시설 확보

- 구조·성능·환경 기준으로는 영구 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방습에 양호한 재질을 사용하며, 적절한 방음·환기·채광·냉방·난방 설비를 갖추는 한편, 소음·진동·악취·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급격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고령자가 안전한 주택에 거주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제공도 필요하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5년 표본조사에서는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고령기에 대응한 주거시설이나 설비차 갖추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여 고령자를 위한 주거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령기에 주택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과 고령자 간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V.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1. 서론

1) 연구목적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 높인다. 특히, 초·중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이용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나타나는 미래의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태도형성의 기초자료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한다. 그러자면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자료를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타 분야의 교육자료 개발과 활용사례 조사 및 시사점 파악하여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이용과 학교교육에서 효과적으로 교육자료로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얻는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인구통계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대상 교육(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앞으로 교사양성과 연수를 위한 기본방향을 구상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범위

가. 학교급별 교과서(사회)의 인구주택통계관련 내용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주로 이용하는 교육과정은 사회과이며, 초등학교의 사회과 교과서는 주로 국정이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용 교과서는 검인정으로 저자와 출판사가 다른 다양한 교과서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과 연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안과 자료를 제공한다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교육적 이용을 극대화할 것이다. 이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교과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⁸⁾ 사회교과서를 대상으로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검인정 교과서로 동일과목이라도 저자와 출판사에 따라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교과서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과목은 총 17과목이지만 초·중·고별로 각각 8책, 31책, 34책으로 총 73책이다. 현행 초·중등별 사회과 교과서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초등학교 : 8종(3~6학년용 사회) 8책(신 교과서 4책 포함)⁹⁾
- (2) 중학교 : 3종(1~3학년용 사회) 31책(신 교과서 15책 포함)
- (3) 고등학교 : 6종(사회, 경제, 정치, 사회문화, 한국지리, 경제지리) 34책

나. 학교현장 보급 활성화 전략

- 8) 초등학교의 1~2학년 교과서는 전 분야의 통합교육과정에 따라 구성되어 있고, 교과목별로 구분되는 것은 3학년부터이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국정이므로 학년별로 한 종류이고, 1학기과 2학기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 9)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발간된 교과서와 미래형 교육과정(2009)에 따라 개발된 신 교과서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에 수록되어 있다.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담당교사가 활용하기 쉽고, 수업에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그래프나 통계표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사용빈도를 높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교사의 PC(또는 노트북)에 자료집(e-북 형태)을 수록해 놓고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자료를 개발하고, 축적하여 교사들이 활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나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많은 교사들이 항상 접하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교사들이 인구통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반영과 현장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구상한다.

다. 타 분야 보급사례조사

각 분야별로 학생들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제교육, 통일교육, 환경교육, 보건교육 등 그 종류가 무수히 많다. 이들 특수분야의 교육자료와 현장에서 활용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자료 보급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가. 자료개발

각급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미래형 교육과정(2009)에 따라 개별 교과서의 개발과 적용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10년 현재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신 교과서(초등 3-4학년용 및 중 1학년용)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단, 2009년부터 새로이 적용하고 있는 초등 1-2학년용 교과서는 통합교과이고, 통계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단계이므로 제외한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에 전 교과서를 동시에 교체하므로 현행 교과서 중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활용이 많은 '사회문화' 교과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나. 학교현장 보급 활성화

학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하여 사회교과서의 내용에 적합한 자료를 개발하면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수업안 등)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개발한 수업안과 수업을 위한 교재는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교사들이 바로 수업에 활용.
- (2) 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각급학교의 행정체계에 따른 협조와 인터넷 사이트와 연수기관을 통한 홍보
- (3) 주 교육자료 제공 각종 사이트(예, 각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교육정보자료실, 에듀넷

등)의 파악, 자료수록 및 홍보

(4) 통계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배너나 탭으로 link하여 활용

교사들의 통계관련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교사양성기관(교육대, 사범대 중심)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예비교사교육방향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연수원의 현장교사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개별 교사의 인구통계 인식향상을 위한 방안은 구상한다.

다. 타 분야 교육자료개발 및 보급 사례조사

각 특성별 다양한 분야의 교육자료가 현장 학교에 보급되고 있다. 이 교육자료들이 얼마나 현장에 보급되었으며, 학교급별 현장학교에서 이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이 사례조사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보급·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1) 경제(금융), 환경, 저출산·고령화, 통일 등의 분야에 대한 교육자료개발 및 학교현장 적용사례 조사(개발 주관기관 및 학교현장조사 병행)

2) 위 분야 교육자료 활용실태를 담당교사면접을 통하여 파악하고, 시사점을 제시

2. 초·중·고 사회과 교과서 분석

1) 인구주택총조사자료 활용 현황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과서 중 이번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초등학교 3,4학년 사회(신교과서)와, 중1 사회(신교과서)에서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2012년 개정 예정인 '사회문화'도 현재 시점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내용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가. 초등사회(3학년 및 4학년 교과서)

구분	학기	단원명(내용)
초등3	1학기	1단원 '고장의 모습'에서 고장 사람들의 직업을 통계표와 도표로 나타내는 부분, 3단원 '고장의 생활과 변화'에서 여가생활의 의미를 알고 옛날과 오늘날의 여가생활을 비교하는 부분이 제시됨
	2학기	1단원 '고장 생활의 중심지'에서 지역 내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과 관련한 내용이 제시되어 중심지 기능에 대한 개념이 서술
초등4	1학기	1단원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과 생활모습'에서 소단원 3의 '우리 지역의 생활 모습'에 가상 지역의 행정 구역 별 인구가 제시되어 통계 지도를 그리도록 설계한 내용이 제시됨
	2학기	2단원 '여러지역의 생활'에서 농촌과 도시, 도시로의 인구 이동, 도시와 농촌의 문제에 대한 소단원이 구성됨. 또한 3단원에서 우리사회의 인구문제에 대한 내용이 제시됨

나. 중1사회 교과서

'중학교 1학년 사회'에서는 대단원 V. 인구변화와 인구문제, VI.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에서 주로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된 자료가 활용되었다. 교과서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으로 V. 인구변화와 인구문제는 '인구분포'에서 시대별, 지역별(행정구역) 인구밀도가 지도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인구 문제와 대책'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시대별 인구 피라미드나 출산율, 노인인구 등에 대한 내용이 시기별로 그래프나

표의 형태로 제시되어 있다. VI. 도시발달과 도시 문제에서는 어떤 특정 도시나 농촌의 인구 구성을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로 제시하여 활용한 경우가 많았고, 수도권 내에서 각 도시별 인구 규모의 자료를 활용한 경우도 두드러졌다.

구분	출판사	단원명(내용)
중 1 사회	천재교육 (노경주 외)	<p>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p> <p>-4단원에서 저출산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합계출산율 변화가 5년단위의 그래프로 제시됨</p> <p>VI.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p> <p>-1단원에서 도시와 촌락의 인구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와 전남 신안의 10세 별 인구 구성비율이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음</p>
	천재교육 (박병익 외)	<p>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p> <p>-5단원 ‘우리나라 인구문제’에서 우리나라 1970년과 2000년의 인구 피라미드 가 제시되어 있고, 농촌과 도시의 인구 구성 비교하기 위해 전국 평균, 농촌(임실), 도시(과천)의 인구 피라미드(구성비)가 제시되어 있음.</p> <p>VI.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p> <p>-2단원 ‘수도권의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도시화율에 대한 5년 단위 별 자료(1960년부터 2005년까지)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음</p> <p>-2단원 ‘수도권의 도시화 과정’에서 1975년과 2005년의 도시 별 인구 규모가 표시된 통계지도가 제시됨</p> <p>-2단원 ‘수도권의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의 위성도시들의 인구 규모(2005년)가 지도에 표시되어 있음</p>
	천재교육 (류재명 외)	<p>VI.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p> <p>- 수도권 성장과 관련하여 1960년부터 2005년까지의 5년 단위 전국에서 수도권 전체, 인천경기, 서울의 인구 점유율이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음.</p>
	교학사 (김주환 외)	<p>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p> <p>-1단원 ‘인구 분포’에서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설명하는 자료로 1940년과 2005년의 지역 별 인구 밀도 지도(단계구분도)가 제시됨.</p> <p>-2단원 ‘인구 이동’에서는 2005년 도시와 농촌의 인구 피라미드 자료가 비교되어 제시되어 있음.</p> <p>-3단원 ‘인구 문제’에서 연도별 우리나라 성비가 1996년부터 그래프로 제시됨</p> <p>VI.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p> <p>-3단원 ‘도시 발달과 도시 내부 지역 분화’에서 2005년 우리나라</p>

	주요 도시의 인구 규모가 지도로 제시됨.
대한교과서 (최병모 외)	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1단원 '인구 분포'에서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2005년 지역 별 인구 밀도가 지도로 제시되어 있음. -3단원 '인구문제'에서 저출산 실태를 설명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합계 출산율의 변화 자료가 2년 단위로 그래프로 제시됨 -3단원 '인구문제'에서 지역별 노인 인구 비율(2005년)이 지도로 표시되어 있음
법문사	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1단원 '세계의 인구분포'에서 우리나라 연도별 인구밀도 지도가 제시되어 있음. -3단원 '인구문제'에서 노인 인구 비율에 대한 연도별 자료가 제시되어 있음. VI.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 -2단원 '도시발달과 도시내부구조'에서 297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전국에서 수도권, 경기도, 서울, 인천의 인구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그래프로 제시됨
교학사 (김종욱 외)	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1단원 '세계의 인구분포'에서 1940년과 2005년의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 밀도가 지도로 비교 제시되어 있음. -3단원 '여러 가지 인구 문제'에서 우리나라 1960년과 2005년의 인구피라미드가 제시되어 있음. VI.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 -1단원 '도시와 도시의 성장'에서 1990년과 2005년의 수도권 각 도시의 인구 규모가 지도(도형표현도)로 표현되어 있음.
지학사 (이진석 외)	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2단원 '인구 이동'에서 이촌향도를 설명하기 위해 198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안산시와 봉화군의 인구 수 자료가 그래프로 제시됨 -3단원 '인구 문제'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설명하기 위해 197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노인 인구 수와 구성 비율 자료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고,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이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음. -대단원 마무리 수행평가 문제에서 1960년과 2005년의 5세단위 인구 피라미드가 제시되어 각 년도에서의 인구문제를 유추하도록

	<p>하고 있음.</p> <p>VI.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p> <p>-1단원 '도시와 도시의 성장'에서 1960년, 1980년, 2005년의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분포 지도(도형표현도)가 제시되어 있고, 1970년부터 5년 단위로 2005년까지 전국과 수도권, 서울을 인구수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음.</p>
더텍스트 (박승규 외)	<p>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p> <p>-2단원 '인구이동'에서 1960년과 2005년의 우리나라 지역별 인구밀도가 지도(단계구분도)로 표시되어 있음.</p>
금성출판사 (서태열 외)	<p>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p> <p>-1단원 '인구 문제'에서 2000년의 인구피라미드가 제시됨.</p>
비유와 상징 (최성길 외)	<p>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p> <p>-1단원 '인구 문제'에서 도시와 농촌과의 격차를 설명하기 위해 1980년, 1990년, 2005년의 도별 인구 규모가 지도상에 제시되어 있음.</p> <p>-3단원 '인구 문제와 대책'에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관련하여 1960년, 2007년의 인구피라미드가 제시되어 있고, 1970년부터 5년 단위로 출산율과 노인 인구 비율의 변화가 그래프로 제시됨.</p>
법문사 (기세훈 외)	<p>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p> <p>-1단원 '인구 분포'에서 1960년과 2005년의 주요행정구역별 인구밀도가 표시된 지도가 제시됨.</p>
삼화출판사 (최병두 외)	<p>VI. 도시 발달과 도시문제</p> <p>-2단원 '도시화의 진행 과정'에서 1995년과 2005년의 수도권 각 도시의 인구 규모를 비교한 내용이 지도로 제시됨.</p>
새롬교육 (기근도 외)	<p>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p> <p>- 4단원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에서 우리나라 인구문제 중 출생 성비 등의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직접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지는 않았음.</p>

다. 사회문화 교과서

고등학교 선택과목 중 하나인 사회문화는 주로 Ⅲ.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에서 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 2단원 ‘농촌과 도시 사회’에서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활용된 경우가 많았다. ‘가족 생활’에서는 가족 구성 형태의 변화를 주로 이용하였고, 가구 당 가구원 수도 대부분 활용되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하여 노인인구 구성비, 노인 인구 수, 노령화지수, 노인부양비 등의 자료가 표나 그래프의 형태로 주로 제시되었다. ‘농촌과 도시 사회’에서는 주로 전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 구성비의 자료가 활용된 경우가 많았고 특정 도시와 농촌을 샘플로 인구피라미드를 제시하여 시기별, 연령대 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에서는 주로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관련한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의 자료나 저출산, 노령화와 관련된 연령대별 인구 구성비의 변화나 노령화 지수 등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구분	출판사	단원명(내용)
사회문화	지학사	<p>Ⅲ.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p>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에서 우리나라 가구 구성 형태의 변화 자료(1980년과 2000년 비교)가 원그래프(구성비율)로 제시됨</p>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에서 핵가족화로 인한 문제 중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노인 인구 수를 5년단위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고 해당 년도의 노인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함.</p> <p>-2단원 ‘농촌과 도시 사회의 분석’에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농촌과 도시의 인구수가 10년단위로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고, 도시 지역 인구 비율(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프로 제시됨</p> <p>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p> <p>-1단원 ‘현대 사회의 특징’에서 정보 사회의 도래를 설명하는 자료로 1960년대부터 5년단위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 변화 그래프가 제시됨</p> <p>-2단원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를 설명하면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로 연령별 인구 구성 변화 추이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고, 자녀 순위별 출생성비(1980년부터 1999년까지 5년단위), 1990년과 1995년, 2000년의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변동에 대한 자료가 그래프로 제시됨</p>
	중앙교육진흥연구소	<p>Ⅲ. 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p>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에서 1970년부터 5년</p>

	(최현섭 외)	<p>단위로 2000년까지 우리나라 가구 구성 형태의 변화자료(총 가구수와 1세대~4세대가구의 구성비) 제시됨</p>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중 탐구활동에서 1970년부터 5년단위로 2000년까지 이혼 건수와 조 이혼율에 대한 그래프가 제시됨</p>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중 탐구활동에서 노인 문제와 대책과 관련하여 196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단위로 유년인구, 생산연령인구, 노년인구,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에 대한 자료가 표로 제시됨</p> <p>-2단원 ‘농촌과 도시 사회의 분석’에서 1960년부터 10년 단위로 2000년까지 수도권인구 구성비, 시부의 인구 구성비, 군부의 인구 구성비가 그래프로 제시됨</p> <p>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p> <p>-1단원 ‘현대사회의 특징’에서 정보 사회 발달과 관련된 설명으로 산업별 취업자 구성 변화 자료 제시됨</p> <p>-2단원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 발생과 관련한 설명에서 1960년과 1990년, 2020년(예상값)의 인구 피라미드가 제시됨.</p>
	대한교과서	<p>Ⅲ.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p>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에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거로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가 1965년부터 2000년까지가 5년 단위로 제시됨</p> <p>-1인 가구의 증가의 근거로 2000년 세대별(1세대가구~3세대가구)가구 구성비 자료가 그래프로 제시</p> <p>-2단원 ‘농촌과 도시 사회의 분석’에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도시인구와 농어촌인구의 구성비가 10년단위 그래프로 제시됨</p> <p>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p> <p>-1단원 ‘현대사회의 특징’에서 정보 사회 발달과 관련된 설명으로 1970년부터 2000년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 변화 자료가 5년단위의 그래프로 제시됨</p> <p>-2단원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에서 우리나라 인구 문제에 대한 설명 중 ‘여자 짝 기근 현상’이라는 내용으로 성별 인구 변화 그래프 제시되어 있음.</p>
	금성출판사	Ⅲ.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

	(김태헌 외)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에서 가족 형태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1960년과 2000년의 가족형태(1세대가구~3세대이상)비율이 그래프로 비교 제시됨</p> <p>-1단원 탐구활동 자료로 출산 수준(합계출산율)의 변화(197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단위)를 그래프로 제시함. 또한 1960년부터 2000년까지 연령대별(유소년, 청장년, 노년)인구 구성비가 그래프로 제시되어 있고,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도 사용됨</p> <p>-2단원 ‘농촌과 도시 사회의 분석’에서 농촌과 도시의 모습을 비교하는 자료로 2000년의 경북 의성군과 경기안산시의 인구 피라미드가 비교되어 제시. 또 2000년 전국, 도시(동부), 농촌(읍면부)의 가구 형태별 구성비 자료가 표로 제시됨.</p>
	법문사 (도종수 외)	<p>Ⅲ.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p>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에서 가족구성원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단독세대, 1세대가구, 2세대 가구의 구성비율이 1965년부터 1995년까지 5년단위로 제시됨</p> <p>-사회변화를 설명하는 자료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 취업자 수가 그래프로 제시됨</p> <p>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p> <p>-2단원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에서 사회문제 발생에서 1980년부터 2000년까지 5년단위로 노년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제시되어 있고, 1970년부터 1995년까지 가족의 형태별 분포가 제시됨</p>
	교학사 (전숙자 외)	<p>Ⅲ.공동체 생활과 지역 사회</p> <p>-1단원 “가족 생활과 친족 관계의 이해’에서 우리나라 가족 생활의 변화 자료로 1975년부터 2000년까지 5년단위로 핵가족 비율, 1인 가구 비율, 평균 가족원 수가 표로 제시됨. 또 가족의 변화와 노인 문제에 대한 자료로 2000년의 전국, 도시, 농촌에서 독거 노인의 비율이 표로 제시됨.</p> <p>-2단원 ‘농촌과 도시 사회’에서 1980년, 1990년,2000년의 농촌 인구 비율, 농촌 연령대별 성비, 농촌에서 1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 등의 자료가 제시됨</p>

2) 현행 교과서에 추가 활용이 가능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구분	단원명(내용)
사 회 문 화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 2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서 자료수집 방법 중 질문지법을 설명할 때 대표적 설문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이로써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개념도 이해하기 용이함. V.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 2단원 ‘현대 사회 문제와 대책’에서 노령화와 성비 불균형에 대한 보완으로 출산율과 여성 취업률, 연령별 혼인 상태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제시하여 사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기존에 각 단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의 가공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
중 1 사 회	V.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1단원 ‘인구분포’에서 지역별 인구 규모, 인구 밀도 등의 자료를 표, 그래프, 통계지도를 통한 시대별 자료 제시가 필요함. -2단원 ‘인구 이동’에서 년도별 인구 이동 자료의 활용이 용이함 -3단원 ‘인구 문제’에서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와 관련된 년도별 자료 활용이 용이함 VI.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2단원 ‘도시 발달과 내부구조’에서 년도 별 수도권 인구 규모의 변화나 인구 밀도 변화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고 내부 구조에서 도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주야간 인구 밀도 자료 제시가 용이함

3)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이용한 수업자료개발

학교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교육내용과 교육자료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제된 교과서를 중심으로 결정된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담당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므로 교과서의 내용과 교사의 관심 또는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에 최대한 많은 유용한 자료를 삽입하는 것이고, 담당 교사가 교과서 내용에 따라 수업을 진행하는데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수업에 유익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교육현장에서 총조사자료의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것은 이러한 편의를 각 담당교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010년도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전면 개편 중에 있다. 신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을 보면, 2009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용 신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3~4학년용 교과서와 중학교 1학년용 신교과서를 현장에 보급하였다. 이후 단계적으로 전 교과서를 현장에 보급예정인데, 내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용, 중학교 2학년용, 고등학교 1학년용에서 신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며, 2012년도에는 고등학교 선택교과 전 교과서를 바꾸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교재개발에서는 첫째 총조사자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과인 “사회”를 선택하고, 둘째 새로 개편된 교과서(초등 3~4학년용 및 중학교 1학년용)를 중심으로 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문화”교과서에서 인구·사회통계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구 교과서가 2011학년도까지 사용하더라도 교과서의 내용에 활용할 총조사자료를 이용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개발한 교육자료(“교과서 내용에 따라 개발한 인구주택총조사자료 활용 수업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별책으로 편제(한글 파일)하여 개별 교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 (1) 초등학교 3학년 및 4학년 “사회”교과서
- (2)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 (3) 고등학교 “사회문화”교과서

별책: 교과서 내용에 따라 개발된 인구주택총조사자료 활용 수업자료

3. 타분야 교육자료 보급사례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현황

1) 타분야 교육자료 보급사례

가. 교재의 제작과 활용(초등학교)

(1) 독도 올바르게 알기(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 경상북도 -



'독도 올바르게 알기' 책자는 2006년 10월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경상북도에에서 발간하였다.

책자의 1·2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부에서는 독도의 지리적 위치·크기·행정구역 등 일반현황과 기후·지형·자연생태와 같은 자연환경에 대해 소개한다. 이러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현재 독도에 거주하고 있는 독도 주민 김성도씨 부부의 생활 모습과 생활시설 사진도 함께 실어 경상북도가 행정적으로 독도를 직접 관할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제2부에서는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살펴본다. 독도에 대한 한·일간의 주장과 근거를 중심으로 먼저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역사적 사실을 문헌과 고지도 등의 사료를 근거로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이 독도를 그들의 땅이라고 우기는데 대하여 일본 측의 오류를 우리 측 학자뿐만 아니라, 일본 측 학자들이 지적한 내용도 함께 실어 우리 국민들이 일본 측 주장의 허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사점>

① 20분짜리 CD 영상물 자료를 함께 제작하여 배부하였다. 이 영상물은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수업 보조 자료로서의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업 시간에 시청할 수 있는 짧은 영상물은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비교적 쉽게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다.

② 한국의 입장에서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각각의 근거에 대해 일본의 주장을 함께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의 오류를 다시 자료에 근거해 반박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쟁점을 둘러싼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한국의 문헌과 고지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고문헌 기록과 고지도를 근거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백히 하는데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설명에 대한 근거자료로써 표나 그래프, 통계자료를 충분히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④ 사이버 독도, 독도박물관, 사이버독도역사관, KORDI 독도종합정보시스템, KMI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 홈페이지를 소개함으로써 주제별로 더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일반국민, 교육기관, 독도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으로 만든 책자이므로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수준별(학교급별)로 교재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국어 읽기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보충학습을 위한 교재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개발하였고, 사단법인 교육진흥연구회에서 출판·보급하였다. 총 4권이며, 각 책은 주제별로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시사점>

① 학습원리 → 적용 → 읽기 1 → 낱말학습 → 이해학습 → 쓰기 학습 → 읽기 2 → 낱말학습 → 이해학습 → 쓰기 학습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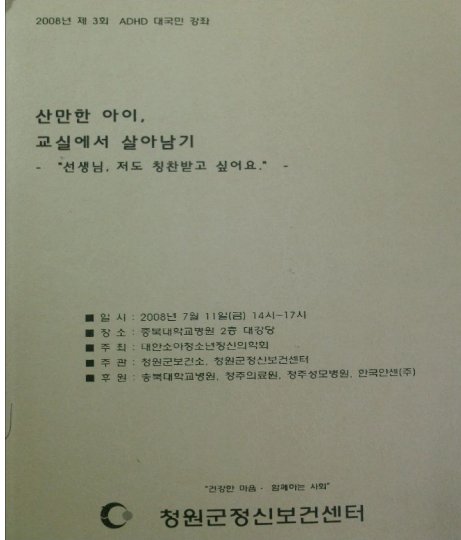
이와 같이 먼저 원리에 대해 기본 이해를 하고, 이 원리를 생각하며 읽기 자료를 읽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각 단계를 끝마칠 때마다 '공부할 때 나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공부할 때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내가 공부한 것을 보고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자기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학습에 참여하는 학생 자신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하고 이는 다음 단계의 학습에 긍정적인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른 교재에서도 활용할만하다.

③ 읽기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맞는 삽화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재를 접함에 있어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적게 느낄 것 같다. 저학년 교재일수록 내용에 맞는 삽화를 적절하게 넣는 것은 교재가 주는 딱딱함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3) 산만한 아이, 교실에서 살아남기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청원군정신보건센터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청원군정신보건센터는 "산만한 아이, 교실에서 살아남기"라는 주제로 산만한 아동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강좌를 기획하였다.

이 자료는 2008년 제3회 ADHD 대국민 강좌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료집의 내용은 학교에서의 ADHD 증상·문제와 선생님의 역할, 아이의 행동문제 다루기, ADHD와 관련된 학습문제 3가지 주제를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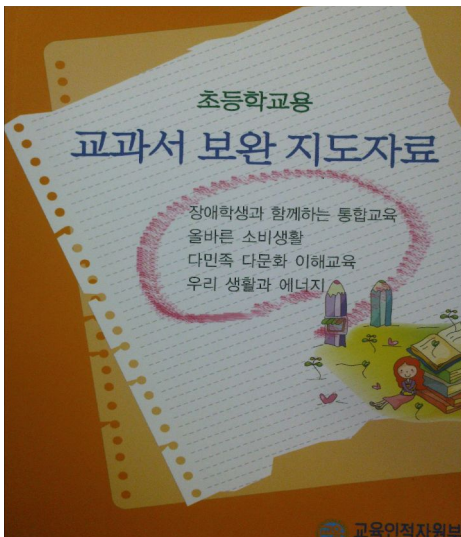
<시사점>

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형식으로 제작되어 생략된 내용이 많고 핵심 내용만 부분적으로 기재되어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에서 교재로써 활용되기에 어려움이 있다.

② ADHD 아동에 대해 의학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고 있다. 의학전문용어와 개념이 많이 사용된다.

(4)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가·사회의 변화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여 지도하고, 시사 교육에 도움을 주고자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발간한 교육과정자료이다.

초등학교용과 중·고등학교용으로 개발되었으며 법원 행정처, 행정자치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국토지리정보원, 환경부, 산업자원부, 근로복지공단의 협조를 얻어 제작되었다. 관련부처 및 전문가의 자료 제공으로 내용이 정확하고 풍부할 뿐만 아니라, Q&A, 퍼즐, 활동보고서 등을 수록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 교사들이 수업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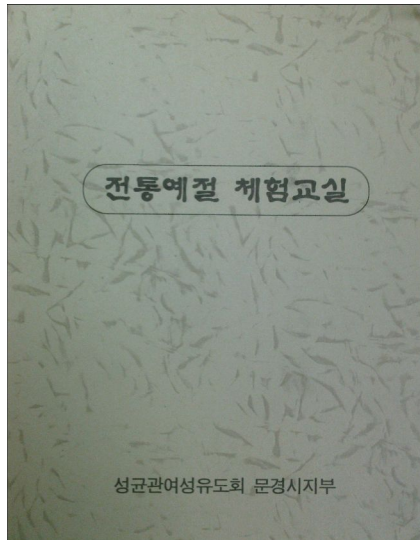
① 각 주제별로 초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교과 지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교과 수업시간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각 주제들이 가르쳐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교수-학습 과정안 예시와 활동지를 제공하였다.

② 주제와 관련하여 교사가 학생 지도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제시한다.

③ 주제와 관련한 학습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홈페이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④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함께 제시하였다.

(5) 전통예절 체험교실(성균관여성유도회)



사단법인 성균관여성유도회 문경시지부에서 전통예절의 계승·보전 및 예절 확산 운동을 위해 일회적으로 제작한 자료집이다. 각급 학교, 연수기관 사회교육, 평생교육기관, 향교 등에서 예절교육을 실시 할 때 교재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다.

바르게 절하는 법, 듣고 말하는 예절,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예절, 화목한 가정을 위해 지켜야 할 예절, 친척간의 예절, 가정의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칫하면 어려울 수 있는 예절(평상시, 흥사시 손잡는 법, 남녀의 절하는 순서와 방법, 존수와 친척관계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6) 성폭력 없는 즐거운 세상

<사단법인한국부인회>



성폭력 없는 즐거운 세상은 초등학교용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이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청원군 지회에서 주최한 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에서 김명숙 강사가 제작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의 개념, 성폭력의 종류 및 유형, 성폭력 사례, 성폭력 관련한 오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모와 아이가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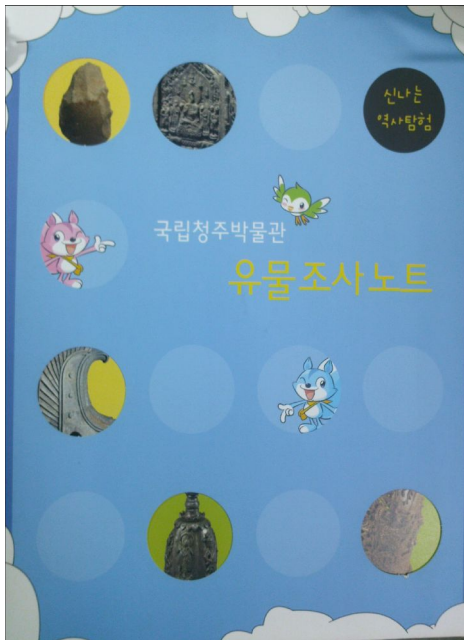
<시사점>

① 15page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자료이므로 내용이 너무 간략하다는 단점이 있다.

② 대처법 지침을 제시하므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7) 국립청주박물관 유물조사노트

- 국립청주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초등학생을 위해 일회적으로 제작한 활동지이다. 박물관을 관람할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전시된 유물을 눈으로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이 박물관 탐험가가 되어 박물관을 '탐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박물관을 방문하기 전에 박물관 탐험 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박물관을 관람하면서는 유물의 간략한 정보 기록하기, 유물 그려보기, 느낌 적어보기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박물관 관람 예절 등 박물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였다.

<시사점>

① 박물관은 초등학생들에게 재미없는 곳일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 탐험 일지'나 '유물조사 기록장'과 같은 활동지는 학생들이 유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초등학생용 교재는 '그림 그리기'나 '스탬프 찍기', '자료 모아서 붙이기'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더해줌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교재의 제작과 활용(중· 고등학교)

(1) Click, 경제교육

- KDI(한국개발연구원) -

중· 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경제 학습 및 수업을 위한 경제 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매달 발간하는 정기 간행물이다.

[click 경제교육] 지는 지식마당, 시사마당, 학습마당, 수업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주제를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학생들에게 어려운 시사용어나 경제개념, 통계지수를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교육현장에서의 효과적인 수업 사례를 제시하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사점>

① KDI 홈페이지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다. 홈페이지에서 [click



경제교육] 지를 e-book 형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중
고등학교 사회·경제 학습자료, 논술지도자료, 사설칼
럼 등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② 홈페이지 '경제 질문있어요' 방에 질문을 올리면
교사 혹은 관리자가 하루 이내에 답변을 해주고 있다.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을 [click 경제교육] 지학습 마당에 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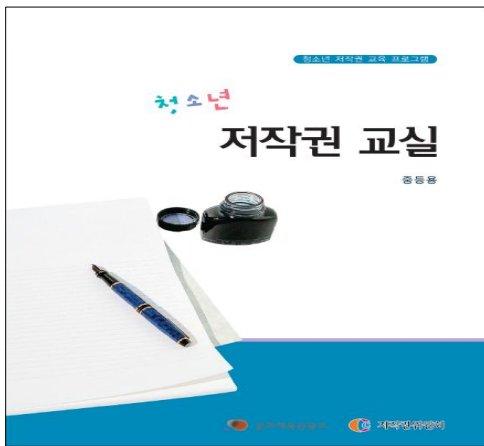
▶ 홈페이지와 [click 경제교육] 지의 연계 활용이
잘 되고 있다.

③ [click 경제교육] 지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문제
를 연재하고 꼼꼼하게 해석을 덧붙여준 점도 특징적이
다. 이 문제 역시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④ 어려운 경제 개념, 생소한 시사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였다.

(2) 청소년 저작권 교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07년 학생들의 저작권 관련
교육을 위해 발행한 '청소년 저작권 교실'이다. 교재
는 학교급에 따라 총3종으로 제작되어 발행되었다.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을 위해 제작된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 교재의 특징은 단순히 내용을 나열한 교재가
아니라 저작권 교육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의 도구
라는 점이다. 주당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 학기 동안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을 16차시로 보고, 교재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수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저작권 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내용을 분류하여 세 개의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비중에 따라 각각 4~6차시에 소화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단원	주제	차시	프로그램명
1	저작권의 개념 및 중요성 이해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요?
		2	법으로 보호받는 저작권
		3	저작권 보호의 기준 : Yes or No
2	저작권 알고 지키기	4	모두에게 유익한 저작권 보호
		5	우리 교실 속으로 들어온 저작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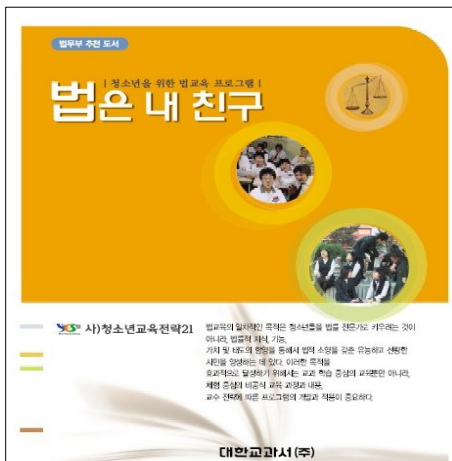
		6	무조건 굶으면 된다고요?		
		7	이 음악 보내 줄까?		
		8	불법 스캔 공화국???		
		9	우정과 저작권 사이		
		10	나도 이제는 저작권 대왕		
		3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 및 대처 능력 함양	11	저작권, 보호가 필요해!!!
				12	저작권 침해 No!
				13	사전 이용 허락 Yes!
				14	내가 만든 저작물은 어떻게 보호해?
				15	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16	모여서 보호하자!				

이 교재는 ‘저작권 중요성 인식’, ‘저작권 관련 권리의식 강화’을 생활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하에 학생들의 수준과 경험을 적절히 고려한 45분 분량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각 차시별로 학습목표, 준비물, 유의사항, 활동과정, 활동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학습내용도 들어가기에서 마무리하기까지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각 차시에 필요한 학생용 자료와 교사용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활용도도 높은 편이다.

각 프로그램은 내용에 따라 단순한 강의가 아닌 게임, 연극, 인터넷 검색, 만들기 등 다양한 학생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수업 속 소재도 학생들이 쉽게 접하는 학교생활, 인터넷 생활 등에서 찾아 친근함을 더한다. 한 학기에 걸친 연속 강의에서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도덕이나 사회 과목의 수업시간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사용하기에도 적합해 보인다.

다만,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활동 중 연극 등 시간 내에 마무리하기에 다소 무리인 활동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40명 이상이 생활하는 과밀학급 환경에서 적용하기에 어려운 활동이 들어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단순한 내용 나열이 아닌 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교재라는 점,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적절히 고려하여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법은 내 친구



법무부

2005년 법무부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교재이다. 교양 수준에서 이해해야 할 법 관련 지식을 총 21차시 분량으로 나누어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차시	목차	학습내용
1	제 1 장 법에 대한 기본 이해	법의 의미, 중요성, 필요성
2		국회 및 입법 과정에 대한 이해
3		입법과정의 실제(법률만들기)
4		입법과정의 실제(법률 결정)
5	제 2 장 개인 생활과 법	태아의 법률상 지위와 법적 권리 등 이해
6		성인을 규정하는 다양한 법들과 그 곳에서 규정하는 성년의 나이, 미성년의 보호와 성인의 권리 등
7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법적인 권리·의무 관계알기
8		내가 죽음 앞에 설 때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만들어보기
9	제 3 장 사회 생활과 법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
10		여성의 법적 지위와 성차별
11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2		근로자의 권리와 책임
13		청소년의 근로권
14		환경권
15	제 4 장 범죄와 형벌	범죄에 대한 개념적 이해하기
16		관례분석을 통해 범죄의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기
17		피해자를 보는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18		피의자의 권리알기, 미란다 원칙 이해
19		형사법에 제시된 다양한 범죄와 벌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기
20		소송절차에 대한 개괄적 이해(형사편)
21		소송절차에 대한 개괄적 이해(민사편)

각 차시는 ‘활동목표/활동개요/활동과정’, ‘진행절차’, ‘학생활동자료’, ‘교사지도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진행절차’는 다시 ‘도입-’전개-’정리’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학습내용에 따라 역할극, 찬반토론 등 다양한 학생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활동과정 구성에 대한 교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학생활동자료와 교사지도자료가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되어 함께 실려있다. 덕분에 교사 입장에서 별다른 추가 준비없이 본 교재 하나만으로도 풍부한 수업이 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필자도 2010년 계발활동으로 진행한 모의재판 동아리에서 이 자료를 일부 활용하여 큰 도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들이 재량활동 시간에 활용하기에는 제시하고 있는 학습내용의 수준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과수업시간에 학습하는 법 관련 학습내용과 비교할 때, 일반학생들이 소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많았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활동 중에 과연 1차시에 가능한 분량인지 의문이 드는 내용도 있었다.

제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자료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탁월했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 자체의 수준이 높다는 점이 단점이었다. 지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꽤 유용하겠지만 평균적인 수준의 학생 모두에게 적용하기에는 이런 측면에서 다소 부족해보였다.

(4)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사법발전재단



대법원 법원행정처 산하 사법발전재단에서 2010년 제작하여 보급한 자료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법원과 재판에 대해 교양수준에서 꼭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총4권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다. ‘사법제도와 법원의 역사’, ‘재판의 모습, 재판의 상식’, ‘세상을 움직인 재판’, ‘교과서 속 법원세상’이라는 주제로 나뉘어 각 60여 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법원과 재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에 목적으로 두고 제작한 자료여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교과과정의 법 관련 학습내용보다 수준이 높은 편이다. 또한 교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도 다수 수록되어 있다. 수업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보다 참고도서로서의 성격이 강한 자료이다.

그러나 학생용 참고도서로 본다면더라도 평균수준의 학생이 혼자서 읽기에는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5) 즐거운 금융교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이다. 총 5장에 걸쳐 금융관련 지식 및 실제 금융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수업아이디어를 제시하기 보다는 참고도서로서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정규교과과정에서 취약한 부분 중 하나인 금융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책자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정규교과과정에서 취약하게 다루고 있어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금융 관련 도서이기에 학생들이 혼자서 참고도서로 읽기에는 다소 어려운 내용이 많은 편이다. 또한 본문 속 탐구자료에서 제시

하고 있는 활동도 수업시간에 실행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 많고, 활동과 관련된 자료도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아 보인다.

이미 제작되어 보급 중인 몇몇 자료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제작·보급하는 기관이 많아지면서 자료의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다.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은 물론이고, 내용 서술도 단순히 기관 홍보자료처럼 만들어내던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그러나 더 활용도 높은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내용보다는 활동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료의 활용도가 더 높다. 대개 자료들은 교과 내용을 보충하여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 학생입장에서 심화된 내용은 스스로 학습하는 것보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정규 교과 내용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학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교사 입장에서는 정규교과 내용 외의 것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 어느 정도 부담이 있기에 수업을 완전히 구성해야 하는 내용 중심 자료보다 활동 중심 자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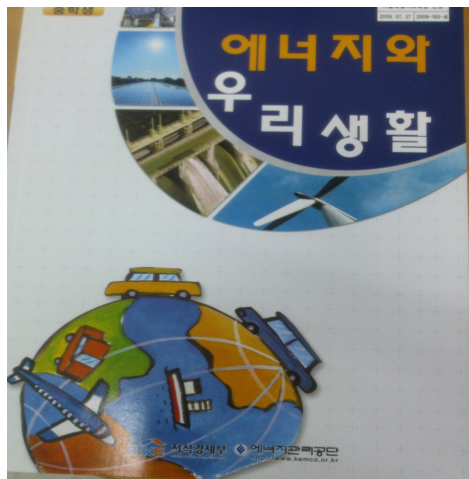
둘째, 미디어 자료에 익숙한 학생들인 만큼 다양한 참고자료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교재와 함께 CD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방법은 최신자료를 제공받기가 어려우며, 교재가 보급되는 과정에서 CD가 쉽게 분실되어 무용지물이 되기 쉬웠다. CD를 통한 방법보다는 발행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도록 한다면 이런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부분의 교재들이 한 학기나 1년을 잡고 연관성을 가진 하나의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제작된다. 그러나 현장에서 정규교과내용이 아닌 주제를 한 학기에서 1년 동안 연속적으로 수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정규 교과 시간에 필요에 따라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때문에 활동을 구성할 때, 독립적인 한 시간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자료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6) 에너지와 우리 생활

—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한 중학교용 교과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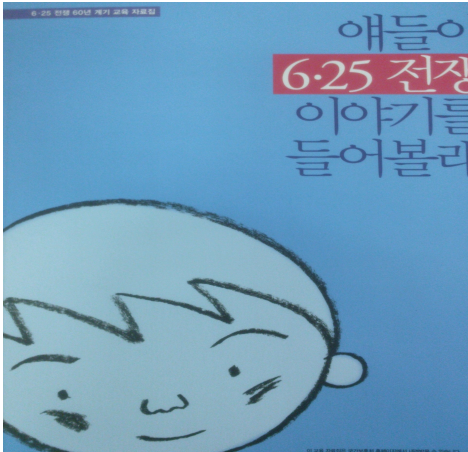
에너지의 개념 및 화석에너지 사용의 문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실태와 대책,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 절약방법과 실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등 에너지 문제 전반에 걸쳐 중학생들이 배우고 실천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성장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에너지 절약 교육을 위한 교재로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인정도서 승인을 받았다.

<시사점>

- ① 단원 별로 활동지, 도움자료, 읽기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 ② 교과서에 실린 통계자료나 신문기사, 사진을 최신 자료를 최대한 사용하였다.

(7) 애들아 6·25 전쟁 이야기를 들어볼래
- 국가보훈처 -



2010년, 6·25전쟁 60년 계기 교육 자료집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자료집이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청소년들에게 6·25전쟁의 실상을 알리고 전쟁의 참상을 통해 자유와 평화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기 위해 교육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교재는 학교 현장에서 좀 더 의미 있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6·25전쟁을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또한 사진 자료와 학생 활동지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시사점>

- ① 수업시간에 교재로 활용하기 편하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해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교사들이 이 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교육 자료집 활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6·25전쟁과 관련해 교사가 청소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지, 선생님이 6·25전쟁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역사 정보, 6·25전쟁을 가르치는 데 꼭 필요한 정보를 관련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다.
- ③ 실질적인 활동 프로그램과 자료를 풍성하게 담았다. 교실에서 간단하게 진행하는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체험학습까지, 실제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자료를 제시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전쟁의 무서움, 노래로 살펴보는 전쟁 이야기, 가슴으로 쓰는 편지와 일기, 슬픈 사연이 담긴 음식과 지명 등 소재 또한 재미있고 어렵지 않은 것들로 구성하였다.

(8) 멋진 나! e 주인공

- 정보통신부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인터넷 사용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연구·개발한 중등용 교재이다.

총 6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과다 사용의 위험성과 사용조절의 필요성을 알리며, 인터넷을 줄이기 위한 대안활동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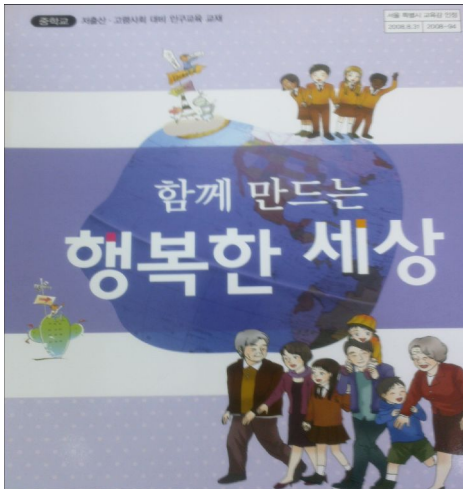
<시사점>

① 각 차시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지침에 따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퀴즈, 삼행시, 벽화 그리기, 선서문 작성하기 등 창의적인 활동을 활용하였다.

②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천으로 연결 될 수 있도록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9)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

- 보건복지가족부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한 인구교육 교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이 있다.

학생들에게 인구현상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올바른 인구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교과서이다.

교재는 인구 현상과 인구 변동, 생명존중, 양성·세대평등, 결혼·출산·자녀관,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문화가정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공부해봅시다>에서는 공부할 전체 내용을 그림과 함께 제시하고, <이야기해봅시다>에서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기, 이야기 꾸며보기 등의 활동을 하며, <생각해봅시다>에서는 놀이나 게임을 하면서 공부한 내용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토론해봅시다>에서는 그림을 보고, 느끼고, 이해하면서 여러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였다.

<시사점>

① 인구피라미드, 합계출산율 등 최근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고, 통계 자료를 쉽게 해석하여 그림으로 나타냄으로써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구체적인 상황과 만화를 활용해 생각하고 이야기해보는 식으로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③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양한 형태로 반복적으로 던짐으로써 능동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④ 행복한 가족의 모습, 양성평등 모습을 삽화로 제시하였다.

2) 학교급별 교육과정 현황(2009 개정 교육과정-2011년부터 단계적 적용)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1) 편제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분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 과 (군)	국어	국 어 448	408	408
	사회/도덕		272	272
	수학	수 학 256	272	272
	과학/실과	바른 생활 128	204	340
	체육	슬기로운 생활 192	204	204
	예술(음악/미술)		272	272
	영어	즐거운 생활 384	136	204
창의적 체험활동		272	204	204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	1,972	2,17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2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는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④ 3~4학년의 국어과 기준수업시수는 주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442시간을 기준수업시수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실과의 수업 시간은 5~6학년 과학/실과의 수업시수에만 포함된 것이다.

나. 중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1) 편제

(가) 중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① 교과(군)는 국어, 사회(역사 포함)/도덕, 수학, 과학/기술·가정,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 선택으로 한다. 선택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선택 과목으로 한다.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시간 배당 기준

구 분		1~3학년
교과(군)	국어	442
	사회(역사 포함)/도덕	510
	수학	374
	과학/기술·가정	646
	체육	272
	예술(음악/미술)	272
	영어	340
	선택	204
창의적 체험활동		306
총 수업 시간 수		3,366

① 이 표에서 1시간 수업은 45분을 원칙으로,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학년군 및 교과(군)별 시간 배당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3년간의 기준수업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③ 총 수업시간 수는 3년간의 최소 수업 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①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며,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음악/미술),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②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

(2) 단위 배당 기준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구분	교과 영역	교과(군)	필수 이수 단위		학교자율과정	
			교과(군)	교과 영역		
교 과 (군)	기초	국어	15 (10)	45 (3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15 (10)			
		영어	15 (10)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15 (10)	35 (20)		
		과학	15 (10)			
	체육·예술	체육	10 (5)	20 (10)		
		예술 (음악/미술)	10 (5)			
	생활·교양	기술·가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16 (12)	16 (12)		
	소 계			116(72)		64
	창의적 체험활동			24		
총 이수 단위			204			

① 1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필수이수단위의 교과(군) 및 교과 영역 단위 수는 해당 교과(군) 및 교과 영역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④ 필수이수단위의 () 안의 숫자는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 예체능 등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인정받은 학교가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⑤ 총 이수 단위 수는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합한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라. 학교급별 공통 사항

(1) 편성·운영

(1)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2)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3)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운영한다.

(4)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5)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6) 학교는 동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8)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9)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10) 공통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특히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11)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으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2)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13)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14)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15)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실질적 체험학습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16)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17)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에 기초하여 융통성 있게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8)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0) 학습부진아, 장애를 가진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하도록 한다.

(21)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22)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한국 문화사 교육, 한자 교육, 녹색 교육 등

마. 재량활동 운영 사례

1) 초등학교(인천 ○○초등학교 사례)

① 5학년 1학기

2010학년도 1학기 인천○○초등학교 5학년 1반 담임 ○○○(인)

주	날	요일	정규	휴일	학습주제	활동내용	차시	영역	비고
1	3.3	수	1		한자교육	1. 우리 학교	1/1	한자교육	
3	3.16	화	1		보건교육	첫째마당 일상생활과 건강 1. 나는 건강한가요?	1/1	보건교육	
	3.17	수	1		한자교육	1. 우리 학교	1/1	한자교육	
4	3.23	화	1		한자교육	1. 우리 학교	1/1	한자교육	
	3.24	수	1		한자교육	2. 즐거운 가족	1/1	한자교육	
5	3.30	화	1		보건교육	3. 소중한 눈! 건강한 눈!	1/1	보건교육	
6	4.8	목	1		인성교육	인성교육	1/1	인성교육	
	4.8	목	1		인성교육	인성교육주간(학교폭력예방교육)	1/1	인성교육	
	4.9	금	1		인성교육	인성교육주간	1/1	인성교육	
	4.9	금	1		인성교육	인성교육주간	1/1	인성교육	
7	4.13	화	1		보건교육	4. 손씻기, 건강 생활의 시작	1/1	보건교육	
	4.15	목	1		인성교육	자연탐사체험학습	1/1	인성교육	
	4.15	목	1		인성교육	자연탐사체험학습	1/1	인성교육	
8	4.20	화	1		한자교육	2. 즐거운 가족	1/1	한자교육	
	4.21	수	1		인성교육	인성교육	1/1	인성교육	
9	4.27	화	1		보건교육	둘째마당 질병예방과 관리 1. 배가 부글부글 거려요.(콜록콜록, 에취)(약물오남용교육)	1/1	보건교육	
11	5.11	화	1		한자교육	2. 즐거운 가족	1/1	한자교육	
	5.12	수	1		인성교육	인성교육	1/1	인성교육	
12	5.18	화	1		보건교육	3. 똥똥하면 비만인가요?(약물오남용교육)	1/1	보건교육	
13	5.25	화	1		청렴교육	청렴교육	1/1	청렴교육	
14	6.1	화	1		보건교육	4. 소중한 치아, 깨끗하게 관리해요!	1/1	보건교육	
	6.5	토	1		한자교육	3. 의.식.주 생활	1/1	한자교육	
15	6.9	수	1		한자교육	3. 의.식.주 생활	1/1	한자교육	
16	6.15	화	1		보건교육	셋째마당 약물 오남용, 흡연예방 1. 약, 이렇게 사용해요.(약물오남용교육)	1/1	보건교육	
	6.16	수	1		한자교육	3. 의.식.주 생활	1/1	한자교육	
17	6.22	화	1		보건교육	2. 담배, 왜 건강에 해로운가요?(약물오남용교육)	1/1	보건교육	
	6.23	수	1		한자교육	4. 큰 수의 단위	1/1	한자교육	
18	6.29	화	1		한자교육	4. 큰 수의 단위	1/1	한자교육	
19	7.7	수	1		한자교육	4. 큰 수의 단위	1/1	한자교육	
20	7.13	화	1		보건교육	넷째마당 성과 건강 1. 궁금해요, 성(성교육)	1/1	보건교육	
	7.14	수	1		한자교육	5. 아름다운 계절	1/1	한자교육	
21	7.21	수	1		한자교육	5. 아름다운 계절(저탄소녹색성장교육)	1/1	한자교육	
	총시수	32	32	0					

① 5학년 2학기

2010학년도 2학기

인천○○초등학교 5학년 1반 담임 ○○○(인)

주	날	요일	정규	휴	학습주제	활동내용	차시	영역	비고
1	8.25	수	1		한자교육	5. 아름다운 계절	1/1	한자교육	
2	8.31	화	1		보건교육	3. 아빠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요.(성교육)	1/1	보건교육	
	9.1	수	1		한자교육	6. 우리의 자연	1/1	한자교육	
3	9.7	화	1		한자교육	6. 우리의 자연	1/1	한자교육	
4	9.15	수	1		보건교육	4. 엄마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요(성교육)	1/1	보건교육	
6	9.29	수	1		인성교육	역사문화탐사체험학습	1/1	인성교육	
	9.29	수	1		인성교육	역사문화탐사체험학습	1/1	인성교육	
7	10.5	화	1		보건교육	7. 내 몸은 내가 지켜요.(성폭력예방교육)	1/1	보건교육	
	10.6	수	1		한자교육	6. 우리의 자연	1/1	한자교육	
8	10.12	화	1		한자교육	7. 색과 모양	1/1	한자교육	
	10.13	수	1		한자교육	7. 색과 모양	1/1	한자교육	
9	10.19	화	1		보건교육	8. 성 상품화와 성매매 예방(성폭력예방교육)	1/1	보건교육	
	10.20	수	1		한자교육	7. 색과 모양	1/1		
10	10.26	화	1		한자교육	8. 우리나라의 시.도	1/1	한자교육	
11	11.2	화	1		보건교육	다섯째마당 정신건강 1. 내 마음을 알아볼까요?(약물오남용교육)	1/1	보건교육	
	11.6	토	1		경제교육	경제교육	1/1	경제교육	
	11.6	토	1		경제교육	경제교육	1/1	경제교육	
12	11.9	화	1		한자교육	8. 우리나라의 시.도	1/1	한자교육	
13	11.16	화	1		보건교육	여섯째마당 사회와 건강 2. 건강한 가족 만들기	1/1	보건교육	
	11.20	토	1		경제교육	경제교육	1/1	경제교육	
	11.20	토	1		경제교육	경제교육	1/1	경제교육	
	11.20	토	1		경제교육	경제교육	1/1	경제교육	
14	11.23	화	1		한자교육	8. 우리나라의 시.도	1/1	한자교육	
15	11.30	화	1		보건교육	일곱째마당 사고예방과 응급처치 1. 응급처치 나도 할 수 있어요.(재난대비안전교육)	1/1	보건교육	
	12.1	수	1		한자교육	9. 서로 돕는 생활	1/1	한자교육	
16	12.7	화	1		한자교육	9. 서로 돕는 생활	1/1	한자교육	
	12.8	수	1		한자교육	9. 서로 돕는 생활(학교폭력예방교육)	1/1	한자교육	
17	12.14	화	1		보건교육	2. 켈리가 목에 걸렸어요.	1/1	보건교육	
19	2.9	수	1		한자교육	배운 내용 복습하기	1/1	한자교육	
	총시수	29	29	0					

2) 중학교(강원도 ○○중학교 사례)

① 1학년 창의적 재량 활동 계획(68시간/1, 2학기)

영역	소영역	학습내용	시수	비고	
범교과 학습 (34시간)	보건교육 (17시간)	1. 건강의 이해와 건강 생활 - 내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 비만과 건강	3		
		2. 질병의 예방과 관리 - 질병 및 전염성질환 예방하기 - 안전 우선, 응급처치 119	3		
		3. 약물 오남용 - 약물과 건강 - 흡연, 음주와 건강	3		
		4. 성과 건강 - 성과 사랑 - 사춘기 성욕구 조절 - 성심리 차이와 이성교제 - 건강한 성행동 - 건강한 임신과 출산	3		
		5. 정신 건강	3		
		6. 사회 건강	2		
	민주시민 교육 (12시간)	1. 정보통신 윤리 교육	2		
		2. 공중도덕 지키기	2		
		3. 약속과 역할이행하기	2		
		4. 참여, 양보, 배려하기	2		
		5. 우측통행 및 교통질서 지키기 교육	2		
		6. 무궁화의 고장 바로알기	2		
	경제교육 (5시간)	자기경제 노트쓰기	1		
		경제와 나	2		
		국가경제와 국제경제의 이해	2		
	자기 주도적 학습 (34시간)	독서교육	지정 필독서 안내 및 독서 노트쓰기와 독후표 활동 익히기	1	현
			지정도서 읽기 활동1(아홉 살 인생)	3	
			선택도서 읽기 활동1	2	
지정도서 읽기 활동2(봄바람)			3		
선택도서 읽기 활동2			2		
지정도서 읽기 활동3(국어시간에 시읽기)			3		
선택도서 읽기 활동3			2		
지정도서 읽기 활동4(국어시간에 소설읽기)			3		
선택도서 읽기 활동4			2		
선택도서 읽기 활동5			2		
독후표현활동 1(독후감 써서 dls에 올리기)			5		
독후표현활동 2(책표지 만들기)			2		
독후표현활동 3(독후화 그리기)			2		
독후감 발표회			1		
독서토론	1				

②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계획(68시간/1, 2학기)

영역	소영역	학습내용	시수	비고
범교과 학습 (24시간)	성교육 (12시간)	1. 신체 및 성심리 발달 1) 신체발달 2) 성심리 발달 3) 성건강	4	유인물 및 VTR 관련 사진 및 그림
		2. 인간관계 이해 1) 결혼과 가정 2) 이성과 사랑 3) 자기결정과 선택	4	
		3. 성문화 및 성윤리 1) 사회적 환경 2) 성희롱, 성매매	4	
	인성 교육 (12시간)	1. 나는 누구인가? 1) 긍정적 태도 갖기 2) 긍정적으로 사고하기 3) 극기심 갖기	1	
		2. 기본생활 습관 실천하기 1) 우리 학교교칙 알기 2) kind 실천하기	2	
		3. 전통예절 익히기 1) 부모님 공경하기 2) 어른 공경하기	1	
		4. 시민성 함양 교육 1) 공중도덕 지키기 2) 참여와 양보, 배려심 갖기 3) 법질서 준수하기 4) 약속 지키기와 역할 이행하기	2	
		5. 나의 성장록 작성하기 1) 좌우명 갖기 2) 진로 탐색하기 3) 인생 설계하기	3	
		6. 순회상담교사를 통한 두레 및 개인 상담 실시	3	
	안전교육 (10시간)	1. 학교폭력 예방교육	2	
		2. 재난 대비 교육	2	
		3. 정보 통신 윤리교육	2	
		4. 교통안전 교육(우측통행 지도)	2	
		5. 생태, 환경 녹색성장 체험 교육	2	
	자기 주도적 학습 (34시간)	독서교육	지정 필독서 안내 및 독서 노트쓰기와 독후표현활동 익히기	1
지정도서 읽기 활동1(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	
선택도서 읽기 활동1			2	
지정도서 읽기 활동2(팽이부리말 아이들)			3	
선택도서 읽기 활동2			2	
지정도서 읽기 활동3(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3	
선택도서 읽기 활동3			2	
지정도서 읽기 활동4(국어시간에 소설읽기 2)			3	
선택도서 읽기 활동4			2	
선택도서 읽기 활동5			2	
독후표현활동 1(독후감 써서 dls에 올리기)			5	
독후표현활동 2(체크지 만들기)			2	
독후표현활동 3(독후화 그리기)			2	
독후감 발표회			1	
독서토론	1			

③ 3학년 창의적 재량 활동 계획(68시간/1,2학기)

영역	소영역	학 습 내 용	시수	비고
범교과 학 습 (34시간)	진로교육 (17시간)	1. 바른 직업 찾기	2	유인물 및 VTR 관련 사진 및 그림
		2.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3. 3학년의 생활 1) 나의 생활 계획 2) 나의 장래에 대한 계획	2	
		4. 자신의 성격 이해 1) 나는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가 2) 나의 성격 파악하기 3) 자신에 대한 이해	2	
		5. 나의 가치관 탐색 1) 자기 분석표 만들기 2) 나의 가정환경과 직업 3) 나의 진로에 미치는 가정·사회적 영향	2	
		6. 직업과 진로 선택 1) 나의 꿈 나의 희망 2) 직업의 종류와 변화	2	
		7. 개인별 맞춤형 진학지도	2	
		8. 나의 성장록 작성 및 활용 1) 진로 탐색하기 2) 인생 설계하기	2	
		9. 직업체험(부모님 일터체험) 소감문 쓰기	1	
		10. 입학사정관제의 이해	2	
	안전교육 (9시간)	1. 학교폭력 예방교육	2	
		2. 재난 대비 교육	1	
		3. 정보 통신 윤리교육	2	
		4. 교통 안전 교육(우측통행 지도)	1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1	
		6. 약물오남용 및 흡연예방	1	
		7. 소방안전 교육	1	
	환경교육 (8시간)	1.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기 오염 1)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원인 2) 대기 오염 물질의 종류 2. 조사활동 보고서(대기오염과 작물에 대한 영향)	2	
		3. 주변의 악취 발생 물질과 배출원 1) 악취 발생 물질 2) 악취의 성질과 특성 3) 악취 발생원 4) 악취 성분별 특성 4. 조사활동 보고서(악취 발생물질 배출원조사)	2	
		5. 생태환경 녹색 성장 체험교육 실시 1) 학교주변 화단 가꾸기 2) 걸어서 학교 다니기 실천 3) 잔반 없애기 운동 4) 에너지 절약 및 자원재활용 실천	3	
6. 환경관련 발표회(포스터, 표어, 홍보안내자료 만들기)		1		
지정 필독서 안내 및 독서 노트쓰기와 독후표현활동 익히기		1		
지정도서 읽기 활동1 (원미동 사람들)		3		
지정도서 읽기 활동2 (연어)	3			
지정도서 읽기 활동3 (운영전)	3			
지정도서 읽기 활동4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3			
지정도서 읽기 활동5 (아름답고 슬픈 야생동물 이야기)	3			
자기 주도적 학 습 (34시간)	독서교육 (34시간)	선택도서 읽기 활동 1, 2	4	
		선택도서 읽기 활동 3, 4	4	
		독후표현활동 1(독후감 써서 dls에 올리기)	5	
		독후표현활동 2(책표지 만들기)	2	
		독후표현활동 3(독후화 그리기)	2	
		독후감 발표회 및 독서토론	3	

3) 고등학교(경기도 ○○고등학교 사례)

① 재량활동 운영

학교 교육과정에 의하면 재량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기간인 10학년에 12단위가 배정되어 있다. 이 중 교과 재량 활동이 10단위, 창의적 재량 활동이 2단위이다. 교과 재량 활동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외 심화·보충 학습에 6단위가 배정되어 ‘영어’, ‘과학’, ‘국사’ 교과에서 각 2단위씩 진행하고 있다. 교과 재량 활동 중 나머지 4단위는 선택 과목에 배정되어 있는데 본교에서는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여 수업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에는 총 2단위가 배정되어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본교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간에는 자기 주도 학습(독서 및 논술과 다문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선택 과목	이수 단위 (시간)	운영 방법	비 고
교과 재량	선택 과목	진로와 직업(4)	4	정시제	
	심화·보충 과목	영어(2)	2	정시제	
		과학(2)	2		
		국사(2)	2		
창의적 재량	자기 주도적 학습	독서·논술과 다문화 교육(17)	2(34)	정시제 전체 필수	운영 방법에 정시, 격주, 전일, 집중제 구분 표시
	보건 교육	성교육, 학교폭력 흡연약물예방교육(17)			

교과 재량 활동 중 심화·보충 과목의 경우 교과 담당 교사에 의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과 재량 활동 중 ‘진로와 직업 과목’은 대부분 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사들이 교과 특성에 상관없이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로와 직업 교육에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임하는 경우보다는 학기 초 수업시수 배정 시 갑작스럽게 맡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이는 수업의 충실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로와 직업을 맡은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도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여러 면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과목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이 ‘진로와 직업’ 하나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본교의 창의적 재량활동은 2가지로 구분된다. ‘자기 주도적 학습’과 ‘보건교육’이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연간 17시간 이상 하도록 규정된 보건교육의 경우 작년부터 교과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본

교에서도 작년 2학기 동안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여 성교육 및 약물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보건교육에 배정된 17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17시간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진행된다. 본교에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독서 및 논술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학교 도서관에서 사서교사에 의한 도서관 이용교육 및 독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서교사가 담당하지 않는 주에는 창의적 재량활동 담당교사의 지도 아래 독서 및 독서록을 작성한다. 이때도 사서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으나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후 작성된 독서록은 창의적 재량활동 담당교사나 담임교사가 확인하여 기록하고 지도한다. 다음은 본교의 독서·논술교육 계획이다.

② 재량활동의 운영상 한계점

교과재량활동 중 심화·보충에 배정된 시간 중 영어시간에는 원어민교사에 의한 영어 회화 수업이 진행되며, 과학과 국사 교과 시간에도 일반적인 교과 수업시간처럼 특별한 구분 없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원칙대로라면 심화·보충수업이 이루어져나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보니 수업시간을 다수 확보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월	대영역		교시	교육 내용	교육방법
3	논술의 기초	논술의 이해	1	논술의 개념과 특성 이해하기	개념학습
			2	논술과 다른 글쓰기의 차이 학습하기	개념학습
	논술의 구조	논술의 구조	3	논술의 토대를 이루는 요소 파악하기	개념학습
			4	문제의 발견과 해결로서의 논술의 과정 이해하기	주제탐구

4	논술과 사고	견주기	1	‘유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논술 작성하기	주제탐구학습
			2	‘차이’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논술 작성하기	주제탐구학습
			3	‘비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논술 작성하기	주제탐구학습
			4	‘유추’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해 논술 작성하기	주제탐구학습
5		풀이하기	1	대상의 여러 요소 중 핵심요소를 찾아 풀이하기	주제탐구학습
			2	대상의 여러 기능이나 효용에 주목하여 풀이하기	주제탐구학습
			3	대상을 다른 것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풀이하기	주제탐구학습
			4	대상이 작동하는 양상이나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풀이하기	주제탐구학습
6		보이기	1	대상의 상위 개념 찾기	개념학습
			2	구체화를 통해 대상의 하위 개념 구분하기	개념학습
			3	대상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사례 검토하기	주제탐구학습
			4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론을 도입하기	주제탐구학습
7	논술과 사고	아우르기	1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기	주제탐구학습
			2	대상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기	주제탐구학습
			3	공통점을 찾아 유형으로 아우르기	주제탐구학습
8			1	시간적, 논리적 순서에 따라 대상을 아우르기	주제탐구학습
			2	대상들 사이의 우선순위 정하고 선택하기	주제탐구학습
9		밝히기	1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주제탐구학습
			2	현상의 환경적 원인을 밝히기	주제탐구학습
			3	현상의 순환적 원인을 밝히기	주제탐구학습
			4	현상의 복합적 원인을 밝히기	주제탐구학습
10		따지기	1	개념을 따져 논리적 사고를 전개하기	주제탐구학습
			2	다양한 해석을 통해 의미를 따지기	주제탐구학습
			3	비판적 시각으로 대안을 제시하기	주제탐구학습
			4	변증법적인 접근으로 논지 세우기	주제탐구학습

11	논술의 표현	표현의 기초	1	구체적인 어휘와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 글쓰기	글쓰기학습
			2	평이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글쓰기학습
			3	하나의 중심생각을 지닌 문단으로 구성하기	글쓰기학습
			4	문단과 문단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글쓰기	글쓰기학습
12		글쓰기	1	논점과 절차를 예고하는 개성있는 서론 쓰기	글쓰기학습
			2	주장을 강조하고 확장하는 결론 쓰기	글쓰기학습
			3	설득력 있는 주장과 그에 적절한 논거를 제시하기	글쓰기학습
2		고쳐쓰기	4	글의 내용과 표현 평가하기	글쓰기학습
	1		부가와 삭제의 원리를 이해하고 퇴고하기	글쓰기학습	
	2		평가와 퇴고를 통해 글 마무리하기	글쓰기학습	

이 외에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이라고 해서 원칙대로 운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진로와 직업’, 창의적 재량활동은 대개 학기 초 수업시수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교사가 담당하게 되는 일이 많다. 즉, 전문성과 관심에 따라 배정된 수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담당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새학기를 맞고 수업을 진행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보조할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재량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이다. 중학교 때부터 재량활동을 수업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라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 할 경우 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는 일도 있다. 더군다나 인문계 고등학교이다 보니 정기고사 기간에 가까워 올수록 학생들 스스로가 교사에게 수업보다는 자습할 시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의욕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시도해보던 교사들조차도 단 몇 주 만에 의욕을 상실하기 일쑤이다. 내신 성적에도 점수화되어 반영되지 않기에 이런 현상은 학기말로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4 교원 연수 사례와 효과

1) 교원 연수 전반

교사의 연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3.7.30 대통령령 제18075호]에 따른다. 연수 기관의 종류는 초등교육연수원·중등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이 있다. 초등교육연수원은 교육대학이며 중등교육연수원 및 교육행정연수원은 대학 또는 산업대학이다. 이밖에 대학·산업대학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따라 종합교육연수원이 있으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이 있다.

초등교육연수원은 유치원·초등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중등교육연수원은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연수대상으로 한다. 교육행정연수원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장·교감·원장·원감 및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를 연수대상으로 한다. 종합교육연수원 및 원격교육연수원은 위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을 포함한다.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도 그 직위와 직무내용에 따라 각급 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연수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수의 일부를 다른 연수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교원 연수의 구분

연수는 교육의 이론·방법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배양을 위한 직무연수와 교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자격연수로 구분된다.

직무연수의 연수과정과 내용은 연수원장(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자격연수의 연수과정은 2급정교사과정·1급정교사과정·전문상담교사과정·사서교사과정·1급양호교사과정·원감과정·원장과정·교감과정 및 교장과정으로 구분된다. 자격연수의 연수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되 그 이수시간은 180시간이상이어야 하며, 직무연수의 시간은 보통 하루 동안의 특강 형식으로 짧게 이루어지거나 30시간, 60시간으로 구성된다.

또한 최근에는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거나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연수가 활발하다. 온라인 연수는 학기 중에도 연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참여율은 굉장히 높지만 실제적으로 연수 효과는 이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원연수가(특히, 직무연수의 경우)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지만, 많은 경우 교사의 승진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경향도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연수의 확대에 의해, 이를 활용한 교사 연수를 병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 하겠다.

3) 연수 사례

가. 중등사회 교원능력개발 원격직무연수(사례1)

(1) 개요

① 목적

현대사회는 수많은 정보들이 이동하고 다양한 정보 매체들이 존재하는 정보사회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분야도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예외일 수 없다. 그에 적합한 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

교원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직이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사회에서 교사의 능력도 지속적인 연찬이 필요하다. 전문직으로서 교사의 능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사의 능력 개발은 필수적이다.

이에 교원에게 필요한 자질과 품성을 함양하고, 교원들의 지속적인 자기성장욕구를 충족시켜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교육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을 통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교사들의 능력과 자질 신장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② 내용

사회과 수업에 필요한 내용들이 균형 있게 구성되어 있다.

<사회과 연수프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영역	내용
교육과정	목표	· 사회과 수업의 목표를 이해한다. · 수업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함양한다.
	내용 및 방법	· 사회과 교육과정 이해하기 · 사회과 교수-학습 전략 습득하기 · 교사의 적절한 태도 익히기 · 평가 방법 알아보기
	평가	과제평가, 온라인 시험, 설문조사
운영	연수기관	충청북도 단재연수원
	방법	온라인
	강사	중·고등학교 교장1명, 교감1명, 교사7명, 교수1명, 강사1명, 교육연구사1명
	기간	13일 36시간

i) 교육과정의 구성

3차시까지는 수업 교사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해야 할 지식과 기술에 대한 단계이다. 수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들, 학습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수업기술, 재미있는 교육 효과를 주기 위한 기법이 있다. 수업의 도입단계에서는 인지적 주의집중과 상세한 목표 제시 방법이 있다.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핵심적 수업기술을 다루고 있다.

4차시부터 6차시까지는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에 유형과 전략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상호작용의 유형과 효과적인 전략이 있다. 교육과정의 분석과 이에 적합한 학습 방법의 개선이 있으며, 학습자 특성과 교과내용 분석이 있다.

7차시부터 8차시까지는 교사의 발문이나 태도 같은 행동지침에 관한 내용이다.

9차시부터 13차시까지는 학습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하는 방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연수프로그램의 주요내용과 구체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제목	구체적 요소	비고
수업의 진행	1. 좋은 수업의 특성 2. 성취도를 높이는 수업 3. Action Learning	강의식
사회과 교수-학습 전략	1. 사회과 수업과 교수학습 형태 2. 사회과 수업 교수-학습 전략 수립	강의식
수업의 도입	1. 인지적 주의집중을 위한 전략 2. 학습목표의 진술과 제시법	강의식
교사-학생 상호작용	1. 교사-학생 상호작용 필요성 2. 상호작용의 유형과 전략	강의식
교육과정의 이해 및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	1. 개정 교육과정의 이해 2. 사회과 교육과정의 이해 3.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의 이해	강의식
학습자 특성 및 교과 내용 분석	1. 학습자에 대한 이해 및 진단 2. 교재 및 교과 내용 분석 3.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수업설계	강의식
교사의 발문	1. 발문의 개요 2. 발문의 기법 3. 발문의 실제	강의식
교사의 태도	1. 사회과 교사의 전문가 정신 2. 개방적·창의적 수업환경 조성 3. 수업과 교사 신뢰성	강의식
학습자료 활용	1. 학습자료의 개념 및 필요성 2. 학습자료의 종류와 특성 3. 학습자료 활용의 실제	강의식
학습정리	1. 학습정리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2. 학습정리의 방법 3. 학습정리의 유의점	강의식
평가내용 및 방법	1. 사회과 평가의 목적과 방향	강의식

	2. 사회과 평가도구 개발의 실제 3. 사회과 평가 결과의 분석과 해석	
평가결과의 활용	1. 평가의 성격 2. 평가 결과 분석과 활용	강의식

ii) 운영

사회과 수업 개선에 관한 연수이므로 대부분의 강사가 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원격 연수의 방식을 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았고, 연수기간은 13일로서 학기 중에 하는 연수로서는 길었다. 연수교재는 사이트에서 다운받는 방법이며, 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제 제출이 한 번 있었으며, 원격 시험이 한 번 있었다. 평가 점수는 진도 40점, 과제 30점, 시험 30점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60점이 이수기준 점수였다. 연수 비용은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하였다.

(2) 연수의 특징

① 효율적인 연수

원격 교육 연수의 형태를 하고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최소화 되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교 일과 중에 연수를 할 수 있었다. 또 연수 장소를 찾아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이점이 있었다.

② 강의 중심의 연수

모든 강의의 수업 방법이 강의식으로 진행되었다. 강사 한명이 화면을 쳐다보며 다른 교구의 도움 없이 모든 수업을 강의로 진행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다.

③ 이론과 실제 통합의 연수

교육학의 전통적 이론과 최신 연구 경향 등이 함께 통합되어 제시되었다. 전통 교육학 이론을 다시 익힐 수 있었고 새롭게 나온 이론을 함께 알아볼 수 있었다. 이론적인 면에 더하여 수업의 경험에서 나온 여러 가지 사례와 실제 필요한 기술적인 기법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3) 연수효과

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들이 강사로 확보되어 실제성이 있다.

대부분의 강사가 현재 교사로서 있는 사람이거나 이미 많은 경험을 한 교장, 교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제 현장의 교사들이 알고 싶어 하고, 필요했던 지식이나 태도에 대해 강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성 있는 연수가 될 수 있었다.

기존의 이론 서술 형식이나 교육과정적인 측면만을 다루고 있던 연수 형태를 벗어나 있었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 부분을 보면 실제 수업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사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이것은 막연하게만 다가올 수 있었던 상호작용을 실제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수업기술 부분에서는 강사가 수업 경험에서 우리나라 핵심적 수업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수 내용은 교사에게 성취 의욕을 상승시키고, 연수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② 수업의 기술적인 면과 교사의 태도적인 면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

교수 학습 전략이나 상호작용의 방법, 교육과정의 이해, 학습 정리 및 평가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 서술이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하여 교사들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측면들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학습자에 대한 이해, 교사의 전문가 정신 등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나의 연수에서 두 가지 학습을 모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③ 학생 및 사회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연수 내용을 강화하였다.

새롭게 바뀐 교육과정과 최신 교수-학습 전략, 최신 평가의 방법의 내용이 있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교육현장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자료를 원격연수를 통해 손쉽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④ 연수 결과를 엄격하게 평가하여 교원의 능력 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과제의 기한이 정해져 있었으며, 사전에 똑같은 과제물의 제출 등 불성실한 과제 제출을 방지하는 공지를 하였다. 연수 동영상을 보지 않거나 빨리 보기 방식을 통해 진도를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는 체제였다. 연수기관의 철저한 관리로 원격연수에서 일어나기 쉬운 '클릭만으로 이수'하는 현상을 없앨 수 있었다.

나.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변화관리에 대한 원격 직무연수(사례2)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진행된 온라인 연수였다. 학교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진행된 연수로서 총 17차시로 진행되었다.

온라인 연수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자유롭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더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반대의 효과를 낳기도 한다. 자유롭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한 연수가 될 수도 있다.

차시	학습주제
1	정부 혁신의 이해
2	단위 학교 업무 효율화
3	학교 환경 개선
4	변화 지향의 리더쉽 및 권한 위임
5	협동적 업무 수행 및 의사 결정 참여 촉진
6	교직원 전문 능력 개발, 전문 공동체 구축
7	학교 문화의 혁신

8	학부모와의 협력 강화
9	지역 사회 협력 강화
10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11	수업 개선
12	교과 외 활동(재량활동과 특별활동)
13	학습 부진 학생 지도
14	인성교육 강화, 생활지도
15	방과후 학교 운영
16	독서교육, 학교 도서관 활성화
17	학교자원활용 관리 효율화

위 연수는 운영과 구성방법 자체로는 온라인 연수의 장점을 잘 살린 편이다. 한 차시의 분량을 30분 정도로 길지 않게 구성하고, 강의와 질문을 번갈아 하여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가 돋보였다. 인터뷰와 짙막한 드라마 등 동영상을 적절히 활용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연수 내용 선정에 있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자주 소개 되는 점이 아쉬웠다. 또한 교사들이 실제 연수에서 가장 얻고 싶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현장 적용 방법에 대한 강의를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다. 저출산 고령사회대비 인구교육 담당교사 직무연수(사례3)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행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비하는 학교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연수였다. 약 2시간 반에 걸쳐 크게 세 가지 강연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보건복지부담당자의 기초강연이 있었다. 이어 2가지의 주제 강연이 이어졌다. 첫 번째 주제는 변화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의 변화방향에 대한 이론적인 강연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연구시범학교의 학교인구교육 사례를 담당교사가 소개하는 발표하는 형식이였다.

학기 중 평일 오후라는 점에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연수였다. 그렇지만 그에 맞게 현 상황과 정부의 정책 설명, 학교교육의 변화방향에 대한 이론적 소개, 사례발표라는 연수 내용 구성은 지루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내용을 짜임새 있게 전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다만, 초·중등교사가 함께 받은 연수여서 그런지 사례발표가 다소 추상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아쉬웠다.

라. 사회과 1급 정교사 자격연수(사례4)

간월일	교시 시 일 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09:00~ 09:50	09:50~ 10:40	10:50~ 11:40	11:40~ 12:30	14:00 ~ 14:50	14:50 ~ 15:40	15:50 ~ 16:40	16: 40 ~ 17: 30	
7.14	수	☺☺☺	등록및개강	교양	교양	사회과의 성격과 본질				
15	목	교양	교양	교양	교양	사회와 문화				
16	금	교양	교양	교양	교양	세계정세와 정치적사고				
17	토	과 제 학 습								
18	일	일 요 일								
19	월	☺☺☺	교양	교양	교양	미시경제학의 기본개념				
20	화	학급경영		교과교육		사회와 문화				
21	수	교육과정		특수교육		사회문제론				
22	목	교육공학		학급경영		미시경제학의 기본개념				
23	금	청소년문제		교육법규		권리구제제도				
24	토	과 제 학 습								
25	일	일 요 일								
26	월	☺☺☺	교육복지		내일을생각					
27	화	교직평가		교양	교양	교양	세계정세와 정치적사고			
28	수	사회과 법		일본 법		자신과의 소통하기				
29	목	권리구제		사회과 평가문항 작성의 원리와 실제						
30	금	IS-LM곡선, AD-AS곡선 분석								
31	토	과 제 학 습								
8. 1	일	일 요 일								
2	월	☺☺☺	명품 수업은 P·C·K에서 나온다					현대 사회		
3	화	현대사회와 윤리교육의 문제								
4	수	특기 및 적성			특기 및 적성		특기 및 적성			
5	목	권리구제		사회과 통합논술 지도의 실제						
6	금	과학주의와 미래사회				수업관찰 및 비평				
7	토	과 제 학 습								
8	일	일 요 일								
9	월	☺☺☺	사회변동론			사회과 교육에서의 PBL모형				
10	화	사회과 가치교육								
11	수	현대사회과 교육의 트렌드				헌법규범의 이해				
12	목	헌법규범의 이해				과학주의와 미래사회				
13	금	사회과의 법교육 문제				사회과 정치학습				
14	토	과 제 학 습								
15	일	일 요 일								
16	월	☺☺☺	사회과 정치학습				사회과 다문화 교육			
17	화	사회과		전공평가						
18	수	전공평가		과정별수료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는 보통 교직 4년차 때에 이루어진다. 연수 기간은 여름방학 중 이고,

교양과 교직부분에 38시간에 전공 142시간을 더하여 약 한 달간 연수가 진행된다. 이 연수는 극히 일부의 교원을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연수로 교사라면 누구나 받는 연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수의 성적은 추후에 관리직으로의 승진에 반영되기 때문에 교사들의 연수 참여의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교직에 입문하고 4년째 쯤이면 능동적인 학습 욕구 또한 높을 때이다.

이 연수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전공분야과목이다. 그런데 연수를 받는 입장에서 전공과목이 몇 개 분야에 한정되어 있음이 아쉬웠다. 특히, 사회과 교사는 졸업 이후 변화한 자료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학생들에게 대응 전략을 제시해주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중 전공과목이 다루는 내용이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접하는 내용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았다.

4)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사례를 통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몇 가지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연수시기와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 연수는 대개 방학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 방학기간이라 하더라도 시간적으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방학 기간이라 해도 연수기관들이 선호하는 시기가 비슷해 수강하고 싶은 연수에 모두 참여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이들을 위해 방학기간 외에 학기 중 연수, 온라인 연수를 함께 진행해 준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많은 연수기관들이 교재나 동영상 등 연수 때 제공하거나 소개한 자료를 연수기간 동안 단기적으로 배포하고 마는 경우가 많다. 교사 연수의 목적은 교사의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수 자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면 보다 높은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연수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한다. 경제교육연수, 법교육연수, 환경교육 연수 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연수의 주제를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잡고는 한다. 주제가 광범위하기에 구성되어 있는 강좌들의 주제도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 그러나 자격연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수는 1주일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한 과목은 몇 시간 정도에 끝이 난다.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주제를 불과 몇 시간에 마치려다보니 강의내용 역시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주제를 세분화하고 강의 내용 역시 주제에 맞추어 전문화해 진행된다면 연수의 질을 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넷째, 자격연수의 경우 과목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자격연수는 직무연수와는 다르게 비교적 오랫동안 연수가 이루어지며, 연수 시간도 많은 편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시간을 채우기 위해 교과목이 중복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과목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을 중심으로 해야 하겠지만 교사들의 대학원 진학률도 굉장히 높고, 또 이와 연계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방법론이나 조사방법론 등의 과목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인구주택총조사 자료활용 활성화 방안

초 중등 학생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활용을 활성화 시키는 길은 (1) 교사들이 인구 통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수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과 (2)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이용하는 교과서의 내용에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최대한 삽입하여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 그리고 (3) 학교 구성원 및 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1) 초 중등 교사를 통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활용

초 중등교사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활용을 활성화 하는 길은 먼저 초 중등교사 임용 전에 예비교사 양성기관(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 정규교과목으로 부과하여 교사가 되기 전에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대한 가치와 이용방법을 이해하고 현장에 나가는 방법이 있다. 다음은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통하여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여 교실에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이용을 늘려가는 방안이 있다.

가. 교대 재학생 및 사범대학의 사회과 전공 학생들에 대한 “사회통계” 교과목 개설 및 지원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초등교사 양성을 위해서 전국 11개 교육대학교¹⁰⁾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그리고 사립대학으로 이화여자대학교의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초등교사로 진출하는 신입교사는 위의 13개 대학에서 초등교사자격을 획득한 자에 한하여 소정의 임용고사를 거쳐 현장에 교사로 근무하게 된다.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양성기관이 사범대학이다.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가 있고, 주요 사립대학에도 사범대학이 있어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있다.¹¹⁾ 그리고 일반학과에서도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대학과 학과별로 상이하며, 교사자격증의 취득이 가능한 학과에서도 1학년 성적이 학과 내에서 상위 10%내에 들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끝으로, 각 사범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이수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상의 세 가지 과정을 거쳐 중등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용고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임용고사 합격률은 대학과 전공별로 매우 상이하지만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대학은 거점 국립대의 사범대학과 한국교원대학교, 그리고 주요 일부 사립대학교가 있다.¹²⁾ 임용고사의 경쟁률이 매우 높으므로 일반학과에서 교직과목을

10) 서울교대, 경인교대, 강원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진주교대 및 제주교대로 총 10개 교육대학교가 있다.

11) 국립대학으로서 사범대학은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제주대, 순천대, 안동대, 경상대와 한국교원대가 있고, 사범대학이 있는 주요 사립대학은 고려대, 이화여대, 동국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한양대, 홍익대, 청주대, 서원대, 대구대 등이다.

12)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높은 대학은 국립대학으로 서울대, 강원대, 충북대, 공주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등 거점 국립대학과 한국교원대가 있고, 주요 사립대학은 고려대, 이화

이수한 경우나 교육대학원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용고사 합격률이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한편,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경우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으며,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것은 전공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전공은 사회교육과, 그 중에서도 일반사회교육(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 포함) 전공이 중심이다. 그러므로 예비교사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활용을 높이는 것은 이들 사회과교육¹³⁾ 전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이나 초등교육과의 경우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춰서 전 과목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고, 과목별 심화과정이 개설되며, 심화과정에는 사회과 심화과정이 있다.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의 경우 일반사회교육과(또는 사회교육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있으며, 사회교육과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사회, 역사 및 지리교육전공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초·중등 교사양성기관에서 일반사회교육전공(초등의 경우 사회과 심화과정) 예비교사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학생들이 학교현장에 나가서 사회현상을 설명할 때 자료이용이 친숙해 질 것이다. 대학 교육과정에 인구주택총조사와 직접 관련된 교과목은 없고, 총조사결과를 일부라도 활용하는 교과목을 든다면 “사회통계”, “인구와 사회”(또는 “인구학”), “인구지리”, “GIS”, “도시농촌사회학”, “사회과학방법론”, “사회조사방법”(또는 “사회조사연습”)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13개 초등교사 양성기관과 일반사회교육전공과 지리교육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거점 국립대학 및 주요 사립대학의 사회심화과정(초등) 또는 일반사회교육전공 및 지리교육전공(중등)의 교육과정에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의 교육과정 포함 여부와 개설여부를 정리하면 다음 [표 5-1] 및 [표 5-2]와 같다.

전국 교육대학(한국교원대 및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포함)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은 공통적으로 “다문화 교육”관련 과목이 거의 대부분 대학에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표 5-1] 참조). 이것은 최근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초등학교에서 사회통합목적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 결과이다. 정부의 행·재정 지원으로 초등 예비교사인 전국 교육대에 “다문화교육”관련 과목개설과 운영 및 지역 학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다문화관련 과목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 대학에 연구방법관련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인구총조사결과 관련 자료는 강사에 따라 레포트 작성 등에 활용을 권고하는 정도로 보고 보면 될 것이다.

전국 사범대학의 사회과(일반사회 및 지리교육 전공)의 경우는 교육대학의 경우보다 전공 관련 과목이 좀 더 다양하다([표 5-2] 참조). 많은 대학에 연구방법관련 과목(사회과학방법론, 사회조사방법 등)이 개설되어 학생들에게 과제가 주어진다면 관련통계자료의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리교육에 개설되어 있는 인구지리학을 비롯하여 GIS 과목에서 총조사결과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 외에도 사회통계, 인구와 사회(인구학), 다문화 교육 등의 과목에서 총조사자료를 이용하지만 개설대학과 학과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초·중등 예비교사의 사전교육(총조사의 이해 및 자료활용)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여대, 동국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3) 사회과 교육전공은 일반사회교육, 역사교육, 지리교육 및 공통사회교육전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부대학에서는 사회교육전공에 일반사회교육전공만을 포함하기도 하고, 다른 대학에서는 역사교육전공과 지리교육전공을 포함하여 사회과교육의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표 5-1] 전국 교대 사회(일반사회)교육과 사회통계 또는 관련 과목 현황

대학명	교과목명	필수.선택	개설학년	개설여부	비고
경인교대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양선택	1	개설	
공주교대	다문화교육의 이해	일반교양선택	1,2	개설	
광주교대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양선택	1	개설	
대구교대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양선택	1	개설	
부산교대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양선택	1	개설	
서울교대	사회과학방법론	필수	2	개설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양선택	알수없음	개설	
전주교대	다문화의 이해	교양선택	1	개설	
	다문화교육론	전공선택	4	알수없음	
제주교대	다문화교육의이해와 실제	교직과정선택	1	개설	
	사회과학현장학습연구	전공선택	3	알수없음	
진주교대	다문화사회윤리	교양선택	1,2	개설	
	사회과교육연구방법론	전공선택	4	알수없음	
청주교대	다문화의 이해	교양선택	1	개설	
춘천교대	다문화사회와교육,다문화교육과건강가정	교양선택	1	개설	
	다문화교육 세미나	전공선택	4	알수없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양선택	1,2	알수없음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다문화교육의 이해	교양선택	1	개설	

[표 5-2] 전국 사범대 사회(일반사회, 지리)교육과 사회통계 또는 관련 과목 현황

대학명	교과목명	필수.선택	개설학년	개설여부	비고
강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사회교육연구방법	선택	2	알수없음	
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사회조사론과 교육	알수없음	3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사회과조사방법	알수없음	알수없음	개설	
경상대학교 지리교육과	지도학 및 GIS	필수	3	개설	
공주대학교	사회과학방법론	필수	1	개설	

일반사회교육과	사회조사연구	선택	2	알수없음	
공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인구지리학	선택	2	알수없음	
부산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사회조사방법	필수	2	개설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GIS및 실습	선택	3	알수없음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과학방법론	필수	2	개설	
	사회교육과 조사방법	선택	2	알수없음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지리정보체계와 지리교육	필수	2	개설	
	인구지리학개론	선택	4	알수없음	
순천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과학방법론	필수	2	개설	
전남대학교 지리교육과	인구와 자원교육	선택	2	알수없음	
	GIS교육및실습	선택	3	알수없음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공통사회전공)	지리정보체계의 이해	선택	3	알수없음	
	지리정보체계의 응용	선택	4	알수없음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교육전공	사회조사방법	선택	2	알수없음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지리교육전공)	인구지리학, GIS및 실습	선택	2	알수없음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조사방법론	선택	2	알수없음	
	사회과학방법론	필수	3	개설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사회과학방법론	필수	3		
	사회통계학	선택	1		
	인구와 사회	선택	2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인구지리학	선택	2		
고려대학교 지리교육과	인구지리학, 지리정보론	선택	알수없음	알수없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과-지리교육 전공	GIS이론 및 응용	필수	2	개설	
	지리통계	선택	3	알수없음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생활과-일반사회 교육전공	사회분석방법	선택	2	알수없음	
동국대학교 지리교육과	GIS	알수없음	3,4학년	알수없음	
	인구와 경제활동	알수없음	2,3학년	알수없음	
성균관대학교	없음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과학방법론	알수없음	4	알수없음	
청주대학교 지리교육과	인구지리학	선택	2	알수없음	
	GIS와 지리교육	선택	3	알수없음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사회과학방법론	필수	2	개설	
서원대학교 지리교육과	지리정보활용 및 실습	선택	2	알수없음	
	인구지리학	선택	3	알수없음	
대구대학교 지리교육과	통계처리실무	공동교양	1		
	인구지리	선택	3	알수없음	
대구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통계처리실무	공동교양	1		
	사회과학방법론(1),(2)	선택	(1)-2 (2)-3		
	다문화사회에서 시민윤리교육	선택	2		

그러므로, 예비교사를 위하여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사회통계”나 유사한 과목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이 교과목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담당교수(또는 강사)를 위하여 실라버스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개설되지 않을 경우와 교육과정에 조차 관련교과목이 없을 경우 “사회통계”(또는 “인구학”)개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예는 2008년부터 교육과학부의 지원으로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포함)에 “다문화교육”과목을 개설하고, 2009년부터 주요 사범대학에 동일한 교과목을 개설하여 연구, 강의준비 및 강사료를 지원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예비교사가 익혀야 할 과목이므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교과목의 경우는 “다문화교육”과 달리 전공과 연계하여 개설함으로써 초·중등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연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예비교사에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대한 활용가치와 활용방법을 교육하여 학교현장에서 수업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

교육대학(초등교육과 포함)의 사회과 심화과정과 사범대학(국립, 사립 포함)의 일반사회 및 지리교육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함.

(3) 방법

대상 전공의 교육과정에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한 실라버스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을 위한 자료를 지원함. 이 경우 담당 교수(또는 강사)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인구주택총조사의 중요성과 활용가치를 논의하고, 양성대학에서의 역할을 토의함. 단, 인구주택총조사관련 교과목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여 신규로 교과목을 개설, 운영하는데 대한 재정지원과 자료제공을 검토할 수 있음.

(4) 효과

인구주택총조사 관련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이해와 결과의 활용방법을 습득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수업에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임.

나. 초·중등교사에 대한 직무연수과정 개설

초·중등학교 교사는 연간 총 3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직무연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교육연수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연수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각종 연수(자격연수, 직무연수 등)를 총괄하고 있다. 자격

연수는 교육연수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직무연수는 전문분야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연수원 외의 연수원이나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타 기관에서 운영하고, 그 실적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개발원에서 교사대상 경제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경기도 교육연수원의 의뢰를 받아 경기도내 교사대상 인구교육전문강사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등이 있다.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초 중등 학교현장에서 수업에 적용하여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초 중등 교사대상 인구관련 직무연수를 통계교육연수원에서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 때 통계교육연수원이 대전광역시교육연수원(다른 지역 연수원도 가능)의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직접 수강생을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직무연수를 수행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목적

초 중등학교 현직교사에게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효율성과 활용가치를 이해시키고, 학교현장에서 수업에 적극 활용하여 초 중등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대상

초등학교 교사와 중등학교 교사(일반사회 또는 지리전공) 중에서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능동적으로 수업에 활용할 교사를 대상으로 함.

(3) 방법

통계교육연수원이 광역단체의 교육연수원으로부터 교사대상 직무연수가 가능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 초 중등교사대상 인구통계관련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개설 운영함. 초 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서로 다르고, 교사의 전공이 다르므로 직무연수프로그램을 초등교사용과 중등교사용으로 분리하여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함. 이 때 교육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함.

(4) 효과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인구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하게 되므로 인구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변화를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으며, 과정을 이수한 교사들이 현장교육활동을 통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을 기대.

다. 초등교사 및 중등 사회과교사 자격연수과정에 강좌 삽입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세 번째 연수프로그램은 초 중등교사의 자격연수과정에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이해하고, 활용가치를 극대화 하는 과목을 삽입하는 것이다. 초 중등교사는 임용당시에 2급 정교사자격증을 소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용 후 3~4년 후부터 6주간(180시간) 소정의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1급 정교사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정교사 자격연수 외에도 각종 직무연수 프로그램이 운영되지만 연수기간이 짧게는 2~3일(15시간), 길어야 2주

간(60시간)에 특정 목적의 연수가 이루어지므로 일반교양과목으로 인구주택총조사 관련과목을 추가하기는 매우 어렵다.

1급 정교사자격연수는 총 18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양(22~26시간), 교직(26~32시간), 전공(115~128시간) 및 평가·행정(4~8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5-3]에 정리한 것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연수원에 개설된 각종 자격연수 프로그램에 사회(인구)통계관련 교과목 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인구통계나 사회통계과목은 없고, 인구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는 내용의 교과목은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사회 또는 다문화사회와 관련된 학교교육을 위한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연수원과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중에서 서울시, 부산시를 포함한 10개 교육연수원에 인구통계활용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대전시와 경기도의 교육연수원에는 2009년 이후에 인구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자격연수가 없었으며, 광주시,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및 제주도의 교육연수원의 자격연수에 포함여부는 미상이다.

저출산·고령사회관련 교과목의 내용은 우리나라 인구변동과 고령화를 이해하고, 고령사회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인구교육을 위한 교사교육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다. 다문화관련 교육 또한 우리나라 인구현상의 변화와 함께 늘어나는 다문화가정과 그 자녀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만드는 통합사회로의 교육목적이 있다. 대부분 교양과목으로 개설하여 가볍게 접하는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부산시의 중등 일반사회 1,2급 정교사자격연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된 교과목을 전공과목으로 편성하였고, 충북, 충남, 전남에서는 다문화교육을 전공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 5-3] 광역자치단체 교육연수원 각종자격연수 사회통계(인구)관련 교과목 현황(2010)

연수원	과정명	과목명	교양·전공여부	시간수	비고
서울특별시	초등학교교장 자격연수	저출산·고령화 대비 학교교육	교양	2	
	초등학교교감 자격연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교육	교양	2	
	초등 1,2급 정교사 자격연수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교육	교양	2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교육의 과제	교양	3	
	중등학교교장 자격연수	저출산고령화사회와 교육	교양	2	
	중등학교감자 격연수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	교양	2	
	중등공통사회1 ,2급정교사	저출산고령사회의 이해	교양	2	
		사회과의 다문화 교육	전공	4	
	중등일반사회1 ,2급정교사	사회과의 다문화 교육	전공	2	2009
중등지리1,2급 정교사	저출산과 인구노령화	전공	3	2009	
부산광역시	초등교감자격 연수	다문화의 이해	교양	2	
	초등1,2급정교 사자격연수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교육	교양	2	
	중등교장자격 연수	다문화사회의 이해	교양	2	
	중등일반사회1 ,2급정교사	다문화 사회의 이해	교양	2	2009
저출산 고령화 대비 방안		전공	2		
대구광역시	초등학교교감 자격연수	다문화 교육의 이해	교양	2	
대전광역시	없음				

울산광역시	초등교감자격 연수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교육 과제	알수없 음	알수없 음	
	중등교감자격 연수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교육 과제	알수없 음	알수없 음	
광주광역시	알수없음				
인천광역시	초등1,2급정 교사자격연수	다문화어울림교육	교양	2	
	중등교감자격 연수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교육의 과제	교양	3	채택연수
경기도	없음				
강원도	알수없음				
충북	초등1,2급정 교사자격연수	다문화 가정의 이해	전공	3	2009년 원격연수
충남	초등교감자격 연수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 이해교육	교양	3	원격연수
	초등1,2급정 교사자격연수	다문화가정의 이해	전공	3	2009년 원격연수
경북	알수없음				
경남	초등교감자격 연수	다문화 사회의 이해	교양	2	
	초등1급정교사 자격연수	다문화 사회의 이해와 교육의 실제	교양	2	
전북	알수없음				
전남	초등1급정교사 자격연수	다문화어울림교육	교양	2	2009
	초등교장자격 연수	다문화교육의 이해	전공	알수없 음	2009
제주	알수없음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 수원	중등교장자격 연수	다문화·다종교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의 과제	국가정 책지도 성	알수없 음	
	초등교장자격 연수	다문화·다종교사회에서의 학교교육의 과제	국가정 책지도 성	알수없 음	

한편,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연수원에서 개설한 연수프로그램 중에는 단기로 인구관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표 5-4]에 정리한 것과 같이 다문화교육과 인구교육을 위한 직무연수를 대전시를 포함하여 5개시도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에서 개설하고 있다.

[표 5-4] 광역자치단체 교육연수원 사회통계(인구)관련 직무연수 현황(2010)

연수원	과정명	과목명	시간수	비고
대전광역시교육연수원	인구/다문화교육	초·중등 인구·다문화교육 직무연수	30시간	
강원도교육연수원	직무연수	다문화 가정	15시간	
경북교육연수원		다문화이해교육 직무연수	30시간	
전남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초등 다문화 교육 직무연수	60시간	
		다문화이해교육교원직무연수	30시간	2009
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직무연수	인구교육교사 양성 연수 (심화과정)	30시간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교원연수과정에 인구통계(사회통계) 과목을 삽입하기 어려울 경우 유사과목에서 통계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 내에 인구(사회)통계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정해진 시수 내에서 독립된 과목설치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각 정부기관은 물론 연구기관, 사회단체, 기업들 까지도 관련 홍보를 겸한 교과목의 개설이나 소개를 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이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행 기존의 교과목에서 인구통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과목이 저출산·고령사회와 다문화사회 관련 교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목에 인구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1) 담당 연구사와 담당 강사가 인구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고, (2) 이들이 강의할 때 인구통계관련 자료를 쉽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1) 교육연수원의 담당 연구사와 인구관련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들을 위한 워크숍을 통하여 인구통계를 이해하고, 인구통계와 관련분야, 즉 저출산·고령사회 또는 다문화사회교육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다음은 (2) 인구관련 교과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 실라버스를 개발하고, 여기에 맞는 강의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한다면 연수프로그램 내에서 인구관련 통계의 활용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사교육은 바로 학생대상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 신교육과정에 인구주택총조사결과 및 사회통계 활용을 최대한 삽입

가. 교과서 저자 및 출판사 편집팀을 대상으로 워크숍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는 교과서이고, 이 교과서는 국정과 검정으로 구분된다. 국정교과서는 대체로 초등학교 교과서라고 한다면, 신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이후의 대부분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 교과서 저자와 출판사의 편집팀이 개발하여 국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의 내용에 통계자료를 어떻게 삽입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이 필수적이고, 실질적인 통계자료를 접할 수 있고, 반드시 익히고 가야하는 과정이 주어진다. 교과서에 자료를 삽입하기 좋은 기회는 신교육과정에 따라 신교과서를 개발할 때와 매년 사회의 변동과 자료의 변화로 보완할 때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과서는 전면 개편 중에 있다. 신교육과정에 따라 편제된 교과서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단계별로 학교현장에 보급되고, 학생들이 신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연도별 신교과서 적용연도는 다음과 같다.

- 2009년도: 초등학교 1~2학년용
- 2010년도: 초등학교 3~4학년용, 중학교 1학년용
- 2011년도: 초등학교 5~6학년용, 중학교 2학년용, 고등학교 1학년용
- 2012년도: 중학교 3학년용, 고등학교 선택교과 일체

그러므로 2010년도 현재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신교과서로 공부한다. 2011년도에 현장에 배포될 교과서는 현재 시험적용 후 보완하여 신학년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보급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이후 선택교과서는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2011년 초에 심사 후 선정하고, 선정된 교과서는 현장 시험적용을 거쳐 최종본을 인쇄하게 된다. 이러한 교과서 개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은 교과서 저자(또는 연구자 및 집필자)와 출판사의 편집직원들이 된다.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는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통계(표와 그래프), 사진, 만화, 탐구학습과제, 연습문제 등 다양한 자료와 과제가 제공된다. 이 때 필요한 자료를 저자와 편집팀에서 직접 구하거나 기존의 자료를 구득하는 경우인데 이 때 꼭 필요한 자료(예를 들면, 사회과에 필요한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한 그래프 등)를 직접 제공하면서 통계의 다양한 유용한 면을 이해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면 교과서에 자료를 삽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한 교과서에 단 하나의 통계자료만 추가되었거나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교사와 학생들은 이 자료를 직접 이용하여 교과서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노력을 하게 되므로 그 파급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이다.

교과서에 연구자료를 추가(또는 보완)하는 노력으로 교과서 저자들과 출판사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은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용 교과서를 개발한 2008년부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선택교과를 개발하는 2010년도가 가장 효과적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에는 2012년도에 적용할 교과서를 시험적용하고, 보완하는 기간이므로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또한, 이미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경우에도 매년 수정·보완하는 기회가 있으므로 꼭 필요한 사항(또는 자료)이 있을 경우 보완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한지 충분히 준비하여 교과서 저자와 편집팀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이것은 교과서연구를 별도로 수행하여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조작하여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사전연구가 충분해야 할 것이다.

나. “통계연구시범학교”와 “사회과교사의 통계활용교과연구회” 지원 및 운영

학교현장에 통계자료의 활용을 극대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장연구가 필요하다. 즉,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교과서의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활용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교사교육에서 무엇을 어떤 경로를 거쳐 교육하는 것이 현장에서 가장 잘 적용되는가? 또는 통계자료를 이용한 현장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학생들이 가장 잘 이해하고, 응용력이 생기며, 가장 오래 기억하고 활용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실제 현장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학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함으로써 앞으로 가장 효과적인 통계자료활용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단위의 종합적인 접근을 위하여 연구시범학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교사들의 자질향상과 수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신들의 연마를 위하여 노력하는 소모임인 교사연구회(일명 교사동아리)를 구성하고, 행정지원 등을 함으로써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돕는 방법이 있다. 연구시범학교의 경우 통계청에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와 관련하여 학교인구교육시범학교와 교사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 프로그램을 수록하여 참고하였다.

(1) 학교인구교육 시범학교 구성 및 지원(사례 1)

(가) 필 요 성

□ 인구 동향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명에서 2009년에 1.15명으로 낮아짐. 사망률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2050년에는 65세 이상인구가 총인구의 38.2%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유소년인구(0~14세) 감소세와 노령인구(65세이상)의 증가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전망

□ 교사·학생들의 인식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자녀 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함

○ 교사들이 인구교육(출산 및 가족 관련 수업)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음

- 출산 관련해서는 수업 보조 자료의 부족, 가족 관련해서는 학습내용의 진부함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 앞으로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인구교육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인구교육의 체계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임

인구교육 시범학교 운영의 효과성

○ 인구 추세 변화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역량 있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 대한 인구교육 필요

- 인구교육에 대한 인프라와 교사들의 인식 부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음

- 변화에 대한 준비로써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 현장의 인구교육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교육 현장의 모범적인 인구교육 활동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인근 학교에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 시범학교 활동을 통해 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임

(나) 사업내용

지원 사업 계획수립

○ 인구교육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수립

○ 인구교육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설정

지원 및 활동

○ 워크숍을 통한 시범학교 활동 방향 안내

○ 실질적 활동을 위한 지속적 의사소통과 점검 관리

○ 운영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리 및 평가

○ 활동결과물을 통해 우수 시범학교 선정(초등학교 1개교, 중등학교 1개교)

○ 연구 및 교육활동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질 개선 유도

(2)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 구성 및 지원(사례 2)

(가) 필요성

인구 동향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 2.8명에서 2009년에 1.15명으로 낮아짐. 사망률의 감소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2050년에는 65세 이상인구가 총인구의 38.2%에 도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심한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유소년인구(0~14세) 감소세와 노령인구(65세이상)의 증가추세에 따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전망

교사-학생들의 인식

○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혼·자녀 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함

○ 교사들이 인구교육(출산 및 가족 관련 수업)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음

- 출산 관련해서는 수업 보조 자료의 부족, 가족 관련해서는 학습내용의 진부함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음

- 앞으로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를 통해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인구교육의 체계화가 시급하게 필요한 실정임

□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 활동의 효과성

○ 인구 추세 변화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역량 있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 대한 인구교육 필요

- 인구교육에 대한 인프라와 교사들의 인식 부족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한계가 있음

- 변화에 대한 준비로써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교육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인구교육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교육 현장 교사들의 연구회 활동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침

○ 교사들의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 수행된 교과연구회 구성·지원 1차년도 사업결과에 대한 홍보 및 보급의 활성화가 필요함

- 교사들이 현장수업에 대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내 및 지원이 필요함

(나) 사업내용

□ 지원 사업 계획수립

○ 인구교육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운영 계획수립

○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 심사기준 설정

□ 모집 공고 및 선정

○ 인구교육을 위한 교사 연구회 조직 활성화 유도

○ 우수 인구교육연구회 선정

□ 지원 및 활동

○ 워크숍을 통한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 활동 방향 안내

○ 실질적 활동을 위한 지속적 의사소통과 점검 관리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리 및 평가

○ 활동결과물에 대한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연구회 선정

○ 연구 및 교육활동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질 개선 유도

□ 우수결과 보급 및 홍보

○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를 공유하여 교육현장에 일반화

○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구교과연구회(교과학습동아리) 사업 홍보

3) 기타 프로그램

가. 인구주택총조사 및 사회통계 활용사례 보급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학교현장에 보급하는 것은 교과서에 수록하고, 교사들을 교육하고,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학교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교사, 학생, 학부모)이 흥미를 끌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인구자료는 사회의 모든 면에 관련이 있는 통계이므로 인구변동을 사회현상과 연계하여 설명한다면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 때 토픽은 대상자들의 관심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때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이 빠르고, 효과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대학진학과 관련하여 전공분포와 취업여부를 연계하거나 지역(또는 주요도로)별 정체를 주변 인구변동(또는 직업별 인구변동)이나 자동차수의 변동, 알파걸의 특성과 같은 토픽을 인구주택총조사자료로 흥미 있게 설명하고, 보급(인터넷, 이메일, 방송 등)한다면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료의 제공을 정기적(예를 들어 매주)으로 추진한다면 일정한 시간이 경과 후에는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를 기다리게 될 것이다. 매주 1회씩 흥미 있는 토픽에 대한 자료가 발표된다면, 연간 52편으로 단행본을 발간하여 현장교육의 살아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인구통계 포럼” 개설 및 운영

앞에서 학교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토픽별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보급한다면, 인구통계포럼은 보다 전문적인 사안으로 교사나 일반인의 직업이나 필요에 충족하면서 사회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포럼”을 구체적으로 구상한다면 다음과 같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1) 목적

- 1) 인구통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현상을 인구통계로 이해함.
- 2) 인구통계자료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일반인의 인구통계 활용을 극대화.
- 2) 인구관련 사회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방법

- 1) 매월로 1개 주제에 대한 심층연구결과를 발표하고, 4~명의 토론으로 주제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완.
- 2) 주관기관(또는 주관부서)에 「인구통계포럼」을 설치하고, “포럼운영위원회”에서 계획수립 및 시행.
- 3) 발표한 원고를 재편집하여 연1회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보급.

(3) 조직

- 주관: “인구통계 포럼”
- 참여기관: 통계청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한국인구학회 한국인구교육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통계진흥원 인구문제연구소 한국조사학회 등

- 재정지원: 통계청
- 포럼운영: 통계청, 포럼운영위원회

(4) 예상 주제(예시)

혼인율과 출산율 상승: 일시적인가? 반등의 시작인가?
 기업에서의 인구통계활용: 어디에 무슨 투자를 할 것인가?
 국제결혼과 노동력 수입: 저출산·고령화 극복의 수단인가?
 늘어나는 평균수명: 축복인가? 고통인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간의 갈등: 복지부담 증가와 정치세력 불균형
 통계로 본 현대인의 사망원인: 자살이 늘어나는데?
 통계로 본 가족과 가족관계의 변화: 부모-자녀 관계의 재정립
 농촌의 고령화: 마음의 고향이 사라지는가?
 통계로 본 주거환경: 장래 주택수요의 변화와 주택의 선택

(5) 효과

- 1) 인구통계에 대한 새로운 이슈의 개발과 해설 및 실용화로 국가 정책에 활용은 물론 기업 및 개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실용적 학술행사
- 2) 포럼에서 제기된 이슈와 그 해결책은 언론 등을 통한 확산으로 자료의 효율성을 높이는 홍보와 교육효과를 극대화

다. 인구주택총조사결과활용 지역순회 워크숍

2010 인구주택총조사결과가 2011년 상반기부터 발표하게 된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작성한 결과이므로 자료의 활용을 극대화 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자료가 수록되어 있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별도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지만 자료의 활용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2011년부터 발표되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지역별 활용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지역순회 워크숍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워크숍의 목적과 효과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각종 통계조사와 같이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대한 활용기관이나 기업 등 개인의 경우도 주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 지역통계 중심으로 지역별 자료의 가치를 홍보함으로써 자료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2) 16개 시도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고유의 조사항목을 추가하였음. 시도별 자료 활용은 제한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예에서도 나타났음. 추가항목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을 통계청이 해당 시도와 공동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3) 학교교육에서 사회과 단원에 지역단원이 있음. 이 단원에서는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 인구주택총조사결과는 가장 효율

가치가 큰 것임. 중앙에서 일괄 제공하는 인구관련자료는 일반적으로 전국단위나 평균개념이라고 한다면 지역별 자료는 바로 활용할 수 있고, 이해가 명확해 질 수 있음.

(4) 지역사회의 발전과 민간 재계의 필요성에 맞춘 노력으로서의 자료활용 워크숍이 필요함.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5) 통계청은 지방 조직망을 가지고 있음. 지방통계청의 주 업무가 통계자료수집이지만 최근 지역통계서비스를 늘리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총조사 결과활용 극대화를 위한 지역별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지방통계청의 위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임.

(6) 참여기관은 통계청, 시도 및 시군구 자치단체, 시도 및 지역교육청, 지역 재계 등이 되며, 성과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음.

(7) 이 워크숍은 앞에서 건의한 포럼과 달리 총조사결과가 발표되는 2011년 하반기부터 표본항목결과가 발표되는 2012년 하반기까지 약 1년6개월간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별첨4: 교과서 내용에 따라 개발된 인구주택총조사자료 활용 수업자료

VI. 결론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신규문항에 대한 결과표의 양식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존결과표를 분석, 검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어떻게 정책에 연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인구주택총조사자료가 어떻게 학습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신규문항에 대한 결과표 양식 제시는 신규 문항별 결과표와 신규 주제별 결과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2005년 대비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질문지에 새로이 추가된 문항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다. (1) 외국인 대상 질문지에 추가된 문항으로 같은 질문을 전수조사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전수조사표의 결과표를 가능한 활용토록 하였다. (2) 10년주기 항목이어서 2005년도에 결과표가 없었던 경우는 2000년 결과표를 가능한 활용토록 하여 시계열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 마지막 유형은 국적이거나 사회생활처럼 다른 질문지나 과거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문항들이다.

신규주제에서는 다문화가구와 초고령층에 관련된 결과표를 제안하였다. 다문화가구는 외국 출신인구가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즉 다문화가구는 내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를 제외한 외국인이 포함된 다른 유형들을 포괄토록 하였다. 여기에는 외국인 뿐 아니라 현재 귀화했으나 출생시 외국국적인 경우도 포함토록 하였다. 초고령층은 85세 이상의 고령 인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고령인구내에서도 건강, 경제활동 등에서 상대적으로 활동적인 젊은 고령층과 그렇지 않은 초고령층을 구분함으로써 다가오는 고령화사회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표(안)들은 그 중요도를 각각 상중하로 매겨 제안토록 하였다. 또한 완성된 결과표 형태를 첨부로 제공함으로써 그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두번째 기존결과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는 (1)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 평가, (2) 통계선진국의 표본항목 공개 및 제공관련 사례 조사, 그리고 (3) 결과표에 사용된 영어 용어에 대한 표준영문명 제시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도 결과표는 적절성과 비교성, 크게 두 가지 지표로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적절성은 공개범위, 용어사용, 설계방식, 시의성으로 평가하였으며, 비교성은 용어일관성, 시계열성, 국제비교성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일곱 개 지표별로 해당결과표에 문제점을 O, △, X로 평가하였고, 종합 평점은 1~5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였다. 5점은 전혀 문제점을 발견 못한 경우, 4점은 약간의 문제는 있으나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경우, 3점은 문제가 확실하여 수정을 권고한 경우이며, 2점 이하의 문제점으로 인해 결과표 삭제를 권고한 경우들이다.

기존 결과표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제목 명명방식의 일관성 유지가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행정구역’을 제목에 포함시킬 경우 세부 행정구역의 공개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는지, 또는 제목에 ‘행정구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시도단위로만 제공할지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제목만으로도 어떤 내용의 결과표가 제시될지 쉽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용어의 명료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예를 들어 ‘사용방수’는 해석하는 방식에 결과표를 오해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되었다. 실제 2005년 결과표를 보면, 비거주용 건물 내 거주하는 가구의 사용방수가 평균 3.6개로 나오며, 1인 가구의 평균사용방수가 2.6개로 나오는 등 상대적으로 열

악한 거처에도 상당한 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었다. ‘주거면적’에 있어서도 가구가 사용하는 면적인지 또는 거처의 면적인지 정확성에 의문이 생길 여지가 있었다. 임차가구가 사용하는 주거의 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계결과의 신뢰성까지도 의심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인구이동에 관한 표에서도 ‘거주지유형별’ ‘거주지별’ 등 비슷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활동제약 또한 ‘육체적 정신적 제약’에 장애까지 포함됨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제약’과 ‘일상 사회활동제약’이 혼용되는 문제점 등이 지적되었다.

성과 연령변수의 제공에 있어서도 결과표에 따라 제시 방법이 제각각이었는데, 성을 제시할 경우 연령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였다. 특히 교육정도가 제시되면 반드시 연령도 함께 제시하여 교육에 따른 구분시 연령이 통제될 수 있도록 하였다. 5세 단위로 연령을 제시할 때도 상한 연령층을 세분화하여 최고령 상한선은 85세로 통일토록 하였다. 또한 사례수가 적은 세부항목은 통합하여 분류를 간소화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가구주의 손자녀, 증손자녀까지도 구분하여 분류한 경우, 출생아수에서 상한선이 10명 이상까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었다.

주택편의 경우, 주택의 종류별에서 언급된 주택수, 가구수에서 언급된 주택수와 거처의 종류에서 언급된 주택수가 제각각인 것처럼 이해하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는 통계청의 주택수에는 매매 또는 거래의 한 단위라는 개념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계산하는 등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한 주택에 두 거주 이상이 거주하는 한국적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거처의 종류별 주택수에는 공가를 제외하는 이유 또한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택편을 먼저 주택을 중심으로 기술한 후 거처로서의 주택의 특성을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통계선진국의 표본항목 공개 및 제공관련 사례 조사에서는 표본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표의 경우 그 공개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자료의 제공방법을 어떻게 할지를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외국의 경우 표본조사를 별도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이 표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 또한 2000년을 마지막으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였다. 미국의 경우 표본조사에 의한 결과표들도 전수조사에 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구역을 상세히 자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수치 또한 가중치를 이용하여 전수조사의 경우로 환산한 대푯값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샘플의 크기가 작고 조사값의 변화폭이 큰 세부 행정구역의 경우 신뢰구간이 넓게 나타나는 위험이 지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존 결과표에 사용된 영문 용어에 대한 표준영문명 제시를 하였다. 우리말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에 쓰인 영문용어를 병치시킨 뒤 용어가 사용된 분류를 제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용어의 경우 추천 영문 용어를 제시하였다.

세 번째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제표결과와 국가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초에 4개의 소주제가 설정하였다. 그것은 (1)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정책 쟁점들의 연계성에 관한 조사 연구 (2) 종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를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사례 연구 (3)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정책 활용방식에 대한 해외사례 연구 (4) 정책부서 이용자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제공방안에 관한 연구가 그것이다. 여기에 본 연구는 추가적인 검토과제로, 인구주택총조사의 입장에 본 국가통계의 역할을 설정하여, 모두 5개의 소주제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과 정책쟁점사항에 대해서는 (1) 조사대상 인구 (2) 지리적 및 국

내 인구이동 특성 (3) 국제 인구이동 특성 (4) 가족 및 가구 특성 (5) 인구학적 특성 (6) 출산력 및 사망력 특성 (7) 교육 및 사회적 특성 (8) 경제적 특성 (9) 주택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또 종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표를 이용한 인구주택총조사 활용사례연구는 인구총조사과와 한국조사연구학회가 실시한 결과를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정책목적의 연구를 포함하여, 각종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순수한 연구활동을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활용을 모두 검토하였다.

외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활용 사례연구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를 검토하였으며, 법정인구로서 선거활용이나 지방교부금의 분배에서 역할이 인구주택총조사의 정책적 활용을 증시키고 있었으며, 저출산, 고령화계획이나 행정부의 각종 시책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인구주택총조사 정보를 집계자료로든 마이크로 자료로든 적극적인 활용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정책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네덜란드 통계청 안에 정책관련 통계연구소를 설치하였음을 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네덜란드 통계의 국가통계기관으로, 정책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인구주택총조사통계와 그 성과물을 게재하도록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통계청의 통계자료 특히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에 관한 내부규정과 관련하여, 통계청이 정책목적의 통계이용자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를 요약하였다. 그 논의는 (1) 자료제공의 분류 (2) 자료제공의 범위 (3) 자료제공의 절차 (4) 자료제공의 방법 (5) 자료제공의 비용 (6) 대행기관의 운영 (7)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의 설치 및 운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현재로서는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에 관련된 내부규정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와 국가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미공표자료의 제공을 위하여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를 매번 개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미공표자료의 제공을 위한 탄력성이 있는 제공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에만 의존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봉쇄하고 있다는 인상을 제거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책연구를 위한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자료의 제공이 통계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통계의 공공성 확대나 심화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 특히 사생활 보호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정책목적으로 생산된 통계는 위탁기관에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도 통계청이 관여하는 하나의 통계상품으로 국가통계의 일부분이 되어서 웹사이트나 통계청의 간행물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과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대상인구를 현재의 행정구역에 따른 집계방식을 넘어서 다양한 지역 범주로 공표하는 방식을 개발하고, 경제활동 조사항목과 같은 다양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전문성이 강화된 통계조사 때문에 무시되어 왔던 조사항목을 인구주택총조사가 갖는 고유한 특성인 “소집단 통계”(small-area statistics)의 작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관련 통계이용자에게 간단하고, 가공수준이 높은 장기시계열 자료를 제공하고, 지리적으로 상세한 통계정보를 개인정보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로 제공해야 하며, 통계지도를 이용하여 통계정보를 가시적으로 전달하며,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의 원자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네덜란드 통계청과 같이 통계청 내부에 정책관련 통계연구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파일럿 프로젝트로서는 성공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통계청이 내부적으로 정책관련 통계연구소를 만들거나 외부적으로 정책관련 통계를 개발할 수 있는 위탁기관을 정하는 것이 당면한 과제일 수는 있지

만, 통계청이 국가통계기관으로서 다른 국가행정기관과는 달리 엄격한 중립성과 성실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각종 법률 특히 통계법이나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은 그들이 관리하는 행정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는 물론 다른 통계조사의 자료로 그리 신중을 기하지 않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제공방안의 개선과 더불어,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의 각종 통계들이 관련 입법에 연계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통계기관으로서의 품격을 향상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학교교육의 효율성 높이기 위하여 교사들이 수업에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였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인구통계에 대한 인식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교사대상 교육(또는 연수)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앞으로 교사양성과 연수를 위한 기본방향을 구상하였다.

교과서의 내용과 연계하여 담당교사가 활용하기 쉽고, 수업에 유익한 내용이 되도록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그래프나 통계표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사용빈도를 높였다.

각급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미래형 교육과정(2009)에 따라 개별 교과서의 개발과 적용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2010년 현재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신교과서(초등 3-4학년용 및 중 1학년용)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단, 2009년부터 새로이 적용하고 있는 초등 1-2학년용 교과서는 통합교과이고, 통계자료의 활용이 어려운 단계이므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에 전 교과서를 동시에 교체하므로 현행 교과서 중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활용이 많은 '사회문화' 교과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육현장에 효과적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별첨4 참조).

교사들이 인구통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수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반영과 현장교사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구상하였다. 교사들의 통계관련 자질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교사양성기관(교육대, 사범대 중심)의 교육과정을 검토하여 예비교사교육방향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연수원의 현장교사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개별 교사의 인구통계 인식향상을 위한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 연구에서 논의한 방안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초·중등 교사를 통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활용

가) 교대 재학생 및 사범대학의 사회과 전공 학생들에 대한 “사회통계” 교과목 개설 및 지원

나) 초·중등교사에 대한 직무연수과정 개설

다) 초등교사 및 중등 사회과교사 자격연수과정에 강좌 삽입

(2) 신교육과정에 인구주택총조사결과 및 사회통계 활용을 최대한 삽입

가) 교과서 저자 및 출판사 편집팀을 대상으로 워크숍

나) “통계연구시범학교”와 “사회과교사의 통계활용교과연구회” 지원 및 운영

(3) 기타 프로그램

- 가) 인구주택총조사 및 사회통계 활용사례 보급
- 나) “인구통계 포럼” 개설 및 운영
- 다) 인구주택총조사결과활용 지역순회 워크숍

초·중·고등학교 사회과의 교과서 과정에 맞추어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현장 교사들에게 배부하고,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과 현직교사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으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1) 관련 교과서의 내용에 맞는 수업안과 수업교재개발은 교사들이 수업에 통계자료이용을 확대하고, 수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2) 학교현장에서 통계(특히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이용한 수업을 일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통계에 대한 가치와 새로운 인식(교육과 삶에 있어서의 유용성, 국가통계에 대한 신뢰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음
- 3) 예비교사들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인구통계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통계에 대한 사전 지식의 함양, 그리고 현장교사들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인구교육에 대한 지식과 인식의 전달을 가능하게 할 것임.
- 4) 학생과 교사의 국가통계(특히 인구주택총조사결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환경(대국민 홍보, 국민의 인식, 응답에 대한 의식 등)의 개선효과 기대

제한점 및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초·중등학교 현장에 인구주택총조사자료의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기초연구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구가 필요한 분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학(특히,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에 인구통계관련 교과목을 삽입하고, 실제 과목을 개설하자면 사전에 실라버스의 개발, 교육자료의 준비 등과 같은 연구가 필요함.
- 2) 교사교육을 위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인구통계관련 연수내용을 넣기 전에 학교현장에서의 교사활동, 연수프로그램의 효과성, 전공별 교사들의 필요분야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연수기관이나 연수참가자(교사)들의 사정에 대한 검토 필요.
- 3) 신 교육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저자나 편집팀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맞는 내용에 대한 사전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교과서 개발팀에 못지않은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4) 연구시범학교나 교사연구동아리를 지원할 때에는 무슨 연구를 수행할 것인지 사전 현장연구가 있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음.
- 5) 시도별 순회워크숍을 준비할 경우 지역사정을 감안한 인구주택총조사결과의 활용가치를 연구하여야 지역정책이나 재계의 활용은 물론 학교현장의 지역단원에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음.

나. 본 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이용한 초·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육의 수업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이들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함께 정리하였다.

1) 2010년에 개발하는 수업자료이지만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 까지만 반영할 수 있음

2) 현재 학교급별 교과서가 단계적으로 개편 및 적용 중이므로 다음 구 교육과정에 의거 개발된 교과서는 향후 2년간 전면 교체될 예정임

- 초등: 5-6학년 사회(2011)
- 중학: 2-3학년 사회(2011-12)
- 고등: 전 사회교과서(2012)

3)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 교과서는 향후 2년간 단계적으로 전면 교체되므로 신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수업자료의 개발과 보급을 2년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함. 이 경우 2012년에 전 교과서에 대한 인구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수업교재제공이 완료될 것임. 또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반영한 통계자료의 제공과 활용이 가능할 것임.

<참고문헌>

II. 신규문항 결과표 설계 방안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의 다문화사회 실험 -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 42집 2호
-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2009.8
- 윤인진,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한국사회학
- 윤주현편, 2002 「한국의 주택」 통계청
- 이경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법학논고 제 32집
- 이성연, 최유 [공]연구, “다문화가정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 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 장명선·이옥경. 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보고서.
- 김승권 외, 2009,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 보건복지부·법무부·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학민, 2010, “80세 이상 초고령 인구 추정방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방하남, 2010 “동아시아의 인구 고령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서울대 인구센터 개소식 기념 심포지엄.

IV. 인구주택총조사와 정책

- 권태환·김두섭(2002),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민경(2000), 인구센서스의 이해, 도서출판 글로벌
- 민경희(2002), “노동력”, 김두섭, 박상태, 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제11장 수록논문. 통계청
- 전광희(2005),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출산·사망예측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용역보고서, 통계청
- 전광희 외(저)(2007), 인구통계-기초와 응용, 통계개발원
- 통계개발원(2008), 한국의 인구·주택-인구주택총조사 종합보고서, 한국인구학회 용역보고서, 통계개발원.
- 통계청(2006), 통계청 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내부규정, 통계청 통계정책국 내부자료.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웹사이트(www.census.go.kr)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과 (201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자료이용기관 설문지 분석결과”, 한국조사연구학회 공동수행 집계결과.
- 행정안전부(2010), 행정구역 편람, 웹사이트자료.
-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수록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국 웹사이트(Statistics bureau, Japan)(www.stat.go.jp).
- 오스트레일리아 통계국 웹사이트(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www.abs.gov.au).
- 싱가포르 통계국 웹사이트(Statistics Singapore) (www.singstat.gov.sg)

中河伸俊(1988), 社会問題の社会学—構築主義アプローチの新展開 (SEKAISHISO SEMINAR), 東京: 世界思想社.

副田義也(1989), 社会問題の社会学, 東京: サイエンス社

Gosse van der Veen (2007), Statistics Netherlands Multiannual Strategic Plan, A Presentation for Day of Statistics, Austria, Statistics Netherlands

United Nations (2006), 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 Recommendations for the 2010 Censuses of Population and Housing, UNECE and Eurostat, New York and Geneva. (특히, Appendix II,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 in the context of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를 참고할 것)

United Nations (2007),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for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es, Revision 2, 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New York.

United Nations (2008), Measuring population and housing Practices of UNECE countries in the 2000 round of censuses, UNECE and Eurostat, New York and Geneva.

V.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1997), '7차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2007), '7차개정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개정 교육과정'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2010), 『초등학교 사회 3-1』,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2010), 『초등학교 사회 3-2』,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2010), 『초등학교 사회 4-1』,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2010), 『초등학교 사회 4-2』, 국정교과서편찬위원회

김종욱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교학사.

김주환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교학사.

허우금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교학사.

서태열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금성출판사.

김학훈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대교.

박승규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더텍스트.

최병모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미래엔컬처그룹.

최성길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비상교육.

최병두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삼화출판사.

기근도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새롬교육.

이진석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지학사.

노경주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천재교육.

류재명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천재교육.

박병익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천재교육.
 기세훈 외(2009), 『중1 사회 교과서』, 법문사.
 전숙자 외(2002), 『사회문화 교과서』, 교학사.
 김태현 외(2002), 『사회문화 교과서』, 금성출판사.
 김병무 외(2002), 『사회문화 교과서』, 미래엔컬처그룹.
 최현섭 외(2002), 『사회문화 교과서』, 중앙교육진흥연구소.
 이진석 외(2002), 『사회문화 교과서』, 지학사.
 노경주 외(2002), 『사회문화 교과서』, 천재교육.
 도중수 외(2002), 『사회문화 교과서』, 법문사.
 경상북도(2006), “독도 올바로 알기(Dokdo, a beautiful island of Korea)”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국어 읽기”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과서 보완 지도자료”
 성균관여성유도회(2006), “전통예절 체험교실”
 사단법인한국부인회(2009), “성폭력 없는 즐거운 세상”
 국립청주박물관(2008), “국립청주박물관 유물조사노트”
 KDI(한국개발연구원), “Click, 경제교육”, 매월.
 한국저작권위원회(2007), “청소년 저작권 교실”
 법무부(2005), “법은 내 친구”
 사법발전재단(2010),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
 금융감독원 (2008), “즐거운 금융교실”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2010), “에너지와 우리 생활”
 국가보훈처(2010), “애들아 6·25 전쟁 이야기를 들어볼래”
 정보통신부,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10), “멋진 나! e 주인공”
 보건복지가족부(2010), “함께 만드는 행복한 세상”